

표지.면지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분야별 총괄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실장) 고상근 (경제산업조사실장) 이신우 (사회문화조사실장) 박태형 (기획관리관)
기획 및 편집위원	김원모 (정치행정조사심의관) 김 준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여영준 (총무담당관) 황선호 (기획협력담당관) 박규찬 (정치의회팀장) 심정희 (법제사법팀장) 유용조 (외교안보팀장) 이상팔 (안전행정팀장) 정지은 (재정경제팀장) 임동춘 (금융공정거래팀장) 김봉주 (산업자원팀장) 유인규 (국토해양팀장) 유의정 (교육문화팀장) 김유향 (과학방송통신팀장)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 조승래 (환경노동팀장)
편집실무	김유정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 김안나 (정치의회팀 행정실무원) 이정미 (정치의회팀 입법조사원)

발간사

국회가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따른 국회의 헌법적 권능이며, 국회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국회가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행정부가 점차 전문화·비대화되면서 국정감사는 행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국회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집행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견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매년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민의 눈과 귀는 국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왔으며, 올해도 변함없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님과 보좌진들에게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66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서는 현황-문제점-개선방안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해당 조사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가 국회의원님과 보좌진 여러분의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1일

국회입법조사처장 이 내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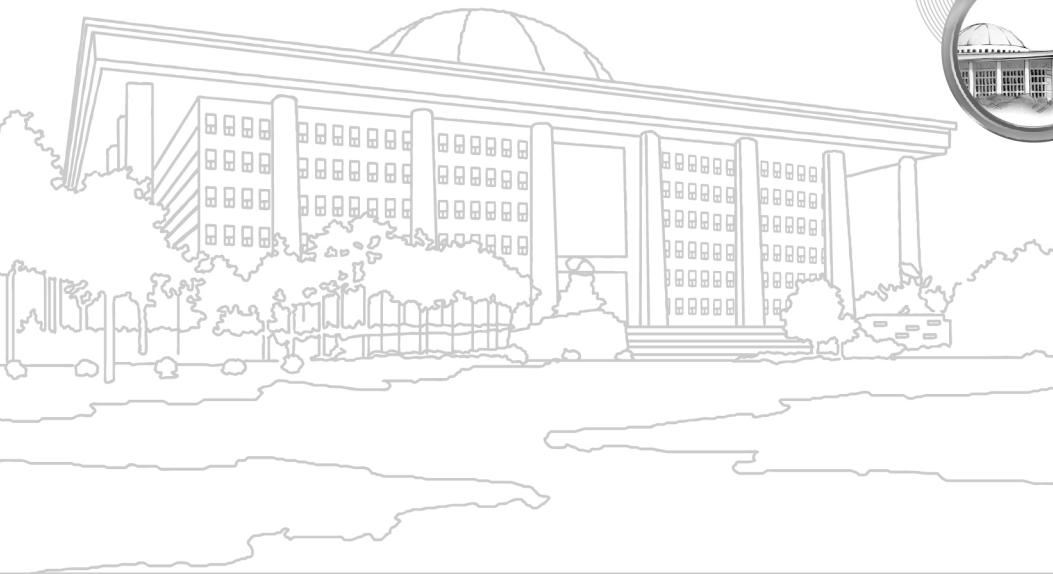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국정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각 주제 하단에 소관부처의 담당 팀 및 주제를 작성한 조사관의 연락처를 기술하였습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교육위원회 ...

▶ 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대책 관련	3
학교 외부인 출입관리 관련	4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6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7
대학 구조개혁	8
대학입시제도 개편	10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1
평생교육사 제도 개선	13
노인교육 활성화	14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16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17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19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개선	21
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현황	22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24
자율형 사립고 정책	28
사립학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	31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	3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35
교장공모제	37
고교학점제	40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책	43
전문상담교사 배치	4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8
학교폭력 재심기구 정비	50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	51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내실화	53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방안	57
외래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58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9
관광가이드 제한 논의	61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	62
야외스포츠 활동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	63
대화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방안	65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66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67
문화영향평가 대상 규정	69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고도화	70
공공미술 지원 제도 개선방안	72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74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 및 사각지대	76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향수 통계의 필요성	77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의	7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채용	81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전시 활성화 방안	83
방송프로그램 포맷 권리 침해	85
포털 뉴스 규제 정책	87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문제 관리체계 개선 논의	89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공공채널 의무운용 제도	93
우주개발사업 감리제도 도입	95
달 탐사 사업	96
기초원천연구 통합 수행	97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98
과학기술공제회 관리·감독	99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성	10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신설	102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104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리제도	106
정부납부기술료 사용제도	107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09
연구개발특구 제도	111
정부 연구개발예산 정체	113
중소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원	115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116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118
인공지능 기술 안전성 확보 및 윤리 정립	120
ICT 규제개선 추진체계	121
클라우드 보안인증 강화	123
국가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125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126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128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29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131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132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	133
SW·빅데이터 등 ICT 분야 인재양성	135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136
인공지능 로봇	138
챗봇 산업	139

우체국 경쟁력 강화	141
디지털 콘텐츠·미디어 정책	142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방지 정책	144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효율화	145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충	14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149
모바일 정보격차해소 정책	151
민간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전성 확보방안	153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대책	154
KIOSK(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	156
선택재업 관리 현황 및 망중립성 적용 실태	158
알뜰폰 경쟁력 제고	160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162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고	164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166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167
별정우체국 운영활성화 방안	169

㉓ 방송통신위원회

VOD서비스 및 광고	171
남북방송 교류 및 협력	173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175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177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179
TV홈쇼핑 방송 허위 과장 광고	180
생체인식정보 보호	182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83
외국 인터넷 사업자 규제 역외적용	185
신유형 융합서비스 정책	186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정책	188
인터넷 윤리 교육 정책	189
통신비 부담 경감	190
제로레이팅 확대 여부	192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19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차단 정책	196
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	197
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제 정책	199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후 재가동	20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20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204
방사성폐기물 관리	205
원자력안전협의회	206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요건 내실화	208

보건복지위원회 ...

▶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업무수행절차 개선 필요	213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정책방향 개선	214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 통합적 제공방안 마련 시급	216
분산된 노인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시급	217
국민연금기금 제4차 재정계산의 정밀성 확보	218
커뮤니티케어 신규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220
장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급	222
민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223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225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226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	228
부당청구 자진 신고(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229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환자 피폭량 감소	231
의료법인 회생	232
예비급여의 문제점	234
대북 보건의료 지원	235

재생의료 시행	236
위험분담계약제의 문제점	237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개선	239
교통이용과 관련된 장애인 편의제공 강화	24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개선	241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243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12개월 미만 영아)	245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 개선	247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 개선	249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250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개선	252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중복 조정	254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256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	257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점 검토	260
미환수 복지재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261
중복수급 사전차단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263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지형 비율 준수	265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267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설립 확대	269
지자체의 자활기금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	272
고교학비지원사업 수급이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274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개선	275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논의과제	277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리	279
학생건강검진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검진체계 개편	28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확대	282
경제적 수준 상위 10% 아동수당 지급배제 재검토	283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기준 재검토	284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확대	286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	288
종교법인 위탁 어린이집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 보장	289
저출산 대책 평가 강화	290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의 독립채산제 운영	291
행정입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업무 명확화	293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294

음주장면 및 주류 광고 폐해 예방	296
간접흡연 폐해 예방 강화	298
담배 경고그림 개선	300
담배 유해성 조사 및 성분 공개 필요	302
전자담배 및 켈련형 전자담배 규제	303
보건교육사 활용 미흡	305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	307
저출산 정책 제시의 수요자 관점 반영	309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도입	311
해의 유전자변형 밀 발견 대응	313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사후관리	314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316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관리	318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상소 후 대책	319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식중독 관리	322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324
기후변화 대응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체계	326
나트륨·당류 저감화 사업 다각화	327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	329
의약품 표시제도 문제점 검토	331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공급 문제	333
의료기기 광고의 문제점 검토	334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336
의료방사선 피폭량 감소	337

환경노동위원회 ...

▶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제	341
4대강 보 운영 현황	34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방안	343

가축매몰지 종료선언을 위한 방안마련	345
자연 유래 생활환경 라돈 관리방안	347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349
폐기물 고품연료(SRF) 적정관리 방안	352
수상태양광발전 확대방안	354
농촌 폐비닐 관리대책	357
식품조리로 인한 실내공기질 대책	35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361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364
미세먼지 용어 문제	367
오존 관리 현황	368
경유차 정책 현황과 문제점	369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	371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중 해외감축분 수정 논의	373
생활화학제품 관리 문제	374
동물 검역 강화 방안	376
등산로 산악오토바이(ATV) 규제	378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제도 개선	380
국립야생동물보존연구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383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 관리	385
미세먼지 측정 가이드라인의 문제	388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운영 효율화	389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유류	391

▶ 고용노동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혁신	393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394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사각지대 축소	396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의 형평성 제고	398
해외취업지원사업 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책 강화	400
고용보험 등 각종 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지속적 보완	401
청년고용지원정책 인지도 제고	403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의 쟁점과 과제	405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과제	408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대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41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	413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정책의 현황과 과제	416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4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속대책	420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422
근로자의 이해대변시스템 개편 방안	425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428
플랫폼 노동자 보호	430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등) 비준	431
감정 노동자 보호강화	433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435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남용(이른바 '갑질') 규제방안	436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필요성	438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440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개선	44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447
-------------------------	-----

여성가족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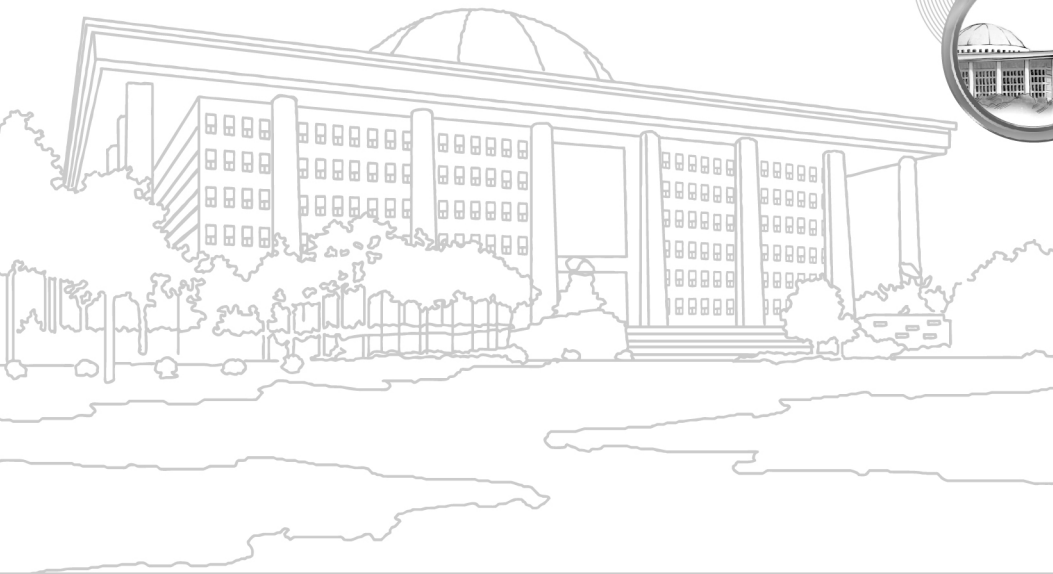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질적 제고	451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45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보육지원서비스 제공의 내실화	454
공공부문의 성희롱 발생 및 처리결과 보고내용 확대 제출의무	45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균등 배치	457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강화	460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46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화된 운영	463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465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강화	467
양육비 이행률 개선 방안 마련	469
양육비 이행 면접교섭 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책 마련	470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방안 마련	472
민간 아이돌보미 관리 체계 도입	473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방안 마련	474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한국어 교육 확대	475
청소년 유해약물 구입 및 신분증 위조 계도 방안 마련	47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서비스 중지 후 조치마련	478
학생미혼모 대안교육위탁원 연계 강화 조치 마련	480
지적장애 및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481



목차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운영위원회 ...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 3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법적 근거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직권 조사에서의 전문가 활용 7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 8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의 인권 개선 10
 혐오표현에 대한 입법적 대응 11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 12

법제사법위원회 ...



▶ 법무부

낙태죄에 대한 개선방안 1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선방안 19
 부동의간음죄 도입 문제 20
 몰래카메라 성범죄에 대한 대책 22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25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 도입 27
 데이트폭력범죄 대책 강화 28
 스토킹(stalking)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30
 드론을 이용한 촬영 관련 형사책임 32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34
 다크넷에서 행하여지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36
 범죄수익 몰수 관련 개선방안 38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대한 폐지 검토	40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리 문제	41
농아자(聾啞者) 감형규정의 폐지	44
사법조력자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제도	45
형사보상 관련 입법적 개선방안	47
일수벌금제도 도입 문제	49
검시제도 개선방안	51
구속 및 석방절차 개선방안	53
벌금형의 집행률 제고	54
작량감경 사유의 법제화	56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자에 대한 제도개선	5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0
소년보호처분 제6호의 운영 개선	62
교정시설 과밀수용	63
난민제도 개선방안	65
법률시장 개방정책과 관련한 제도개선	68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개선	69
법조계 전관예우 대책	71
성년후견제도 관련 결격조항 재정비	73
부동산 유치권에 대한 제도 개선	75
「민법」상 소멸시효의 체계 개편	76
상속인의 부양의무 강화 방안	78
유류분제도 정비	79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80
「민사소송법」상 증거개시제도 도입	81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신설	82
상가임차인에 대한 보호 강화	83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지의무 도입	84
의료기관 등의 사망통지의무 도입	86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도입	87
행정심판 인용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불복 허용	89
공정거래·특허심판 행정소송의 심급구조 개선	90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 방안	92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	94
임원의 자격제한 강화방안	95
상장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정비	97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99
서면·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주주권 강화	101
상장회사법 제정방안	102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지의무 개선방안	104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10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개선방안	106

▶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방안	109
법관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111
인터넷을 통한 판결문 공개제도 개선	113
대법관후보추천 관련 운영 개선	114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116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실효성 확보	117

▶ 감사원

감사원 독립기구화 관련 입법과제	119
-------------------------	-----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구성의 쟁점	121
--------------------	-----

외교통일위원회 ...

▶ 외교부

신북방정책 추진 경과 및 평가	125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 수립	126
방위비분담협정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	128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강화	129
한·미공조 강화를 위한 미국 내 재외공관의 활동	131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방안 수립	132
중국어선 불법 조업 대책 마련	134
한·일 과거사 기록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원	135

방한 일본인 수 감소에 대한 원인 규명 등 대책 모색	137
한국 청년의 일본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조치	138
대일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를 위한 외교정보 제공 강화	139
일본 내 증오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공관의 대응강화	140
대 중남미외교 전략 수립 및 활성화	141
중남미 치안불안 국가에 대한 영사업무 강화	142
조약 체결 절차의 개선	144
공공외교 추진 체계화	146
재외국민보호 체계화	148
외교관 선발제도 강화 방안	150
외교부의 재외공관 감사 강화	151
재외공관의 부적정 무급인턴 채용	152
재외공관 행정직원 관리 개선	154
재일동포사회 다원화에 따른 정부지원 전환	155
중장기 재외동포 정책방향 제시	156
불법유출 문화재 환수 노력 제고	158
강제실종협약 가입	159
양자투자보장협정의 투자자 정의 재검토	162
양자투자보장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재검토	163

▶ 통일부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방안	165
한반도 종전선언의 내용과 쟁점	16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68
DMZ의 평화적 관리 방안	169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171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방법	173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174
남북경협(개성공단·금강산관광)의 확대 방안	175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및 확대 방안	177
통일특구	178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의 조건과 절차	180
대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방안	181
이산가족 상봉의 현황과 과제	183
남·북협력기금 제도 개선	184
북한주민 접촉 신고제도	185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동의권	187
------------------------	-----

국방위원회 ...

↳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제도개선	191
군 예우기준	193
군인권보호관제도	195
국방TV 작가 최저임금 논란	196
직권 남용 가혹행위 처벌에 대한 제도적 보완	198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200
방위비분담금과 전략자산 전개비용	201
한·미동맹 성격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204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제 활성화 방안	206
병영독서 활성화 방안	207

↳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210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및 실태조사 개선방안	211

↳ 방위사업청

FX 사업의 추진현황	214
진화적 무기체계 개발 방식의 도입	216
방산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제도 활성화	218
국방연구개발 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219

행정안전위원회 ...

↳ 행정안전부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방안	223
---------------------	-----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방안	225
지방 비만세 도입의 쟁점	227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지방세 부과방안	229
지방세외수입 확충방안	231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233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	234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236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238
지방보조금 제도 개선방안	240
인구과소지역 지방재정세제 운용방안	24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244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 개선사업	24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강화 방안	247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248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	249
주민소송제도 개선방안	250
주민조례청구제도 개선방안	251
이장·통장지원제도 강화방안	252
마을기업사업 활성화방안	254
정보화마을사업 활성화방안	255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방안	256
지방의회 교육훈련 제도 활성화방안	25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개선방안	258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방안 마련	259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263
지방공휴일 규정안의 문제점	265
무궁화대훈장 서훈제도 개선	268
서훈 재심제도 도입 검토	270
기부제도 신뢰성 확보 방안	272
국가상징물 진흥과 국민 이해도 제고 방안	275
정부위원회 운영 성과 제고와 실적 평가 강화	276
수요자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강화	279
개인정보 감독 기구 독립성 강화	28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관리·감독 실효성 강화	283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적정성 강화	284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성과 및 책임성 강화	286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 관리·감독 강화	288
재난 이재민 지원체계 개선	290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분리	292
민·관협력 재난대응거버넌스 구축	293
가뭄 관리 방안	294
자전거이용자 교통안전 개선방안	296
재난문자 및 재난통신망 개선	298

▶ 인사혁신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	301
공무원 정년연장 검토	303
관리자급 여성공무원 할당제도의 개선과제	305
공무원 성과연봉제의 개선과제	307
공무원 초과근무제도의 개선과제	308
공무원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방안	310
대우공무원제도의 개선과제	312
공무원 당직제도의 개선과제	313
공무원 휴가제도의 검토과제	314

▶ 경찰청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대한 책임경감 방안	317
경찰 직급체계 개선 방안	319
수사기관 제척·기피 제도 도입 필요성	320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322
임산부 안전띠 착용 필요성	324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325
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방안	327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 개선과제	329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관련	330
실종예방을 위한 장애인의 지문등 사전등록률 제고 필요	332

▶ 소방청

119 구조구급 서비스 비긴급 이용 개선	335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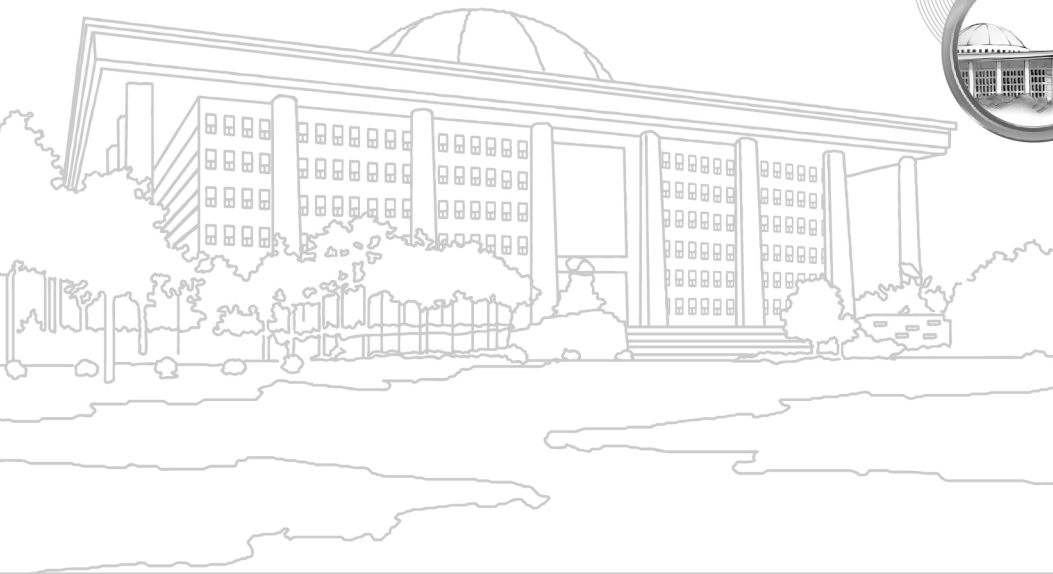
천장내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338
방화복 관리 체계 개선	339
소방전문병원 설립	34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품질향상 방안	343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제의 주요쟁점	344
선거연령 하향조정	346
시각장애인용 점자틀 투표방식의 개선	347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348
정치자금 인터넷 공개범위 확대	352



목차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기획재정위원회 ...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 3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제도 관련 5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의 주요내용과 향후 과제 6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관련 주요 쟁점 8

규제혁신 5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쟁점 10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 1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13

공공기관 편의시설 개방 관련 15

예산성과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16

근로자이사제의 공공기관 도입 관련 논의 17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대책 19

내수경기 활성화 20

사회적경제 활성화 21

설비 투자활성화 방안 23

소득불평등 개선 24

서비스산업 혁신 25

일자리 지원 사업 실효성 제고 27

협동조합 활성화 28

공유경제 활성화 30

민관합동법인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관리 31

재정준칙 논의 33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방안 34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관련 논의 35

부담금 평가제도 개선방안 37

보조금제도 개선방안 38

추경 편성 요건 관련 논의 40

국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42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	43
계속비 제도	4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46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4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50
증권거래세 관련 논의	51
가상통화(Cryptocurrency) 과세 방안	53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논의	54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의 과세 역차별 논쟁	56
기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	58
특허박스제도 도입 논의	60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강화방안	62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63
로봇세 논의	65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개선방안	68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방안	69
소득세 과표구간 변경 및 세율 조정	71
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연동제 도입	72
의료비와 교육비의 소득공제 환원 논의	74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논의	7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논의	78
월세세액공제 논의	80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82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8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대	86
출국규제제도 개선 방안	88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	90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방안	91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강화	93
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 관련 입법과제	95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관련 쟁점	96
금융소득 과세 관련 쟁점	98
종교인 과세 관련 쟁점	99
세수 오차 관련	100
가계부채 문제와 개선 방안	102

한국은행의 외환 개입 공개	105
----------------------	-----

▶ 국세청

사후면세점 활성화 및 관리 강화	108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시 제재방안 마련	109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확대 방안	111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개선	113

▶ 관세청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115
밀수·탈세방지 등 통관제도 개선 논의	116
자가사용 목적 관세감면 이후 재거래의 문제	118

▶ 통계청

빅데이터 활용도 제고방안	121
---------------------	-----

▶ 한국은행

현금없는 사회를 위한 논의과제	123
------------------------	-----

정무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자본금 상향 입법 이후 과제	127
SNS를 통한 소규모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과제	129
해외직구 증가와 소비자 보호 과제	130
랜덤박스 판매와 소비자 보호 과제	132
라돈 매트리스 리콜 관련 소비자 보호 과제	133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시 적용범위	135
검찰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담합 공소시효의 확보	137
중소기업의 담합에 대한 적용제외	139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	141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의 법제화	143
반복 법 위반자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선	145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분 매입 관행 개선	147
대규모유통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149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151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	153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의 효과 제고	154
동일인 지정 판단기준 명확화	156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제고	158
인터넷 기업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160
IT사업분야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보완	161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심사기준 보완	163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165
현행 가맹사업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선 문제	167
피해자의 증거 확보 능력 강화 방안	169

▶ 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	172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채용방식 개선 과제	173
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내실화 과제	175
보금자리론 등 유한책임대출 확대와 과제	17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대응 방향	179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181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선	183
퇴직연금 운용체계 개선	186
ESG 정보 공개 관련 제도 개선	189
가상통화 취급업자 규제	192
사회적 금융 활성화	196
P2P 대출 투자자 피해 방지	198
P2P 대출의 균형적인 감독 시스템 마련	200
카드 의무수납제	202
수수료 인하와 간편결제의 발전 방향	204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과 상호금융조합 관련 과제	205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마련	207
금융실명제와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개선	209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정보 보호	2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 문제	212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의 쟁점과 과제	214
금융회사 근로자추천이사제 관련 쟁점	21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와 과제	218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220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 도입 성과와 과제	222
대부업자 관리·감독체계의 문제점	225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한 주채무계열제도의 개선	227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관련 쟁점	229

▶ 금융감독원

보험료 카드수납 관련	232
보험금 손해사정제도의 개선	23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35
불완전판매 과다 보험설계사 관련	237
암보험약관 논쟁의 쟁점 및 과제	239
치아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1
보험판매 수수료체계의 문제와 과제	243
존엄사법 시행과 보험업계의 개선방향	245
사이버보험 시장의 현안과 과제	246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원인과 개선방안	249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공익신고의 실질적 조사권한 강화	25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실효성 확보	252
반부패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역할 제고	254
조직 내 반부패방지를 위한 법인책임 강화	256
익명신고를 통한 부패 및 공익 신고 활성화	258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대상 확대	259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포상 체계 일원화	260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	261

▶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개선	264
------------------------------	-----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266
국립묘지 안장수급 개선	268
권역별 보훈요양원 추가 확충	270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사건 처리기간 개선방안	274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의 기능 강화	279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동물등록제 개선	281
축산물 수입 지역화 인정에 따른 향후 과제	283
축산자조금 사업 개선	285
쌀 생산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287
농약 이력관리제 도입	290
종자산업 경쟁력 제고	292
생산단계의 농약 소비량 감소 대책	294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296
친환경 농업 규모 감소	298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301
김치산업 진흥정책 개선	302
식품자급률 제고	304
고령친화식품 산업표준(KS) 제정 후속 대응	308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자생지 관리	311
시설 원예농업의 스마트 팜 확대	313
마늘, 양파 통계 예측력 제고	315
농림축산식품 수출 전략	316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지원	318

▶ 해양수산부

어촌계 제도 개선	320
-----------------	-----

수산경영인육성사업 관련	322
낙시제도 개선	324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326
「해양경찰법」 제정	328
해양산업클러스터 육성	329
항만하역시장의 안정 및 질서확립 방안 마련	331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333
내항여객운송사업 준공영제의 개선	335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337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대응	339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안정적 정착	341

▶ 산림청

도시숲 조성 사업 확대	344
사방댐 사업 확대	34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대응	351
미국의 TPP 탈퇴 후 포괄적·점진적TPP(CPTPP) 대응	353
한·중미(Central America) FTA 체결	355
브렉시트(Brexit) 관련 한·영 FTA 대응	357
한국 자율주행차 수출 확대를 위한 FTA 정책	359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WTO 패널 패소	36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플랫폼 구축	363
수요견인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경쟁력 강화	365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시행 지연	367
경제특구 간 기능 중복 조정	368
OECD 국내 사무소(NCP)의 기능 미흡	37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372
국가인증제도 개선	373
발전공기업 및 한전의 영업이익 현황 점검	375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황	378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대책	380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의 효과	383
사용후핵연료 포화 수준 및 대책	385
에너지 부문 파리기후변화협약 대응	388
지중 송전선의 전자파 문제	390
국가 에너지 원단위 개선 검토	392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의 문제점 보완	395
LNG 직도입의 현황과 문제점	396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축소	399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400
기술가치평가 제도의 개선 및 활용 확대	402
산업기술 R&D관리 효율화	404
주력산업 구조조정 정책	406
신·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407
해상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증대 방안	409
태양광 발전 설비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410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	412
RE100 캠페인 국내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413
알뜰주유소 사업 운영방향의 개선	415
집단에너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417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의 재정비	418
공기열 히트펌프의 신·재생에너지지원 지정	419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환경훼손 가능성	42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423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통계 작성	425
기업체 기준 중소기업 통계 작성	426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확대	428
중소기업연구원 법적 근거 마련	430
성과공유제 확산	432
의무고발요청제도 개선	433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 설치	435
전통시장 상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437
벤처·창업 통계 관리 강화	438

청년창업 지원의 당위성·형평성 논란	440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근거 정비	442
모태펀드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 개선	444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문제	446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 제고	448

▶ 특허청

특허청 여유재원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	450
상표·디자인 전문기관의 등록제 전환	452
지식재산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453
4차 산업혁명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455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 제고	457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458

국토교통위원회 ...

▶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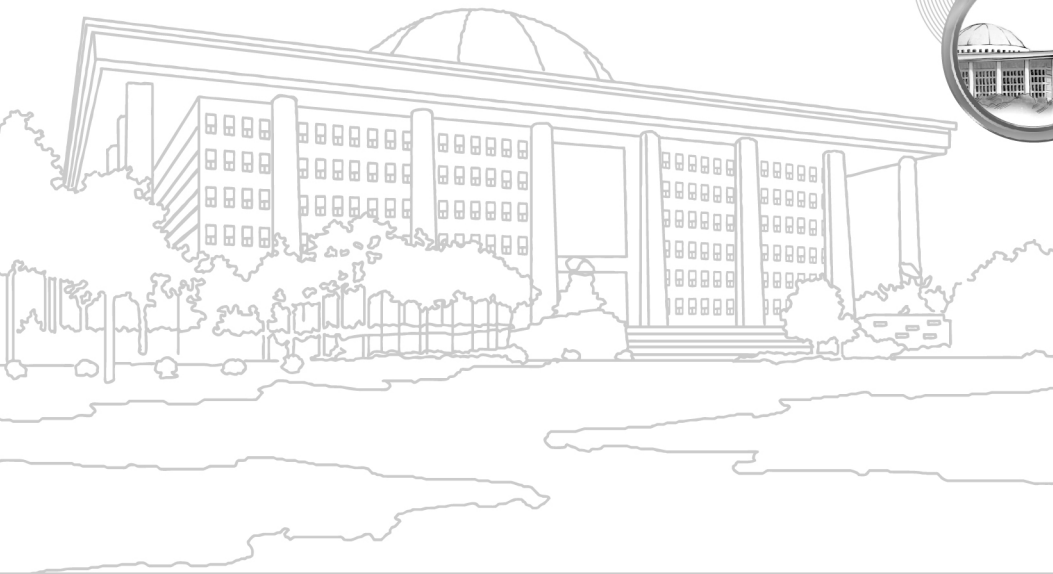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과제	463
스마트도시 추진현황과 과제	465
제로에너지건축물 현황과 과제	466
건축물 안전관리제도 개선	468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470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과제	472
혁신도시 시즌2 현황과 과제	474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과제	475
계획관리지역 제도 개선	477
건축물 화재안전관리제도 과제	478
주택시장 규제정책 관련 보완	480
공적지원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482
주택임대차시장제도 개선방안	48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485
아파트 후분양제 관련 주요 이슈	487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관련 과제	489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소를 위한 과제	491
토지공개념관련 주요이슈	493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495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방안	497
EEZ 골재채취 대책	498
해외건설업 활성화 방안	500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방안	501
공공측량 성과심사 관리 강화	502
수변공원 관리 현황	504
택시 호출 서비스 및 수수료 관련 쟁점과 대응	505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제 점검	507
카풀(라이드 셰어링)의 기능 및 활용방안 검토	508
사유지의 통행권 관련 분쟁 해결 방안	510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511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 확대 방침에 대한 대책	512
헌법상 이동권의 현황 및 개헌 필요성 검토	515
도시재생에 있어서 교통부문 역할 강화 필요	517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51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정착	520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의 근절	522
화물자동차 지입제의 개선	523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 신고대상 확대 방안	525
소형항공운송사업면허 등록요건 검토	527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제도 도입	528
항공정비자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530
베리어프리 철도정책	531
고령운전자 안전성 제고	533
민자도로 재정전환 방안 검토	534
기계식주차장 안전성·활용률 제고	535
고가 하부공간 활용	537
나홀로 차량 줄이기	538
포트홀 피해 대응 강화	5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540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542
빈집정비사업	543
지하주거시설 환경개선	544

주택 특별공급제도	546
청년층 주거정책	547
위반 건축물 정비	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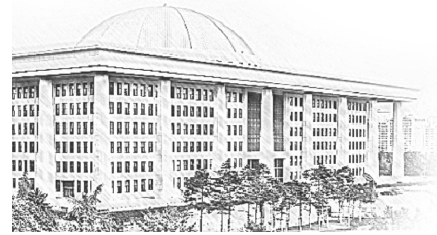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교육위원회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교육부



학교 미세먼지 대책 관련



1. 현황

- 미세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어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의 실외수업이 실내수업으로 대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는 지난 4월 6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함
 - 교육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강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 학교 실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 유아 및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 문제점

- 학교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만 공기정화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공기질이 나빠진 사례도 있으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관리와 유지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음
 -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기청정기의 설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실이 환기가 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는 사례도 확인됨

3. 개선방안

- 학교의 교실에 설치하는 공기정화장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기정화장치 설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교실의 환경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기정화장치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청정기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생건강정책과	-	044) 203-6877



학교 외부인 출입관리 관련



1. 현황

- 서울의 초등학교에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출입한 외부인이 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사고가 발생함
 -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학교의 출입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시함
 - 초·중·고등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학생보호인력이 외부인의 학교출입을 관리함
 - 일부 학교는 담장이 없거나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출입관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음

2. 문제점

- 학교에 배치된 학생보호인력이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전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외부인 출입관리를 위한 시설이 미비함
 - 학교 간에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위하여 규정이 명시된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상이하여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일부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학생보호인력이 혼자 근무하면 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담장이 없거나 낮은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출입관리가 어려움

3. 개선방안

- 외부인의 학교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 학교의 외부인 출입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육이 실시되는 시간에는 학부모와 지역 주민 및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외부인의 출입관리를 위하여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대기하는 시설을 확보하고 학생보호인력의 확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학교를 무단으로 출입한 자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	044) 203-6539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1. 현황

- 정부는 5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이 포함되어 있음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제시함
 -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교육정책의 집행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2. 문제점

- 지방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에 제정되어 실시되었지만, 중앙 정부와 교육감은 교육사무의 권한과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무상급식, 누리과정, 자사고 지정 등의 교육정책의 집행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인하여 지방정부와 시·도 교육감 간에 교육정책의 집행과 교육사무의 권한과 범위 등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지방정부와 교육감 간에 교육사무의 권한과 범위 및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집행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육사무의 집행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효율적인 교육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앙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사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가능한 교육사무를 구분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기존 법령의 개정하

는 방안과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 강화추진단	-	-	044) 203-7077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1. 현황

-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에 취업과 연계된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1월에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이 업무에 과도한 압박을 받아서 자살을 하였고, 11월에는 현장실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교육부가 2017년 12월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발표한 대책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직업계 고등학교 및 학생들은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함

2. 문제점

- 학생과 학부모는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인하여 직업계 고등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취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학생 및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기업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의 일환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한 사례가 많음

3. 개선방안

-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선도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수가 적으면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은 현장실습제도를 저임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 203-6398



대학 구조개혁



1. 현황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어지는 시점이 수년 내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충원 대학의 증가와 대학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서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학 구조개혁은 1주기(2014년~2016년), 2주기(2017년~2019년), 3주기(2020년~2022년) 등 총 3개의 주기로 나누어 추진함

- 대학 구조개혁의 1주기 평가와 관련하여 지표의 적용과 평가의 운영 등에 문제가 지적되어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2주기 평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음



2. 문제점

- 대학 구조개혁 2주기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여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대학 등으로 평가하여 대학의 재정지원에 차별을 두고 있음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하여 대학의 정원 감축과 함께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지만, 대학 구조개혁의 초점이 여전히 대학 정원 감축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잠정결과에(최종 평가 결과는 8월에 발표할 예정임) 대하여 지역별로 평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비교하여 평가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학과는 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학과의 경쟁력이 다른 대학과 비교하여 높지만, 해당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해서 대학의 인지도 하락에 따른 학과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대학 구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대학 구조개혁을 통하여 대학 정원의 감축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제기된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학의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특별법 또는 대학 구조개혁의 시한을 명기한 한시법 형태로 제정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과	-	044) 203-6917

 **대학입시제도 개편** 

1. 현황

-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였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하여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 사항에 대하여 숙의하고 공론화하여 결과를 교육부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함
 - 국가교육회의가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임
 -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 문제점

-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중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가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대학 등 대학입학과 관계된 당사자로부터 의견 수렴을 통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공론화하여 교육계의 갈등을 키우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있음
 - 국가교육회의와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에 복잡한 입시와 교육정

책을 실무적으로 다뤄본 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논의가 있음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당사자인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3. 개선방안

- 대학입학제도의 개편을 위한 과정과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학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하여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대학 관계자 등이 선호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대학입학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음
 - 국가교육회의와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및 대학입학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검토하여 향후 중요한 교육정책의 공론화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	-	044) 203-6368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 현황

-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은 수년간 등록금이 동결 또는 인하되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운 실정임
 -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은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

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학은 법률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였음

- 사립대학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지만 수년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기로 인하여 대학의 운영과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 고등교육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20대 국회에 3건 발의되어 있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신설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적으로 한정된 재원에서 다른 부분에 사용되는 예산을 전용하여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우리나라는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설립주체인 대학이 자기책임 하에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사립대학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또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는 대학이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키고 부실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여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함

3. 개선방안

-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음
 - 고등교육세의 신설을 검토하여 다른 재원의 감소 없이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새로운 목적세의 신설에 대하여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함

- 대학의 통폐합과 대학 구조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과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조인식	02) 788-4705
관련 부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학재정장학과	-	044) 203-6285



평생교육사 제도 개선



1. 현황

-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학습 관련 업무의 전반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로서, 일정 기준 이상을 갖춘 자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기준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양성(승급)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현행 평생교육법령은 평생교육기관에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평생교육사 양성과정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간에 차이가 있고, 자격취득 이후 보수교육 및 연수가 의무화되지 않아 평생교육사의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2017년 기준 공공영역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중 비정규직이 32.1%에 달하는 등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인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현행 평생교육사의 배치기준은 업무 범위나 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1명 이상의 의무배치 기준만을 두고 있어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배치의 무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년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기관의 비율은

7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현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수교육 도입 및 자격 등급별 수준체계를 재설정하는 등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정규직 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평생교육 전담공무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평생교육기관의 성격(공공/민간영역)에 따라 지역인구수나 학습자 규모를 기준으로 평생교육사 배치인원을 차등 적용하도록 배치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배치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	044) 203-6248

✦ 노인교육 활성화

1. 현황

- 노인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및 행정체제
 - 현행법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노인복지법」에서 노인교육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인여가복지 차원에서의 시설 관련 또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고, 「평생교육법」에도 노인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음
 - 행정조직 측면에서도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평생교육과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교육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노인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는 없는 상태이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노인교육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011년 6.7%에서 2017년 12.9%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여가·취미·건강관리 및 교양 프로그램 위주인 것으로 나타남

2. 문제점

- 저출산·고령화 및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노인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나 행정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및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미흡함
- 노인교육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노인교육 프로그램은 여전히 노인복지 차원의 여가·취미·건강관리·교양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어, 평생교육 차원에서 노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평생교육법」에 노인교육에 관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육부 소관법률에 노인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 내에 노인교육 전담부서를 두어 노인교육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노인교육에 관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사의 노인교육 관련 전문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질적 수준 향상 등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	044) 203-6318



평생학습계좌제 활성화



1. 현황

- 평생학습계좌제는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여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평생학습법」에 근거해 2009년부터 도입됨
 - 개인의 학습이력은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출력하여 학습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학력·학점인정 및 자격취득과 연계하거나 취업·고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교육부는 학습이력 관리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나라사랑포털(국방부), 프라임칼리지(한국방송통신대) 등 13개 시스템에 이어, 2017년 7월에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HRD-net)와 자동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2. 문제점

- 2009년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된 지 8년여가 지났음에도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매년 사업규모도 축소되어 평생학습계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움
 - 2017년 현재까지 평생학습계좌 개설자는 총 66,592명으로 전체 평생학습자(11,897,236명)의 0.6%에 불과하고, 평생학습이력 등록 건수는 215,061건으로 1인당 약 3.2건 수준이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도 16,423개에 불과함
 - 이처럼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국민 홍보 부족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실제 고용시장이나 학력·학점인정의 연계 등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등 유인체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학습경험의 총괄 관리 및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개인 학습자의 평생학습이력 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자격 및 학습경험의 시스템 연계 구축을 확대하고,

학습계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예컨대, 국가·공공기관의 연수프로그램, 각종 봉사활동이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DB, 나아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 등과의 연계 구축을 확대하고,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면제과목 연계, 재직자 특별전형 및 입학사정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또한, 참여 평생학습기관이나 입학·채용과정에서 평생학습이력을 활용하는 대학·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관련 기관 등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한편, 올해부터 신규 추진되는 평생학습 바우처 수혜자에 대하여 학습계좌 개설을 의무화하고 바우처시스템과 연계 또는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평생교육정책과	-	044) 203-6246

학업중단 숙려제 개선

1. 현황

-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학교나 외부 위탁기관에서 상담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로, 2011년 5월 시범 도입된 후 2014년 1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에 실시 의무화됨(「초·중등교육법」 제28조)
- 2017년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 중 78.9%가 학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86.5%) 대비 7.6% 감소한 수치임

2. 문제점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중 학업복귀율이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숙려제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 간 학업복귀율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예컨대, 2017년의 경우 경기 90.0%, 세종 34.0%의 복귀율을 보임)

표 1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2013~2017)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숙려제 참여학생수(명)	10,589	44,778	43,854	40,241	41,689
참여학생 중 학업지속학생수(명)	3,697	36,691	37,935	32,093	32,902
비율(%)	34.7	81.9	86.5	79.8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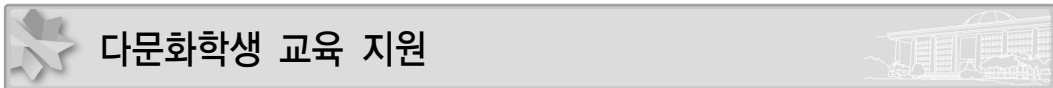
-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학업중단 숙려제 공동운영기준’을 토대로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2018년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의 숙려제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출석일수 인정기준 및 외부위탁기관의 범위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숙려제가 의무화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숙려프로그램의 적절성·효과성 등에 대한 분석이 전무함
 - 숙려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징후를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로는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위탁기관이 부족한데다 학교 차원에서 위탁기관을 발굴·연계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위탁기관 연계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함

3. 개선방안

- 학업중단 숙려제의 지역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위기징후 학생에게 숙려제를 적극 권장하여 조기에 연계시키고, 대안교실 운영 활성화, 학교복귀 후 적응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시도별 학업중단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원인별 필수프로그램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위탁기관 발굴·확보기준 마련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또한, 숙려제 참여 후 미복교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교-교육청-지원센터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신속한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	044) 203-6520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1. 현황

- 2017년 4월 기준 다문화학생은 총 10만 9,387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 대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약 20만명 이상 감소한 반면, 다문화학생 수는 매년 1만명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교육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다문화가족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2006년부터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문제점

- 다문화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움
 - 예컨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은 한국인이 포함된 가족으로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가정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의 적용대상이나 규정내용이 제한적이어서 모든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표 2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현황

법령명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	한계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든 아동에게 교육권 보장 및 무상교육 제공	협약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국내법규 불충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다문화학생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류요건 완화 등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실시근거, 구체적인 교육지원내용 등 미비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마련 및 편견 예방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정의 제한적 (부모 중 한국인 포함)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외국인의 사회적 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미등록 이주아동 제외, 구체적 지원내용 미비

□ 다문화학생 수는 2014년 67,806명에서 2017년 109,387명으로 61.3% 증가하였으나, 교육부의 2018년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예산은 195억원으로 2014년(225억원)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등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이 미진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다문화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법률로 다문화교육 및 다문화학생 지원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다문화교육의 진흥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타 부처 소관법률과의 중복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 제정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		044) 203-6987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개선



1. 현황

- 유치원 교육과정이 종전의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에서 기본 교육과정(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된 2012년부터 유아가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방과후 과정비(사립 월7만원, 국공립 월5만원)가 지원됨
- 2018년 현재 대부분(99.8%)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유아의 비율도 2011년 47.4%에서 2018년 82.7%로 급증함
 - 교육부는 2016년 지침부터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저소득층, 맞벌이 등)의 우선 참여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방과후 과정 이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2. 문제점

- 모든 유아에게 방과후 과정비가 보편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오후 돌봄이 불필요한 유아까지 장시간 유치원에 머무르거나 이 시간대에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저해, 교원의 업무부담 및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유아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는 유아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 유치원에서 방과후 과정 담당인력의 채용 및 기준시간 준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사립의 경우 기본교육과정 담당 교사가 방과후 과정까지 겸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교사의 피로도 누적 및 수업준비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농어촌 소재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인력 고용의 어려움 등으로 1일 8시간 이상의 이용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3. 개선방안

- 종전 종일제의 운영 취지가 맞벌이가정 등 오후 돌봄이 필요한 유아 대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과후 과정의 운영시간을 다양화하거나 이용대상 기준 및 비용 지원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방과후 과정비를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기본교육과정을 무상교육화 하고 방과후과정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다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방과후 과정비 운영방식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	044) 203-6444

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 현황

1. 현황

- 정부는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이라 함)을 추진함
 - 유보통합은 당초 2016년 완료를 목표로 10개 세부과제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나, 핵심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및 교사자격·처우개선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진이 지연됨
-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시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현재 격차 해소에 주력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국무조정실의 ‘유보통합추진단’이 해체되면서 부처통합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은 잠정 유보된 상태임

【 표 3 】 유보통합 추진계획(2013.12.) 및 이행현황

단계	주요내용	과제명	이행현황
1단계('14년)	품질개선기반 구축	결제카드·정보공시·평가체계 통합, 공동재무 회계규칙 제정	완료
2단계('15년)	규제·운영환경 정비	가격규제 개선, 시설기준 정비, 지원방식 다양화	완료
		0~2세 유치원 허용	시범운영중
3단계('16년)	관리부처 통합 등	관리부처 통합	미이행
		교사 자격체계 및 처우개선	미이행(추진중)

2. 문제점

- 정부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교사와 교육의 질 격차 완화를 추진 중이나,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자격·양성체계가 다르고 각 분야 전공자, 관련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관리부처가 상이하여 동 과제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유아보육·교육기관은 지원과 규제의 정도에 따른 유·불리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양성기관은 통합교사 자격 추진 시 양성기관 개편 등에 대한 부담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음

3. 개선방안

- 교육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함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격차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분석을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양성·연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 다만, 현재의 부분적인 일원화 체제 하에서는 누리과정의 정책목표 달성 및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누리과정의 재원문제나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재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부처 및 재원 확보방안 등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유보통합이 유아 보다는 관련 부처·단체·교사 등의 이해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대만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고, 우리의 지난 유보통합 진행과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점을 상기할 때, 앞으로의 유아교육·보육정책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저출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황현희	02) 788-4703
관련 부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	044) 203-6555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절대평가



1. 현황

- 2017년 11월에 실시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이라 한다)부터 영어 영역에 대해 절대평가가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2018년에도 시행될 예정임
 - 교육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2016.8.31.) 및 「시행기본계획」(2018.3.27.)에 이를 반영하여 발표함
- 교육부는 수능시험 영어 절대평가 도입 목적에 대해 “수능시험 영어 영역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취지는 단순히 높은 수능 점수를 받기위한 학생과 학교현장의 무의미한 경쟁과 학습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활성화 등 학생들의 실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학교 영어교육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2. 문제점

-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영어 실력 저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교육부의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수능시험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더라도 난이도를 조절하여 쉽게 출제한다면 대학입시에서 영어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교 영어 수업 자체가 소홀해지며,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¹⁾

1) 이영식, 「수능영어의 절대평가」, 『한국 영어교육의 위기: 학교 영어교육과 국가 경쟁력』, 영어 관련 학회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영어영문학회·한국영어교육학회·한국영어학학회·한국영어학회, 2018.6.22.

-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필요한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학교 영어수업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한 영어 학습량 설정, 영어 교원 전문성 신장,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균형 있는 교실수업 운영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2014.3.)에서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하겠다고 발표함
 -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10.03%로 2017학년도 수능시험(절대평가 도입 전)에서의 1등급 비율(4.42%)보다 5.61%p 증가함²⁾
 -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영어 영역 2등급 비율은 19.65%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의 2등급 비율(6.87%)보다 12.78%p 증가함
- 그러나 2019학년도 수능대비 6월 모의평가(2018.6.7. 실시) 결과를 살펴보면,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은 4.19%로 2018학년도 수능시험(10.03%)보다 5.84%p 감소하였고, 2017학년도 수능시험(4.4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³⁾
 - 이에 대해 교육부가 2014년에 발표한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절대평가를 도입하면서 수능시험 영어 영역 난이도를 국가수준에서 하향 조정하게 된다면, 영어영역의 변별력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대학이 별도의 영어 활용 평가(영어 논술 또는 면접 등)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학생부 전형 중심의 대입전형 체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힘
 - 재정지원 등과 연계한 정책은 일시적·제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고등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2) 국어 영역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1등급 비율은 4.90%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의 1등급 비율(4.01%)보다 0.89%p 증가함. 수학 영역(가형)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 1등급 비율은 5.13%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의 1등급 비율(6.95%)보다 1.82%p 감소함

3) 국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수능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는 4.70%,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4.90%,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4.01%로 나타남. 수학 영역(가형)의 1등급 비율을 살펴보면, 2019학년도 수능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는 4.17%, 2018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5.13%,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6.95%로 나타남

-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비가 감소하더라도, 사교육비가 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수능시험 영어 영역 평가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영어 사교육비가 국어와 수학 등 다른 과목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시험 관련 사교육은 난이도가 불안정함에 따른 불안감에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개선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국어와 수학 등 다른 수능시험 과목도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제하여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 교육부는 2015년 3월 18일에 난이도 안정화 방안 시안을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해 난이도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학교교육과정 정상화와 과도한 경쟁 및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수학 등 다른 과목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절대평가의 취지는 등수를 올리기 위한 무한 경쟁과 학습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의 성취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데에 있으나, 영어 절대평가만으로는 정책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수학 등 전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임⁴⁾
 -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다만, 절대평가의 도입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뿐더러 도입에 따른 우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영어에 이어 수학까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대학은 변별력 확보를 위한 논술, 면접 등 다양한 대학별 추가 시험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⁵⁾
 - 현행 수능시험에 대해 대학의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고등교육법」 제 34조 제3항)을 달성할 것과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양립하고 있음
 - 교육부는 2018년 4월 11일에 대학입시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숙의·공론화를 거쳐 합의된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송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송부하였고, 이 이송안에는 다른 수능 과목에 대해서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⁶⁾

4)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수능 출제 시스템 개선과 대입제도 단기개선방안 공청회』, 2015.3.19., p.21.

5) 새정치민주연합 수능대책특별위원회, 위의 글, p.22.

6)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2018.4.11.

3. 개선방안

- 교육부는 수능시험 영어 영역에 대해서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수준과 학습량을 이수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가 발표한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시안은 절대평가 도입시 영어영역 난이도가 낮아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교육부는 보다 구체적인 난이도 안정화 방안을 마련 및 제시할 필요가 있고,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에 부합하도록 2019학년도 수능시험 난이도를 안정화 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영어 영역 난이도를 절대평가 도입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쉬운 수능 영어 출제’ 방침을 재조정하여 발표하고, 학생·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수능시험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을 다른 과목으로 확대하려 한다면, ① 영어 및 한국사⁷⁾에 대한 절대평가 도입 이후의 효과 및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②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 강화 ③ 절대평가의 성취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④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을 병행하여, 수학 등으로 절대평가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합의안 마련을 요청한 사항 중에서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범위로 정한 사항에는 수능 평가방법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과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됨. 향후 국가교육회의는 절대평가 확대 또는 상대평가 유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한 사항을 포함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대입정책과	-	044) 203-6368

7) 교육부는 한국사 영역에 대해서는 2016년에 실시된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절대평가를 도입함



자율형 사립고 정책



1. 현황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고 한다)는 “기존의 일반 사립고교와는 달리 교육과정과 학교운영에 있어 더욱 많은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임
 - 교육부는 2010년에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고를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 본연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고등학교로, 기존 전국 6개의 자립형사립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학생·학부모 만족도 증가 등의 성과는 확대시키고, 사교육비 유발 등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이라고 설명함
-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자사고는 46개교이고, 이 가운데 50%인 23개교가 서울에 지정되어 있음
 - 2009년에 자사고가 처음으로 지정·도입되었고, 2010년부터 운영됨
 - 2010년 2월에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총 6개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였고, 그 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던 하나교가 자사고로 전환 지정되어 개교하였고, 용인외고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자사고로 전환 지정됨

2. 문제점

- 특정 지역에서 자사고 정원에 비해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적어서 정원에 미달하는 학교가 발생함
 - 자사고가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서울에 전국의 50%), 2017년 기준으로 서울의 자사고(23개교)·특목고(21개교) 학교수(44개교)는 서울 전체 고등학교수(320개교)의 13.8%이고, 자사고(25,316명)·특목고(12,813명) 학생수(38,129명)는 서울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282,968명)의 13.5%임
 - 2013년에 실제로 운영된 전국 49개 자사고 중 12개교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이중 다수가 서울 소재 자사고 이었음

- 자사고의 학생선발 방식과 관련하여 필기시험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학교 내신 등 성적 또는 실력이 반영된 선발이 실시되고 있고, 선발시기 측면에서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에 우선 선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고에 대한 학력저하 및 학생·학부모의 기피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 및 새정부 출범 이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됨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되었고, 3가지 세부과제 중에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가 포함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
 - 새정부 출범 이후 일부 시·도교육감은 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실시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활용하여 해당 시·도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거나 ②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운영 등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하위법령 삭제를 통한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 건의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해 자사고를 설립·운영 중인 학교법인들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부 단체는 “자사고 일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개선방안

- 시·도별로 자사고 수요를 면밀하게 조사·분석하여 그에 따른 지역별 자사고 지정 학교 수 및 정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재정 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이 건실한 자사고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자사고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시·도별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와의 동의를 구하여 행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은 학교정책의 안정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등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법인의 재정 부담 기준이 높고 전국단위 학생선발을 하고 있는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 중에는 해당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해온 학교가 있고,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정된 자사고 중에도 상당한 노력을 통해 학교발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되는 학교들이 있음
- 고교평준화제도 하에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특정 지역(서울 강남 등) 또는 특정 고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자사고 관련 대선 공약은 설립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목고·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및 자사고를 고교입시 단계부터 공정하게(특목고·자사고 등의 우수학생 우선 선발 등의 특혜 폐지) 경쟁하도록 하여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고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정부는 2017년 12월 29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제1항을 개정하여 전기전형 실시 대상에서 자사고를 제외함(제5호 삭제). 이에 따라 자사고 입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실시하기로 함
 - 그리고 동 시행령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제5항을 개정하여 평준화 지역 자사고 및 특목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이에 따라 자사고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교육청이 배정하는 일반고에 배치될 예정임
 - 이에 대해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일반고 선택 불가) 규정한 조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함.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그 취지를 존중하여 자사고 지원 학생의 일반고 선택 가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함⁸⁾

8) 교육부, 「고입 동시 실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설명자료』,

- 자사고 전형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일반고와 동일) 변경한 대통령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자사고 전형시기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에 실시될 예정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과	-	044) 203-6506



사립학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특례



1. 현황

- 사립학교 해산 시 장려금 지급과 잔여재산의 학교법인 귀속 시 증여세 면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각각 1997년과 2000년에 마련되었으나, 2006년 12월 30일에 동시에 일몰됨.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 등을 이유로 재도입 주장이 제기됨
 - 1997년 8월 22일에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는 해산 촉진을 위한 해산장려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해산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
 - 2000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는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 1998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특례를 적용받아 해산된 학교법인은 34개이고, 해당 유치원(1교)과 중·고교(38교)는 39개교임
 - 잔여재산 귀속자는 대부분 설립자 및 출연자 본인과 그 비속(후손), 공익법인, 장학회 등임

2. 문제점

- 유·초·중·고교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학교 운영이 어려운 사립학교(소위 한계사학)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및 그에 따른 시·도 조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립학교(수업료 등이 자율화된 일부 학교 제외)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립학교는 스스로 해산하거나(「사립학교법」 제34조), 관할청이 해산명령을 내리고(같은 법 제47조), 잔여재산은 법률에 따라 귀속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35조)는 주장도 있음
-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립학교 해산을 장려하기 위해 이전에 시행하였던 장려금 지급 방안을 다시 실시하더라도 그 절차와 사유⁹⁾, 장려금 산정 방식¹⁰⁾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잔여재산의 학교법인 귀속 시 증여세 면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이 교육 재정을 계속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진 해산 및 잔여재산의 공적 환원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산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사립학교 해산 시 장려금 지급 및 잔여재산의 학교법인 귀속 시 증여세 면제 특례를 부활시키려한다면 「사립학교법」 부칙의 적용시한(현행 2006.12.30. 일몰)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타당성과 필요성에 부합하는 절차와 사유, 장려금 산정 방식, 증여세 면제 범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연구 및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9) 1997년 8월 22일 법률적 근거 신설 당시의 절차와 사유에는 ① 초·중·고교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②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 설립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포함됨

10) 2004년 1월 29일에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4항은 해산 당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도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관련 부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지방교육재정과	-	044) 203-6199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기간 및 처우



1. 현황

-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보고된 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육아휴직 허용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간 및 처우 등에 대해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았고, 학교 정관(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
- 이에 비해 국·공립 교원은 육아휴직 허용의무와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은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함
 - 같은 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은 출산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입양 육아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함
 - 국·공립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에 따라 “해당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봉급액의 80퍼센트(3개월까지) 또는 40퍼센트(4개월째부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받음

2. 문제점



- 사립학교 정규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는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 사립학교 교원은 육아휴직 기간 등에 대해 학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제1항은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제7호 및 제7호의 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함. 다만, 이를 어길 시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에 관해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제54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보고된 자)의 육아휴직 시 수당 지급 여부는 학교 정관의 규정(경영자는 규칙)에 따르고 있음

3. 개선방안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육아휴직 허용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려한다면, 「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을 개정하여 육아휴직(제7호 및 제7호의2)의 기간을 법률로 직접 규율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보다 육아휴직 신청 건수 및 기간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교원) 수요 및 휴직 수당(정관상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립학교(자사고 등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학교 제외) 교원 인건비는 국가 및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 명시(사실상 확대) 및 수당 도입 시 경비 부담 주체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와 학교법인(경영자 포함)이 분담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

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원정책과	-	044) 203-668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1. 현황

- 지난 2016년 2월 3일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법”이라 한다)으로 변경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개정 법률이 2016년 8월 4일에 시행됨
- 그러나 교원단체 등은 법률 개정 직후부터 교권침해 대응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교권침해 사건 시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제20대 국회에는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¹¹⁾이 발의됨

2. 문제점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건만 1만5천여건(15,605건)에 달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²⁾

11) 염동열의원안(2016.11.11.), 서영교의원안(2016.12.8.), 조훈현의원안(2017.2.9.), 이동섭의원안(2017.5.19.), 안규백의원안(2018.4.30.), 이학재의원안(2018.5.14.), 손해원의원안(2018.7.3).

12) 이덕난, 「교권침해 사례 분석 및 과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사업의 발전과제 탐색 전문가 세미나 자료집』,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학부모 등 제3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232건 중 실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진 건수가 18건(7.8%)에 불과한 실정이고, 이는 피해 교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됨¹³⁾
- 교권보호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관할청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그러나 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
- 2016년 개정 교권보호법은 피해교원 보호 조치 및 예방조치에 대해 미흡하게 규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제19대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있어야 교권 침해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됨¹⁴⁾
 - 제20대 국회 이후에도 “교권보호법은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특징에 알맞게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됨¹⁵⁾
-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가운데 학교를 떠나는 조치가 69.6%로 가장 많고, 이는 가해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비율(10.6%)에 비해서도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퇴학처분이 어려운 중학교(의무교육단계)에서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¹⁶⁾

3. 개선방안

- 상해·폭행·협박 및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학교장 또는 교육감의 수사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2.20.

13)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7.2., p.6.

14) 국회사무처, 「제337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2015.11.27., p.33.


15) 이종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심으로』, 국회의원 박인숙·국회의원 이종배, 2018.5.4., pp.30-31.

16) 이덕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5.19.; 이덕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방향 토론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중심으로』, 국회의원 박인숙·국회의원 이종배, 2018.5.4., pp.63-69.


기관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¹⁷⁾

-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교권 침해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규정한 학생 징계 조치에 “강제전학”과 “학급 교체”를 추가하고,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 징계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훈현의원안(2017.2.9.)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준의 조치 (강제전학 포함)”(교권보호법 제18조 개정) 등을 제안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비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⁸⁾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원정책과	-	044) 203-6688



교장공모제



1. 현황

- 교장공모제의 도입목적은 ①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②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단위학교 책임

17) 이덕난, 앞의 글, 2016.5.19.; 이동섭의원안(2017.5.19.); 염동열의원안(2016.11.11.) 등 참고.

18) 이덕난, 앞의 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발표」, 『보도자료』, 2012.8.28.;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13.12., p.10.

경영을 강화하며, ③ 교육감에 집중된 교장에 대한 인사권을 일부 분산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려 것임¹⁹⁾

- 공모 교장 임용의 법률적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등이고, 유형별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및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평가 등) 등으로 규정함
-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는 1,792개교이고(2017.3.1. 기준), 이는 전국 국·공립 초·중·고 학교 수(9,955개교)의 18.0%임([표 4] 참조)²⁰⁾
 - 공모교장 지정 학교 가운데 초빙형이 1,160개교로 가장 많고, 내부형이 573개교, 개방형이 59개교임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내부형 56명, 개방형 33명)이고, 이는 공모교장 지정 학교의 5.0%에 해당하고,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의 0.9%에 해당함

표 4 |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

(단위: 개교)

학교급	국·공립 학교수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공모교장 지정 학교 수 (전체대비 비율)
			소계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소계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초	5,966	885	310	30 (9.7%)	-	-	1,195(20.0%)	
중	2,576	221	103	18 (17.5%)	3	2(66.7%)	327(12.7%)	
고	1,413	54	160	8 (5.0%)	56	31(55.4%)	270(19.1%)	
합계	9,955	1,160	573	56 (9.8%)	59	33(55.9%)	1,792(18.0%)	

자료: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보도자료』, 2018.3.12.를 일부 수정함

2. 문제점

- 공모교장 지정 비율에 대한 교육감의 재량권 부여 및 우선 지정 대상학교의 선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²¹⁾
- 내부형 신청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 지원가능 학교 비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것을

19) 이덕난, 「교장공모제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법·제도개선연구회 제5차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법·제도개선연구회, 2017.5.30.

20)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보도자료』, 2018.3.12.

21) 김이경, 『교장공모제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2, pp.135-139.

50% 이내로 변경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음

-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은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경력 15년 이상인 공·사립 교원이 지원 가능한 학교의 비율을 내부형 공모 사전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개정함
 - 개정되기 이전에는 15%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후단이 규정한 입법 취지 및 위임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비율 제한을 삭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일부에서는 15% 이내의 비율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현 정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 이내로 확대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힘²²⁾
- 내부형 신청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 지원가능 학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 것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2항 후단은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 대상학교 및 적용 비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통령령 조항이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해석됨

3. 개선방안


-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방형과 내부형 공모제의 비율이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일정 비율에 이를 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운영 성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연구가 필요함²³⁾
- 현 정부는 교장자격증이 없는 일반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공모학교를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향후 확대 조치 이후의 운영 성과와 기존 승진·임용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

22) 교육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보도자료』, 2018.3.12.


23) 주창범·강소량, 「교장공모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2012, pp.232-233.

- 개방형과 내부형 공모제의 적절한 비율에 대해서는 객관적 연구와 사회적·지역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단위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 확대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승진임용제도의 문제점(연공서열, 점수 경쟁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²⁴⁾
 - 이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계기로 하여 기존의 승진임용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두 가지 제도가 경쟁하며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됨.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부 및 교육청은 기존 승진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원정책과	-	044) 203-6688



고교학점제



1. 현황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제시됨
 -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생들에게 진로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됨
- 고교학점제의 주요내용은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 벽 없는 학교 추진” 등 3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됨²⁵⁾

24) 박상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교장공모제도 변화 분석: 정책변화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3호, 2015, p.346.

1)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 일반고, 특목고(외고, 과고, 국제고 등),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등으로 복잡화되어 있는 고교체제 단순화
-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일반고와 특목고·자사고 고교 입시 동시 실시

2)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 고등학교에서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 부여
-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
-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 고교학점제는 유형별·단계별로 확대

3) 고교학점제를 통해 벽 없는 학교 추진

- 일반고-특성화고교-대안학교 간 학점 연계로 학교 간 이동 허용
- 일반고 학생의 특성화고 전공인증제 도입

□ 교육부는 2017년 11월 27일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였고,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²⁶⁾

- 첫 단계로 2018년부터 3년간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60교, 일반계고·직업계고 각 30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됨

□ 대통령 교육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2월에 ‘2018년 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고, 주요 현안과제 4가지 중 하나로 ‘고교학점제 도입 등 중장기 과제’를 제시함²⁷⁾

-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 정책의 주요사항은 국가교육회의 산하 3개 전문위원회 중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 교원이 수업 및 수업준비 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교실수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고등학교에 강좌수를 다양하게 개설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교당 개설 과목 수를 늘리고 학생에게 과목 수강 선택권을 확대할 경우에 내신 성적을 잘 받거나 대학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목을 개설 및 선택하는

25)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2017, p.210.

26) 교육부,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 혁신을 시작한다: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7.11.27.

27)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회의 2018년 운영계획(안)』, 2018.2.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학생들이 주어진 선택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몰라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고교학점제 도입 목적이 학생의 과목 수강 선택권 확대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진로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3.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 교육여건 및 대학입학전형 등을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일부 고교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내에서 전문과정을 세분화하거나 전문과정별로 과목 선택권을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방식은 해당 일반고 교원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의 투입이 전제될 때 가능하므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일반고 교원의 사기 진작과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교원·교실 확충 및 교육과정·대학입시 개편**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상시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교실 등을 확충하여 단위학교 및 지역 학교 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교원과 교실 등이 지역 및 학교, 과목별로 시기에 따라 과잉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고 탄력적인 대응 시스템(교원과 교실 등의 증감이 가능한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진로맞춤형 교육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체제(고교 내신 및 대학입학전형), 교원양성과정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고교학점제의 도입 목적은 학생들에게 진로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선공약의 기본방향과 3가지 세부과제에 부합하게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체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가 지난 2017년 11월 27일에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는 종합적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2018-2020년)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교원·교실 확충 및 교육과정·대학입시 개편의 기본방향은 제시되지 않음
- 진로상담과목을 학생의 수강과목 선택과 진로준비 등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²⁸⁾
- 핀란드의 경우 학생이 진로교육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 나가고, 그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교육과정정책과	-	044) 203-6433

✦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책

1. 현황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²⁹⁾ 이에 따라 디지털교과서가 개발 및 보급되고 있으나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학생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디바이스(OO패드 등의 기기) 구입을 포함한 계층 간 교육격차 발생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

28) 이덕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주요 쟁점 및 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4.12.

29) 교육부는 2011년 6월 29일에 기존의 서책형 교과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적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2014년부터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는 교과목 및 학년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음

- 디지털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2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가 규정한 ‘전자저작물’에 해당함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용도서’를 교과서(학생용)와 지도서(교사용)로 구분하고, ‘교과서’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적·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이라고 규정함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6조, 제14조 등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는 초등학교 과학·사회/도덕(국정도서)·영어(검정도서), 중학교 사회(검정도서)·과학·영어(인정도서), 고등학교 사회(검정도서)·영어·과학(인정도서) 등 일부 교과 또는 교과목에 대해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사회·과학·영어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하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보급할 예정임³⁰⁾
 - 학습의 흥미 및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실감형 콘텐츠(AR/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임

2. 문제점

-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으로 인해 학업성취도, 자기주도학습, 학습 태도 및 동기 등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학업성취도 등에 효과적이라는 입장) 디지털교과서의 학습 효과성을 측정한 결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단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³¹⁾
 - (반대 및 우려의 입장) 디지털교과서가 수업 및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있으나, 아직은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일관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도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0) 교육부, 「미래교육의 첫발, 디지털교과서와 소프트웨어교육 실시」, 『보도자료』, 2018.3.30.

31) 변호승 외,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대한민국정부,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교육부 소관)』, 2017, pp.189-190; 유지연, 「Effects of Digital Textbooks on College EFL Learners' Self-Regulated Learning, Language Skills, and Affective Aspects」,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디바이스(OO패드 등의 기기) 구입을 포함한 계층 간 교육격차 발생

- 디지털교과서 적용시 지역 또는 계층, 부모의 학력 등에 따라 IT 접근성, 디바이스 구비 및 성능, 가정에서의 관심 및 관리,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조력자의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이 교육격차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³²⁾
- 디지털교과서는 다양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고, 교사 및 다른 학생 등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서책형 교과서에 비해 장점이 발휘됨
- 일부에서는 디바이스를 학생 개인별로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학생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디바이스 소유 여부와 그 성능 등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학생의 교육활동 및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학생이 사용할 디바이스를 개별적으로 구입하도록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부담이 크고, 학교에서 구입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에는 학교 밖으로 가져갈 때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이 문제와 소요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사교육비 증가 및 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디지털교과서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이 본격화 될 경우에 학부모의 새로운 사교육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
- 보다 먼저 디지털 교재를 개발 및 보급해 온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디지털 교재들이 자유로이 거래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교재가 다양화될 경우에 계층간의 디지털 교재에 대한 접근기회가 불평등할 수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질적 수준이 인정되는 디지털교과서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민간과 경쟁하거나, 질 좋은 디지털교과서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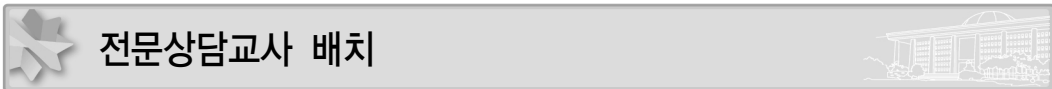
□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콘텐츠(교육내용 및 교과서)와 플랫폼(교과서 시장), 네트워크(유무선 인터넷), 디바이스(디지털 기기)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면밀하게 연구할

32) 이덕난,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공과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교육정치학회·한국교육공학회·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4.6.20.

필요가 있음³³⁾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 영역에서도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디지털교과서를 교실 현장에서 활용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교과서 활용에 관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³⁴⁾
- 정부는 학생의 디바이스 구비여부와 성능 등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교과서는 학생이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필수적인 항목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사양의 디바이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	이러닝과	-	044) 203-6428

 **전문상담교사 배치**

1. 현황

- 학교폭력, 자살, 학업부진, 게임중독, SNS 이용 증가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 등의 사유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는 학교상담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관련 문제에 연루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주변의 동급생 등으로 상담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33) 국회입법조사처, 「스마트교육의 추진실태 및 개선과제의 모색」, 세종시 지역현장 간담회 자료집, 2013.12.23., p.53-54.를 수정·보완함

34) 유지연, 앞의 글, p.221.

-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 학교에서 상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상담을 실시하기가 어려움
 -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수는 2017년 기준으로 11,613개교이며, 2016년 기준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가 2,180명, 전문상담사가 4,156명으로 총 6,336명임
 - 학생의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는 전문상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도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의 배치가 충분하지 않음

3. 개선방안

- 교육부는 학생수가 101명 이상인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1명씩 배치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전문상담교사의 정원을 7,331명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표 5] 참조)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³⁵⁾
 - 교육부의 전문상담교사 충원 계획에 따라서 매년 682명씩 증원을 하더라도 9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은 공무원 정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표 5 】 전문상담교사 정원 관련 계획

(단위: 명)

구분(공립)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문상담교사	목표정원	7,331	7,331	7,331	7,331	7,331	7,331	7,331	7,331	7,331
	교사소요	1,876	2,558	3,240	3,922	4,604	5,286	5,968	6,650	7,331
	증가량(명)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2	681

자료: 교육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6.8.

35) 조인식, 「전문상담교사 제도의 개선방향: 배치를 제고를 중심으로」, 『2015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2016.

-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고위험군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행동 개선 및 심리 안정과 학생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	044) 203-653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현황

-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동법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동법 제13조)

2. 문제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³⁶⁾

36) 조인식,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과제」, 『이슈와 논점』, 2017.11.1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학교의 장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등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례가 적음

3. 개선방안

- 학교폭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인력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의 위원 비율을 현행 과반수보다 낮추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인력 풀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부에서는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을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경우, 해당 학교 교원과 가해·피해 학생 및 학부모 등이 교육지원청에 출석하거나 사안 조사 및 자료 제출, 사안 처리 등에 대응하는 등의 부담이 따를 수 있고, 관할하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처리하게 되는 교육지원청 소속 위원회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경우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시·도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	044) 203-6539



학교폭력 재심기구 정비



1. 현황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근거하여 학교에 설치됨
- 학교폭력에 관계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동법 제17조의2)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동법 제9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과 퇴학처분 조치에 대해서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2. 문제점

- 피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이원화 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재심기간이 길어지거나 이후의 행정심판기구 및 절차 등도 서로 다르게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
 - 동일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청구한 재심을 처리하는 기관이 이원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심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사례도 발생함
 - 이로 인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상대방 재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고, 이 경우 사안 처리가 종결되지 않음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안정적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한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에도 지장을 초래함

3. 개선방안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재심기구 이원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심기관의 일원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재심기구 정비를 위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입장, 사안 종결의 신뢰성과 신속성, 학생의 학업 전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교생활문화과	-	044) 203-6539

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

1. 현황

-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7백만 재외국민을 적극 교육·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재외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과 글로벌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함(「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하여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한국학교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15개국에 33개교가 설립·운영됨.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재외국민에게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함
- 한국교육원은 2018년 3월 1일 기준으로 18개국에 41개가 개설됨.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등의 보급과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2. 문제점

- 한국학교는 교육과정과 학력인정, 학운위, 교원 자격 및 징계, 학교법인 운영 등에 대해 국내의 학교교육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임(재외국민 교육지원법 제2조 제3호)
- 한국학교 재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음
 - 현행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은 한국학교의 설립·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외국의 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와 국내에 설치·운영한 재외국민 교육과정 이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한국학교의 재학생 중 재외국민도 우리 국민이므로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해 제공하는 초·중학교 9년의 의무교육³⁷⁾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³⁸⁾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국내 고등학교의 경우에 경제적 여건과 지역, 학교 유형 등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일부 유형을 제외한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한국학교 수업료·입학금이 국내 일반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일시에 전액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업료·입학금 전액을

37)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8) 「헌법」 제31조 ① (생략)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지원하는 것은 국내의 초·중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교육비 지원 현실과 비교하여 국내 거주 국민을 역차별 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³⁹⁾는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재외국민자녀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을 지역별 소득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고, 국내 지원수준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교육단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추진하려한다면, 국내 일반 초·중학교 교육비에 준하는 수준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일반 초·중학교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액이 무상이어서 비교 준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무상교육 대상인 국내 유치원 교육비나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비 등과 해당 국가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 및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이덕난	02) 788-4702
				유지연	02) 788-4706
관련 부처	교육부	기획조정실	재외동포교육 담당관실	-	044) 203-6799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내실화

1. 현황

- 2012~2016년 5년간 사례에서 드러난 학대행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었음⁴⁰⁾

39)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2.9.

40)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2~2016 각 년도

- 2012-2016년 학대행위자 응답에 따른 학대행위자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평균 33.1%였고,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0.6%, ‘부부 및 가족갈등’ 10.2% 등의 순이었음(복수응답)
- 2016년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6,737건 35.6%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18,700건을 고려하면 아동학대사례의 약 90%가 이러한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⁴¹⁾

2. 문제점

- 교육부 3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종, 보건복지부 6종, 여성가족부 11종 등 정부 부처별로 개발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프로그램 22 종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모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⁴²⁾

3. 개선방안

- 의무 혹은 준의무 교육 내에서 ‘양육 및 가족관계’ 교과과정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중·고등·대학교 교과과정에서 아동학대예방을 포함하는 양육이나 가족관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44) 203-6433

4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7.11. p.118.

42) 김길숙·김지현·이혜민,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및 활용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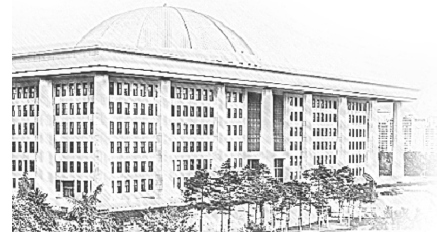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게스트하우스 관리 방안



1. 현황

- 게스트하우스란 주로 개인 가정의 일부 숙소를 배낭 여행자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민박업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게스트하우스는 법적인 업종 분류 명칭이 아니기에 정확히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음
 - 숙박업과 관련된 사업자라면 누구나 게스트하우스 간판을 내세워 영업할 수 있음
 - 여러 숙박관련 업종 중 현재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 호스텔업, 일반숙박업, 고시원 등이 있음

2. 문제점

- 게스트하우스는 별도의 등록·신고 규정이 없고,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관리 및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서울, 부산 등 도심지역의 게스트하우스는 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에 따라 다른 업종이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어 일원화된 관리 방안을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게스트하우스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숙박시설 현황 파악을 통해 지역별 또는 숙박업종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무등록(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 제도권 편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숙박시설은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시설 도입배경에 따라 관리·감독부처가 구분되어 있어¹⁾ 일원화된 관리체계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부처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숙박시설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	-	044) 203-3480

외래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1. 현황

- 2017년 교포 및 승무원을 제외한 방한 관광객은 12,070,646명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한국 단체여행 전면금지(금한령)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수가 급감하면서 2016년 15,456,810명 대비 21.9%가 감소함
 - 2017년 국가별 입국자 현황 분석 결과, 중국 입국자 수가 3,998,77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2016년에 대비해서는 4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 등이 있음

2. 문제점

- 중국이 2013년 제1의 방한 관광 시장으로 부상한 이래, 중국인 방한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방한시장 점유율 46.8%로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 지위를 차지함
 - 외래 관광 시장의 높은 중국 의존도는 금한령과 같은 조치로 중국 입국자 수가 급감할 경우 관광시장에 바로 큰 타격을 주게 됨

3. 개선방안

- 쇼핑관광 이외에도 문화유산이나 자연자원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등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관광산업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외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방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 관광정책 마련,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총체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관광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	-	044) 203-2830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1. 현황

-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와 ‘관광’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장비, 체계화된 의료시스템, 한류 확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기대되고 있음

- 2009년 약 6만 명의 의료관광객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외국인 환자 약 36만 4천 명이 방문하여 연평균 약 29%씩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진료 수입도 누적 3조원을 달성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 문제점

- 의료관광 주무부처가 ‘의료’ 중심의 보건복지부와 ‘관광’ 중심의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및 예산이 중복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이 취약한 구조임
- 수준 높은 의료기술 수준, OECD 주요국 대비 저렴한 진료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 보유, 한류 영향으로 인한 국가인지도 향상 등 한국 의료관광의 경쟁력 있는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의료관광 브랜드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의료관광 산업 관련부처 간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의료관광 유치사업 주체들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정부나 청와대 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며, 의료관광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리 고유의 의료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세계 주요 언론과 SNS를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 채널 개발이 필요함
 - 의료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관광자원 보유에 대한 홍보 강화,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단조로운 관광동선 체계 개선, 숙박형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등을 통해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및 방한 의료관광객에 대한 관광서비스 확대 방안 모색을 통해 관광산업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융합관광산업과	-	044) 203-2880

관광가이드 제한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인도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등록할 경우 그 활동에 제한이 없음
 - 2017년 1월 기준, 국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28,929명 중 외국인은 3,965명 (13.7%)이고, 그 중 중국인이 3,838명으로 97%를 차지함

2. 문제점

- 무자격 관광가이드 뿐 아니라 자격을 취득한 일부 외국 국적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에도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의 질적 수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외국인 가이드에 의한 왜곡된 역사·문화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관광의 경우 내국인만 관광안내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반발, 해당 국가와의 분쟁 우려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외국인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한국사나 한국지리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기존 가이드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역사왜곡 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주요 유적지, 박물관, 고궁 등의 경우 전문 역사 지식 등을 갖춘 내국인 관광통역안내사의 안내 및 동행을 강제하는 등 관광통역안내사 활동에 대한 관리·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	044) 203-2845

평창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

1. 현황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가 시설과 규모, 흥행, 안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나, 대회 이후에도 전체 경기장 시설 13개 중 3개 시설(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알펜시아슬라이딩센터)의 사후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시설 운영비 등을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 사후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3개 시설을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2. 문제점

- 각종 국제경기대회 개최 이후 대회 시설물들의 활용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사례들에 비추어 평창올림픽은 올림픽 유치 단계에서부터 올림픽 이후의 시설물 등의 사후활용과 올림픽 유산 보존을 위한 문제제기와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이전에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시설 소유 주체를 국가 등으로 이전하거나 관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은 비용 부담 대상의 변경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우며 다른 경기대회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다목적 용도의 시설활용,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 경기장 시설물의 운영적자를 최소화 하면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올림픽 대회의 유산으로 보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향후 국제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대회 자체의 성공적 개최 준비와 함께 시설물 등의 사후 활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	044) 203-3491



야외스포츠 활동과 미세먼지 대응 방안



1. 현황

-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노약자 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실외 활동

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미세먼지는 야외스포츠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미세먼지를 이유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사례도 있음
 - 2018년 4월에는 잠실(NC:두산), 인천(삼성:SK), 수원(한화:KT), 3경기가 프로야구 최초로 미세먼지를 이유로 취소됨
 - 서울시체육회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초까지 서울광장에서 운영하던 스케이트장의 경우 대기질 악화로 총 11일간 54회에 걸쳐 운영중단 조치가 취해짐

2. 문제점

- 프로야구, 축구 등 야외스포츠 종목의 경기·강습 예정시간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 될 경우 선수 뿐 아니라 관중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프로야구나 축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경기장소 임차, 관중, 방송 중계권 계약, 기상청 예보의 정확성 여부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일정을 조정(취소, 연기 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3. 개선방안

- 개별 경기 종목의 특성과 국제규정 준수 의무 등을 반영하여 각 경기단체별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 경기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프로야구나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뿐 아니라 각종 체육행사 등에서 미세먼지 상황에 따라 행사주최 측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부처에서 기준과 지침을 표준화하여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 203-3150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방안



1. 현황

-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배타적 권리이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할 경우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함으로써 문화의 발전과 공익목적의 달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이용자들의 자유이용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 문제는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과 관련되어 있으나, 인쇄업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2. 문제점


- 현행 「저작권법」 상 대학교재인 출판물을 인쇄소에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대학생들이 대학교재를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영세한 인쇄업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교재로 사용하는 도서나 교육에 사용하는 도서 등의 경우 특칙이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3. 개선방안

- 학술·전문도서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자 등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이와 함께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복제본을 구입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학기 초

교재구입을 위한 베틀시장의 활성화’, ‘출판사를 통한 대량구입을 통한 책값 할인’, ‘중고 교재 서점 확대’ 등과 같은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	044) 203-2494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관리·감독** 

1. 현황

-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저작권자 등(저작권재산권자, 배타적 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권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법 제7장 제105조부터 제111조에서 허가, 감독, 허가의 취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1월 기준으로 음악, 어문, 영상, 방송, 뉴스, 공공 6개 분야에 13개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
-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통한 집중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경우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저작권 관리가 가능하고, 이용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용자의 경우 관리단체와의 포괄계약을 통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저작물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문제점

-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 유지로 인하여 자의적인 조직 운영, 업무 전문성 부족, 저작권료 징수·분배의 불공정 등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부정적 효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감독 규정으로 ‘보고 및 필요한 명령’만을 규정하고 있어 단체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며,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개선명령 등이 실효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집중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 및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업무개선명령의 실질적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재허가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단체 진입 가능성을 확보하고, 집중관리단체의 독점적 지위 유지로 인한 운영상의 부작용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저작권 위탁·계약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산업과	-	044) 203-2487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1. 현황

-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법 제23조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저작권자가 불명인 경우 등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제도가 현행 「저작권법」에 존재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규정은 사실상, 명목상 존재만 하고 있거나, 고아저작물(저작권자가 밝혀져 있지 않거나,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통칭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당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를 탐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고전 영화들을 VOD로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작품들이 저작권자가 사망하거나 저작권자의 소재 파악 및 권리관계 증명이 어려워 디지털화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3. 개선방안

- 문화 콘텐츠의 발전을 위해 고아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요구되는 ‘상당한 노력’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범위에서 법정허락제도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권리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집중관리단체에게 고아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을 필요 없이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044) 203-2475



문화영향평가 대상 규정



1. 현황

-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영향평가가 제도화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함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 2014년부터 시범평가가 시행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본 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 2017년에만 총 15건의 평가가 시행됨 (전문평가 14건, 자체평가 1건)
 - 평가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확인함
 - 긍정적인 영향은 확산·보완하고 부정적 영향은 저감하는 방안을 도출함
 - ※ 예를 들어, 문화재 복원 사업이 기존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이 기존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기도 함

2. 문제점

- 평가대상이 불명확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문화기본법」 제5조 제5항은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이라고만 되어 있음
 -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평가대상이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요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함
 - 강제가 아니라 요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계획이나 정책보다,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계획이나 정책이 평가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음

- 문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저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문화영향평가의 주요 입법 목적 중 하나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평가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정책(예를 들어, 도시재생 사업)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 절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평가대상 유형 별로 문화영향평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만약 평가대상을 문화 관련 사업과 문화 비관련 사업으로 구분한다면, 문화 관련 사업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평가를 스스로 시행하게 하고 문화 비관련 사업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	-	044) 203-2510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고도화

1. 현황

- 정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있음
 - 2014년 ‘문화융성’ 정책의 하나로 시작됨

- 2016년 「문화기본법」 개정으로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지역문화진흥원 산하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음
 - 기본 사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고궁, 영화관 등에서 이용자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기획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 문화향유 기회 확대, 신규 관객 개발 등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만족도	72%	80%	85%	87%
인지도	35%	45%	57%	60%
참여자	28%	37%	43%	51%

※자료: 문화가 있는 날 사업추진단(2018). ‘추진 성과 및 사업 안내’

2. 문제점

- 공간적·시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문화인프라를 활용하기 때문에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은 소외될 수 있음
 - 교통이 미발달한 지역에 살며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특히 소외될 수 있음
 - 평일인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있어서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 ※ 2018년부터는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주말까지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
- 사업 추진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 지역문화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함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때 지역문화진흥원 관련 규정이 검토되었으나 제외됨
 -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2017년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꿈
 - 사업추진단 업무는 2017년 문화융성위원회에서 지역문화진흥원으로 옮겨짐
 - ‘문화가 있는 날’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사업추진단은 협력을 끌어낼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함

- 사업추진단은 현재 사업수행 조직으로 설계되어 있음

3. 개선방안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획 사업의 확대와 기획 사업의 안정적 시행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으로 예술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장 문화배달’ 사업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음
 - ‘문화가 있는 날’은 정기성이 중요하므로 기획 사업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사업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함
 - 사업추진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문화가 있는 날’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기본법」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어려움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문화도시,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기금 등)과 연계한 제도 설계가 가능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	044) 203-2617

공공미술 지원 제도 개선방안

1. 현황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와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미술(public art) 지원 제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 내용: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공공·민간건축주가 건축 비용의 일부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성과: 1995년 의무화된 이후 2017년까지 총 1만 6,863개 작품이 설치됨
- 마을미술 프로젝트
 - 내용: 예술가가 마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 마을을 가꾸도록 하는 사업임
 - 성과: 2009년 이후 103개 마을에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설치됨

2. 문제점

- 공공미술 지원 제도의 다양성이 부족함
 - 「서울로 7017」 등 각종 개별 도시 정비 사업에서 공공미술 작품이 설치되고 있음
 -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다년간 진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음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제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뿐이라고 볼 수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한계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종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음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따졌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건축주들은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정보와 구매 경험이 많지 않음
 - 그런데 건축주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미술작품 구매 및 설치에 사용하고 있음
 - 예술성 높은 작품보다 무난한 주제의 대형 작품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음
 - 결과적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미술 작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공공미술 지원 제도의 다양화가 필요함
 - 다양한 공공미술 지원 제도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 지원 제도에서의 의존을 줄이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미술작품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재검토가 필요함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선정 절차 및 방식,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설치 대상 건축물 요건, 미술작품 구매 및 설치 비용 비율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	044) 203-2750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1. 현황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 씨앗학교’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2017년 기준)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826억원
 -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 346억원
-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2017년 기준)
 -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20,682명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12,912명
 -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수: 21,172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 참여자 수: 10,375명
 - 이외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학생 수혜자가 대략 289만명임 (2016년 기준)

-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은 상당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문화예술교육 비경험자의 관람 의사는 17.4%인 반면 경험자의 관람 의사는 85.1%임 (2016년 기준)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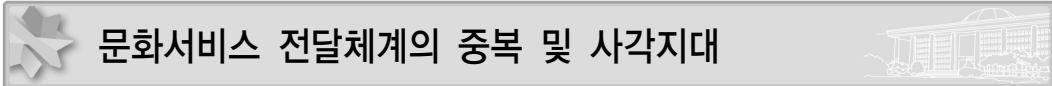
-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비교하면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됨
 - 사회 영역에서는 학교 영역에서와같이 일괄적인 서비스 전달이 불가능함
 -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사회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교육 수혜기관은 학교가 9,385개이며 사회기관이 2,515개임 (2016년 기준)
 - 학교 영역 수혜자는 289만명이며 사회 영역 수혜자는 11만명임 (2016년 기준)
- 지역 단위 사회 문화예술교육 시행의 어려움
 -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지역에서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음
 - 지역 단위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고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

3. 개선방안

-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복지기관 지원, 군부대 지원, 탈북자 지원 등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
 - 다른 주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차별화가 필요함
 - 단기적인 체험 행사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차별화가 필요함
 - 차별화를 하면서도 기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단위에서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과의 협업 체계 구축도 필요함
 - 문화재단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협업 체계 구축 방안 마련도 필요함

-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문화의 집’, 사회복지관 등과의 협업 체계 구축도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예술교육과	-	044) 203-2760

 문화서비스 전달체계의 중복 및 사각지대

1. 현황

-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공공도서관 1,010개, 등록 박물관 853개, 등록 미술관 229개, 문예회관 228개, ‘지방문화원’ 236개, ‘문화의 집’ 100개가 있음
 - 이외에도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작은영화관’, ‘영상미디어센터’, ‘문화파출소’,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센터’ 등이 있음
 -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 우선순위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전달체계가 만들어짐
 - 예를 들어, ‘문화의 집’은 1996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100여 개가 남아 있는데 최근 생활문화가 강조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가 새롭게 설립되고 있음

2. 문제점

- 정책집행의 효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달체계가 중복되거나 전달체계 변경이 잦으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 직원 고용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의 조직 내 문제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정책집행의 실효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달체계가 일관되지 않으면 문화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전달체계 감독이 어려우며, 그 결과 전달체계 내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기초자치단체별 전달체계 실태 점검이 필요함

-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서비스가 무엇이며, 그러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지 또는 중복되지는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문예회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32개, 기초 문화재단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에 이르러 문화서비스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양한 전달체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 각종 시설 운영자 등이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	044) 203-2617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향수 통계의 필요성



1. 현황

-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향수 수준을 측정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향수 수준 차이가 상당함
 -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기초자치단체별 맞춤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문화 향수 수준을 측정한 통계 데이터가 필요함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조사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통계청 승인 조사는 19종임
- 이중 문화예술 관련 조사는 총 8종, 그중에서도 문화 향수 수준 측정 조사는 3종임
 - ※ 국민독서실태조사, 전국도서관통계조사, 공연예술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정기간행물등록현황, 콘텐츠산업통계조사, 예술인실태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중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가 문화 향수 수준 측정 조사임²⁾
- 이외에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가 있음

2. 문제점

□ 기존 문화 향수 수준 측정 조사는 한계가 있음

- 표본 설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하고 있어서 이 조사 결과만으로는 기초자치단체별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 다만 기초자치단체 단위 표본 설계는 큰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 지역문화실태조사는 한계가 있음

- 지역문화실태조사는 기초자치단체 단위 조사이지만 문화 향수 수준을 측정하지 않으므로 이 조사 결과로도 기초자치단체별 수준을 확인할 수 없고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주민에게 묻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현황을 기입하는 방식임

3. 개선방안

□ (1안) 지역문화실태조사의 확대 시행 검토가 필요함

-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문화 향수 수준 조사를 시행토록 함

□ (2안) 기존 문화 향수 수준 측정 조사의 확대 시행 검토가 가능함

- 기존의 문화 향수 수준 측정 조사들을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표본을 확대 설계하여 시행하고 지역문화실태조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음

2) 스포츠 관련 통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 국민체력실태조사,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관광 관련 통계: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기타 관련 통계: 광고산업통계조사, 한국수어사용실태조사

※ 이때 지역문화실태조사는 심층 면접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음

□ (3안) 기존 조사들을 통합하여 확대 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국민독서실태조사,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향수실태조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통합하되 보다 많은 사람에게 더욱 자주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	-	044) 203-2617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논의** 

1. 현황

□ 국립현대미술관의 개요

- 1969년 경복궁 내에서 개관되어 1986년 과천관으로 이전됨
- 1998년 덕수궁관이 개관되고 2013년 서울관이 개관됨
 - ※ 2018년 12월 청주관이 개관될 예정임
-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 자리 잡음

□ 법인화 시도가 10년간 계속됐으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인화 시도 철회를 검토 중임

-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시작함
- 2010년 19대 국회에서 정부는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인화를 시도했으나 임기 만료 폐기됨
 - 2012년 20대 국회에서 정부는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 만료 폐기됨

- 2018년 6월 국립현대미술관은 한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인화 시도를 철회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힘³⁾

2. 문제점

- 법인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법인화는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뛰어난 기관장과 전문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법인화는 기관의 공공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수익 사업을 늘리면서 공공 조직으로서 요구되는 역할에 소홀할 수 있음
- 해외 유명 문화예술 기관들도 법인화하는 경우가 많음
 - 루브르박물관, 폰피두센터, 테이트갤러리 등이 법인화된 대표적인 기관들임
 - 법인화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음

3. 개선방안

- 법인화에 대한 확실하고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함
 - 10년간 계속된 논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을 저해했음
 - 정부가 확실하고 공식적으로 방침을 밝혀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화 여부에 대한 각계의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음
 - 법인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음
 - 현재의 책임운영기관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인화가 아니더라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아시아투데이, <법인화 논의 백지화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줄이고 내실 다진다>, 2018.06.27.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관	문화기반과	-	044) 203-264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당장 채용



1. 현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11월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개관함
- 연면적 161,237㎡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약 1.2배에 이룸
-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의 5개 원으로 구성됨
 - 민주평화교류원: 5·18 민주평화기념관, 방문자센터
 -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아카데미
 -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복합전시관
 - 예술극장
 - 어린이문화원: 어린이체험관, 유아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어린이극장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음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이 함께 운영하고 있음

2. 문제점

- 2018년 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선임이 5회째 무산됨
 - 개관 이전부터 지금까지 5회의 전당장 공모가 있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함
 - 다섯 번째 공모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3명의 최종 후보를 추천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을 내림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신규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있음
-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3. 개선방안

- 무산이 반복되는 이유를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인사혁신처의 추천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격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공모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현재 전문임기제 가급인데 보다 우수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위의 격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5개 원을 책임져야 하는데 아시아문화원과 5개 원을 분담함으로써 원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찾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	-	062) 601-4010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전시 활성화 방안



1. 현황

-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이하 직지) 전시가 연이어 불발됨
 -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 책으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로 평가되는데 현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
 - ※ 직지는 외규장각과 달리 적법·정당하게 프랑스로 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2018년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대고려전>을 기획하며, 직지의 국내 전시를 추진했으나 프랑스는 직지의 압류 면제의 공식화를 요청하며 거절함
 - ※ 청주시도 청주고인쇄박물관과 함께 직지의 국내 전시를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유로 전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압류 면제는 국내 전시 중에 소유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정부가 해당 전시물을 압류하지 않고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외국의 경우 이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직지와 같은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전시 활성화가 필요함
 - 국내 전시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문화재 접근권과 향수권을 신장시킬 수 있음
- 국외 소재 문화재의 국내 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압류 면제 입법이 필요함
 - 압류 면제 입법은 국외 소재 우리나라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제3국 문화재의 국내 전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⁴⁾
- 그러나 압류 면제 입법은 어려움이 있음
 - 압류 면제는 불법·부당 반출 문화재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는 입법 반대 목소리

4) 예를 들어 대만 정부는 중국의 소송 가능성 때문에 압류 면제가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게는 자국 고궁박물관 소장품을 대여해주지 않음

가 높기 때문임

- 압류 면제 입법은 적법·정당 반출 문화재의 예상치 못한 압류 가능성을 막는 것으로 불법·부당 반출 문화재에 ‘면죄부’를 준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 그러나 문화재의 출처(provenance)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불법·부당 반출 문화재까지 압류를 면제해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

3. 개선방안

□ 문화재 출처 확인의 제도화가 필요함

- ‘출처’란 발견되거나 창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내력과 소유권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진위와 소유권 결정의 근거가 됨
- 1998년 ‘워싱턴 회의’ 이후, 출처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1999년부터 미국 예술품박물관관장협회(AAMD), 영국 국립박물관장회의(NMDC), 미국 박물관협회(AAM), 국제 박물관협회(ICOM) 등에서 관련 방침이 마련됨
 - ※ 워싱턴 회의: 미국 국무부와 미국 유대인학살추모관(Holocaust Memorial Museum)이 주최한 회의로 이 회의에서 나치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가 다뤄졌음
-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은 2014년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유물 구입 시 출처를 확인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전시물 반입 시 출처 확인은 제도화하고 있지 않음
- 문화재 출처 확인이 제도화되면 압류 면제 입법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음
 - ※ 문화재 출처 확인의 제도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배관표	02) 788-4704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교육문화팀	-	044) 203-2642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	-	042) 481-4730



방송프로그램 포맷 권리 침해



1. 현황

- ‘방송포맷’이란 “매회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에피소드의 기본 구조가 되고, 대중이 같은 프로그램임을 한 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의 총합”을 말함⁵⁾
 - 방송포맷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아이디어의 표현물이 아닌 이상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브라질 법원은 “TV Globo & Endemol v. TVSBT” 사건에서 “포맷은 프로그램의 중심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기술적, 예술적, 경제적 정보, 영업상의 정보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방송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자체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이상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는 등⁶⁾ 논의의 여지가 있음
- 국내 방송포맷 제작 주체는 대부분 대형 방송사로, 지상파 3사와 JTBC등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CJ E&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며, 2000년대 이후부터 포맷을 지속적으로 제작해왔고 2013년을 기점으로 포맷제작이 증가함⁷⁾
 - 최근 3년간 방송포맷의 수출과 수입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포맷 수출은 2013년 1,622편에서 2015년 1,824편으로 증가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포맷 수출도 2013년 260편에서 2015년 966편으로 증가함
 - 지상파방송사의 방송포맷 수입은 없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포맷 수입은 2013년 36편에서 2015년 73편으로 증가함

2. 문제점

- 방송포맷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간 방송포맷 거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방송사의 방송포맷 권리에 대한 침해도 발생하

5) 김문희, 「한국 방송포맷에 대한 중국 침해현황 및 대응방안」, 『방송문화』, 2016.

6) 홍승기, 「TV 방송 프로그램 포맷 보호방안: 저작권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2016.

7)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4;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5;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16.

고 있음

- 중국의 경우 2012년 말 후난위성TV가 MBC의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포맷 수입 후 방송을 통하여 큰 인기를 얻은 후 한국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증가함⁸⁾
- 이에 2014년 초부터 중국의 광전총국이 위성방송국의 방송포맷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러한 조치와 함께 포맷 표절과 같은 침해가 증가하게 됨
- 참고로 지난 4월 국제 포맷보호협회인 FRAPA(The Format Recognition and Protection Association)는 중국의 iQIYI가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CJ의 “프로듀스 101” 포맷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중국의 iQIYI는 높은 수준의 기준과 저작권 보호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혁신과 창의적인 콘텐츠에 기반을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⁹⁾ 포맷 권리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3. 개선방안

- 우리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방송포맷 권리 침해에 대하여는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한국형 포맷 인증 및 보호협회 설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방송포맷 권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을 방지할 수 있고, 한국형 FRAPA를 설치하여 포맷을 저작권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여 등록 및 인증과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에는 방송사 및 제작사가 회원사로 있는 포맷산업협의회(Korea Format Alliance)가 국내외 포맷 산업의 현안과 지속적인 정보 교류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포맷 등록시스템 운영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음¹⁰⁾
- 국가 간 방송포맷 분쟁과 관련하여서는 각국의 「저작권법」 범위가 다르고, 방송포맷에 대한 권리 인정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그러나 지속적인 침해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의 방송포맷 산업 보호를 위해서라도

8) 김문희, 앞의 글, 2016.

9) Variety Staff, “Format Protection Body Backs Allega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Against China’s iQIYI: Korean company CJ says iQIYI copied its ‘Produce 101’ talent show”, (최종 검색일: 2018년 7월 13일) <<http://variety.com/2018/tv/news/frapa-cj-allegation-copyright-infringement-china-1202746943/>>.

10) 주자람·정윤경·조연하·홍원식,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보호방안 연구」, 2014.

FRAPA를 통한 대응이나 법적 대응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	044) 203-3236



포털 뉴스 규제 정책



1. 현황

- 포털 뉴스의 댓글 조작 문제가 정치 문제화 되면서 포털 뉴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대선 과정에서 포털이 제공하는 정치적 기사를 대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혐의가 있으며, 현재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가 진행 중임
- 포털에 뉴스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들은 포털 뉴스의 댓글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포털이 아닌 인터넷신문이 직접 기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포털은 신중한 입장임
 - 현재 국회에서는 포털의 인링크 방식 뉴스 제공을 금지하고 언론사를 통해 기사를 제공하도록 아웃링크 방식의 뉴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다수의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2. 문제점

- 포털 뉴스 제공의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고, 인링크-아웃링크 방식에 대한 매체간에 갈등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포털 뉴스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자간의 이해 갈등이 시장에서 해결되고 있지

못함

-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 제공의 문제는 포털 주도의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웃링크 법안 개정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바 있으나, 포털사는 인링크와 아웃링크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에는 반대하고 사업자간 자율적 계약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3. 개선방안

- 댓글 조작에서 비롯된 포털 뉴스의 제공 방식의 문제는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입법 보다는 사업자간 자율적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에서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뉴스 배치, 검색 뉴스 배열 등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포털 뉴스의 공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 이전에 정부 부처가 포털과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의 협의를 중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웅	02) 788-4717
관련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	-	044) 203-32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문제 관리체계 개선 논의



1. 현황

- 도박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과 같은 합법사행산업과 그 밖의 불법도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내 도박문제 관리체계는 각종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각 소관부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행산업 사업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
 - 합법사행산업의 개별 인·허가 사항은 개별 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총량 조정과 총괄적 관리·감독(과도한 사행행위 방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을 주요 기능으로 함

2. 문제점

- 현행 합법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는 업종별 감독부처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어 이러한 이중적 감독체제로 인한 규제의 어려움, 사행산업 업종별 불균형적 규제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매출총량 정책 등을 통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법도박 산업이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음
 - 합법사행산업의 2016년 총 매출액이 21조 9,777여억 원인데 비해 불법도박 시장규모

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2015년 기준 83조 7,800여억 원으로 추정하고,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69조 7,000여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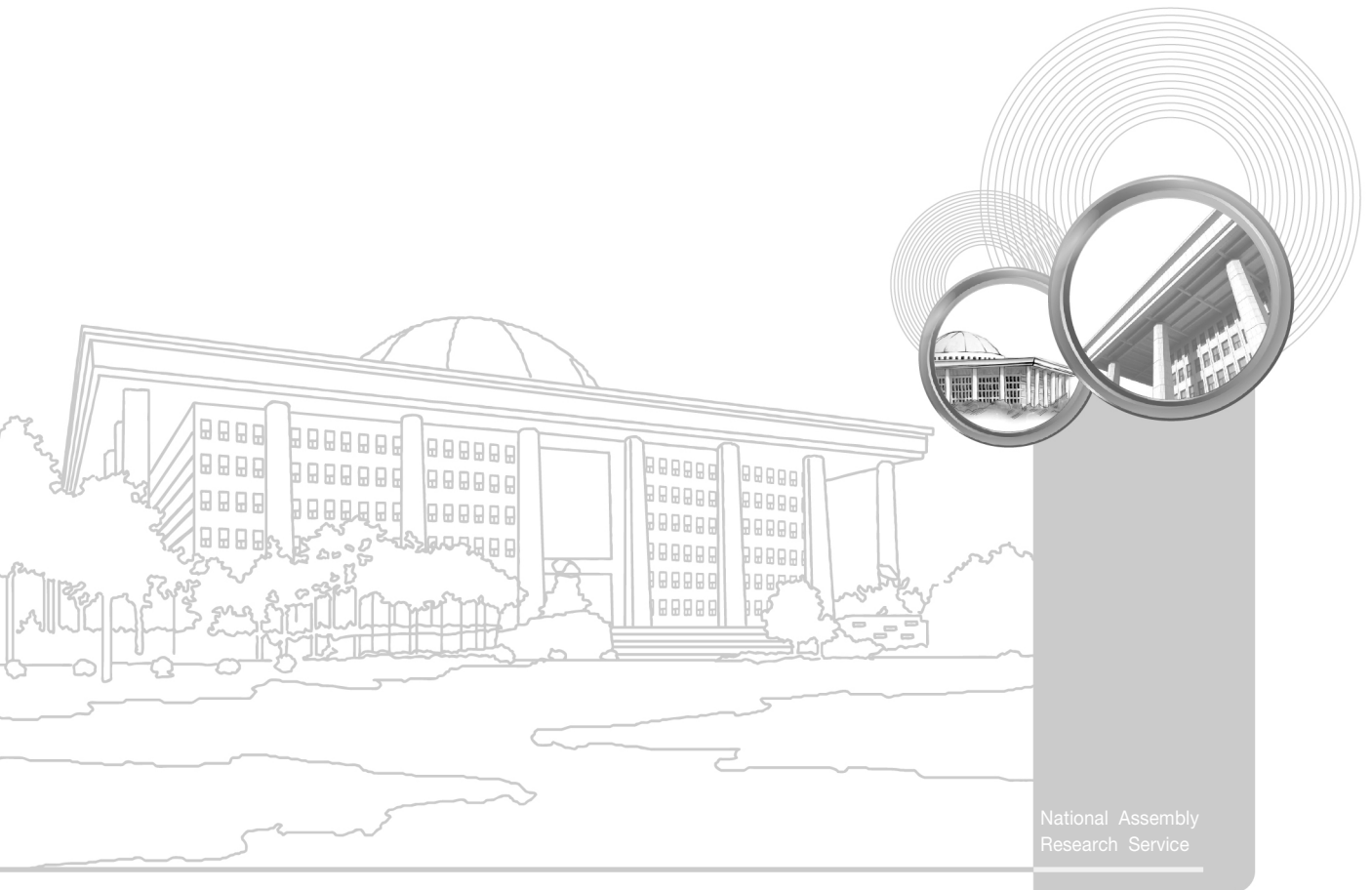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합법사행산업 및 불법도박문제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 단속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개별 사행산업은 소관 부처의 책임 하에 건전 육성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다만, 이는 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구성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단기 파견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업무의 연속성 및 장기 계획과 비전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 현 인력으로는 불법도박 단속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교육문화팀	임주현	02) 788-4707
관련 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기획총괄과	-	02) 3704-05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공공채널 의무운용 제도



1. 현황

- 「방송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채널을 두어야 함
 - 「방송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채널을 텔레비전방송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두어야 함
- 공공채널은 국가정보의 국민접근권 보장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 정보를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운영됨
 - 현재 지정된 공공채널은 1993년에 지정된 KTV, 1995년에 지정된 OUN, 2003년에 지정된 국회방송 3개로,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임

2. 문제점

- 공공채널로 지정된 이 3개의 채널은 지정 이후 별도의 평가나 변동이 없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3개 이상의 공공채널을 의무 운용해야하기 때문에 지정된 3개의 채널을 모두 운용함으로써 공공채널 간의 경쟁도 없는 상황임
 - 공익채널의 경우 「방송법」 제70조제8항¹⁾ 및 「방송법시행령」 제56조의2에 의거해, 방

1) ⑧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이하 “공익채널”이라 한다)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채널의 선정절차, 선정기준, 운용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송통신위원회가 심사 및 평가를 통해 매 2년마다 정하는데 반해, 공공채널은 한번 지정된 이후 변동이 없는 것임²⁾

- 공공목적과 공적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채널들³⁾이 신규 공공채널로 지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현재의 3개 공공채널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 명확한 근거 없이 지정되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공공채널과 관련하여 선정·심사·평가를 포함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공채널도 공익채널과 같이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이들 선정된 공공채널 중 3개 이상을 의무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공채널의 선정은 국가의 공공 정보를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채널의 목적에 맞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어 1개씩의 채널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다만 공공채널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공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채널의 상업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시청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	02) 2110-1867

2) 물론 공공채널의 경우 국회방송은 국회가, KTV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대학TV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채널임에 반해, 공익채널은 공익을 위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처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채널은 아니지만 공공채널 운영주체와는 달리 민간사업자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차이가 있음(공익채널 중 일부 채널은 비영리채널임)

3) 국가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방송채널은 현재 공공채널로 지정되어 있는 KTV, OUN, 국회방송 외에 고용노동부의 한국직업방송,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방송, 문화체육관광부의 아리랑TV, 국방부의 국방TV 등이 있음



우주개발사업 감리제도 도입



1.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2월 ‘제14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함
 - 본 계획은 한국형발사체 발사 성공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함께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기술 감리제도 도입 계획을 포함함
 - 지난 2013년에는 (구)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에서 우주기술 감리제도를 도입하고자 산업체 기술 및 제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및 전담부서 신설(출연연 내)을 추진할 계획이었음

2. 문제점

- 우주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규모도 매우 크지만, 사업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담 관리가 시급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도입계획만 발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진행되지 않음
 - 2015년 시행계획을 통해 우주기술 감리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사전타당성 연구를 시행할 계획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2018년 위원회를 통해 도입계획만 발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제시가 요구됨

3. 개선방안

- 우주개발분야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이기에 우주개발기술의 특성을 모두 이해한 전문성을 갖춘 감리제도 도입이 필요함
 - 감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타당성과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도입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02) 2110-2430



달 탐사 사업



1. 현황

- 정부는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40)」을 확정하여 한국형발사체, 달 탐사 등 주요사업의 일정을 조정함
 - 3단형 한국형발사체 개발 일정을 1차 본발사를 2012년 2월(14개월 연장)로, 2차 발사를 2021년 10월(16개월 연장)로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사 일정도 1년 연장하여 2022년 3월로 결정함
 - 달탐사 1단계(달궤도선) 사업은 2020년까지 완수하고,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한 달탐사 2단계(달착륙선) 사업은 2030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2. 문제점

- 기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개발 및 시험발사 지연 문제를 검토하여 실효적인 계획 하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나, 관련 사업비가 2017년에만 과하게 투자 되었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달 탐사 사업 비용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172.2억원으로 2016년 200억, 2017년 710억원이 투입되었고, 2018년에는 395억원이 배정되었으며, 이후 2019년, 2020년에 각각 454.5억원, 432.7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비용 투자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우주 산업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의 전체 예산이 낮은 수준

으로⁴⁾ 비용의 효율적이지 못한 사용은 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달 탐사 사업은 국가의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비용의 체계적·효율적 투입이 이루어져야 기술개발과 목표 완수가 가능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02) 2110-2430

기초원천연구 통합 수행

1. 현황

- 우리나라 기초 원천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서 수행되고 있음
 -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발표함
 - 이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를 통합하고,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함

4) 우주산업의 기술과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우주산업 연구개발비 대비 우리나라 우주산업 연구개발비는 0.7% 수준으로 매우 낮음

2.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초연구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관계 부처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기초연구 수행 체계를 합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순수연구개발을, 교육부는 이공학 학술기반구축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함
 - 그러나 교육부 외 기초연구 수행을 하고 있는 타 부처와의 협의 방안을 찾지 못하여 근본적인 기초 원천 연구 통합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개선방안

- 기초원천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어 통합적으로 중심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은 교육부 기초 연구 과제 일부를 분리하여 이관하는 체계보다는 기초원천 연구의 통합 지원 및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	02) 2110-2620

기초원천연구 투자 확대

1. 현황

- 정부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5년 동안(2017~2022년) 2배 수준인 2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6월 25일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를 통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년)」의 2018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기초연구에 2017년 1조 2천600억 원, 2018년 1조 4천200억원에서 2022년에는 2조 5천200억원까지 투자하기로 계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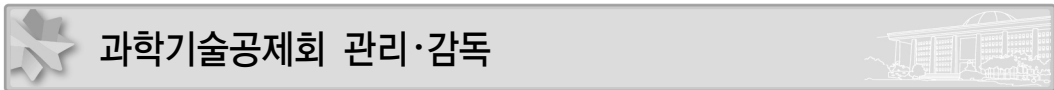
2. 문제점

- 그러나 위 계획은 기초연구 예산만 늘릴 뿐 R&D 혁신방안이나 체계 개선 등 추진 전략에 대한 계획은 부족함
 - 적절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동반되지 않은 예산확대는 예산의 낭비만 가져오고, 정작 기초 연구의 발전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3. 개선방안

- 2배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기초 연구 활성화 추진 전략과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하여 효율적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초연구 자체가 고위험 연구이며, 그 성과를 빠르게 획득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 이를 반영한 기초연구 성실실패 인정제도 등 관련 제도 및 체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	02) 2110-2377



1. 현황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을 도모하고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어 운영 중임

-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은 2018년 3월말 기준으로 62,790명이며, 자산의 규모는 5조 2212억 원임(2017년 기준)

2. 문제점

- 2017년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포함한 우리나라 7대 공제회⁵⁾의 최근 3년간(2014~2016년) 손실액은 총 3,568억원이었음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최근 연 12%의 고수익을 목표로 한 미국 파생상품에 2,000억원을 투자하였다가 1,6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짐
 - 이처럼 공제회의 부실 관리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공제회 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외부 위원이 포함된 다수의 위원회를 두고 있고, 투자규모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투자결정을 할 수 있지만, 투자 당시에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자산운용실무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객관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음⁶⁾

3. 개선방안

-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과 내·외부 의견이 형평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운영이 요구되고, 운용상황에 대한 주기적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자산운용을 통하여 공제회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회원들의 이익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	-	02) 2110-2571

5)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교정공제회
 6) 과학기술인공제회에는 자산운용전략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자금운용위원회, 블라인드펀드선정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운용실무위원회는 현재는 폐지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성



1. 현황

- 2018년 4월 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로, 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로 재편되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새로 출범함
- 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조직을 각각 하위에 두었는데, 이 하부조직은 별도의 재편 없이 심의회와 자문회의 소속으로 각각 이관됨
 - 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하위의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10개 전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전문위원회는 심의회 하위의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유지되었고, 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소속의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자문회의 지원단 소속으로 유지됨

2. 문제점

- 심의회 전문위원회와 자문회의 전문위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민간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2018년 4월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출범에도 불구하고 심의회 전문위원회와 자문회의 전문위원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중복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임
 - 심의회 10개 전문위원회 중 6개 전문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안전의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과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마련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법령에는 이러한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자문회의에서는 현재 10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전문위원의 역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대통령 보고 안전이 정해지면 정책연구용역과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 전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심의회 전문위원회와 자문회의 전문위원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하나의 조직에 소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연계·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내거나 통합을 통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심의회의 전문위원회와 자문회의 전문위원 조직을 통합하고 역할 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과학기술정책분야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문회의 전문위원을 폐지하고 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조직을 보강하는 방식 등으로 양 전문가 조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복성을 줄이고 전문분야를 더욱 세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심의회의 전문위원회와 자문회의 전문위원 조직의 통합 시 이 전문가들이 제시한 검토의견들이 과학기술 종합조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책무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지원단	과학기술기반팀	-	02) 733-495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신설

1. 현황

- 2018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여 부처 간에 국가기술혁신체계(NIS)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⁷⁾,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7월 예정)에 이를 발표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연구개발 관리체계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2018.

효율화, 산학협력단 기능 개편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이슈들을 논의할 예정임

- 과거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장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조정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대통령훈령)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관계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한 바 있음

2. 문제점

- 그간 과학기술 종합조정기구(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외에도 별도로 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전략회의 등을 운영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운영기간은 길지 않았는데, 그 원인에 관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김영삼 정부는 재정경제원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운영했는데 근거규범인 「과학기술장관회의규정」(대통령령)은 1996년 3월에 제정되어 1997년 7월에 폐지되었고,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은 2004년 10월에 제정되어 2008년 11월에 폐지되었음
-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운영했는데 근거규범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2016년 7월에 제정되어 2018년 4월에 폐지되었으며, 회의의 실제 운영기간은 더욱 짧았음
- 또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를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 등을 위원으로 했는데,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타 관계부처장관 등을 위원으로 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3. 개선방안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 그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현행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와의 중복을 피하면서 연계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간의 과학기술장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전략회의 등 유사 사례와 같이 단명하지 않고, 과학기술분야 의사결정체계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	02) 2110-2520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1. 현황

- 정부는 2018년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분야별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원칙으로 재편하기로 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재편 방안(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마련 중임(7월 확정 예정)
 - 연구관리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함⁸⁾
 - 재편 대상으로 고려되는 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연구재단·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들 수 있음

2. 문제점

- 연구관리전문기관의 ‘1부처 1기관’ 재편을 통해 분야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행정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통·폐합으로 인한 비대화·관료화,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
 - 연구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융복합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제도의 일관성이 개선되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호 제6호

어, 연구현장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행정부담은 낮아지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반면에 통합 대상으로 고려되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중 대다수는 예산규모가 큰 대형기관이므로 관료화에 따른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구분야별로 특성이 상이한 기관을 통합함에 따라 일부 분야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3. 개선방안

- 기관의 재편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합의된 방향으로 추진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동일 부처 내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편하여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출범시킨 바 있는데, 이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이 기관들을 다시 분리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1부처 1기관’을 넘어 연구관리전문기관 수를 더욱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번에 고려되는 대형 기관뿐만 아니라 소형 기관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통합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 통합 규정에서는 정부가 설치할 수 있는 연구관리전문기관 명칭, 각 기관의 소관 사항과 사업 유형 등을 명시하여, 각 부처·분야별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	02) 2110-1660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리제도



1.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정(2007년 1월) 이후 공공기관인 연구기관들은 일괄적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관리되어 왔음
 - 연구기관들은 연구의 수월성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인력을 유인하고 연구자의 창의성과 도전성이 발현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 취지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를 마련하는 데 있으므로, 관리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연구기관의 성격과 연구개발활동의 특성까지 충분히 고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2018년 3월 연구개발 목적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기관이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문제점

- 이번에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시행(2018년 9월)을 대비하여 이 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현재 부처협의(2018년 5월)가 완료된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부처협의를 완료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범위를 국가과학기술 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속 출연연만을 명시할 뿐, 그 외 연구기관들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연구개발을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재하여, 현재로서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만 될 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전무한 상황임

3. 개선방안

- 공공기관운영법은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이지만 연구개발 목적기관 중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리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적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양 연구회 소속 출연연 외에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명시되어야 할 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관한 규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등에 관해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기관 설립법들을 통합하여 연구개발 목적기관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연구기관과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구분하는 등 연구개발 목적기관 관리제도와 연구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	연구기관지원팀	-	02) 2110-2490

정부납부기술료 사용제도

1. 현황

-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연구관리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기술료 중에서도 정부·전문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정부납부기술료라고 함⁹⁾
- 2016년 기준 정부납부기술료는 총 2071억 원으로,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규모가 큰 부처는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제22조 제1항 단서

산업통상자원부(1258억 원), 중소벤처기업부(351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4억 원) 등 임¹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예산 중 상당 부분은 출연연과 대학에 지원되는데 비영리 법인은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2. 문제점

- 기술료 중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대부분은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과 관련된 활동에 배분되지만, 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 국고나 기금에 귀속되므로 연구개발이나 기술이전과 관련된 활동에 배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는 참여연구원 보상, 지식재산권 비용,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기술확산 기여 직원 보상,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되어야 함¹¹⁾
 - 반면에 모든 정부납부기술료는 국고나 기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과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 유지’라는 기술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¹²⁾
 - 기술료 제도 매뉴얼에서는 이 제도의 목적은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행과 같이 정부납부기술료를 국고나 기금에 산입하는 방식은 기술료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기 어려우므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정부납부기술료 수입을 총괄하여 당면한 국가적 현안 등에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현재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8년 6월.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제2항

12) 국고에 산입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수입이 연구개발분야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2018년 예산안 기준 전체 예산 429조 원 중 연구개발분야 예산은 19.6조 원에 불과함). 기금에 산입되더라도 기금의 다양한 용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정부납부기술료 수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음

이 권한 중 상당 부분이 제약되어 있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혁신 촉진 방향을 기획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별도의 기금 또는 계정을 신설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적 관점에서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정부납부기술료를 체계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	-	02) 2110-1680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 현황

- 2018년 1월 「국가재정법」 개정(4월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함
 - 예비타당성조사란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조사를 말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기획재정부의 소관 사항이지만 최근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8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고 정책 수립, 예산 배분, 성과평가 등의 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함¹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으로서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컨설팅 지원 등), ‘R&D 예타 운영 효율화’(수행기간 단축 등), ‘운영의 유연성·투명성 제고’(조사 재요구 허용, 정보 공개 등)를 발표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제정함

2. 문제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 내로 단축하기로 함으로써 조사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6개월 내에 조사 수행주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혁신방안 중 ‘R&D 예타 운영 효율화’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조사 수행기간을 현행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함
- 그러나 사업 기획이 미흡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이 해당 부처에게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6개월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고, 특히 다부처 사업 등의 경우에는 제출자료 작성이 더욱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음

3. 개선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수행기간 연장 사유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사업의 실제 타당성과는 관련이 없는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하거나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수행기간의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주체가 수행기간 연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부처 사업 등 수행기간 연장을 인정하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13) 기획재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 연구개발분야 투자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 기대」, 보도자료, 2018년 4월 12일자.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	-	02) 2110-1660

연구개발특구 제도

1. 현황

- 연구개발특구란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임¹⁴⁾
 - 2008년에 대덕연구개발특구가, 2011년에 광주연구개발특구와 대구연구개발특구가, 2012년에 부산연구개발특구가, 2015년에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현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5개 지역임
 - 또한 2018년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좁은 면적의 지역에 집약적으로 특구를 조성·육성하는 방식으로도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특구가 추가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됨

2. 문제점

- 연구개발특구의 성격상 여러 부처의 사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간 주무부처가 2차례 변경되고 이사장도 여러 부처 관료로 임명되어, 한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일관된 방향으로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음
 - 과거 대덕연구단지 시절부터 구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켜 왔지만, 2008년 주무부처가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1항

고 2013년에 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 사무의 특성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음

- 그리고 그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5명이 임명되었는데, 그 중 3명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관료가 선임되었으며 2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의 관료가 선임되는 등 연구개발특구 총 책임자의 출신 부처에서도 변화가 있었음
-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이명박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무도 맡게 되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사업도 맡는 등 설립 목적인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주력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연구개발특구 관련 의사결정체계와 주요 사무들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재구조하여, 주무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연구개발특구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하는데, 첨단기술기업의 요건이 되는 기술분야의 지정을 현행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맡기기보다는 연구개발특구의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기술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의 수립·변경 시 연구개발특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국토교통부차관도 포함되므로 심의·의결체계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	지역연구진흥과	-	02) 2110-2760



정부 연구개발예산 정체



1. 현황

- 우리나라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는 총 연구개발비 규모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연구개발비는 최근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여 왔음¹⁵⁾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지만,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주요국보다는 높음
 - 그러나 총 연구개발비 중 1/4에 해당하는 정부 연구개발비의 증가율은 2010년까지 10% 이상이었지만, 2016년 0.7%, 2017년 2.4%, 2018년 1.1%까지 떨어져, 물가 상승을 고려할 경우 정부 연구개발비는 사실상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각 부처의 2019년도 연구개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19년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0.1% 증액되었으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을 0.7%로 계획하는 등 연구개발비는 정체된 상황임
 - 2018년 5월에 정부 각 부처는 2019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458.1조 원을 요구했지만, 연구개발예산 요구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0.1조 원을 요구하는 데 그쳤음¹⁶⁾
 - 2019년도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0.1% 증액한 15조 7810억 원임¹⁷⁾
 - 국가재정운용계획(2017)에서는 복지지출 확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되어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7-2021년간 정부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0.7%로 계획함

15) 권성훈,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120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16)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 보도자료, 2018년 6월 14일자.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18.

2. 문제점

-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새로운 정책기조(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 확대 등)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비를 집중해야 할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예산 증가가 둔화되면서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에 부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의 목표로 ‘과학기술기본계획’(2001)에서는 세계 10위를,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2008)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에서는 세계 7위를 제시한 바 있음
 -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에서 2011년에 10위, 2014년에 7위, 2015년에 5위까지 달성했으나, 2017년에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발표 이후 최초로 순위가 하락하여 7위를 기록함¹⁸⁾

3. 개선방안

- 정부 연구개발비 제약이 커진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체계와 제도 전반에서 혁신적 전환이 요구됨
 - 정부는 ‘국가R&D 혁신방안(안)’¹⁹⁾을 마련하여 몇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부 연구개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과학기술계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가R&D 혁신방안(안)’을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정부 연구개발예산 정제로 인한 문제점들을 방지·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	-	02) 2110-2520

18) 2017년에 평가 대상국에 신규로 추가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가 높게 평가되었고, 그간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던 네덜란드의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가 2017년에 우리나라를 앞지르면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5위에서 7위로 하락함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2018.



중소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원



1. 현황

- 2018년 3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을 ‘양적 투자 확대’에서 ‘효율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²⁰⁾
 - 그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 등 생산성은 정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세제지원과 간접지원을 확대하고 대·중소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힘
- 2018년 6월에 확정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서는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에 전년 대비 7.4% 증가한 1조 8081억 원을 배분함²¹⁾
 -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총괄 규모는 전년 대비 0.1% 증액된 반면, 중소기업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으며, 이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예산을 전년 대비 3.1% 증가시킨 것보다 더욱 높아진 증가율임²²⁾

2. 문제점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규모는 세계 최고수준에 가까워졌지만,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성과는 미미하여 연구개발예산 낭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OECD 국가 중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이르렀지만,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 개선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²³⁾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2018.

21) 미래창조과학부,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2018.

22) 참고로 2017년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정부 연구개발비를 임기 내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음

23) 이성호, 「중소기업 R&D 지원의 정책효과와 개선방안」, 『KDI Focus』 제89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 또한 성과 없는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하면서 소위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등 예산 낭비를 넘어 업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²⁴⁾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효율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 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8년 3월에 발표한 정책에서는 세제지원과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해 6월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에서는 예산을 전년 대비 7.4% 증가시키는 등 방향 설정과 실제 배분 간에 일관성이 미흡하며 여전히 양적 투자 확대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중소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확보하여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	02) 2110-2620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1. 현황

-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별로 자율적으로 역할과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 R&R)을 확장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함²⁵⁾

24) 문제용, 「영터리 R&D 심사에...지원금 물어오는 ‘찍새’ 직원만 살 판」, 『매일경제』, 2018년 6월 5일자.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중심·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안)」, 2018.

- 출연연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R&R(창의적 연구, 자율성 등)을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R&R(삶의 질 향상, 국가임무 등)로 확장하여, 출연연별로 ‘해야 하는’ 연구(연구분야, 주제 등)를 자율적으로 정립하도록 함
- 정부는 2018년 상반기에 출연연 R&R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하반기에 출연연별 R&R 정립(안)을 마련하여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²⁶⁾
 - 2018년 5월까지 25개 출연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검토회의를 거쳐, 6월에는 출연연에게 ‘출연연 R&R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 향후 7~8월에 걸쳐 출연연별 미션, 추진 방향, 역할, 책임·협업 강화 방안 등에 관한 R&R 정립(안)을 마련하여, 9~10월에 출연연 R&R 총괄보고서를 마련하여, 11월에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임

2. 문제점

- 그간 출연연의 임무를 재정립하기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도 몇 차례 임무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임무 재정립 방안이 발표된 이후 지속성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는 2010년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를 통해 출연연 임무를 재정립한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출연연별 임무 재정립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함
- 현 정부의 출연연별 R&R 확장은 임무 재정립 과정에서 출연연이 역할을 상대적으로 크게 둔다는 면에서 과거의 임무 재정립과는 차별화되지만, 재정립 이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거 임무 재정립과의 차별화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출연연 관련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대한 상황이어서 출연연이 스스로 R&R을 정립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R&R 정립(안)이 당장 작동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효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3. 개선방안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의사결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출연연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8년 6월.

담당부서를 출연연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연구회와 출연연에게 보다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이번 출연연 R&R 정립(안)에 대한 과학기술계와 국민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이 법 시행령에 담은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권성훈	02) 788-4716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정책관	연구기관지원팀	-	02) 2110-2490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1. 현황

- 블록체인은 제3의 신뢰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자산 또는 가치를 이전시키는 기술로서 거래비용 감소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사회·경제 체계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장조사기관은 블록체인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고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22일 공공선도 사업 추진,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함

2.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술 발전전략은 공공분야의 시범사업 몇 개를 단편적


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올 해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여 민간 견인이 가능할지 미지수임

- 주요국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서비스 전반에 도입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에스토니아는 이미 2012년부터 국가 행정서비스 전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두바이는 2016년 10월 「Dubai Blockchain Strategy」를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 21개를 선보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발전전략에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본격적인 투자는 미흡’하다고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투자 미흡의 원인에 블록체인·암호화폐·ICO 등에 대한 체계적 대책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번 발표에는 폐쇄형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만 담고 있고 개방형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완전하다는 지적도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므로 범부처 대응과 함께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 발전전략에는 규제개선을 위한 자체 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있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임
 - 블록체인 도입에 따라 기존 법령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령·제도 개선안을 신속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파급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범부처 차원의 블록체인 추진 전략을 수립·추진하며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전자정부, 조달청이 담당하는 국가행정 조달 등 공공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블록체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하여 여러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추진체계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발전과 함께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ICO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융합신산업과 정책총괄과	-	02) 2110-2842 02) 2110-2822

 **인공지능 기술 안전성 확보 및 윤리 정립** 

1. 현황

-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SW는 다른 SW와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기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해소가 중요해지고 있음
 - 유럽의회는 로봇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유럽집행위에 로봇 분류 기준 마련 및 등록·관리를 권고하였으며 ‘킬 스위치’ 탑재 및 소스코드 접근권한 제공 등 인공지능 기술 안전을 위한 규정 도입을 논의한 바 있음
 - 미국 국방성 산하 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설명가능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인공지능 기술이 추론·판단·실행까지 가능하게 되어 행위의 객체에서 주제로 진화함에 따라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편향성, 자율주행차 딜레마 상황 등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KAIST와 구글은 인공지능 무기를 개발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음

2.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 소프트웨어 안전 기준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나, 세부 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은 아직 없으며 인공지능 SW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정보문화포럼은 지난 2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개발자 및 공급자의 책임윤리 강화 및 이용자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킬러 로봇 제재 등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소프트웨어의 세부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SW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및 법제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에 대한 영향이 큰 분야 및 제품의 경우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개별적인 안전기준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킬러 로봇 등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하며, 어느 한 국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보호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정보활용지원팀	-	02) 2110-1807 02) 2110-2975

ICT 규제개선 추진체계

1. 현황

- ICT 규제개선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 노력이 있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추진체계를 운용 중에 있음
 - 현재 ICT 규제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가 제도화 되어 있고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의 절차가 운용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2017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ICT 규제개선 방안 도출을 위하여 3차례에 걸쳐 해커톤(1박2일에 걸친 집중토론회)을 개최함
- 현 정부는 2018년 1월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있음

2. 문제점

- 다양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ICT 산업 현장에서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시허가’ 제도는 현재까지 실적이 3건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논란도 있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개최한 해커톤의 경우 법령상 근거와 강제력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경우 조정 및 합의 도출이 어려움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3차 해커톤에서 카풀서비스를 의제로 삼으려고 했으나 택시업계가 논의를 거부하여 다루지 못한 바 있음
 -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아 회의가 연기되기도 하였음

3. 개선방안

- ICT 규제개선 추진체계상 이해관계자 참여 및 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ICT 규제개선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효율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추진체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역할 분담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개별 부처별로도 소관 분야에서의 갈등 조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차량공유, 숙박공유,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등 ICT와 결합된 산업에서 기존 사업자와 ICT 사업자 간 대립이 첨예하므로, 단순한 문제제기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분야별 소관 부처들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	-	02) 2110-2851

클라우드 보안인증 강화

1. 현황

- 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 고시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인증을 시험·평가하고 있음
 - 위 고시는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및 공공기관용 추가 보호조치를 포함하며 총 14개 부문 117개의 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문제점

- 현행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는 하드웨어와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대한 항목만 규정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SaaS 보안인증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임

- 현행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제도가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클라우드 보안인증이 정보보호관리체계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와 중복되는 항목이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가 현행 고시에 SaaS 보안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추가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경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SaaS 보안인증 항목이 각 서비스별로 적절한지, IaaS 보안인증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인증과 ISMS 간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간소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인증제도에 대한 법령상 근거 마련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진흥과	-	02) 2110-1842



국가 사이버안보 추진체계



1. 현황

- 한반도 정세 변화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아직 사이버 평화를 위한 실무급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이버공격의 주체는 북한 이외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고 할 것임
- 현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과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 등을 포함시켜 사이버안보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 문제점

- 여전히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 법률이 미비하며,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부의 사이버안보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이를 법률로 격상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으나, 청와대·국가정보원 등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논의 진척이 더딘 상황임
- 사이버안보를 위한 현행 대책 및 법체계는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대두로 인한 융합보안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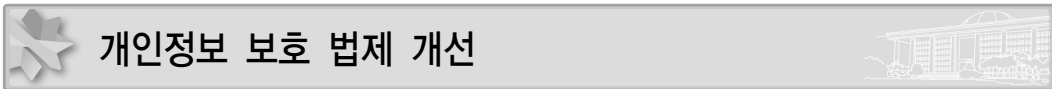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정부는 사이버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여 사이버 리더십을 강화하며,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 간 역할 분담을 정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사이버안보,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기존 법령체계와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이버안보 법

률의 제·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발전을 고려한 사이버안보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프라이버시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02) 2110-2924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개선**

1. 현황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견해와 데이터의 생성·활용이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에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관련 후속 조치,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편 등을 요청하였음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해커톤에 업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논의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정비, 가명정보 개념 입법화 등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규제 개혁을 촉구하는 특별권고안을 채택하였음
- EU는 지난 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서 ‘가명화’ 개념을 정의하였고, 일본도

2017년 5월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를 정의하였음

2. 문제점

- 국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와 관련한 정책권고 및 입법권고를 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 업계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법제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정부는 세부사항에 대하여 업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의 개념 구체화, 가명처리 절차 구체화 등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EU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되 우리나라 현실과 법체계를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소관하는 부처들이 논의하여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두고 개별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은 해당 분야 법률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융합정책관 이용자정책국	융합신산업과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2110-2844 02) 2110-1529



4차 산업혁명 추진체계



1. 현황

-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근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기회로 주목을 받고 있음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부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2. 문제점

-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부 각 부처의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임
 - 4차 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교육·문화·근로 등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정보통신 및 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위원회는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민간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짧아서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전략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위원회는 각 부처의 예산 배분 및 정책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각 부처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음

3. 개선방안

- 현실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전체위원회 산하에 여러 분과위원회가 신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위원의 선발은 신중히 하되 임기는 늘려서 본인들이 심의한 정책의 집행 및 평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위원회에 예산·정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부처 내부에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책임지고 추진·점검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는 방안 등과 같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	-	02) 2110-1620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총괄기획팀	-	02) 750-4721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1. 현황

- 한국은 사회 각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국가적인 국가정보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범정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1996년 제1차 계획(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12년까지 제6차 계획이 추진될 예정임

2. 문제점

- 정보화 혁명기에 시작된 현행 국가정보화 체계가 지능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지능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를 통해 형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유통·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기존의 정보화 패러다임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함

- 예를 들어, 국가정보화를 통해 각 기관별로 디지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를 생산적으로 유통·활용하여 빅데이터분석을 하거나 인공지능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국가정보화 계획이 국가정보화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음

-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발표되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의 일치성은 높지만 계획이 예산에 종속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함

3. 개선방안

- 공공·민간 각 분야에 ICT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지능정보화 기술과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정보화 계획이 정보화 예산 편성·심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 12대 분야에 ‘정보화·지능화’를 포함하고,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가 연도별 정보화 예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화기획과	-	02) 2110-2852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1. 현황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빅데이터(big dat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기존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출현시킬 수 있으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음

2. 문제점

- 빅데이터 산업 규모가 작고,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한 기업·기관의 수가 많지 않음
 - 2017년 기준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4,547억원 수준이며, 종사자 100인 이상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약 7.5%에 불과함
 - 금융·보험·통신·유통 등 데이터 보유량이 많은 업종과 매출액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는 빅데이터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다수 일반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활용 수준은 그 중요성과 기대에 비해 낮음
- 빅데이터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분석할 데이터 부족, 빅데이터의 설계·분석·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 빅데이터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 부족 등임
 - 특히 소비·통신·의료·금융 등 상당수의 데이터가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가 포괄적이고 경직적이어서 사람에 관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어 있어도 분석에 이용하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데이터의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하고, 개인식별성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조치에 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의 질과 양을 개선하여 민간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의 빅데이터 신규인력 양성뿐만 각 분야별 재직자에 대한 빅데이터 직무교육을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나 의사결정자가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융합신산업과	-	02) 2110-2845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



1. 현황

- 저장공간·분석시스템·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구입·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서비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양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 중요해지고 있음
 -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고, 정보통신 자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유휴 자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ICT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2. 문제점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지만,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 확산은 여전히 더딘 상황임
 - 국내 사업체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은 3.3% 수준이며(2016년 기준),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비용부담, 조직의 역량 부족, 클라우드서비스·기

술의 복잡성, 보안에 대한 우려, 호환성 부족 등임

- 국가·공공기관은 대부분 정부(국가정보자원관리원)가 운영하는 공공클라우드(G-cloud)를 이용하고 있어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높지 않음

3. 개선방안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위해 중견·중소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높이고, 클라우드컴퓨팅을 기반으로 한 창업 활성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함
 -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자체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구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중요함
- 공공부문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 클라우드가 공공클라우드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연건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클라우드 보안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 모색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진흥과	-	02) 2110-1613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강화

1. 현황

- 소프트웨어(SW)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가공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만들어 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의 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실현시

키는 핵심 수단이 됨

- SW는 그 자체로도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하드웨어(HW)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W와 HW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SW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 문제점

- SW 산업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SW 산업의 경쟁력이 낮음
 - 국내 SW시장 규모는 12.3조원으로 세계 시장의 약 1% 정도임
 - 한국의 경제규모, 휴대폰과 반도체 등 ICT 기기·부품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SW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내 SW 산업 생태계는 수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결과 유능한 인재의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SW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지 않으며, 국산 SW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구매 관행(낮은 가격과 유지보수비용 책정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 SW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SW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보다는 비용절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SW에 대해서는 최소 지출·투자를 하는 경향이 강함
 - 국내 SW 산업은 대부분 기업·기관에 맞춤형 SW를 구축하는 'IT서비스'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과업 변경이 잦고 대부분의 SW 사업자들이 영세하고 시장영향력이 낮아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SW 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음

3. 개선방안

- 건전한 SW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SW가 자동화를 위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SW 사업의 발주관행과 개발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 IT서비스에 편중되어 있는 SW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SW 기업들의 규모와 성장 단계가 다양하므로 획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의 성장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SW 산업은 시장 개방성이 큰 분야이므로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도 균형적으로 고려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과	-	02) 2110-1813

SW·빅데이터 등 ICT 분야 인재양성

1. 현황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SW,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 신설, SW중심대학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능정보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ICT 연구센터(ITRC)의 개편·확대,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전문인력 6천명 양성이 목표임
 - SW 인재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2년까지 새로운 산업·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SW전문·융합 인재 2만명 양성이 목표임

2. 문제점


-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은 대학을 통한 신규인력 양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산업계에서는 ICT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균형적으로 갖춘 현장전문가를 요구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가 심화될 경우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은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대학이 양성하는 초급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업계와 대학이 인력교육과 채용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이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까지는 일정 수준의 수련기간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모든 지원을 대학에 투입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대학 재학 기간과 산업계 근무 초반기에 양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급인력의 산업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대학을 통한 초급인력 양성과 더불어, 실무자의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실무 역량과 ICT 능력을 균형적으로 갖춘 최고 전문인력(아키텍트, architect)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과	-	02) 2110-1847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1. 현황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이 영상물·게임·교육·훈련 등 사회 각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VR·AR 산업 발전 정책을 추진중임

-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AR 생태계 조성(코리아 VR·AR 콤플렉스(KoVAC) 개소, VR 게임대전 개최), 산업 진흥(디지털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발자 육성(VR·AR 그랜드 챌린지)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음

2. 문제점

- 국내 VR·AR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기획을 실제 구현하기 어렵거나, 외국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한국의 VR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8%(일본은 87.9%, 유럽은 87.9%), AR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1.0%(일본은 87.3%, 유럽은 88.0%)로 낮음(2016년 기준)
- 정부의 지원 정책이 콘텐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이 어려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VR·AR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콘텐츠가 상업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VR방, VR테마파크 등), 스마트폰 이외의 다양한 디바이스 개발, 콘텐츠를 제작·구동하는 데 필요한 SW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VR·AR은 ‘디지털 세상(digital reality)’을 구현하는 범용 기술이 될 것이므로 원천 기술 수준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함
- 정부의 VR·AR 지원 정책 영역과 대상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함
 - VR·AR을 적용한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게임, 가상 스포츠, 가상 훈련·교육에 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명확하게 하는 정책이 중요함
 - 이와 더불어 VR·AR 콘텐츠를 제작·구동하는 데 필요한 SW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디지털콘텐츠과	-	02) 2110-1820



인공지능 로봇



1. 현황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에 대한 기대가 큼
 - 지금까지 로봇은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내용에 따라 움직였지만 인공지능 로봇은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활용이 클 것임

2. 문제점

- 인공지능 정책과 로봇 정책 추진 체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인공지능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로봇은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두 부처의 효과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과기정통부는 ‘ICT융합 산업원천기술개발(지능정보·로봇 융합서비스) 지원사업’, 산업부는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인공지능 융합 로봇시스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서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기정통부는 로봇 손이 시각 또는 촉각 정보를 활용하여 물체의 속성을 파악하고, 물체를 다루는 방법과 절차를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중임
 - 산업부는 시각·촉각 등 다양한 센서로 물체를 빠르게 인식하여 정교한 물체조작과 도구 활용이 가능한 로봇 손과 정밀제어 기술 개발을 지원중임

3. 개선방안

-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대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각 부처의 중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산업부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능형 로봇(소프트웨어 포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중복적인 정책 경합을 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	-	02) 2110-1612

챗봇 산업

1. 현황

-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을 하는 로봇(robot)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인간이 담당하던 정보제공(제품 상담, 민원 접수, 각종 안내 등)을 챗봇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챗봇 이용자는 시간절약, 사용자 경험 개선, 접근성 제고가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는 비용절감, 이용자 만족도 제고,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짐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활용이 확산되면서 챗봇의 활용 가능성과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 문제점

- 챗봇의 잠재력은 높지만 이를 구현하는 핵심 요소인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낮음

- 스마트폰이나 음성인식스피커의 대화 인식 수준은 완전하지 않고, 메신저 기반 챗봇은 반응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화 주제를 한정하거나 주어진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폐쇄형 방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서 챗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임
- 챗봇이 개인정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음
 - 챗봇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대화 내용이 사후적으로 결합·분석되어 개인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고, 무단으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저장할 우려가 있음
- 챗봇에 대한 신뢰성 확보 수단이 명확하지 않음
 - 챗봇 서비스 중에는 대화 상대방이 사람인지 챗봇인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인 줄 알고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중에는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내용이 광고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사실과 광고를 오인할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챗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챗봇 환경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챗봇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해설서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챗봇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챗봇의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챗봇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경우 대화 상대방이 챗봇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하고, 챗봇을 통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은 광고를 노출할 때 그것이 광고임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융합신산업과	-	02) 2110-2832



우체국 경쟁력 강화



1. 현황

- 우체국은 우편·택배·예금·보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총당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됨
 - 2017년 기준 전국 약 3,500개 우체국이 있으며, 전체 인원은 약 4만1천명(공무원 3만명, 비공무원 1만1천명)임
 - 국내 모든 지역에 우편과 소포(택배)를 배달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근 라돈칩대 회수 사례와 같은 중요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2. 문제점

- 예금과 보험 등 금융사업의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우편사업 수지는 악화되고 있음
 - 통상우편 감소에 대응한 수익증대·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 우편사업의 연평균 수익은 3.4%, 비용은 4.1% 증가하여 2011년 이후 적자가 지속됨
 - 연도별 우편사업 수지(억원) : ('11)△439 → ('12)△707 → ('13)△246 → ('14)△349 → ('15)△553 → ('16)△674
- 집배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지속적인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집배원의 근무 중 사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장시간 중노동'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우체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우편사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혹은 우편사업 수지 개선)를 위한 경영 효율화 전략과 수익사업 확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우정청 및 우정공사 전환 논의를 현재 상황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우체국 창구의 자율화·다변화가 필요함
- 집배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조치가 필요함
 - 집배원 근무 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해 인력과 업무의 효과적인 재배치와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 현장의 근로 환경을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추가 인력 충원에 대비한 인건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정준화	02) 788-4715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044) 200-8110



디지털 콘텐츠·미디어 정책

1.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산업생태계조성 계획 중 하나로 디지털콘텐츠와 미디어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2018년 6월 현재, 93편에 대해 약 76억원 지원), UHD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2018년 6월 현재, 68편에 대해 약 60억원 지원), 방송콘텐츠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벤처 스마트미디어 기업 29개사에 대하여 총 20억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 (2018.6. 기준, 이용자친화형 스마트미디어: 8건, 총 2억4천만원/신기술융합형 스마트미디어: 10건, 총 7억원/방송콘텐츠 스마트미디어: 11건, 총 11억원)
- 전국 5개 지역에서 국비 예산 130억원을 지원하여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VR/AR제작지원센터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서울: 영상/문화/복지, 대전: 국방/과학, 광주: 친환경자동차/에너지/생체의료/문화콘텐츠, 대구: 의료/지능형콘텐츠, 부산: 해양·스마트시티/영상)
- 1인 창작자 발굴 지원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의 제작비 및 해외진출에 대해 지원할 예정에 있음(2018년에 7억원 예산 배정)²⁷⁾

2. 문제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미디어 정책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UHD콘텐츠 지원 정책이 주로 방송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인터넷 UHD 콘텐츠에 대하여 어떤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중소·벤처 스마트미디어 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경우 시장성 있는 기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의 경우 5개 지역 각각의 지역특화산업 선정에 있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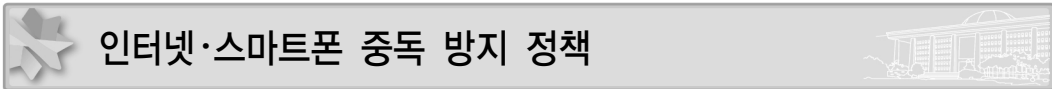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인터넷 신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함
 - UHD 콘텐츠의 경우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역에서 제작 및 유통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성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시 지역특화산업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나, 지역거점을 통해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2018.6.29.

다양한 창의적인 VR/AR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02) 788-4717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디지털방송정책과	-	02) 2110-1890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방지 정책

1.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음(2018.3.)
 - 생애주기별로 유아에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며, 전국 스마트쉼센터를 통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전문상담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²⁸⁾

2. 문제점

-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을 보면 청소년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아 및 성인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유아 및 성인의 경우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2018.6.26.

- 정부의 스마트폰 예방 교육 및 과의존 전문상담 현황을 보면 청소년에 비해 유아 및 성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유아가 23,011명, 초등학생 111,010명, 중학생 66,081명, 고등학생 48,702명, 성인은 21,300명임(2018.5. 기준)
 - 2018 스마트폰 과의존 전문상담 내역을 보면 유아가 471건, 초등학생 4,713건, 중학생 3,823건, 고등학생 2,718건, 성인은 5,069건임(2018.5. 기준)²⁹⁾

3. 개선방안

-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중독의 문제가 전연령층에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문제도 중요하나, 아동과 성인의 경우에도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02) 788-4717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02) 2110-2975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효율화

1. 현황

-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3조와 제34조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2018.6.26.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에게 정보통신망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급되고 있음

- 현재 101종(시각 49종, 지체·뇌병변 19종, 청각·언어 33종) 총 3,200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으며, 전국 189곳의 접수처에서 매년 1회 신청 받음
 - 보조기기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거나, 지역 순회 체험 전시회 및 장애인 정보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되고 있음

2. 문제점

- 지역별, 기기별 보급수량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3조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나, 기기별 지원수량이 선정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고가장비나 희소장비 등을 신청 및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현재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신청과 보급에 관한 공지·홍보 방법은 다소 한계가 있으며, 신청기간이 짧음
-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장애인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하고, 특히 제품사양이나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3. 개선방안

- 지역별, 기기별 보급수량을 사전 공지하거나 이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전체 등록 장애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다소 적은 비율의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상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의 접근성 문제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기기의 보급에 앞서 장애 유형에 맞춘 상담, 평가, 테스트 등의 맞춤 설계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02) 2110-2973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확충

1. 현황

- 2018년 현재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총 3,200대는 정부지원(80%), 개인(20%)의 비용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관련 산업의 영세화, 외국산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국산화 및 장애인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총 48개의 제품개발을 지원함
 - 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중 상용화가 가능한 민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사업비는 정부와 수행기업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70%(선금)와 30%(잔금)로 나누어 지원하되 잔금은 최종평가 결과가 '적정'시 지원함

2. 문제점

- 정부로부터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80%의 가격지원(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량생산·소량판매·고가인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구조 특성

상 구매력이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가격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표 1 | 국내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별 가격

장애유형	품목유형	가격대(만원)
시각	화면낭독 S/W	30~250
	점자정보단말기	410~550
	점자출력기	31~125
	독서확대기	64~415
	광학문자판독기	77~378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9~76
	특수마우스	20~300
	터치모니터	77~378
	독서보조기	610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48~165
	무선신호기	46~98
	언어훈련 S/W	75~94
	음성증폭기	28~95
	의사소통 보조기	30~155

□ 또한 정부의 제품개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언어 장애인용 보조기기에 비해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제품개발 지원은 다소 저조하고, 이에 따라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표 2 |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개발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예산	6	3	5	3	3	3	3	3	4	4
시각	1	2	1	1	2	2	1	1	1	1
지체·뇌병변	3	-	2	1	-	-	1	1	-	-
청각·언어	-	-	1	1	1	1	1	1	4	3

표 3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각	2,993	1,974	1,583	1,870	1,200	1,209	1,216	1,117	1,050	684
지체·뇌병변	1,343	1,254	852	677	673	425	390	252	239	136
청각·언어	2,190	1,126	1,986	1,689	2,275	2,838	2,608	2,900	2,967	2,663

3. 개선방안

- 정보통신 보조기기 이용을 위한 개인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될 필요가 있음
- 유형별 장애인의 수를 고려하여 특정 장애유형에 지원이 쏠리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02) 2110-2973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화교육

1. 현황

- 정보취약·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활용의 역량제고를 위해, PC, 인터넷 활용을 위한 기초 정보화교육부터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인터넷뱅킹, SNS 활용, 웹 디자인 등의 실용·전문교육이 정보격차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교육기관(장애인복지관 등 147개소, 고령층 50개소)을 통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정보화강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는 1:1 방문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온라인 정보화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최근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층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북한이탈주민 등 신(新)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수준도 전체 국민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을 반영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화교육도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91%)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역량(51.9%) 및 활용수준(65.3%)은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2017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

2. 문제점

- 정보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초기 정보화교육 과정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실질적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 국민 대비 디지털 정보화수준이 70%인 장애인에 비해, 집합·방문·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58.3%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 다양성, 농어촌 방문교육 시의 지리적 부담 등으로 인한 교육 강사의 인력부족과 인프라의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고령층의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생산적인 정보화 교육과정이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함
 -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 과정은 14개(청각장애인 11개, 지체장애인 1개, 시각장애인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과정은 5개이므로, 고령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과정을 내용별, 수준별로 보다 세밀하게 재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의 주기적 평가 및 개선을 통해 표준 교육과정 지침을 만들고, 지역 간·기관 간 불균형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화교육 사업이 갖는 인력부족, 재정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통신사나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교류 등 정부·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능정보기술 확산 등 ICT 환경을 반영하여 금융, 교통, 소비생활 등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IC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생활 밀착형 및 체험형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정보화교육에 윤리나 보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02) 2110-2973

모바일 정보격차해소 정책

1. 현황

- 2017년 기준 4대 정보취약계층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8.7%로, 일반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89.5%) 대비 20.8% 낮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정부는 모바일 서비스이용 확산에 따른 정보소외계층의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교육기관에 모바일 교육용 스마트기기(태블릿 PC)를 보급하고, 전체 정보화교육 지원 예산(6,390백만 원) 중 모바일 정보화교육과정 비율을 45%로 상향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웹 접근성 지침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0(모바일 앱)」을 수립하여, 민간분야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진단하고 품질인증을 실시할 예정임
 - 국가표준에 따른 모바일 앱의 주요 평가기준인 대체 텍스트 제공, 자막·수화 등의 제공, 누르기 동작 지원, 인터페이스 일관성 등 접근성과 관련된 18개 항목을 진단함

2. 문제점

-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정보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스마트폰 보유율보다는, 신체적인 이유, 작은 글씨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특성, 그리고 쇼핑·인터넷·뱅킹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모바일을 이용·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임
- 장애인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은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모바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지원 확충,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 접근성·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시각장애인용 리더기와 같은 보조 공학기구의 호환성을 높이고, 복잡한 인터페이스의 수정·보완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과 함께 앱 접근성 확보를 위해 앱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변화하는 통신환경에서 모바일 정보격차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타 부처와 연계하는 등 관련된 지원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피싱, 휴대폰 분실로 인한 개인 및 신용정보의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02) 2110-2973



민간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전성 확보방안



1. 현황

- 정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희석시키고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했던 ‘공인인증기관’ 지위를 신설기준 고시에 근거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변경하고,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도를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로 변경할 계획임(「전자서명법」 개정안 제5조)
 - 민간 사설업체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인증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기술의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블록체인 또는 홍채, 지문, 음성, 안면인식 등의 생체 보안기술이 본인인증 수단의 다양한 대안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문제점

- 모든 전자서명 업체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나 은행이나 쇼핑몰 등의 금전거래 시에는 평가받은 인증서와 그렇지 않은 인증서의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음
- 새로운 인증기술·인증수단의 경우 해킹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기 어려워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특히 사설업체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평가하더라도, 사설업체의 자격여부 자체를 검증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인증수단의 경우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특정하기 어려움
- 사설업체의 보안서비스 수준에 따라 안전성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가 인증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업무에 대한 소비자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보안 등과 관련한 의무조항을 마련해 강제하지는 않더라도,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관의 설립·업무영역·업무내용 등의 투명한 공개, 독립성 확보 방안, 사업자의 준수여부에 대한 주기적 평가내용 공개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거래 위험수준에 맞는 인증기술 도입, 안전한 인증서 활용 지원, 신기술 개발 지원과 이용자 홍보, 편리한 인증서 이용환경 조성, 다양한 인증수단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이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마련되어야 함
-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전자서명관련 분쟁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할 분쟁조정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보호산업과	-	02) 2110-2923

공공기관용 IP 카메라 보안대책

1. 현황

- 2017년 12월, 정부는 IP 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영상을 불법 촬영·유출하여 사생활이 유출되거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 카메라 보안성 강화를 위한 ‘범부처 IP 카메라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IP 카메라 제조·유통업체와 통신사업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조·수입 단계부터 유통·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IP 카메라 해킹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영상보안 및 안전산업 육성을 병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함

- 2018년 1월에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IP 카메라, NVR 등과 같은 영상보안장비에 대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공공기관용 보안인증(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TTA Verified Ver 1. 인증 기준)을 획득한 제품을 도입하도록 권고함
- TTA와 함께 2015년 말부터 실시해온 기존의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장비 및 솔루션 관련 국내 제조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험환경을 구축하고 인증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법적 강제가 아닌 업체 또는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받아들임
-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은 기존의 'CCTV 성능 시험·인증' 서비스에 보안인증 항목이 추가·강화된 인증서비스임
 - 추가된 보안인증 항목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터넷 전화 및 네트워크 장비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항목으로 수년전부터 적용되어 온 사항이 대부분임
 - 현재 현장에서는 선 장비 도입 후 보안인증 업데이트를 하는 방향이 고려되고 있음

2. 문제점



- 여전히 영상보안장비 분야는 일관된 성능 기준이 없고 시험환경도 제각각이어서 개별 제조사 간에 검증되지 않은 스펙이 난립하고 있음
- 업계에서도 영상보안 기술과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인증제의 도입을 환영하나, 국정원이 참여하면서 보안인증 기준이 높아지고 공공기관 도입이 급속도로 빨라져 올 뿐 현재까지 TTA 공공기관용 보안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없는 상황임
 - 보안인증 규격이 아직 생소하며, 인증획득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고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높아 이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업체가 드문 상태임
- 수출용과 국내용 제품의 기술 규격이 다르고, 업데이트로 인한 변경시마다 TTA 보안인증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IP 카메라는 빅데이터 수집의 센서이자 안전산업의 핵심으로 향후 그 활용도와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시범사업·기술개발 등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하거나 국내 중소 영상보안업체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함

- 공공기관용 보안인증 개발지원을 위해 개발지원 시험을 대비한 주요항목의 사전 테스트 지원, 전담인력 배치, 시험시설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TTA 외 시험기관의 확대나 외부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기간 운용과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인증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	-	02) 2110-2924

 **KIOSK(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제고** 

1. 현황

- KIOSK란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를 의미함³⁰⁾
 - 일반적으로 공항 등의 여객시설이나 은행, 패스트푸드점, 백화점의 푸드코트 등에 설치되어 이용정보, 제품정보 등을 제공하며 티켓 발권이나 셀프체크인, 상품구매에 이용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원사무처리용으로 구매하여 무인민원발급기로도 사용하고 있음
 - 2015년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조사한 티켓 발매용 KIOSK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30) 김용균, 「무인화 추세를 앞당기는 키오스크」, 『주간기술동향』 제1790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 p16.

【표 4】 티켓 발매용 KIOSK 설치 현황³¹⁾

대상	운영기관	설치대수	비고
공항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약 150대	
철도역	코레일	약 195대	전국 열차역
지하철역	서울메트로, 코레일 등	약 1,212대	서울지역 지하철역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남부버스터미널 및 전국버스터미널	약 850대	전국버스터미널, 터미널 당 5대 추산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프리머스 등	약 1,000대	전국영화관(210곳 이상), 영화관 당 5대 추산

-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식당, 놀이공원, 공연장 등 생활밀착형 KIOSK까지 포함하면 총 3400여대로 추산되며, 소규모 점포의 KIOSK까지 고려한다면 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 현재 이러한 KIOSK에 관해서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음³²⁾
 - 다만, 행정안전부 고시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기능이 일부 규정되어 있고,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자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CD/ATM기기의 화면 인터페이스 및 안내음성, 부스 공간의 크기 및 조작부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정한 「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 1.0」에서는 은행 및 기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금융자동화기기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 설계, 제작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1) 김석일 외, 『티켓발매용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현황 조사 및 표준화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기술표준원, 2015, p.16.을 재구성 함

32) 최근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1876)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동 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개선방안

- 장애인의 KIOSK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³³⁾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판매용 또는 정보제공용 KIOSK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KIOSK의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설계 및 제작, 그리고 편의제공에 대한 표준 지침 마련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활용지원팀	-	02)2110-297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10

선택재업 관리 현황 및 망중립성 적용 실태

1. 현황

-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선택재업’은 이용자 선택권과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에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스마트폰 앱 선택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33) 제32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를 설계, 제작, 가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정보통신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EU는 지난 7월 18일 구글에 대하여 자사 앱 등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선택재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 4천만 유로(약 5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내년 초 5G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망 투자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음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6월11일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담은 ‘인터넷의 자유 회복’ 행정명령을 공식 발효하였으며, 반면 미국 상원은 5월16일 망중립성 폐기를 원상복구하는 ‘의회검토포법(CRA)’를 통과시켜 정책이 재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음

2. 문제점

- 「스마트폰 앱 선택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구글 등 모바일OS업체, 통신사, 제조사의 선택재앱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위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선택재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선택재앱 중 경쟁 앱에 비해 압도적인 사용량을 보이는 앱도 있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재앱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위 가이드라인 중 ‘필수앱’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조사·OS사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망사업자와 망중립성에 찬성하는 콘텐츠사업자 간에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상황임
 - 망사업자 측에서는 5G 망투자비용에 대하여 콘텐츠사업자의 부담이 필요하고, 망중립성을 고수하는 경우 5G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활용 및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에서의 QoS(Quality of Service, 서비스 질) 보장이 곤란하다고 주장함
 - 콘텐츠사업자 측에서는 콘텐츠사업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QoS 보장이 필요한 경우 IPTV와 같이 별도의 법제화로 해결 가능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혁신 활성화를 위해 망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 개선방안

- 정부는 스마트폰 선택재앱 현황을 조사하고 이용자 선택권 및 공정경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가이드라인상 ‘필수앱’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망중립성 관련 논란을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외 동향과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인터넷 상생협의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을 추진 중인 ‘망중립성포럼’ 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살필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융합정책관 통신정책국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제도혁신과 통신경쟁정책과 이용자정책총괄과	-	02) 2110-2895 02) 2110-1923 02) 2110-1513,1475

 **알뜰폰 경쟁력 제고** 

1. 현황

- 알뜰폰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저렴한 요금제에 기반하여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였음
 - 알뜰폰은 이동통신 재판매(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로부터 망을 임차하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재판매)하는 서비스로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라고도 불림
 - 알뜰폰 시장은 3사 중심의 기존 이동통신시장의 과점구조로 인해 초기에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2018년 가입자 수 750만 명을 넘기는 수준으로 성장함
- 현 정부 들어 통신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또 도입이 논의되면서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음

- 정부는 알뜰폰 판매우체국 수를 현재 1500개에서 올 상반기(1~6월)까지 1800개로 늘리고 서비스 품질개선 TF 운영, 온라인 판매망 입점 확대, 우체국 내 직영판매점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그러나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으로 인해 알뜰폰의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고, 향후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제도의 시행여부에 따라 알뜰폰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문제점



- 현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은 알뜰폰의 요금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특히 알뜰폰 업계 등에서는 월 2만원에 1GB 가량의 데이터 기본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큼
 - 이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전파사용료 감면정책 연장,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알뜰폰 시장 자체의 근본적 한계가 있어, 정부의 단기적 지원 정책만으로 알뜰폰 시장을 성장시키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하기는 어렵다 할 수 있음
 - MNO 3사 중심의 시장구조와 소비패턴, MNO 계열 MVNO 허용, 시장 비효율적 도매대가, 낮은 시장점유율(가입자, 매출액) 등의 이유로 알뜰폰 서비스가 수익성까지 확보하면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는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임
 - 현재 MVNO 사업자 점유율은 전체 시장대비 약 11.4%수준이지만 매출점유율은 3.1%에 불과하며, 이중 1/4는 MNO 자회사가 점유

3. 개선방안

- 단기적 대책보다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알뜰폰 정책이 필요함
 - MNO와 알뜰폰 사업자 간 접속 제도의 개선, 전파사용료 등 규제비용의 부과 원칙 재정비, 유효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최적화 등의 정책검토가 필요함

- 또한 시장 경쟁력 있는 대형 알뜰폰 사업자가 출현 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함
- 그 외,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이 급격히 이동함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다량 데이터 선구매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이용자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920 02)2110-1531

 **5G 구축 및 상용화 촉진** 

1. 현황

- 5G³⁴⁾는 대용량, 초고속, 초저지연의 특성을 활용해 제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로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산업 분야를 지원할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로 평가됨
 - 에릭슨은 5G를 통한 타산업의 디지털 혁신 관련 ICT 매출은 2026년 약 1조 2,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9년 3월)를 위해 주파수 공급 및 제도 정비 등을 추진 중임
 - 국제표준 제정(2017년 2월)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시범 서비스(2018년 2월), 주파수 경매(2018년 6월)까지 마친 상태임
 - 그 외 5G망의 효율적 조기 구축 지원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설비공동구축·활용제도를 정비(2018년 6월)하고,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융합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34)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20Gbps 이상, 지연 속도 0.001초 이하'로 LTE 대비 전송 속도가 약 270배이며 지연속도는 30배 이상 빠른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5G 이동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며, 5G 경쟁에서 뒤처지면 관련 산업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

(2018년 233억원) 등을 추진함

- 또한 5G 시대를 대비한 통신 규제 정책 프레임워크, 5G 네트워크 시대의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 5G 시대를 대비한 전기통신번호 이용 체계 개선 방안, 5G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등 5G 시대의 통신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 및 규제체계를 준비 중임

2. 문제점

- 5G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융합 산업과 결합되어 발전하므로, 융합분야의 정부부처 및 법제와 충돌할 수 있음
 - 5G 융합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선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는 4G에서 5G로 이동통신 기술표준이 교체되는 시기로서 ICT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통신인프라 고도화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대책을 마련해야 함
- 5G 망 구축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킬러 서비스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세계 최초 타이틀과 속도 향상 외에 5G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 5G의 의미는 크게 퇴색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과거 네트워크산업 발전의 경우 기술이 추동하는 것이었다면, 5G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키느냐가 중요하므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지원하는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
 - 5G 이동통신의 원천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기·서비스 시장을 확대하여 5G 이동통신의 파생 산업을 시급히 육성해야 함
 -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의 추진 필요

- 지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는 5G 등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입법 권고한 바 있으므로 관련한 입법 등의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G 융합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기존 산업분야 간 법제도 충돌을 방지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모색 등 법제도 정비 필요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 기술정책과	-	02)2110-2954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 

1.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5G망의 조기 구축과 세계 최초 상용화를 지원하고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한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 이동통신사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신규 설비를 공동 구축하고, 지하철공사 같은 시설관리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가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이동통신사가 5G망 구축 시 다른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공동 구축 대상 설비에는 기존 관로, 맨홀 같은 유선 설비를 포함해 기지국 상면이나 안테나 거치대 같은 무선설비도 포함될 예정
 - 논란이 됐던 이용대가 산정의 문제는 향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마련하기로 함

- 원래 통신 설비 공동 구축 의무 사업자는 유선 사업자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였지만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무선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추가됨
- 또한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함
- 이후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공동구축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2. 문제점

- 2003년부터 KT의 필수설비에 대한 공동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여전히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요구됨
- 낮은 활용률의 이유에 대해서는 필수설비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많은 예외조항, 과도한 비용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러나 필수설비 제공업자 측에서는 후발유선통신 사업자들의 크립 스키밍(안방차지)과 중소기업인 지역 대상 경쟁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없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루어지고 있음

3. 개선방안

-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향후 관리감독 및 통신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대가 산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임
 - KT의 경우 현행 이용대가의 재산정(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과 이해관계 조정 등의 검토도 필요함
- 향후 5G 시대에는 기존 설비의 제공 이외에 새로운 설비의 공동구축이 중요해진다고 할 때 공동구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공동구축 대상지구의 제한성, 공동구축 대상설비 범위의 실효성 문제, 공동구축제도를 통한 투자비 절감 효과 미미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자원정책과	-	02)2110-1943



자급제 등 단말시장 다양화



1. 현황

- 단말기 시장 다양화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자급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단말기 자급제는 이용자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단말기 유통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간 결합판매를 금지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이동통신사와 그 대리점·판매점 외에 제조사 직영매장, 온라인 등에서도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여 요금제를 선택하는 개방형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2년 5월부터 시행함
 - 최근 자급제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정책 맥락에서이며, 제20대 국회에서도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음

2. 문제점

-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등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단말기 구매비용이나 통신요금 모두 제조사나 이통사가 실제로 가격인하 등의 경쟁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를 보장할 수 없다면 통신비 전반의 부담 완화 효과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단말기와 같은 특정한 공산품의 판매를 특정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규제를 찾기 어려움

3. 개선방안

-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며, 따라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제 시장구조나 소비자 선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측면부터 단계적인 노력과 검토가 필요함
 -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할 경우 일선 판매점에 단말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의 존재가 중요함
 - 미국 등 단말기 자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제조사나 통신사와 독립된 독립된 전자제품 판매업체 및 유통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선 단말기 자급제를 확대하려면 자급 단말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격대와 기능의 출시를 유도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
-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을 위해서 현재의 단통법을 폐지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으므로, 구체적 입법형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이용자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920 02)2110-1531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과 분리공시제 도입

1. 현황

-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의 이통사·제조업자 재원을 구분하여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 및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로 함³⁵⁾

- 분리공시제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담한 부분과 단말기 제조사가 부담한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써 보조금의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여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단말기의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제도임
- 현행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별로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요건을 공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시 방법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2. 문제점

- 분리공시제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6월 도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음³⁶⁾
 - 현재 상황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출가를 높이면서 외부에 공시되어야 하는 제조사 지원금을 줄이고 유통점에 대한 장려금을 높여 결국 통신비 부담 완화의 정책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왔음
 - 시민단체들은 분리공시제가 소비자 선택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연결될 수 있으며, 분리공시제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관련 자료 및 제출 의무(법 제12조제1항), 이동통신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무(법 제6조제1항) 등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취지로 하는 입법목적과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찬성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의 우리나라 단말기 보조금 규제 및 현행 단말기유통법 하에서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35)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8. 1. 30

36) 당초 단말기유통법 제정(2014. 5. 28.) 후 시행(2014. 10. 1.)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고시를 추진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면서 도입이 무산됨

도 실제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실제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 후 제도 도입이 필요함

- 한편, 분리공시제 도입 문제와 맞물려 제조사의 장려금 등 관련자료의 제출의무를 다시 규정 하거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이용자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920 02)2110-1531

별정우체국 운영활성화 방안

1. 현황

- 별정우체국은 ‘1면 1우체국’ 정책에 따라 1961년부터 운영되어온 대표적인 민간 위탁사례로, 현재 전국 734개 국이 운영되고 있음
- 2018년도 별정우체국 예산은 2,337억 원으로, 우정국 전체 예산 89,473억 원의 약 2.6% 정도이며, 대다수 별정우체국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직원들의 인건비는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
 -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약 93.5%인 2,186억 원(상용임금 1,866억 원, 일용임금 5억 원, 고용부담금 315억 원)임
- 가구수가 적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 배달 거리가 도시보다 훨씬 긴 농어촌 지역은 인구수가 감소하고 우편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편서비스 이용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별정우체국 이용감소에 따라 통폐합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표 1 | 별정우체국 폐국 현황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5
폐국	1	4	5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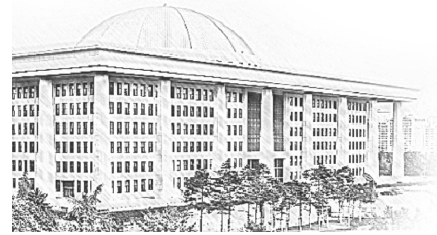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2. 문제점

-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별정우체국이 폐국할 경우 해당 지역에 일반우체국을 설치하거나 인근 일반우체국과 통합할 수밖에 없는 바, 이는 적자구조를 일반우체국으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별정우체국은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우편접수 물량·보험·금융 등의 수입이 적어 우정사업본부에 비해 낮은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함
- 인구감소와 고령화비율이 높은 지역은 집배광역화의 해제와 노인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중심으로 운영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별정우체국 망을 통한 상시제공 서비스(지역 특산물 연계 상품판매 등)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질을 높여 우정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재정기획담당관	-	044) 200-8147



방송통신위원회



VOD서비스 및 광고



1. 현황

-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다양함
 - VOD는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함께 법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VOD 서비스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고, IPTV 사업자가 실시하는 VOD 서비스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통신사업자의 VOD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 대상임
 - 내용 규제에 있어서도 방송사업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비실시간 방송콘텐츠는 방송심의 대상이 되지만,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IPTV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방송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융합서비스를 통한 콘텐츠의 심의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 VOD의 광고는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데, 광고 편수의 경우 콘텐츠 소유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됨¹⁾
 -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VOD에 왜 광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이미 VOD값을 지불하였는데),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광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최근 가입자 수가 급감하면서 VOD 수익 또한 급감하고 있어 VOD 광고를 규제할 경우 시장 위축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함

1) 잉카리서치 앤 컨설팅, 「국내 VoD 광고 시장의 현황 및 분석」, 『미디어 공정경쟁 이슈리포트』 제2호, 2015.

2. 문제점

- VOD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VOD서비스가 추가로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광고의 내용이 방송콘텐츠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비실시간 유료 VOD콘텐츠의 경우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서비스와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당하다는 주장임
 - 또한 어린이 시청가 콘텐츠에 성인 대상의 광고가 방영되는 등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청자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함
 - 방송사업자의 VOD서비스 제공과 VOD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VOD광고를 포함하여 VOD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규제는 미비한 상황임

3. 개선방안

- VOD광고가 현행 「방송법」상의 방송광고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VOD광고에 대한 규제공백으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자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VOD광고 방식(언제, 몇 분, 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VOD의 유료·무료 여부나 VOD시청 연령가 등을 고려하여 광고방식과 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광고 건너뛰기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도 요구됨
- VOD서비스와 VOD 광고에 대한 정의 조항을 「방송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VOD서비스를 다른 실시간 방송광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VOD서비스 광고를 방송광고로서 규제하려면, 다른 종류의 방송광고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고려할 때는 VOD서비스 자체에 대한 개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또한 VOD서비스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지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	-	02) 2110-1271

남북방송 교류 및 협력

1. 현황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및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인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문화, 예술 및 방송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남과 북이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는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
 - 2015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²⁾과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³⁾하고 있음
 - 현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로 ‘통일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종합발전 계획’을 추진 중임

2) 2015년에는 KBS의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슈퍼코리아의 꿈」’을, 2016년에는 KBS의 ‘명견만리 먼저 온 미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2017년에는 ‘통일 UCC 공모전’을 지원함

3) 2015년에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활성화와 미래’를, 2016년에는 ‘통일준비를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과제’를, 2017년에는 ‘통일을 위한 방송통신교류 한마당’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함

2. 문제점

- 남북 방송교류 및 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고, 2015년부터는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동안의 남북 간의 관계 단절로 인해 교류와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통일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국민들의 통일인식을 제고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또한 실제로 남과 북이 만나는 장이라기보다는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불과한 상황임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연 4회 정도의 회의를 통해 남북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3. 개선방안

- 남북 방송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설정과 세부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함
 - 방송과 ICT 분야를 나누어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균형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야 하며, 남북 경색 국면이나 화해 국면을 구분하여 상황별로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통신 교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음
 - 남북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의 장을 통해 서로의 간극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으며, 남북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남북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남북 방송통신 교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함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현재의 역할 및 기능을 제고하여 필요할 경우 이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방송법」 제44조제4항에 의거해 공영방송 KBS에 남북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을 하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공적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홍보협력담당관	-	02) 2110-1333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1.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제8항~제9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52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장애인방송을 실시하고, 시청각 장애인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음
 -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는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 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는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 실적과 정부의 시청각장애인용 수신기 보급률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방송은 각 방송사업자 별로 편성 목표를 부여하고 이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20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결과를 보면, 4) 원주문화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는 화면해설방송 1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연합뉴스티브이 등 2개 방송사업자는 폐쇄자막방송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씨제이이엔엠의 경우 폐쇄자막방송 70% 목표에 이르지 못함
 - 최근 3년간 시청각 장애인용 수신기 누적보급률을 보면, 전체 시청각 장애인의 누적 보급률은 2015년 27.4%에서 2017년 30.9%로 조금 증가하였고,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의 누적보급률은 2015년 35.8%에서 2017년 57.7%로 증가함

4) 2017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 결과는 아직 발표 전임

2. 문제점

- 장애인방송 편성률과 시청각장애인용 수신기 보급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이 충분히 확보되지는 못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편성비율이 자막방송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며 (목표가 10% 수준), 특히 특정 장르에 편중하거나(방송사별로 드라마, 다큐멘터리, 뉴스 등) 주로 낮 시간대와 심야시간대에 집중되고 재방송에는 편성되지 않는 등 정작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고 있음⁵⁾
 - 시청각 장애인 스스로가 방송수신기 보급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수령하고 이용하는지,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인지 자체가 어려움⁶⁾
 - 수신기 자체의 성능에 한계가 있거나(영상 크기 및 위치 조정 등), 고장이 났을 경우 AS가 미흡하다거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수신방식이 부족하다는 등의 문제제기도 있음⁷⁾

3. 개선방안

- 장애인방송 중 폐쇄자막에 비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화면해설방송의 경우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의 문제로 편성 목표가 10%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특히 특정 장르나 시간대에 집중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주시청시간대 방송편성 비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는 시청각장애인이 쉽게 신청하고 설치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함
 - 수어 방송의 영상 크기나 위치 조절, 장애인들의 VOD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스마트 미디어와의 연계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5) 이영희·진승현·정삼희·이재진,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를 위한 화면해설방송 편성의 개선방안 연구: 지상파 3사의 편성 현황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015.

6) 오경수·송종길, 「장애인방송 수신기 보급사업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의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재활복지』, 2012.

7) 오경수·송종길, 앞의 글, 2012.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02) 2110-1293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

1. 현황

-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 규정함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의2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이행을 장려함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19일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
 - 이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2. 문제점

- 그동안 외주제작 시장이 확대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 및 표준계약서 권고 등 여러 가지 규제 및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저작권 귀속, 제작비 부족 및 배분,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협찬, 과도한 노동시간, 인

권 침해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표준계약서 이용 저조, 계약서 미준수, 세부조항 미이행, 계약서 상의 불공정한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음

3. 개선방안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과 관련한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주제작비 산정, 저작권의 배분, 근로 환경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독과 실태 조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함
 -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간에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방송법」 제85조의2는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방송법」의 “외주제작” 및 “외주제작사”라는 용어를 “독립제작” 및 “독립제작사”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외주제작”이라는 용어에는 하도급, 하청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의 차원에서라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대등한 관계 및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⁸⁾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	02) 2110-145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방송영상광고과	-	044) 203-3236

8) 참고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0호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정의되어 있음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1.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에 전국의 도로, 철도, 지하철 터널 3,731개소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함⁹⁾
 - 이 조사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의3에 근거해 실시된 것으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이며, 도로, 철도, 지하철 터널 내의 KBS 및 MBC DMB와 FM 라디오에 대한 방송수신 여부를 측정함
 - 조사 결과,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의 경우 터널 내의 방송신호 수신 불량률이 DMB는 80.7%, 라디오 FM은 77.6%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5년 대비해서 각각 2.8%, 10.0% 감소한 것임

2. 문제점

- 2015년 이후 기존 수신 음영터널에 대한 수신환경을 개선하고 신설된 터널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를 설치한 결과, 터널 내 방송수신 불량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철도터널의 경우 방송수신 불량률이 98.6%로 매우 높는데, 이는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고, 지하철의 경우에도 불량률이 54.6%로 여전히 높은 편임

3. 개선방안

-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및 각종 사고와 같은 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방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터널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 발생한 재난은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함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함께 구체적으로 터널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유형의 재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

9)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1월 26일자 보도자료.

기 때문에 재난방송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 2110-1428



TV홈쇼핑 방송 허위 과장 광고



1. 현황

- TV홈쇼핑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심의를 받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의 방송내용에 대하여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취함
 - 「방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근거한 이 규정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소비자보호를 비롯한 일반기준과 어린이·청소년, 가격표시, 품목별 기준, 금지 및 제한 규정으로 구성됨
- 지난 3월과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몇 건의 방송내용에 대하여 TV홈쇼핑사에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함
 - 전기밥솥과 김치냉장고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가짜영수증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고, 명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마치 고가의 백화점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에 대한 제재임

2. 문제점

-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매 금액도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TV홈쇼핑의 표시·광고 관련 상담과 관련한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3년 동안 총 2,879건의 TV홈쇼핑 관련 소비자 상담이 있었으며, 2012년 425건에서 2015년 1,301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품목별로는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2%로 가장 많았고, 생활용품 및 가전, 주방용품, 화장품, 의류 등의 순으로 나타남¹⁰⁾
- 특히 의료기기, 의약외품, 건강기능 식품, 화장품 등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에 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또한 TV홈쇼핑 제휴 모바일 앱 이용이 증가하면서 특정 할인조건이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하여 모든 소비자가 할인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3. 개선방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홈쇼핑 방송의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어도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쇼핑을 하게 만드는 홈쇼핑 중독과 같은 잘못된 소비 관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허위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은 홈쇼핑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정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함
- 2017년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홈쇼핑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체 심의를 강화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송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

10) 한국소비자원, 「TV홈쇼핑, 가격·할인 조건 등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2016년 3월 7일자 보도자료.

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사업자의 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여라	02) 788-4711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	02) 2110-1261

 생체인식정보 보호 

1. 현황

-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의 편의성으로 인하여 최근 스마트폰 잠금해제, 인공지능 음성비서 서비스 등 ICT분야에서 활용도가 증가하는데, 생체인식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실제 유출되거나 위·변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임
 - 이에 EU 등 주요 국가들은 개인정보의 한 유형으로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를 정의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바이오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보호원칙 및 보호조치 사항을 규정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2. 문제점

- 생체인식정보의 경우 유출 또는 위·변조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정부는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관하여 강제력을 지닌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생체인식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해 보다 강하게 보호될 필요가 있음에도 법률

상 ‘생체인식정보’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생체인식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경찰청 등에서 법률적 근거나 사회적인 합의 없이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생체인식정보’의 개념 및 보호 절차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들을 고시 형태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암호화 저장,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저장형 방식 채택, 생체인식정보를 이용한 프로파일링 규제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각 부처 및 수사기관에서 과도하게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태를 파악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2110-1526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현황

- 온라인 이용자 행태정보 기반의 맞춤형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오·남용 되거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2017년 2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본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행태정보’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원칙들을 제시함

-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행태정보 기반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원칙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2. 문제점

- 위 가이드라인이 법령과 같은 강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맞춤형 광고 사업자에게 지침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불필요하게 규제가 강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용자의 불편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음
 - 엄격한 사전 동의 원칙의 적용, 맞춤형 광고 표시 의무, 안내사항 고지 방식 등에 관하여 현행 법령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자신이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하여 자사 사이트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당사자 광고’의 경우 규제 적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미국의 가이드라인도 ‘당사자 광고’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하다가 규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바 있음
 - 한편,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관기간 등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음

3. 개선방안

- 해외 사례 연구 및 국내 실태 조사를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 및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가이드라인의 실제 적용상황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2110-1529

외국 인터넷 사업자 규제 역외적용

1. 현황

- 인터넷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과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내 법률의 적용, 즉 역외적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무단 변경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2. 문제점

- 국내외 사례들에 따르면 명시적인 역외적용 조항이 없더라도 국내 법률을 외국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외국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국내 법률 적용이 곤란하거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고 있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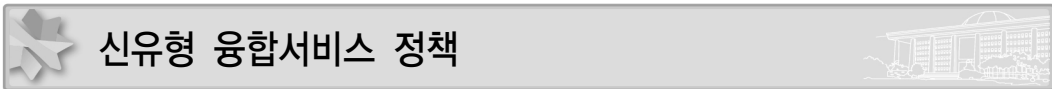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정부는 외국 인터넷 사업자의 국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국내 법률을 적용하고 과태료·과징금 등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국 동영상 서비스 업체 ‘팀블러’에

대하여 음란물 삭제 협조를 요구했지만 텀블러 측에서 거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외국 인터넷 사업자가 정부의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역외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방안, ICT 관련 법률에 역외적용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에 있어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바꾸기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신용우	02) 788-4714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통신시장조사과 인터넷유리팀	-	02) 2110-1475 02) 2110-1534 02) 2110-1566

 **신유형 융합서비스 정책**

1. 현황

- VOD, OTT, 온라인 광고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 제도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VOD, OTT)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음
 - 신유형의 광고에 대한 제도 마련을 위해 온라인 광고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2018.4.~5.)¹¹⁾

11)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8.6.26.

2. 문제점

-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이미 시장에서 정착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정부는 VOD, OTT, 온라인 광고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은 도출되고 있지 못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의 VOD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OTT와 같은 신유형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트리거 광고와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¹²⁾

3. 개선방안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경우 신규 시장의 활성화 및 신유형서비스의 시장 경쟁력, 서비스간 공정시장경쟁 차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장에서 법률 및 집행 예측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신유형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마련이 사업자간 이해관계, 시장의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시장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를 통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웅	02) 788-4717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	02) 2110-1410

12)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도 업무계획, 2018.1.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정책



1. 현황

- 정부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임시조치제도 개선,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 중에 있음(2018.1. 이후)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 규제에 맡기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심의규정¹³⁾ 개정에도 논의 중에 있음(2018.2. 이후)¹⁴⁾

2. 문제점

- 현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성과물은 아직 나타나지 않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시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제도 개편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 플랫폼 규제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적이지 않음

3. 개선방안

- 전반적인 인터넷 규제 체계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정보통신심의규정에서는 국제평화질서 위반(제5조), 헌정질서 위반(제6조) 등에 대한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음

14)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8.6.26.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모욕,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규제 등의 전반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다만,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경우 규제 완화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 마련도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웅	02) 788-4717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	02) 2110-1510

인터넷 윤리 교육 정책

1. 현황

- 인터넷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 유아~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2018.5. 기준으로 총 15,654명 교육)
 -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한국인터넷드림단을 통해 인터넷 윤리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음(현재 제9기 한국인터넷드림단 운영, 현재까지 초·중·고 450개교에서 총 12,300여명 선발)
 - 인터넷윤리체험관 개소(광주, 2018.5.), 박람회 개최(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018.5.), U클린 청소년문화콘서트 및 관련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음(2018.5.)¹⁵⁾

15)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8.6.26.

2. 문제점

- 다양한 인터넷 윤리 교육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교육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이 주로 아동·청소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일반 성인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 한국인터넷드림단의 경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부 학생의 동호회 성격이 강해 교육 효과가 학교 전반에 확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3. 개선방안

- 맞춤형 인터넷 윤리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터넷드림단의 경우 교육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맞춤형 교육도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02) 788-4717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2110-1520



통신비 부담 경감



1. 현황

-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도입,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지난해 6월 22일 발표함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선택약정할인(법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현행 20% → 25%로 상향, 기초연금 수급 노년층과 저소득층에 통신비 추가 감면,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연장, 도매대가 인하, 공공와이파이 추가 설치, 데이터요금제 인하, 단말기유통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통신비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중립적인 논의를 통해 입법·정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17.11월~'18. 2월)함
 - 주요 안건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 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논의한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여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 현재까지 국회 법안심의가 필요한 사항 외에는 대체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상당수 이행되었으며 최근 통신사의 각종 요금 개편 등이 이러한 통신비 인하 논의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2. 문제점



-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동통신사의 강력한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며, 단말기 자급제 확대 역시 제도적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해 통신비 부담경감은 목표한 바만큼 달성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최근에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기본료 폐지 논란이 진행되면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심사를 공정한 기관에서 강화하자는 의견이 관련 법안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음

3. 개선방안

- 통신요금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독과점적 통신시장구조에서는 일정부분 정부의 정책적 관여의 필요성은 인정됨
 - 현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적 시장에서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실질적으로 요금인하와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와이파이나 와이파이 개방 확대, 데이터이월 등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확산에 따라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이 단순 음성통화 위주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통신비 절감대책도 기존의 음성 및 단순데이터 전송 위주의 시장 대책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	02)2110-1910

 **제로레이팅 확대 여부** 

1. 현황

- 제로레이팅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한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 소요되는 데이터 비용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특혜제도로써 일종의 사업자 후원 데이터 이용 (sponsored data)임
 -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유형은 이를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통신사 전략서비스, 무료 서비스·콘텐츠, 정액제 상품, 지원 시스템형 무과금 서비스 등이 있음
- 최근에는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 완화 등과 더불어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

- 현재 국내에서 제로레이팅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제도는 없으나 통상 망 중립성

원칙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제로레이팅의 망 중립성 위반 여부는 제로레이팅 도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망중립성은 원칙적으로는 물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제로레이팅은 경제적 혜택 차원의 문제이기예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합의된 해석이 존재하지는 아니함
- 국내에서는 제로레이팅 허용 문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음
 - 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한 계열회사 지원이나 거래상대방 차별 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통신망 사업자의 경우 계열회사 지원 등으로 제로레이팅이 나타나고 있고, 추후에는 중소 사업자를 압박하여 데이터 비용을 전가하는 등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그러나 제로레이팅이 정보통신시장 생태계와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제로레이팅의 이점은 이용자 편익 증진, 경쟁 촉진 등이 있으며, 한계점으로는 콘텐츠사업자 차별 및 비용 전가, 정보통신시장 혁신 저해 등이 있음

3. 개선방안

- 제로레이팅의 확대 여부는 이용자의 편익 증진의 측면과 차별로 인한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해외의 경우도 정책적으로 제로레이팅을 무조건 금지시키기보다는 소비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허용하거나, 사후에 케이스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다만 현재도 제로레이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생태계 전반의 개방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후규제 등을 실효적으로 마련·실시하여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이 먼저 요구되는 측면도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	-	02)2110-1510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방지

1. 현황

- 정부는 주요 통신서비스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차별 및 시장상황 판단자료 제공 등을 통해 공정한 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신시장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음
 - 모니터링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며¹⁶⁾ 모니터링 분야는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별 위법 및 불공정행위가 대상이 되고 있음
- 또한 이동통신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가 있으며, 이동통신 3사와 KAIT에서 사실 확인 후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자체 시정하고 있음

표 11 유·무선 통신시장 모니터링 분야

구분	유선통신시장	무선통신시장
조사목적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수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조사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수준 및 단말기 유통법 위반 여부 등
조사대상	대리점, 판매점 등	대리점, 판매점 등
조사주기	6일/주	7일/주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18. 6.

2.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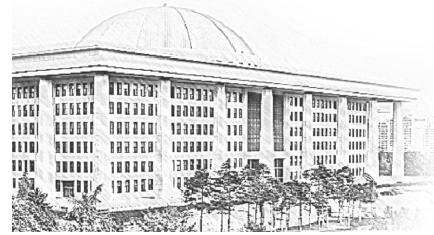
- 2017년 유선시장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준수율은 82.2%, 이동통신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준수율은 87.4%로서 모니터링 준수율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단말기 지원금 초과 지급 등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도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16)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정보통신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자보호 및 편익활동”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

3. 개선방안

- 정부의 통신비절감대책 시행과 보편요금제, 단말기 지급제 등의 실시 여부에 따라 현 단말기 유통법의 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법제도적 전환기에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보다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불법지원금이 유·무선 시장에 만연해 있어 소비자의 정책규제 신뢰가 저하된 문제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유향	02)788-4710
관련 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단 이용자정책국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 통신시장조사과	-	02)2110-1555 02)2110-15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차단 정책



1. 현황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가 선차단하도록 자율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긴급 심의제도를 통해 심의 기간을 2~3일로 단축함
 - 사업자의 자율적인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촉진하기 위해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를 확대함(2018년 1월: 51개 → 2018년 5월 58개)
 -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이행 여부를 실태 점검한 바 있으며(2018년 3월,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간에 불법정보 삭제를 위한 공조시스템의 시범가동을 2018년 1월부터 실시한 바 있음¹⁾

2. 문제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 차단 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 빠른 시간 내에 유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긴급 심의 제도가 불법 촬영물의 온라인상 광범위한 유포를 막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자율규제협력시스템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주로 국내 사업자이기 때문에 해외에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포를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접속 차단의 경

1)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8.6.26.

우 기술적인 이유로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고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간의 공조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아직 시범 실시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3. 개선방안

-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심의 기간을 보다 단축하여 온라인상에서 불법 촬영물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
- 자율협력시스템에 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술을 마련하여 해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불법 정보의 유포를 막을 필요가 있음
- 신속한 불법촬영물의 수사 및 삭제를 위해 경찰청과의 구체적인 공조 시스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02) 788-4717
관련 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디지털성범죄대응팀	-	02) 3219-5170

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

1. 현황

- 인터넷 이용에서 발생하는 역기능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개인방송의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2018.3. 이후)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음(2018년 누적기준으로 893개의 학교에 보급)²⁾

2. 문제점

- 인터넷 역기능 방지를 위한 규제 기관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되고 있지는 못함
 -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노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음
 - 예를 들어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민관 협력 방안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성과 도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3. 개선방안

- 인터넷 역기능 대응 정책과 관련한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음
 -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 차단과 관련하여 민관 협의를 통해 모호한 공적 규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업계 스스로가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안심존의 경우 청소년의 인터넷 과의존을 막는데 효과가 있고, 학부모의 호응도 좋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웅	02) 788-4717
관련 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심의국 이용자정책국	통신심의기획팀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02) 3219-5120 (02) 2110-1520

2)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8.6.26.



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제 정책



1.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시장에서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
 - 인터넷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2018.2. 이후)
 - 인터넷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연구반을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2018.1. 이후) 인터넷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2018.5. 이후)³⁾

2. 문제점

- 인터넷 시장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하면서 플랫폼 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간의 불공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기존 인터넷 시장에서는 망사업자의 역할과 영향력이 컸고,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간 분쟁도 기간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음
 - 인터넷 시장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매개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현재 인터넷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에 불공정거래행위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타통신사업자간의 분쟁, 이용자 보호를 침해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주로 규제하고 있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간 적극적인 분쟁해결 중재 역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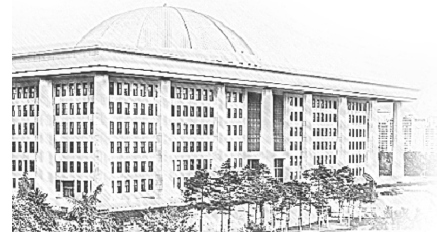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플랫폼사업자와 인터넷콘텐츠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기반하여 어떠한 공정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구체적 대안

3)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2018.6.26.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본적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정책 수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인데, 인터넷 시장의 경우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체적 대응 방안,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조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최진응	02) 788-4717
관련 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신용정보팀	-	02) 2156-9773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후 재가동



1. 현황

-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원자력안전법」 제22조에 의거하여 핵 연료 교체 시점에 정기검사가 이루어지고, 안전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이후 재가동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외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92조에 따라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재가동하고 있음

2. 문제점

- 2011년 이후부터 가장 많은 사고·고장이 발생한 원자력발전소는 월성 부지 내 원자력발전소로 월성 부지는 2016년 경주 인근의 지진 발생 지역이기에 더욱 강화된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가운데 그 이후에도 전체 원자력발전소 중 사고·고장으로 인한 정지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안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¹⁾
 - 현재 사고·고장 발생시 「원자력안전법」 제92조, 시행령 제13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재가동을 위한 승인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더욱이 최종적인 사고·고장 재가동 승인은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에 대한 지

1) 2017년 사고·고장이 발생하여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는 고리와 한울 부지에서 각 1건씩 있었으며, 월성 부지에서는 2건이 있었음

침서 작성에 관한 기준이기에 이를 사고·고장 재가동 승인 규정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됨

3. 개선방안

-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고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정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상하지 못한 사고·고장 발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관련 법적 규정 및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	02) 397-728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1. 현황

- 정부는 매년 「생활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가공제품 및 공항·항만 방사선과 재활용고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함
 - 2017년 이루어진 조사 가공제품은 총 102개로 팔찌, 목걸이, 침대 등 신체밀착 제품과 음이온 발생기 및 방향제와 같은 건강보조 제품, 페인트, 마감재 등 건축자재 등을 포함함

2. 문제점

- 2017년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한 업체의 침대에서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발생함

-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조사·분석 결과의 반복, 실태조사 결과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회수 조치한 제품의 기업명 비공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만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 방사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근거로 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함
-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재 사항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가목에 따라 정보 비공개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	02) 397-731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1. 현황

- 현재 생활주변방사선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음
 - 실내 공기 중의 라돈 농도에 대해서는 환경부,²⁾ 교실 내 라돈 기준에 대해서는 교육부,³⁾ 생활 제품 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⁴⁾가 담당함

2. 문제점

- 최근 라돈 방출 침대 등 잇따라 밝혀지는 라돈 관리 체계 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여러 부처에서 생활주변방사선 관리를 분산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관련 통합 안전지침이 부재하고, 감시 및 대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

- 라돈의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으로 안전관리 지침 책자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국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미국은 연방기관이 공동으로 실내 라돈의 위해도 저감을 위한 전략 ‘연방 라돈 실행계획(Federal Radon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시민, 소비자, 주택 구매 및 판매 안내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	02) 397-7312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2

3) 「학교보건법」 제4조, 시행규칙 제3조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방사성폐기물 관리



1. 현황

- 「원자력안전법」 제65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해 처분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분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해당 처분고마다 처분작업 개시 1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2. 문제점

-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서울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납 폐기물 등을 절취·처분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방사성폐기물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7년에도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하고, 허가 사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용융·소각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한 바 있음

3. 개선방안

-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위반 사례가 재발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점검 강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전지은	02) 788-4713
관련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사선폐기물안전과	-	02) 397-7373

 원자력안전협의회 

1. 현황

-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전비리 또는 안전사고 발생 등의 우려와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정보 제공 요구의 증대에 대응하고, 원전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음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전관련 심·검사 현황 및 주요 현안 설명,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원전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원자력안전의 소통채널로 최근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협의회는 지자체의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지자체(공무원, 의회), 지역주민, 지역주민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각 1명씩 위원으로 참여함
- 원자력안전협의회 회의는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지침」을 근거로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며, 필요시 수시 임시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

표 1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실적

연도별 협의회별	총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77	8	31	39	44	36
고리	29	4	8	4	6	5
새울	31	2	6	6	7	7
월성	31	2	6	5	9	5
한빛	영광	—	4	6	5	4
	고창	—	2	8	5	4
	대전	—	—	3	4	5
한울	29	—	5	7	8	6

2. 문제점

- 협의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이나 원전 고장·사고 등에 대한 사전 정보전달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가 법률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협의회 구성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구조이어서, 실질적인 권한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주민 등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설명이나 보고를 듣는 수준에 그치고, 의견을 제안하거나 의결 또는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원자력과 관련된 전문기술의 이해가 부족한 경우,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3. 개선방안

- 현안 발생 시 사실 그대로의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과 함께 교육조직을 확대하여, 협의회에 참석하는 지역주민에게 원자력·방사선 관련 지식과 방재교육 등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자료요구권과 조사요청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고, 위촉에 의한 협의회 구성원의 실효성 문제를 개선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02) 397-7258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요건 내실화



1. 현황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과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됨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전체회의를 통하여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그 외 주요 현안 및 정책 수립 등에 대해서도 보고안건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반영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 위원이 직접 안건을 제의할 수도 있으며, 제의된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여부를 판단한 후 직접 제출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이 안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문제점

-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가 불명확해 원안위 소속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짧은 안건 송부기간으로 인한 자료검토 및 심의 기간이 부족할 수 있음
- 비상임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기보다는 형식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머물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안건 심의를 위한 회의도 사무처와 위원장의 판단으로 주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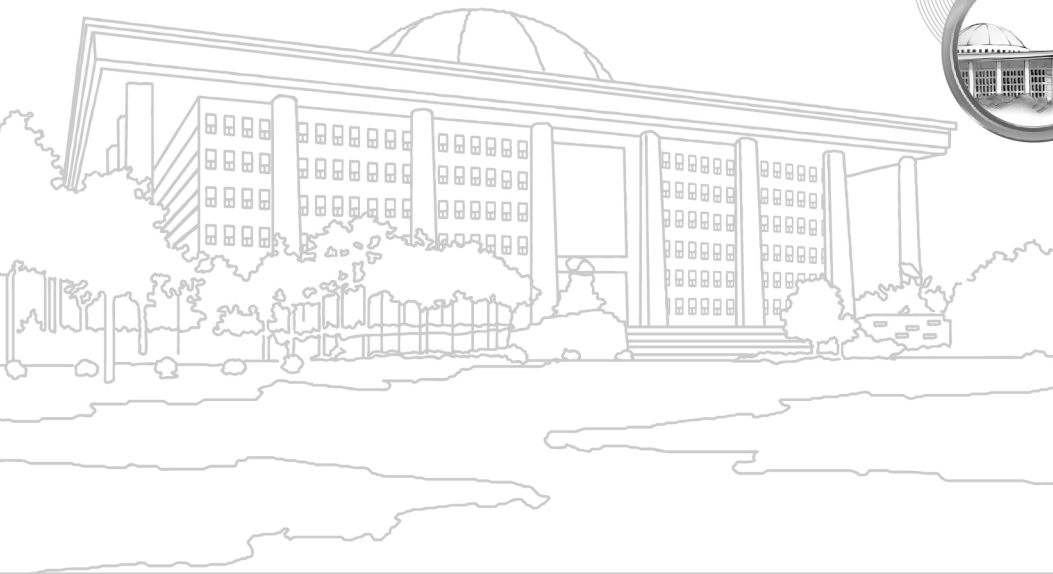
- 비상임위원들의 안건검토를 위한 시간적·공간적 편의와 안전성 기술 분석 등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위원회 내규 개정을 통해 비상임위원의 안건상정 제의의 반영 등 실질적 권한강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김나정	02) 788-4718
관련 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	-	02) 397-7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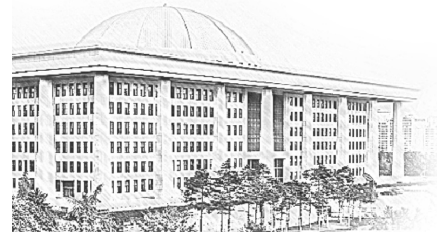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보건복지위원회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업무수행절차 개선 필요



1. 현황

- 대선공약에 따라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에 근거를 두고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를 2017년 12월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기 설치된 47개소를 포함하여 정식 개소된 센터가 49개소에 그쳐 2018년 6월까지로 연기함
 - 2018년 6월 말 기준, 여전히 174개소는 정식 개소되지 못한 상황이고, 센터의 치매진단검사 수행인력인 임상심리사와 간호사, 협력의사 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인 것을 확인함

2. 문제점

- 특히 치매진단검사의 핵심요소인 신경심리검사를 수행할 임상심리사 확보가 어려운 센터가 많기 때문에, 복지부는 간호사 인력을 단기 집중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1~3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는 신경심리검사 요원을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들은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기존의 의료기관이 아니라 센터에서 치매확진을 위한 진단검사를 시행할 경우, 신경심리검사의 정확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비전문인력을 임시로 양성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임

3. 개선방안

- 현 시점에서 치매진단평가를 담당해 줄 역량 있는 인력확보가 어렵고, 진단을 위해 협력의사로 계약을 맺은 의사는 센터가 아니라 원래 소속기관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기존의 치매조기검진 사업모델의 업무절차처럼 치매선별검사는 센터에서,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는 협력병의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확보가 단기간에 어려운 상황이므로,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건소 직영을 고집하기보다 기존 협력병의원에 위탁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치매정책과	-	044) 202-3530

노인학대예방사업의 정책방향 개선

1. 현황

- 「2017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행위자는 친족관계인 경우가 77.1%로 가장 많고, 친족관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들(37.5%) > 배우자(24.8%) > 딸(8.3%)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의 절대 다수가 가족이다보니, 폭행 등 학대사건 처리가 종결된 이후 다시 함께 동거해야 하는 데다, 학대 피해자도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제대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음
- 따라서 정부는 학대사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족에 의한 학대보다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기관 관련 증사자에 의한 학대(13.8%)과 타인의 학대(3.5%)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

추고 대책을 마련해 왔음

2. 문제점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이나 자신에 의한 학대 피해노인이 전체 피해노인의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가족이나 자기학대를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자녀나 배우자에 의한 학대 피해노인은 치매 등 질병을 동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학대행위자와 피해 노인의 관계가 일방적이라기보다 쌍방적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데다, 학대행위자를 일방적인 범죄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3. 개선방안

- 우울증, 치매 등 질환이 원인이 되어 가족 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그 결과 학대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빈곤과 주위의 무관심에 의한 방임에 의해 학대를 받는 노인의 경우는 빈곤대책 마련 등이 더 시급하므로, 학대 피해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는 원인을 세분화하고, 학대 피해자인 노인에게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더불어 학대행위자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노인학대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대행위자가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자일 경우 정신과 치료를 연계하고 폭력예방교육을 시급히 제공하며, 빈곤지원대책 등도 필요한 경우 제공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	044) 202-3465



노인의료와 영양서비스 통합적 제공방안 마련 시급



1. 현황

- 우리나라는 2026년에 이르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약 97.6%임¹⁾
 - 전체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장기요양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는 0.4%에 불과하고,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는 82.2%, 영양서비스는 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도 13.8%인 것으로 나타남

2. 문제점

- 사실상 의료적 처치와 영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인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제도에 서, 노인요양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면서,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은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데다, 사회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임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65세 미만자의 약 4.3배이며, 노인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은 노인인구의 증가(43.1%) > 의료 이용의 강도(34.6%) > 의료 이용량(22.2%) 순서인 것으로 나타남²⁾

3. 개선방안

- 노인의료와 영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의 진행방향은 의료에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단일방향이 아니며, 의료와 장기요양이 동시다발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서

1) 황도경, 「노인 의료와 영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체계 구축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35호(2017.5.22.).

2) 황도경, 앞의 글

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 원스톱 서비스로 간단한 의료적 처치와 요양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계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복 및 과잉서비스를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	044) 202-3490

분산된 노인지원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마련 시급

1. 현황

-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수행 중인 노인보건복지사업 외에도, 주요 정책대상이 노인인 사업들이 중앙의 범 부처와 지자체에서 각기 수행되어 왔음
 -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들의 현황과 관련 예산을 범 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각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수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문제점

-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도 부서 간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부처의 사업 수행여부와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상호 정보교환이 없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컨대, 중앙 및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의 종류와 내역 및 관련 예산, 또한 차상위계층 노인이나 일반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비스의 종류와 내역, 그리고 관련 예산 등 대상자별 총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가 내부에 추진단을 두고 재가·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를 본격 설계해 나가는 현 시점에서, 복지서비스의 정책대상에게 제공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 예산부터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가 우선적으로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	044) 202-3500

국민연금기금 제4차 재정계산의 정밀성 확보

1. 현황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진행 중임
 - 재정추계위원회('17. 8 ~):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인구·거시경제 변수, 기금투자수익률 등 주요 변수에 대해 검토 중이며, 재정추계 결과는 2018년 8월 경 시산 예정임
 - 제도발전위원회('17. 11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강화, 재정안정성 강화 등에 대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 기금운용발전위원회('18. 1 ~): 기금운용 거버넌스, 장기 재정안정 및 자산 배분 등에 대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

2. 문제점

-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시점 등을 추계하는 재정추계 결과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재설계, 그리고 운영의 길라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최대한 세밀하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그러나 지난 3차 재정추계에서 적용했던 실질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금리,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 등 경제변수 가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었음
- 물론 가정변수에 따른 추계이므로 정확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인구 가정, 경제변수 가정, 제도변수 가정 등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임
 - 제4차 재정추계 결과가 제3차 재정추계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제2~3차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책임성 논란이 커질 수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임의가입자의 국민연금 탈퇴 사태 등 대국민 혼란 등을 너무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계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의 대비 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재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이전에 수행된 재정계산과의 격차 등을 지나치게 고려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 등을 활용하고, 새로운 추계결과를 명확히 공지하며, 새로운 추계 결과 연금고갈시점 등이 앞당겨 지는 등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확히 공개하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면 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재정과	-	044) 202-3650



커뮤니티케어 신규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1. 현황

-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커뮤니티케어³⁾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속도를 내어 추진 중임
 -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체계”로 설명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3월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추진단을 구성하고⁴⁾,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⁵⁾, 6월에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마련하고, 빠르면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2. 문제점

-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비 증가는 막지 못한 채 장기요양비용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시 돌봄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복지비용을 절감해 보려는 취지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정책적 노력은 타당해 보임
 -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선진사례라고 참고하고 있는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도 초기에 복지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그다지 복지재정을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자국 내 전문가의 평가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정책임

3) 커뮤니티케어라는 외래어 명칭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업인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수행해 왔던 기존의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들을 외래어로 표현한 것임

4) 복지부 내 관련 부서(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가 모두 참여

5) 노인, 장애인, 아동, 전달체계 등 커뮤니티케어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함

- 또한 커뮤니티케어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이미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중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과 개념적으로 매우 유사함
 - 다만,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정책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등 기존 재가돌봄서비스 수급자, 사회적 입원 중인 노인, 그리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에 신규 입소하려는 노인 등으로 좁히고 구체화시켜 명시했다는 차이만 있음
 - 형식적으로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에 행정안전부가 함께 참여하고는 있으나, 발표된 추진방향에는 구체적인 부처간·사업간 협업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안전부의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가 각기 운영된다면, 상호 간 상당부분 중복될 우려도 있고, 의식적으로 부처 간 업무의 중복을 피하려다보면 두 사업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지자체 업무담당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3. 개선방안

-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그 일환으로 커뮤니티케어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은 일견 타당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임
 - 가족공동체의 쇠퇴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현재까지 부실하게 존재했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강화한다고 하여 관련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 더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함에 따른 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함
 - 명백한 성공사례도 아닌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아이디어를 소위 ‘시범’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중복적으로 서둘러 시작하기보다는 차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	커뮤니티케어추진단	-	044) 202-3690



장사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시급



1. 현황

- 지난 2017년 1월 19일, 대법원 2013다17292 사건에 대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종례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림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의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판결은 1927년 조선고등법원이 내렸던 판결을 지속시키는 내용으로서, 대법원은 아직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였다고 볼만한 사회인식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함

2. 문제점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에 의해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해당 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60년 간 지속되는 상황임
 - 토지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에 영구적이고 무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타인의 분묘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무연고 묘지인 경우라 해도 무연고 묘지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이장 등에 필요한 비용처리 및 관련 절차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 수준임
- 게다가 분묘의 설치기간이 최장 60년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연고 묘지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법 규정을 개선하거나 변경하여 매장묘지를 인위적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수많은 범법자와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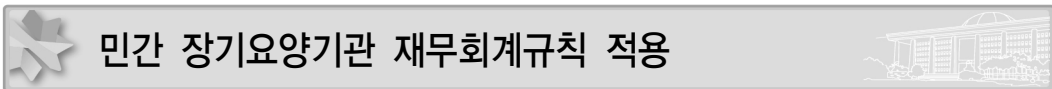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2017년 기준 화장률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LG 故 구분무 화장 등 사회저명인사들이 수목장을 선택하고 홍보하는 등 기존의 매장분묘를 대체할 친환경 장묘 시설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정부도 지속적으로 장례문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이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친환경 장묘시설의 필요성과 불법묘지 설치의 문제점과 매장묘지의 유한성(有限性) 등을 미디어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시키는 방식이 필요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므로, 장묘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인식의 변화가 법제화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44) 202-3470

 **민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적용**

1. 현황

-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장기요양기관 편법운영 등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24일(제2015-223호), 2017년 5월 24일(제2017-83호), 2018년 1월 12일(제2017-260호) 2018년 6월 28일(제2018-130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각각 개정한 바 있음
 - 주요 내용은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을 고시 하고,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음
 - 고시 제2015-223호에서는 인건비 지급 지출비율의 권장수준을 제시하였고, 고시 제2017-83호는 권장수준을 의무화하였고, 제2017-260호에서는 적용수가 인상에 따른 직접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출비율을 인상하였으며, 제2018-130호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를 확대함

2. 문제점

- 민간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인건비 지급 지출비율이 의무화되자 이에 강력히 반대해 왔음
 - 정부가 제시한 재무회계 규칙이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특성 예컨대,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운영비 등 기관운영에 따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⁶⁾
 - 민간 요양기관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는 법인시설과 달리 순수 민간운영 기관에 재무회계 의무화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고, 이러한 강력한 반대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기관운영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 과정도 파행되는 등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개선방안

- 이미 법률개정과 고시개정을 통해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하게 된 현 시점에서 이를 바로 다시 번복하는 것은 제도 운영상의 원칙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것임
 - 다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의도하지 않게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폐업으로 이어져 요양보호사의 대거 실직사태와 서비스 제공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제공미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참여한 갈등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보장하지 못함
 - 정부도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 상호 간 조율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제도과	-	044) 202-3490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0호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86.4%임



고령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시급



1. 현황

-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인구구성비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을 장려하다보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님
 - 노인관련 예산은 기초연금액의 인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수의 증가, 노인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현행의 고령화 정책이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인식하도록 만듦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른으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책대상자로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불만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분야 정책전문가들은 고령화 대책이 점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에 대한 관심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출산장려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을 상호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고령화대책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그에 대한 사회의 부담을 부각하면서 주로 취약계층노인에게 맞추어져 있고, 노인대상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의 단선적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 결과 고령화 대책은 당장의 노인계층 현금지원 재정사업으로만 인식되기 쉽고, 중·장년층을 정책대상자에 포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하는 정책사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또한 이러한 접근은 노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다른 연령세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세대에 대한 잠재적인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음
- 노인과 관련한 현행의 정책은 복지재정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과제 등은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저출산 대책과 노인복지대책을 분리하여 각기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출산장려정책의 성공으로 인구구성비만 변화되면 된다는 방식은 저출산 대책의 시급성에 가려져 노인복지 대책이 소외되거나 왜곡될 우려를 낳게 되므로, 상호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학적 추세를 강조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전략보다는 노인을 준경제활동인구로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임
 - 공적연금 가입자를 늘려 미래의 빈곤노인 규모를 줄이고,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 이용자를 늘려 현재의 빈곤노인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며, 중산층에 속한 건강 강한 일반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콘텐츠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02) 788-4722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	044) 202-3500

✦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

1. 현황

- 2018년 6월 18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 등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개정안(ICD-1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1 version)을 승인하였음⁷⁾

- 우리나라 통계청은 WHO ICD-11에 새로이 추가된 게임장애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⁸⁾에 장차 반영시킬지에 관하여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임
 - 통계청은 2020년 7월에 고시할 예정인 KCD 개정안(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ICD-11의 분류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⁹⁾

2. 문제점

- 게임중독을 물질중독(니코틴·알코올·향정신성 약물 등)과 동일한 중독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의료계와 게임산업계, 게임소비자 간에 이견이 있으며, 게임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신질환으로 분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두고 논쟁이 있음
 -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통계가 작성되어야(「통계법」 제22조) 데이터의 표준화와 국제 비교가 가능할 것인데 우리나라만 WHO ICD-11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통계작성의 목적 중 하나가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비교가능한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므로 국제 기준을 따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각국의 사회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분류 및 생산 체계를 완전히 통일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바, 게임중독 질병화 사안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ICD-11을 수용해야 할 것임
 -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불이익·차별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게임장애라는 의학적 진단이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임

7) [http://www.who.int/news-room/detail/18-06-2018-who-releases-new-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icd-11\)](http://www.who.int/news-room/detail/18-06-2018-who-releases-new-international-classification-of-diseases-(icd-11))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모든 형태의 보건 및 인구동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질병 및 기타 보건문제를 분류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임

9) 통계청, 「제3회 보건분류 자문위원 합동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2017년 11월 24일자.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044) 202-2860



한약사의 업무범위 설정



1. 현황

-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¹⁰⁾인 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제조, 조제, 감정, 보관, 수입, 판매 및 기타 한약학 기술 등 한약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있음

2. 문제점

- 약사와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다르고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해당 면허 범위에서만 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약사법」 제2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동법의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제20조)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제50조)를 기준으로 보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한약사가 비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에 갈등이 있음

10)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음(「약사법」 제23조제6항)

3. 개선방안

-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의 범위와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등에서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시킬 것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	한약정책과	-	044) 202-2580

부당청구 자진 신고(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1. 현황

-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할 예정임¹¹⁾
 -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임
 -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함

2. 문제점

-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만연한 상황인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게 미리 통보하여

11)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8.5.17.일자 보도자료

자체 점검을 권고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 권한을 포기한 조치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단체와(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노동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함

-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로 진행되며 기준에 맞춰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구조이며, 실제 진료사실을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 수준에 지나지 않음
- 2016년 기준으로 심사 삭감률은 0.84%인 반면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증가하였으며, 20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94.4%에 달함

3. 개선방안

-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통상적·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과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명백히 구분하고 현지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도입해야 하는 사안이지 현지조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됨
-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청구 내역을 자율 점검하여 자진신고 하도록 하면 착오청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착오청구와 부당청구, 거짓청구를 구분하여 명백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 기준 위반 금액을 환수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완화하는 등 처분 수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평가과	-	044) 202-2470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환자 피폭량 감소



1. 현황

- 질병의 진단 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피폭량은 검사기기에 따라 다르지만 검사 1회당 연간 일반인 선량한도인 1 mSv(밀리시버트)의 수 십 배 이상 피폭되기도 하며¹²⁾,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량과 연간 방사선 검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 검사 건수는 2007년 3.3건에서 2015년에 5.2건으로 증가)¹³⁾

2. 문제점

-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한 피폭관리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지는 제안이 있으나 의료계와 병원계가 개인별 피폭량 산출에서의 기술적 한계와 실현 불가능성 때문에 환자 피폭량 기록·관리 시스템은 양과 질에서 적정 수준의 진료가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CT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시 적정 피폭량 산출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장비 상태를 고려할 때 피폭량을 측정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장비의 종류와 의료기관의 종별을 고려하여 환자 개인의 피폭량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FDA 지원으로 환자가 쥘 방사선량을 기록하는 환자 카드를 개발 중에 있음¹⁴⁾



12) 건강진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복부-골반 CT(computed tomography)의 경우 1회 검사 당 10 mSv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1회 검사에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이며, 한국인의 연간 자연방사선 총 피폭량(3.0 mSv)의 3.3배에 해당함

13) 김광표 외, 『의료방사선 이용에 따른 국민방사선량 평가 연구』, 질병관리본부·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7. p.118.

14) <https://www.fda.gov/downloads/Radiation-EmittingProducts/RadiationSafety/RadiationDoseReduction/UCM235128.pdf> <검색일자 2018.07.03.>

- 소아의 경우는 “My Child's Medical Imaging Record”라는 제목으로 기존에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수첩과 유사한 수첩형식으로 작성,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	-	043) 719-751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043) 719-5001

 **의료법인 회생** 

1. 현황

- 2017년 9월 21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회사로부터 무상 출연한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안 등이 포함된 채무자 의료법인의 회생 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음¹⁵⁾(서울회법 2017. 9. 21. 자 2016회합100116)
- 비영리기관인 의료법인의 회생 자금을 영리기관인 주식회사가 출연 및 대여했기 때문에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를 두고 논란이 있음

2. 문제점

-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이 영리병원 개설 방법을 우회적으로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되어 사회적 으로 쟁점이 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의료법」 및 「민법」의 현행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15)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늘푸른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롯데호텔)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임([서울회법 2017. 9. 21. 자 2016회합100116, 결정: 즉시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preclnfoP.do?mode=0&precSeq=185859>><검색일자 2018.06.26.>

두고 이견이 있음

- 「의료법」에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규정 자체가 없는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음
 -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의 회생절차 참여 제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을 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은 제50조에서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재단법인 일반에 대하여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제한 조항은 없음

3. 개선방안

- 의료법인의 경우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업무편람』 등에 보충하거나 별도의 가이드 라인으로 가칭 「의료기관 폐업 및 회생, 의료법인 청산 업무편람」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의료법인의 개시신청서 및 잠정적 회생계획안에 포함해서는 아니 될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이들을 제출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회생계획서 상 자금조달의 방법을 제한(영리법인으로부터의 조달을 금지하는 등)하거나 자금을 제공한 자 및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취임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영리자본이 의료법인을 탈법적으로 인수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	044) 202-2470



예비급여의 문제점



1. 현황

-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제고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가치평가 및 가격부여)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하였음¹⁶⁾
-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게 됨
-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하여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하여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됨

2. 문제점

- 총 3,800개에 이르는 비급여 중 어떤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급여화 선정 기준을 결정하고, 예비급여에 편입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30~90% 중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

3. 개선방안

-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가 요구되는 바, 어떤 인력(전문가)이 어떤 방식으로 현존하는 의료기술을 평가하도록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급여 우선순위는 전문가의 의료기술 평가에 기초하여 결정되기도 하지만 질병별 형평성이나 사회 연대 원칙 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 정도에 따라라도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경로로 여론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16) 보건복지부, 「모든 의학적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2017.8.9.일자 보도자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예비급여과 등	-	044) 202-2710 044) 202-2670



대북 보건의료 지원



1. 현황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인 보건의료 지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1995년 북한의 유엔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국에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지원을 요청한 것을 계기로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지방자치단체가 결핵·말라리아 퇴치, 정수·식수개발, 제약공장 지원, 병원 현대화 등의 대북지원을 해왔으며 2008년 이후 급감함

2. 문제점


- 보건의료 분야 대북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조정기능 및 사후관리가 부재함
 -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남한 민간단체 중심의 대북 창구와 북한 대남창구(민화협, 민경협 등)가 모두 비전문적인 보건의료 채널이어서 남북 의료인 간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북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평가된 바 있음¹⁷⁾
 - 일차약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결핵(多劑耐性結核)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결핵 지원 사업 등 대북 감염병 관리 사업이 비체계적인 약물 치료법으로 접근되었음을 방증하는 것임

17) 양호승 외,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방안-농업 및 보건 분야-』, 통일준비위원회·월드비전, 2014, pp.83~89.


3. 개선방안

- 노동집약적 보건산업부문에서 북한의 노동력자원과 남한의 자본기술의 결합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북한 현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일부를 대북지원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임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 대북 지원의 경우 민간단체 등 여러 참여주체들의 지원 방향을 기획하고 조정·사후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콘트롤 타워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인도주의적 긴급구호를 넘어서 보건의료 분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인 개발목표 달성과 접목시키는 관점에서 대북 지원 사업에 접근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044) 202-2350



재생의료 시행



1. 현황

-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¹⁸⁾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을 환자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¹⁹⁾이 발의되어 있음

18)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 회복 및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세포를 배양·가공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서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임

19)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해숙의원 등 12인, 2016.11.09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2016.6.14

2. 문제점

- 승인절차 간소화는 개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음
 - 첨단제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첨단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3. 개선방안

- 줄기세포 시술의 속성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의약품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첨단 재생의료 제품의 경우 특성상 ‘살아있는 세포’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임상적용 없이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윤리적인 이슈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갈등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학적 유효성 외에도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윤리정책과	-	044) 202-2945

위험분담계약제의 문제점

1. 현황

-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정부와 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²⁰⁾ 또는 치료법이 없는

20) 새로운 계열의 약제로 작용 기전에서 차이가 있고 기존 치료제보다 임상 성과(건강결과)의 개선이 우월한 경우 등을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됨

○ 다음과 같은 위험분담 유형이 있음

- ① 리펀드 : 보험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 ② 조건부 지속치료 + 환급 : 반응 있는 환자만 투약 지속하고 반응 없는 환자 치료분 환급
- ③ 총액 제한 : 일정 금액을 넘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
- ④ 환자 단위 사용 제한 : 환자당 사용한도를 정하고 초과 청구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단에 환급
- ⑤ 기타 : 그 외 다른 유형도 제약사가 제안할 수 있음

2. 문제점

- 위험분담제도가 신약에 대한 환자의 경제적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약가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혜택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특정질환(암, 희귀질환)에 한정하여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종료로 비급여화 될 경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보완책이 필요함
- 계약의 중도 해지, 계약 기간 내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적응증) 확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등 다양한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환자의 약제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약제의 급여 여부 및 상한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044) 202-2752

고려하여 위험분담제소위원회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운영 개선



1. 현황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규명되었으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²¹⁾
 - 위의 집단 감염 사고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C형간염이 집단적으로 잇달아 일어났으며, 폐업과 책임자 사망 등 해당 의원들이 피해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²²⁾

2. 문제점

-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 구제로 손해배상금대불금 재정 적립금이 고갈되어²³⁾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다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불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재원조달 방식·피해구제 범위 등에 대하여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폐업 등으로 대불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호해야 할 보건의료인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금 대불금 재원을 운영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외에도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 환경 조성도 있는 바,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것이 요구됨

21) 서울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고(2015.11.) 등, (자료: 보건복지부,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 2016.9.6.)

22)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임(「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23) 손해배상금대불금 재정은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부담액을 징수하여 마련하였음. 부담액은 종별 및 직역 간 차등을 두었으며 상급종합병원 633만6,700원, 종합병원 106만9,260원, 병원 11만1,030원, 의원 3만9,650원, 치과병원 11만1,030원, 치과의원 3만9,650원, 한방병원 7만4,020원, 한방의원 2만6,430원, 요양병원 7만2,170원, 보건의료원 11만1,030원이며, 약국·조선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은 각 1만원씩 부담함. 2015년 총 적립액 37억8,478만원에서 26억4,032만원이 다나의원 건으로 지급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기관정책과	-	044) 202-2474

 **교통이용과 관련된 장애인 편의제공 강화** 

1. 현황

- 현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²⁴⁾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음
 - 동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이를 위한 교통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맞게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제17조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해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의무²⁵⁾를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하지만 이러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칙²⁶⁾등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비해 동법 제17조의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

2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함

25)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로 한국수어·통역서비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공중팩스를 규정하고 있음

26) 제29조(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를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의2(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하생략.

제31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 의무와 관련해서는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음

- 또한 동법 제25조²⁷⁾에 따라 5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도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우선,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제공 의무의 구체적인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영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10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 개선

1. 현황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등²⁸⁾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²⁹⁾과 「교통

27)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생략.

28) 장애인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함

29)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³⁰⁾에 근거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이하 “BF 인증”이라 함)를 실시하고 있음

- BF 인증은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2,589건의 인증³¹⁾이 있었으며, 인증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건축물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³²⁾ 등으로 매우 다양함³³⁾

2. 문제점

- 하지만 현행 BF 인증 수수료 체계는 지역인증을 제외한 개별 인증대상에 대해서 그 유형과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단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음

표 11 BF 인증 수수료

[단위: 만원]

구분	지역인증			개별시설 인증
	10만㎡~ 200만㎡	200만㎡~ 300만㎡	300만㎡ 이상	
본인증	618	807	995	403
예비인증	429	429	429	286

주: 부가세 별도, 인증 연장 수수료는 100분의 50

자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1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을 재구성함



3. 개선방안

- 생활 밀착형 소규모 시설 등 다양한 개별시설의 BF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대상 중 개별시설에 대한 유형과 규모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수수료 체계 마련이 요구됨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30)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31) 전체 인증실적 중 95%는 건축물임
- 32) 읍·면·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지역 등이고, 현재까지 지역인증은 1건에 불과함
- 33) 김대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VOL.2, 국회입법조사처, 2018, p.4.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10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1. 현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³⁴⁾에서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³⁵⁾에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장애인학대 실태조사와 신고시스템 구축 및 관련 통계의 생산과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

2. 문제점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을 주기로 장애인 실태조사와 2014년부터는 매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장애인 실태조사는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만 간략히 조사하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이 모든 장애인이 아닌 거주시설 내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조사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34) 제59조의8(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3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재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학대 관련 현황 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개선방안

- 매년 발간되고 있는 노인과 아동학대 관련 현황보고서³⁶⁾의 발간 주체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점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내용을 고려한다면,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노인과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인과 아동의 학대 현황보고서는 각각 취약노인정보시스템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 기관에서 신고·접수된 사례와 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하고 있음. 따라서 인쇄비 외에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매년 학대 현황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음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경우도 우선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난 뒤, 이를 활용하는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은 당초 2017년도에 표준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2018년도부터 정보시스템 기능 개발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8년도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음
 - 아울러 시스템의 규모를 감안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운영 인원 등을 포함한 적절한 예산 지원도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10

3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는 노인학대 상담 신고접수 사항, 피해노인 인적사항,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학대사례판정 및 분석결과 등을 내용으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05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신고자 유형,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사례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 특성 등을 내용으로 2001년부터 매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음



장애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12개월 미만 영아)



1. 현황

- 장애등급판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따르면 척수 장애, 뇌병변장애는 만 1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최소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함
 - 그 밖의 유형의 장애는 판정연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판정시기에 따른 제한이 있음³⁷⁾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외관상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학적 장애판정을 유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문제점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0~12개월 미만의 영아들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애아동으로 인정³⁸⁾되어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9조제3항³⁹⁾에 따라 그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위임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6조는 삭제되었고 동 사항은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⁴⁰⁾에 따라 동법 시행규

37) 예를 들어 심장장애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호흡기·간 장애의 경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

3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39) 제19조(의료비지원)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의료비지원의 지원 대상·기준·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

40) 제17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칙 제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 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 하지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판정을 받기 어려운 0~12개월 미만의 영아들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의료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개선방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는 6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어려운 0~12개월 미만 영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의료비 지급 대상 등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도 포함시키는 개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0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 개선

1. 현황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각 바우처 사업의 이용인원과 예산 집행률은 아래와 같음

표 2 장애인 관련 바우처 사업 현황

사업명	연도	이용인원(명)	집행률(%)
장애인활동지원	2017년	66,534	99.9
	2018년	89,926	99.9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2017년	52,200	99.9
	2018년	52,830	99.9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017년	421	100
	2018년	387	100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2017년	661	37.2
	2018년	673	45.7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2018.6.

2. 문제점

- 다른 바우처 사업에 비해 현저히 집행률이 떨어지는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⁴¹⁾에 따른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음

41) 제30조(사회서비스품질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을 정하고, 그 품질기준에 따라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개선방안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률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중앙·지역)에서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부모심리상담 지원 서비스의 취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변경 사업의 추가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복지서비스 변경 시범사업은 예산 총량 내에서 개인의 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각 기본급여의 총량 30%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 의사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도록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 바우처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 개선



1. 현황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로는 장애인실태조사가 있음
 - 3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 특성, 경제상태, 복지욕구 등 장애인 관련 모든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조사라 할 수 있지만, 조사 주기와 횡단적인 조사방법에 따른 한계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변화 등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²⁾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일한 조사대상을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조사⁴³⁾인 방식인 장애인패널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장애인패널조사는 문항개발과 표본설계를 마치고 실사 실시 단계 직전에 있음

2. 문제점

- 당초 2017년도부터 6,000~7,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장애인패널조사는 예산문제와 개인정보제공 문제로 실시가 지연되었으나,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지만 패널조사의 특성상 패널이 탈락할 경우, 개인정보제공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42) 김대명, 「장애인패널조사의 실시 및 쟁점」, 『이슈와논점』 제1374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p.1.


43) 종단조사란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통해 다른 시점 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기법으로 특정집단에서 나타나는 동태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개선방안


- 장애인패널조사의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인 관련 통계조사를 보다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임시조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조사연도) ①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3년마다 1회씩 실시하되, 조사의 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0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1. 현황

- 2018년 6월부터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행사자료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이 제공되어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삽입한 행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가 시행되고 있음
 - 개정 전 동법에서는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⁴⁴⁾”로 규정되어 있어 두 자료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음성변환을 제외한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이 활용될 수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하도록 명확히 하고, 텍스트 정보의 음성변환 뿐

44)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란 바코드가 삽입된 인쇄물에 바코드 인식기계를 찍으면 인쇄물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장치임

만 아니라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전자적 표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음

2. 문제점

-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의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행사에만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로 한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보건의날, 장애인의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현충일, 국군의날 및 노인의날

- 하지만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⁴⁵⁾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⁴⁶⁾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같은 정보제공에 관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 차별금지의 관점에서도 국가적 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교육·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공하는 자료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의 삽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와 같은 내용을 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개별 법령에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의무 적용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별도로 정하거

4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기업의 규모 등에 따른 단계적 제한을 두고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윤소하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⁴⁷⁾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⁴⁸⁾ 개정안이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0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개선

1.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서비스는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제공되며, 이 중에서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약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⁴⁹⁾
 -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보조인이 직접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함
- 2018년 활동보조 급여비용은 시간당 10,760원으로 책정되었고, 여기에는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기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75% 이상은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함⁵⁰⁾

2. 문제점

- 하지만 현재 책정된 활동보조 급여비용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인건비 및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47) 의안번호 2006560

48) 의안번호 2006554

49) 김정희 외,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보건복지부, 2015, p.88.

50) 보건복지부,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2018, p.135.

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⁵¹⁾

- 따라서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시 소(訴)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부제소특약을 강요하거나 근무시간을 쪼개는 방식(비자발적 초단시간화) 등의 편법이 발생한 바 있으며, 심지어는 활동보조 급여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⁵²⁾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이 방안은 서비스 제공의 축소·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장의 활동지원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근본적인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개선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임
- 이미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다른 유사 사회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음⁵³⁾
 - 근본적으로 활동보조 급여비용 산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 및 활동보조 서비스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결정되는 활동보조 급여비용 책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51) 한인상, 김대명,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슈와논점』 제14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p.3.

52)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임

53)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개선 권고」, 2016.10.6.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중복 조정

1. 현황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⁵⁴⁾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17개 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장애인학대 사건의 신고·접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제 업무를 개시한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건은 842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발달장애인학대 사건은 552건으로 약 66%였음⁵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⁵⁶⁾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17개 시·도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의 발달장애인 유기등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건수는 2017년 423건, 2018년 1분기까지는 137건이었음⁵⁷⁾

2. 문제점

- 현재 장애인학대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업무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54)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이하 각 호 생략.

55)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제출, 2018.6.

56)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이하생략.

57)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료제출, 2018.6.

-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뜻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란 「형법」에 따른 유기, 존속유기, 학대, 존속학대,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사, 살인·치사, 수수·은닉,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행위를 의미함
- 따라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현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률⁵⁸⁾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는 장애인학대 사건처리 및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사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하지만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권리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약 3~4명에 불과함



【 표 3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 • 제9조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업무의 지원 •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호조치 등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8)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9제2항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 두 기관의 한정된 예산과 인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애인학대 및 발달장애인 유기등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접수창구의 일원화, 공동 사후지원 프로그램 등 중복된 업무영역에 대한 부처 차원에서의 업무조정 방안 마련이 요구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대명	02) 788-4728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10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1. 현황

- 지난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 병원윤리위원회가 부각되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입법화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18. 6.15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82개소, 병원 6개소, 요양병원 17개소, 의원 1개소로 전국 148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였음

2. 문제점

-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등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의 기준⁵⁹⁾을 충족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의료기관은 환자와 환자가족에 대한 연명의료 관련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59)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필요한 심의·상담·교육·통계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관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함

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인력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나, 소규모 병원에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가중됨

- 보건복지부가 전국 8곳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공용윤리위원회의 시간적 제약과 민감한 사항을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함
 - 환자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연명의료관련 심의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3. 개선방안

- 병원 내에서 환자와 환자가족에게 연명의료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공간과 상담 인력 등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이므로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	044) 202-294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

1.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충원하여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17년 7월 현재 353개 병원, 2만3천병상에서 제공하고 있음⁶⁰⁾

- 올해 3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처우개선 사용, 야간간호관리료 신설 등 처우개선 기반 마련
 -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과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체계 구축
 -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및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교육 등 전문성 강화

2. 문제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 인력이 충원되었지만 환자의 치료와 간호, 돌봄, 간병서비스까지 업무량이 증가하여 간호 인력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간호 인력 배치기준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세부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병동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실제 의료기관은 배치기준 보다 다양한 간호 업무를 요구하고 있어 간호·간병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간호인력의 직종 간 역할정립과 위임 가능한 업무의 구분이 모호하여 간호·간병 서비스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각 직종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이 간호 인력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분류하고 업무의 위임정도를 구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예측은 어려움
-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 개선 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는 좀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대부분의 개선방안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므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함

6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7. 8.

3. 개선방안

-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 직종별 간호 인력의 배치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병동의 범위, 지역, 진료특성, 환자의 중증도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배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간호·간병 업무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표준화를 통해 각 직종별 간호 인력과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직종별 업무에 대해 명확한 범위 설정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시스템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초기에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간호사의 공급규모 확대보다는 활동간호사의 이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유희간호사 재취업 지원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의 현실에 부합한 간호사의 충분한 인력 확충과 고용안정성, 임금보장 및 경력단절 간호사의 업무개발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	044) 202-2455



전공의 수련 환경 문제점 검토



1. 현황

- 전공의 수련은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일정기간 의료 기술의 습득이나 임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법률 공포 후 1년 간의 준비 기간(2016. 12. 23 시행)을 두었고, 수련시간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였음(2017. 12. 23 시행)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88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상황 40시간) 및 최소 휴식시간(10시간)을 규정함
 -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수련환경 개선, 수련병원 지정, 수련교과과목, 수련규칙표준안 및 수련환경평가 등을 심의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2. 문제점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전공의의 수련 및 근무환경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⁶¹⁾
 - 전공의의 60%이상이 80시간을 초과한 주당 평균 87.3시간을 근무하고 있고, 최대 연속 근무시간도 평균 70.1시간으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연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로가 의사회가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로

61) 의료정책연구소,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 의료정책연구소, 2017.

한정되어 있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환경 평가 내용을 준수하고 실제 수련 현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수련기관들에게 확실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전공의의 참여는 필수적임
 - 전공의 수련조건, 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평가 및 의결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에 전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줄 전공의단체의 참여와 그 설립과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	-	044) 202-2460

미환수 복지재정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환수

1. 현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보조금을 확정된 후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자치단체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을 완료한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음

2. 문제점

- 2017년 감사원의 감사⁶²⁾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시도별로 미반납된 집행잔액(이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일반회계 24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 국민건강증진기금 6개 사업 총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미반납 집행잔액(2017. 2.22. 기준)이 64,520백만 여원에 이르고 있었음
- 2018년 3월 31일 기준,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 감사원 감사 당시 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서울시 134억 여원, 충청남도 10억 여원, 경상북도 40억 여원 등 총 194억 여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4 | 시도별 복지재정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2018. 3월 현재)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합계
서울특별시	3,578	-	76,180	145,457	4,024,636	9,127,193	59,525	13,436,569
부산광역시	-	-	-	-	-	-	81,305	81,305
대구광역시	-	-	-	-	-	268	6,004	6,272
인천광역시	-	-	-	-	-	-	92,569	92,569
광주광역시	-	-	-	-	-	15,534	4,095	19,629
대전광역시	-	-	-	-	-	1,893	7,277	9,170
울산광역시	-	-	-	-	-	15	-	15
경기도	-	-	226	-	-	6,055	125	6,406
강원도	-	-	-	-	-	96,215	-	96,215
충청북도	-	-	-	-	-	11,389	92,762	104,151

62) 감사원 감사기간: 2017. 3.18.~4.18.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합계
충청남도	-	-	-	-	-	88,500	976,042	1,064,542
전라북도	-	-	-	-	143	188,312	-	188,455
전라남도	-	31,026	-	-	-	91,499	14,177	136,702
경상북도	5,212	-	2,173	-	102	4,003,339	6,027	4,016,853
경상남도	-	-	-	-	-	160,782	887	161,669
합계	8,790	31,026	78,579	145,457	4,024,881	13,790,994	1,340,795	19,420,522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검색(2018. 6. 4)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을 기한 내 미반납하거나 지연 반납하는 지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징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	운영지원과	-	044) 202-2101

중복수급 사전차단을 위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1. 현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신청, 접수, 수급자 결정, 지원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복지사업의 경우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이 통합 DB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중복수급이 금지되는 복지사업 간에는 자동으로 수급자 결정을 보류하는 사전차단기능이 구축되어 있음
 - 특히 이러한 사전차단 기능은 현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 재가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의 경우 중복지원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수도 할 수 없으므로 중복수급이 우려되는 경우 서비스가 사전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2. 문제점

- 보건복지부의 재가급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가사지원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이 유사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11년 범정부시스템에서 중복수급관리기능을 구축하면서 각 부처시스템에서 수급자격 및 수급이력정보가 통합 DB에 실시간으로 입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다르게 사전에 중복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선지원 후에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사후관리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2013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중복지급을 차단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총 743명의 중복수급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 6월 현재까지 사전에 중복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음

표 5 재가서비스 간의 중복수급 현황(2013년~2016년 12월 현재)

(단위: 명)

서비스명	지급인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지원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간 중복	524
재가급여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간 중복	219
계	743

자료: 2017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의 재가급여 및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등 3개의 재가서비스가 중복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중복수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	-	044) 202-3167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지형 비율 준수

1. 현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① 근로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으로 자활근로사업을 구분하고 있음
- 이 중 근로유지형은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가능한 자로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 가능한 자인데, 업그레이드형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약하고 근로시간이 적으며, 기초생활보장 탈수급률과 자활성공률도 낮은 편임
- 이에 자활근로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전체 자활근로사업의 25% 미만으로 제한하고⁶³⁾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⁶⁴⁾

표 6 자활근로사업 유형

구분	사업비 지출한도	사업규모 (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	비고
근로유지형	5% 이하	25% 미만 (2017년은 20% 미만)	시·군·구 직접 시행, 민간위탁
업그 레이 드형	사회서비스형	20% 이하	
	인턴·도우미형	0-10% 이하	
	시장진입형	30% 이하	
		75% 이상 (2017년은 80% 미만)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자활사업안내(1)」, 2018. 1.

63) 2017년까지는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음

64) 2017년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이 20% 미만이었으나, 2018년 25% 미만으로 지침을 개정함

2.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서울,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의 지자체에서 「2017 자활사업안내 (I)」에 따른 근로유지형 사업규모인 20%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울의 경우는 40%를 초과하고 있으며, 전체 자활사업의 근로유지형 사업규모도 20% 상한선을 초과한 22.1%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표 7】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자활사업 중 근로유지형 참여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근로유지형	비율	전체	근로유지형	비율	전체	근로유지형	비율
서울	6,846	3,265	47.7	6,531	2,816	43.1	5,917	2,502	42.3
부산	3,908	894	22.9	3,623	752	20.8	3,569	667	18.7
대구	2,113	931	44.1	1,927	699	36.3	1,745	550	31.5
인천	2,084	346	16.6	2,227	359	16.1	2,237	319	14.3
광주	2,238	452	20.2	2,188	440	20.1	1,891	390	20.6
대전	1,016	219	21.6	964	210	21.8	1,157	196	16.9
울산	375	4	1.1	358	7	2.0	322	8	2.5
세종	98	8	8.2	90	9	10.0	109	7	6.4
경기	3,597	508	14.1	3,475	501	14.4	3,208	356	11.1
강원	1,758	232	13.2	1,542	198	12.8	1,466	158	10.8
충북	860	107	12.4	796	97	12.2	786	75	9.5
충남	1,153	157	13.6	1,017	139	13.7	1,034	118	11.4
전북	2,344	583	24.9	2,229	475	21.3	2,041	427	20.9
전남	2,604	726	27.9	2,289	524	22.9	2,146	431	20.1
경북	2,104	555	26.4	1,770	379	21.4	1,735	362	20.9
경남	1,837	331	18.0	1,767	304	17.2	1,823	321	17.6
제주	482	162	33.6	447	134	30.0	391	107	27.4
합계	35,417	9,480	26.8	33,240	8,043	24.2	31,577	6,994	22.1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8. 6. 4.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 안내」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했으나, 2017년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현재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의 참여자가 지침에 따라 배정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비율이 다른 지자체 비하여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지자체의 상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침에 따른 근로유지형 참여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참여비율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	-	044) 202-3079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1. 현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을 공무원의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권고기준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봉급 인상율을 적용하되, 공무원 보수대비 평균 95.7% 수준을 유지한 최소 지급권고기준임. 또한 보건복지부는 열악한 종사자의 보수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복지 질 저하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에게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음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문제점

- 최근 3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보면, 지자체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법에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 최소지급기준인 동시에 최저임금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12개 시도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

【 표 8 】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현황

(단위: %)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시도	평균 준수율	시도	평균 준수율	시도	평균 준수율
서울	111.5	서울	110.37	서울	109.0
제주	101.2	제주	100.28	제주	106.9
대전	100.0	광주	100.00	부산	102.7
울산	100.0	대전	100.00	대전	100.0
세종	100.0	울산	100.00	세종	100.0
충남	100.0	세종	100.00	광주	99.8
경북	98.8	전남	99.57	전남	99.2
전남	98.5	대구	99.36	울산	99.0
강원	97.1	충남	99.16	경북	98.9
경기	97.0	경북	98.85	전북	98.5
경남	96.6	강원	98.35	대구	98.4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시도	평균 준수율	시도	평균 준수율	시도	평균 준수율
광주	96.5	경남	98.06	충북	98.1
전북	96.5	경기	97.87	경기	98.1
대구	96.3	부산	97.66	강원	97.6
충북	96.1	전북	97.58	충남	97.6
부산	95.0	인천	97.04	인천	97.4
인천	93.4	충북	95.09	경남	97.2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8. 6. 5.

* 준수율 높은 순으로 작성

3. 개선방안

- 지자체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준수율을 공개하거나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 202-3271

여성 노숙인 전용시설 설립 확대

1. 현황

- 2017년 말 전체 노숙인은 10,828명 중 26.0%인 2,814명이 여성노숙인이고 거리노숙인 862명 중 여성노숙인은 7.0%인 60명임
 - 거리노숙인 중 여성노숙인은 남성노숙인과 달리 신체적·성적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성상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 시민에게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생

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노숙인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표 9 】 지자체별 노숙인 현황(2017.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구분	계			구분	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0,828	8,014	2,814	대전	293	248	45	충남	76	72	4
서울	3,653	2,799	854	울산	43	42	1	전북	235	178	57
부산	880	636	244	세종	115	96	19	전남	735	528	207
대구	1,001	616	385	경기	924	741	183	경북	345	211	134
인천	718	527	191	강원	287	214	73	경남	498	337	161
광주	154	117	37	충북	712	526	186	제주	159	126	33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6.14)

2. 문제점

- 여성 노숙인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취약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전용시설은 재활시설 2개소, 자활시설 9개소, 요양시설 4개소이고 일시보호시설은 전무함
 -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⁶⁵⁾을 보면, 여성 노숙인의 보호강화를 위해 여성노숙인이 주로 발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노숙인 전용 일시보호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미정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시의 시립여성보호센터의 경우 정원 180명인데도 불구하고 현원 329명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국 총 15개 시설이 서울 9개소, 부산 1개소, 대구 1개소, 인천 1개소, 경북 2개소로 일부 지역에만 설립되어 있음

65) 보건복지부, 「제1차(2016-202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2016. 2.

【 표 10 】 지자체별 여성노숙인 시설현황(2017. 12월 기준)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시설 종류	시설유형	시설명	설치 일자	정원	현원
계				15개소		961	975
서울	양천구	재활	단신여성	수선화의집	'05.07.28	14	16
서울	성북구	재활	단신여성	아가페의집	'07.07.02	30	23
서울	강남구	요양	단신여성	시립여성보호센터	'83.12.24	180	329
서울	동작구	요양	단신여성	시립영보자애원	'85.08.01	400	360
서울	양천구	자활	모·자녀	내일의집	'98.09.13	20	17
서울	서대문구	자활	모·자녀	열린여성센터	'04.04.01	30	27
서울	중구	자활	모·자녀	화엄동산	'98.11.01	15	10
서울	관악구	자활	가족	대한성공회살림터	'98.10.01	35	16
서울	은평구	자활	모·자녀	흰돌회	'04.11.05	40	14
부산	금정구	자활	단신여성	금정내일의집	'15.12.29	20	18
대구	남구	자활	단신여성	살림커뮤니티	'98.12.22	30	11
인천	남구	요양	단신여성	한무리 HOLYLIFE	'09.07.25	29	24
인천	계양구	자활	모·자녀	여성노숙인쉼터	'98.11.05	10	11
경북	김천시	자활	단신여성·모·자녀	브니엘의아침	'14.10.14	8	3
경북	영천시	요양	단신여성	나자렛집	'88.04.21	108	9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6.19)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여성노숙인을 위한 전용일시보호시설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여성노숙인의 보호강화가 일시보호시설의 설립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여성노숙인의 현황 파악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전용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협의하여 권역별로 여성전용시설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	044) 202-3078



지자체의 자활기금 및 지역자활센터 관리·감독



1. 현황

- 지자체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실정이므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자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금의 규모는 지자체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적정규모를 산정하되, 기금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지자체는 기금 조정목적 달성을 위해 추가조성토록 하고 있음⁶⁶⁾
 - 또한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기금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

2. 문제점

- 2017년 자활기금 조례제정 및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자활기금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상남도를 포함한 인천 옹진군, 경기도 의왕시·과천시·동두천시·연천군,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북도 울릉군, 강원도 원주시 등 9개소가 있음
 - 경상남도는 자활기금조례를 폐지하고 자활기금지원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수행하고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자활기금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음
 - 226개의 시·군·구 중 37개소가 자활기금을 조성하지 않거나 보건복지부가 규정하고 있는 자활기금 조성액인 5억 원 미만이었고 경기도 과천시 등 12개소의 시·군·구는 자활근로참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자활센터 없이 자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66) 보건복지부, 「2018년 자활사업 안내(1)」, 2018. 1.

【 표 11 】 자활기금 조례 제정 및 조성 현황(2017.12.31. 현재)

(단위: 개소)

연도	조례제정현황					기금조성현황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조례 제정	조례 미제정	소계	조례 제정	조례 미제정	기금 조성	기금 미조성	소계	기금 조성	기금 미조성
2017	16	1	226	218	8	16	1	226	217	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5.31)

【 표 12 】 지역자활센터 없는 지자체 현황(2017.12.31. 현재)

(단위: 명)

지역	인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응진	연천	가평	의왕	동두천	과천	양구	계룡	영양	청송	울릉	청도	의령
자활근로 참여자	0	7	78	24	76	36	27	30	31	36	7	15	5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8. 5.31)

3. 개선방안

- 지역자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원활하게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설치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자활기금 조성액이 5억 원 미만인 지자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	044) 202-3081

고교학비지원사업 수급이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1. 현황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처 및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DB에 연계하여 제공받도록 계획하였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 동 시스템은 현재 24개 기관이 299개 사업을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각 부처의 복지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의 중복 수급여부, 사망 등 변동정보를 관리하고 각 부처에 주기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그러나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교학비 지원사업⁶⁷⁾의 수급이력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통합DB에 제공되지 않고 있어 유사사업인 교육부의 기초교육급여,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교육지원,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고용노동부의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등의 사업과 중복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2016년 고교학비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이 의심되는 378,657,910원(624명)의 지급 건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가 인지하지 못하여 교육부 등에 관련 현황을 통보하지 못 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현재 여전히 고교학비지원사업 수급이력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 DB에 제공되지 않고 있음

67)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생복지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시 내야하는 입학금, 각 수업료, 그 밖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지원비 납부 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표 13 | 고교학비지원사업과 중복지급으로 의심되는 사업 현황(2016년)

(단위: 명, 원)

소관부처	복지급여사업	인원수	지금액
교육부	기초교육급여	614	363,860,150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복지사업(장학금)	10	14,797,760
보건복지부	긴급복지교육지원	-	-
국가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
계		624	378,657,910

자료: 2017년 감사원 감사보고서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고교학비 지원사업의 수급이력정보를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통합 DB에 연계·수집토록 하여 중복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	-	044) 202-3167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결격사유 개선

1.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득에 있어 피후견인,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일정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제점

- 정신질환을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나 위험성에 근거한 것임
- 그러나 정신질환 여부를 판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주관적 판단이 고정된 법적 지위나 엄격한 절차를 거친 법원의 선고 등과 동일 시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업무수행능력의 불충분이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른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이라는 취지하에 정신질환자를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정신질환의 경중을 법률로 규정하지 못 한 채 정신질환자를 중증질환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사회적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람 중 사회복지사를 희망하여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직업능력의 검증이나 심사절차 없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전문의의 인정만으로 배제대상에 규정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에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이 치료를 기피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국민정신보건의 측면에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⁶⁸⁾

6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2018. 4.12.

3. 개선방안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등 객관적 상태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⁶⁹⁾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044) 202-3022

사회복지사업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논의과제

1. 현황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삭제됨⁷⁰⁾.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외됨
 - 종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례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1일 8시간 근무 실시기반이 마련되었고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시설 이용자 당 종사자 수를 줄여서 교대 근무하는 등의 편법적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임. 또한 근무 중 휴게시간이 보장됨에 따라 종사자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며 교대근무 확충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69)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정신질환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동일한 의견의 권고를 하였음

70) 2018. 2.28. 본회의 의결, 2018. 3.20. 시행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의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2. 문제점

- 반면에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돌봄의 공백 발생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생활시설 등에 종사하는 교대제 종사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일상화 되어있음

3. 개선방안(논의)

-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50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시간 근로로 법정 제수당 미지급 문제를 유발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에 적법하지 않은 2교대 근무를 3교대 근무 형태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방안 마련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번 개정 법률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소규모 거주시설에 해당하는 공동생활가정은 거의 대부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조차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으므로 5인 미만의 공동생활가정이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 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 202-3271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리

1. 현황

□ 사회복지사의 윤리성 강화,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2016년 2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함

관련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문제점

-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등록기준지인 지방자치단체에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개별 요청해야 하는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정보망 사용이 제한적이고 상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은 매년 8만 여건이 신규 등록되고 있고 등록된 자격도 2017년 말 현재 94만 여건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지인 지방자치단체를 개인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17년 개정된 정신질환자 결격사유도 의사진단서를 사회복지사 개인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아야 하는 등 결격사유 확인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3.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공공성 및 투명성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장은 그 자격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 관리에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최병근	02) 788-4721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044) 202-3271

학생건강검진의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검진체계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학생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으나(「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생애주기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 학생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 건강검진 결과 또한 ‘학생인권문제’를 이유로 학교에서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전산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또한, 국가건강검진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⁷¹⁾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학생건강검진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2. 개선방안

- 학생에 대한 건강검진을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여, 생애주기별 검진체계 안에서 국민의 전(全)생애적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학생을 제외한 영유아와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주관 하에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학생을 포함시켜 전 연령에 걸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건강검진 대상으로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시행령의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건강정책국 학교정책실	건강증진과 학생건강정책과	-	044) 202-2828 044) 203-6548

71) 「건강검진기본법」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검진기관의 평가시기 등)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확대

1. 현황

- 2018년 현재 전국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62개소이고, 기관당 아동수(지역내 아동수/기관수)는 평균 134,723명이었음([표 14] 참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경기 12개소, 서울 10개소, 강원·경북·부산이 각각 4개소 순이었음
 - 지역별 기관당 아동수는 대전 260,313명, 경기 192,101명, 경남 192,021명, 인천 162,561명 등의 순으로 많았고, 충북 87,031명, 제주 61,127명, 강원 58,285명 등의 순으로 적었음
 - 기관당 아동수가 가장 많았던 대전은 가장 적었던 강원 4.5배에 달했음

표 14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수와 기관당 아동수(2018)

(단위: 개소, 명)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관	62	10	4	3	3	2	1	2
아동수	8,352,794	1,389,253	488,316	396,028	487,682	269,885	260,313	206,699
기관당 아동수	134,723	138,925	122,079	132,009	162,561	134,943	260,313	103,35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	4	3	3	3	3	4	3	2
2,305,209	233,141	261,094	360,649	299,253	292,457	404,498	576,063	122,254
192,101	58,285	87,031	120,216	99,751	97,486	101,125	192,021	61,127

주: 세종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자체인 관계로 전체 아동수는 세종의 아동수를 제외한 집계임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현황(http://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install) (최종검색일 2018.3.27.); 행정안전부, 0-17세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2018.2. 기준

2. 문제점

- 2012~2016년 기관당 아동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는 일관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⁷²⁾
 -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아동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가족문화에 따른 차이와 같은 여타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관당 아동수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3. 개선방안

- 기관당 아동수가 많은 지자체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우선 신설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권리과	-	044) 202-3430



1. 현황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7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2~2016 각 년도

선정 기준을 정함

2. 문제점

- 경제적 수준 상위 10% 배제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무관하게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할 때 예산상의 실익도 크지 않음
 - 소득 기준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배제된 가구의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⁷³⁾
 - 또한 소득액(「아동수당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있어 근로소득 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일종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고, 신청자의 소득액 판별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3. 개선방안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아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	044) 202-3822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기준 재검토

1. 현황

-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등(「아동수당법」제4조제1항)

73) 이봉주,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및 재원마련방안」,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위 간담회』,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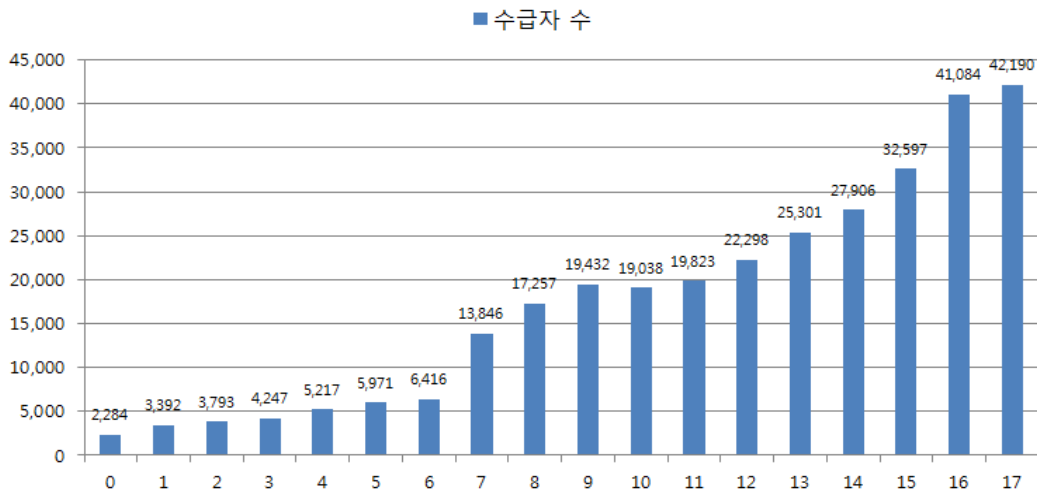
- 아동수당은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함

2. 문제점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기준을 0~5세로 설정한 것은 법률들 간의 일관성 부족과 양육비용 지원이 시급한 연령대에 대한 고려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전자는 현행 법률들이 이미 ‘아동’을 법률 용어로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기존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항)
 - 후자는 아동수당제도가 아동양육 가구의 빈곤화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령별 우선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자료에 따르면, 아동이 속한 가구들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았고⁷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수도 증가함([그림 1] 참조)

■ 그림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아동 연령별 수급자수(2016)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7.6.

74) 정은희, 「아동빈곤 현황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5.2.

3. 개선방안

- 중장기적으로 지원대상 연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과 합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재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령별 아동양육 가구의 빈곤 상태를 감안하여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2-17세, 6-11세, 0-5세의 순으로 고연령 아동부터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함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하고, 저연령부터 실시할 경우 아동이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까운 미래에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아동에게 사회투자를 경험하게 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	044) 202-3822

✦ 국공립어린이집 직영 확대

1. 현황

-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음⁷⁵⁾
 - 2017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비율은 7.8%이고, 이용률은 12.9%임

7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2017.7.

【 표 15 】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2017)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어린이집수	40,238	3,157 (7.8%)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보육아동수	1,450,243	186,916 (12.9%)	96,794	43,404	738,559	321,608	4,508	58,454

자료: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2018.6.25. 검색

2. 문제점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미흡함
 - 2017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고 있는 경우는 2.7%에 불과함
 -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97.3%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 위탁이 55.8%에 달함

【 표 16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현황(2017.6)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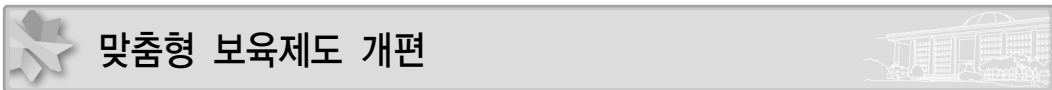
계	직영	개인	사회 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
3,047	83 (2.7)	1699 (55.8)	440 (14.4)	431 (14.1)	141 (4.6)	19 (0.6)	234 (7.7)

※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새마을금고 등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3. 개선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규 확충 개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직영
 -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사 강화를 통한 직영 전환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 202-3580

 **맞춤형 보육제도 개편**

1. 현황

-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아동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요구 상황에 맞게 지원을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해 왔음
 -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는 종일반(12h/일)과 맞춤반(6h/일+긴급보육바우처15h/월)의 이원화된 형태로 제공되어 왔음

2. 문제점

-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고 있지 못함
 - 맞춤형 보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1) 맞춤반과 종일반의 별도 운영, 2) 종일반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⁷⁶⁾
 - 조사에 따르면, 맞춤반과 종일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비율은 2.1%에 불과하고 종일반 별도의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는 비율도 32.3%에 머물러 있음
 - 어린이집 이용시간 평균은 맞춤반이 6시간 12분, 종일반이 7시간55분이었음. 즉, 종일반 이용시간도 8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76) 김송이, “맞춤형 보육의 효과성 제고와 개선과제”, 권혁국국회의원·신보라국회의원·최도자국회의원·국회입법조사처·육아정책연구소 「초저출산시대, 수요자중심보육과 성평등적돌봄을 위한정책토론회」자료집, 2018.5.9.

3. 개선방안

-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의 근본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맞춤형·종일반의 이원화된 서비스 공급 형태를 모든 양육자에게 제공되는 기본 보육(8h)과 맞벌이 등 수요자가 선택하는 추가보육(4h)의 형태로 재편하고, 추가보육을 별도의 인력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044) 202-3560

✦ 종교법인 위탁 어린이집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 보장

1. 현황

- 종교법인 위탁 어린이집 등에서 종교행사 참여 강요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 마포구립 위탁운영 ‘상수어린이집’ 사례⁷⁷⁾: 소속 보육교사 6명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하다가 이에 따르지 않자 모두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 이에 대해 운영자는 종교행사 불참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2. 문제점

-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오랫동안 법률에 의해 실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시설에서의 암묵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77) 한겨레, “보육교사에게 “교회 나오라”...거절하자 해고한 어린이집”, 2018.4.3.

- 「근로기준법」 제6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등은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음

3. 개선방안

- 종교법인 위탁 어린이집 등에서 모든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선정 요건에 모든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	044) 202-3020



저출산 대책 평가 강화



1. 현황

- 2018년도 중앙부처 저출산 대책은 14개 부처 78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부 14개, 보건복지부 15개, 고용노동부 21개, 여성가족부 10개, 국토교통부 4개, 중소벤처기업부 5개, 식품의약품안전처 2개, 여타 7개 부처가 1개씩 등임

2. 문제점

- 다양한 부처에서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은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 부처의 경우 직접적인 자녀양육가구 지원 대책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저출산 예산 규모를

과대평가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사례: 교육부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3조9671억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 인 프라 확충’(1,386억원) 등

3. 개선방안

□ 각 부처별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하는 관점에서,

- 직접적인 아동양육가구 지원과 관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 저출산 대책의 범주에서 제외하거나 본래의 정책범주로 환원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	-	044) 202-3370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의 독립채산제 운영

1. 현황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질 높은 서비스 수급, 제공인력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처우 개선, 그리고 시설·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한다고 함⁷⁸⁾
 - 진흥원은 보육과 장기요양에 대한 국공립시설 직접 운영,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센터 운영,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이에 소요 재정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시·도 진흥원의 본부 재정은 신규 사업으로 별도 국고 지원하고(개소 당 연평균 36억 원)⁷⁹⁾, 시·도 본부 산하 국공립시설, 재가서비스 제공기관,

78) 보건복지부,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 2018.4.11.

공공센터 등 각각의 개별 시설들은 자체 수입을 토대로, 즉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함

-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2호, 2012.8.7. 시행)을 민간 개별 시설들에까지 적용하여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2012.1.26, 일부 개정) 제2조(정의) 1.다. 「노인복지법」이 추가됨으로써 동법 상 설치·신고된 민간 장기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적용되고 있음
 - 법인·시설의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무관련 주체(대상)도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민간 시설의 장까지 확대되어 있음

2. 문제점

- 민간 시설들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물론 일부 장기요양서비스 대규모 민간 시설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요양보험 수가로 수입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중소 규모 시설들은 현행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수익 추구’ 관행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근무 시설에 따라 임금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⁸⁰⁾ 이는 민간 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가 국공립 시설 위탁인데, 위탁이 취소될 경우 직접 고용한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듯함

3. 개선방안



- 경영난에 직면한 민간 시설들을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형태로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임

79) 본부 재정은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인건비 등은 시·도 진흥원 70명 규모로 운영 시 소요 예산임

80) 제공인력 간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운영비 등 지출액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특히 장기요양시설 등)

- 더불어 진흥원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되 운영 실적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민간 시설들을 퇴출하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도 있음
- 국공립 시설 위탁 대상을 민간에서 진흥원으로 적극 변경함과 동시에 민간 시설의 재정운영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공립 시설과 민간 시설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중소 규모 민간 시설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재무회계규칙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만우	02) 788-4720
관련 부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 202-3250

 **행정입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의 업무 명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이 이를 발견할 때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요청할 수 있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해서 정신질환 의심 자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신청 외 다른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요원에게 환자의 병원 이송 시 동승 요청, 병원 이송 후 보호자의무자 역할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어느 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⁸¹⁾에게 정신질환 의심자의 진단과 보호

81) 정신건강전문요원 소속 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보건소 등

를 신청해야 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전문요원에게만 신청이 물리고 있어서, 센터의 한정된 인력으로 환자의 입원 진행 절차까지 동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한편, 대부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병원 동승 시에 난폭한 환자들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기도 함

2. 개선방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신분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환자의 진단과 보호 신청 외 병원 동행 및 입원 진행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입 수준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주고, 이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환자 이송 시, 시·군·구청장, 119구급대, 경찰 등의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환자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서 119구급대원에게 요청하고 필요 시 경찰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044) 202-2863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2007년부터 보건의료전문가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출발하였음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취약인구집단에 초점을 두고 방문간호와 관련된 보건관계 직군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적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13년부터 본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의 선택사업⁸²⁾으로 진행된 이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행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드러남⁸³⁾
 - 정책집행자와 기술지원 기관과의 의사소통의 부재, 사업대상자의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 대두,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제기되고 있음
 - 본 사업의 전담인력이 타 업무에 차출되어 타 사업에 투입되거나 인원이 축소되고 양적으로도 사업이 축소되었음
 - 전담 인력들의 고용 불안정과 부적절한 처우로 업무가 비연속적,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공석이 있어도 인력을 보충하지 않는 인력수급의 문제도 발생함
 - 한편, 2015년 읍면동 허브화사업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 사업과 목적, 대상자, 서비스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역할을 갈등을 유발함

2. 개선방안

- 첫째, 지역보건 내 여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지침의 표준화와 사업의 정형화가 필요하며, 전담 관리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업무의 질적 관리를 향상시켜야 할 것임
 - 보건사업 내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서울시 찾아가는 동 서비스와 읍면동 허브화사업과 구별되게 독립적이고 표준화된 지침이 필요함
- 둘째, 2016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목표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중점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취약한 계층(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어서 보건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빈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계층

82) 2018년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필수사업으로 전환됨

83) 최상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력 처우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회(윤종필의원 주최)』, 2018.3.6.

의 집중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함⁸⁴⁾

- 셋째, 방문간호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인력 채용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임
 - 현재, 인력 채용에 있어서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준은 명확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호사의 부재를 이유로 간호조무사나 다수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⁸⁵⁾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 202-2808

 **음주장면 및 주류 광고 폐해 예방**

1. 현황

-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위해가 광범위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는 개인적 문제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 규모가 압도적으로 높아 폐해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음⁸⁶⁾
 -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하루에 50g 정도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 암 발생의 위험이 2~3배까지 증가함
 - 20개 약물들(헤로인, 코카인 등)의 위험성에 관한 전문가 조사 결과, 다른 마약류에 비해 타인에게 끼치는 폐해의 점수가 매우 높음(알코올 46점, 헤로인 21점, 크랙코카인 17점)

84) 이성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Weekly Issue』 제18호, 2017.5.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5) 최상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치우개선 및 발전방안 토론회(윤종필의원 주최)』, 2018.3.6.
 86) 이희중, 「효과적 절주홍보캠페인의 방향과 과제」, 『KHP Issue』제052호, 018.2.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2017년 상반기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총 41편, 845회차)의 음주 장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⁸⁷⁾
 -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총 41편, 845회차에 등장하는 음주 장면은 715회로, 편당 음주 장면 방영 횟수는 0.8회로 거의 매 편당 음주 장면이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6년에 비해 증가한 것임
 - 전체 음주 장면의 32.4%가 워샷을 하거나, 폭탄주를 마시거나 폭음을 하는 등 위험 음주를 표현하고, 전체 음주 장면의 35.2%가 술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였음

2. 문제점

- 미디어가 현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특히 청소년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호기심이 높아 성인에 비해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음
 - 미디어에서는 음주를 매력적·성공적이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 시청자가 음주의 부정적인 결과 없이 긍정적 묘사에만 빈번히 노출될 경우 음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형성돼 음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디어 속 주류광고나 주류 마케팅 등의 노출은 음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음주 시작을 앞당기고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음주량을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되고 있음⁸⁸⁾

3. 개선방안

- 작년 11월에 발표된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모니터링 및 미디어 교육 실시가 필요함⁸⁹⁾
 - 가이드라인을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하여 음주장면 실태를 공론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작자인 방송 관계자와 시청자인 국민 스스로 음주 장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기르도록 미디어 교육 등에서 활용토록 함



87) 김동영, 「미디어 속 음주장면 방영실태 및 개선방안」, 『Weekly Issue』 제045호, 2017.11.2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88) 이재경 외, 「주류광고가 비음주경험 청소년의 음주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제40권4호 2012.12.,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89) 2017년 8월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으로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되었음

- 또한, 현행 청소년 보호를 위한 주류 광고 방송 제한 시간대 조정이 필요함
 - 현재, 주류광고는 청소년 보호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TV 송출이 금지되어 있으나⁹⁰⁾, 청소년이 TV를 시청하는 시간대가 주로 저녁 8시부터 12시 사이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광고 차단 효과는 부분적이기 때문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	-	044) 202-2861

 **간접흡연 피해 예방 강화** 

1. 현황

-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내뿜는 주류연(main stream smoke, MS)과 담배에서 직접 발생하는 부류연(side stream smoke, SS)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해 흡입되는 연기의 80%가 부류연으로부터 노출되고 있음⁹¹⁾
 - 또한, 부류연은 주류연보다 저온에서 타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양이 더 많으며, 간접흡연만으로도 비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8조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이행 조치를 해 오고 있음
 - 2012년에 모든 공공장소 내 금연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고, 2013년에는 일반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되기 시작하였으며, 담배연기로 가득 찬 당구장과 실내 골프연습장도 2017년 12월부터 흡연이 금지 되었고, 요즘 유행하는 ‘흡연카

9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2항 [별표 1] 제6호 가목 및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2 제1항 1호 가목

9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 금연지원센터 제출자료(2018. 4)

폐'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 업태도 2018년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 이렇게 지속적인 금연구역 확대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실내에서의 간접흡연노출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⁹²⁾

2. 문제점

-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있어서 개선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먼저,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⁹³⁾
 - 100% 담배연기 없는 환경 이외에 어떠한 환기시설, 공기여과장치 등으로도 담배연기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 없는데도, 담배업계에서는 끊임없이 '환기시설 설치'가 금연구역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금연구역 정책이 강화될 때마다 흡연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 흡연실이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흡연실의 출입문을 여닫을 때마다 금연구역으로 흡연실 내 담배연기에 흘러들어옴
 - WHO는 원칙적으로는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금연구역을 요구하며, 일부 흡연구역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WHO에서 마련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보지 않음⁹⁴⁾
 - 이를테면, 흡연구역에 설치된 강제 환기시설이 1㎡당 0.7인을 기준으로 최소 공기유입량이 초속 30ℓ 는 되어야 완벽하게 간접흡연이 차단된 금연구역으로 인정함
- 다음으로, 흡연실 설치뿐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함
 - 사업장이나 공연장 등 일부 공공장소는 규모나 수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흡연을 허용하고 있음⁹⁵⁾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장소 중 유흥음식점에 해당하는 술집, 나이트클럽이나 개인용 차량은 금연 조치가 전무함

92) 「우리나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정책의 현주소」, 『금연이슈리포트』총권 제51호, 2017.11.

93) 「우리나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정책의 현주소」, 『금연이슈리포트』총권 제51호, 2017.11.

94) 「2017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주요 결과」, 『금연이슈리포트』총권 제48호, 2017.8.

9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객석 수 300석 이상 공연장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임

3. 개선방안

- 금연구역에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필요하다면, 법령의 흡연실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한 행정지도 및 처분을 통해 금연구역 제도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호주 태즈메니아 주 보건부에서는 흡연실 지붕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만약 지붕 혹은 벽을 설치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50%를 차단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실외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을 그림으로도 제공하고 있음⁹⁶⁾
- 또한, 사업장이나 공연장 등의 공공장소의 경우, 규모나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흡연이 금지되도록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44) 202-2822

담배 경고그림 개선

1. 현황

- 우리나라는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한 이후 경고그림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안 도입을 추진하였고, 2016년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시행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10개 이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년마다 교체해야 하며, 경고그림은 상단에 위치해야 하는 등 경고그림 표기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 담배 경고그림은 흡연자들에게 금연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고,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예방

96) 이성규, 「실외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국내외 현황 검토」, 『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 2015.12.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⁹⁷⁾

- 캐나다 비흡연 청소년의 20.0%, 호주 청소년의 66.0% 이상은 경고그림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2. 문제점

- WHO FCTC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의 면적을 담뱃갑 포장면적의 50% 이상 할애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30.0%로 권고 최소 수준에 불과함
 - 또한, 경고그림 관련 법 규정 제정 당시에 가리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을 함께 마련하지 못하여 담배업계가 경고그림을 가려가면서 담배 판매량을 유지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3. 개선방안



- 경고그림의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경고그림의 면적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함
 - 경고그림의 면적이 확대되면 경고그림의 가독성을 높여 경고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담뱃갑 포장 디자인으로 인해 소비자가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호기심을 갖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⁹⁸⁾
- 또한, 흡연자 개인이 담뱃갑의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규제할 수 없지만, 상업적으로 담배 케이스를 대량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나 소매점 진열 시 가리는 행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 EU,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경고그림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음⁹⁹⁾

97) 김미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및 향후 규제방향」, 『Weekly Issue』, 통권27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7.6.

98) 「담뱃갑 포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52호, 2017.1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99) 노용철, 「담배규제를 위한 최근의 국민건강증진법안」, 『국민건강증진포럼』 통권3호, 2017.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	044) 202-2822

 **담배 유해성 조사 및 성분 공개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됨
 - 다양한 신종 가향담배, 전자담배 등이 시중에 유입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임
 - 쉐련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따라 ‘타르’ 및 ‘니코틴’의 함량을 측정 및 표시를 하고 있으나, 2중 성분 외 유해성분에 대한 측정, 첨가물·연기성분 등에 대한 포괄적인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유해성분을 분석하려고 해도 기업에 대한 일체의 성분 정보 제출 의무 규정이 없어, 담배회사로부터 함유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성분 분석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관련 입법이 논의 중이지만, 주관부처, 부처 간 성분 정보의 입수 방식, 입수한 정보의 공개 범위 등에 이견이 있는 상태임

2. 개선방안

- 담배의 성분 측정 및 공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전이라도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검증체계 등을 마련하여, 새롭게 출시되는 신형 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토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성분 공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법이 없는 경우에도 동 검증체계를 따르도록 행정규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강정책국 국고국	건강증진과 출자관리과	-	044) 202-2822 044) 215-5174

전자담배 및 쉐련형 전자담배 규제

1. 현황 및 문제점

- 전자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쉐련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만연함에 따라 전자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 전자담배가 초기에 흡연자들의 각광을 받은 큰 이유 중 하나가 금연구역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업계의 광고활동 때문이기도 함
 - 최근에는 필립모리스 (PMI)의 아이코스 (iQOS)로 대표되는 쉐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그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전자담배 액상 및 기체 상에서 지속적으로 흡입되면 폐, 만성호흡기 질환, 신장, 목 등 인체 손상 및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유기 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이 검출됨¹⁰⁰⁾
- 전자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로 인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이 조장될 위험이 높다는 것임¹⁰¹⁾

10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전자담배, 금연보조제가 아닌 담배입니다', 2015. 1. 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 존재', 2012. 1. 19.

101) 선필호, 「전자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의 현황과 향후 과제」, 『금연정책포럼』제15호 2017. 가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 미국의 경우 2011년에 0.1%이던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4년에는 9.2%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일반 쉐련 담배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전통적인 쉐련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비정상화(denormalization)’ 하는 데 장애가 되므로 전자담배를 일반 쉐련 담배와 동일한 정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유해성분 표시의 의무가 없고, 담뱃갑의 경고그림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주사기 그림 1종만 쓰이고 있어서 그 경고효과가 현저히 낮음
- 일반 쉐련 담뱃갑에는 폐암이나 뇌졸중 등 질병 관련 그림 5종과 성기능 장애, 간접흡연 등 비질병 관련 그림 5종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위험성이 중대함을 알리고 있음

2. 개선방안

- 쉐련형 전자담배에 주요 유해성분을 표시하고, 일반 쉐련 담배에는 표기하고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쉐련형 전자담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적게 포함되어 있고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하여 간접흡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임
- 전자담배와 쉐련형 전자담배 역시 담배이므로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안 되고, 유해물질이 적다고 해서 좀 더 안전한 담배라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강정책국 국고국	건강증진과 출자관리과	-	044) 202-2822 044) 215-5174



보건교육사 활용 미흡



1. 현황

- 우리나라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는 보건의료정책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사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연, 절주, 영양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2003년에 도입되었음
-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보건교육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학교, 사업장, 의료기관 등 보건교육이 필요한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0년~'17년까 총 9차례 국가자격시험 및 '13년~'17년까지 총 5차례 경력심사(3급→2급 승급)를 통해 12,946명의 보건교육사를 배출하였으나, 보건교육 현장 활용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자격증 취득 이후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표 1 보건교육사 배출 현황

(단위:명)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	
1급	합격	0	1	1	1	1	0	1	9	14
2급	합격	18	32	64	27	24	17	7	22	211
	승급	-	-	-	596	245	189	73	106	1,209
3급	합격	2,246	2,134	2,062	925	811	1,151	1,095	1,088	11,512
계	합격	2,264	2,167	2,127	953	836	1,168	1,103	1,119	11,737
	승급	-	-	-	596	245	189	73	106	1,209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 문제점

- 보건교육사 자격증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및 활용도가 부족하고, 자격증 등급구분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함
 - 보건교육사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최소한의 법정교과목 이수 및 국가시험으로 취득

가능한 3급 자격증이 대다수(98.1%)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교육사 1급~3급 모두 필기시험만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보건교육사 관련 법령¹⁰²⁾에서 보건교육사의 등급별 채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등급별 직무내용이나 보수 차원에서 차이가 없음

3. 개선방안

- 현행 1급에서 3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교육사의 응시자격을 상향조정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후 보수교육 및 인증제도를 통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현장 활용성을 제고하여 함
 - 미국, 일본 등은 지속적인 현장 요구도 조사를 통해 시험과목을 개선하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미국 매년 15시간 5년간 75시간, 일본 활동성평가 조건충족 매 5년 5단위 이상) 및 재인증 절차를 두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함¹⁰³⁾
- 또한, 보건교육사 인력을 활용할 채용기관 입장에서 사업별 효율적 인력 활용을 위해 업무내용 중심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	044) 202-2802

102)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103) 강창범, 「보건교육사제도 운영현황 및 정책제언」, 『Weekly Issue』제050호, 2017.12.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강창범,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제도 현황과 과제」, 『국민건강증진포럼』통권4호, 2017.7.,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



1. 현황

- 치아우식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불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WHO와 CDC(미국 질병통제센터) 등에서도 구강 내 적정 농도의 불소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고,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평생 동안 이익을 준다고 밝힘¹⁰⁴⁾
- 우리나라도 이러한 불소의 이점을 이용하여 불소용액 양치, 어린이 불소도포,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불소 함유 치약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구강보건법」¹⁰⁵⁾ 및 「국민건강증진법」¹⁰⁶⁾)

2. 문제점

- 만 12세와 만 15세에서는 각각 54.6%와 59.0%가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⁰⁷⁾
- 또한, 2017년도 외래 다빈도질병통계에 따르면, 구강관련 질병이 다음과 같이 상위를 차지함¹⁰⁸⁾
 - 질병별 환자수 순위에서, 10순위 내에 치은염 및 치주질환(약 1,518만명, 2위), 치아우식(약 588만명, 6위) 2개 상병이 포함됨
 - 영양급여비용총액 순위를 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위(약 1조 2,417억원),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5위(약 5,986억원), 치아우식 7위(약 3,526억원)로 나타났으며,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16년 대비 11.3%, 치아우식은 6.4% 증가하였음

104) 조은별, 「청소년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 권장」, 『Weekly Issue』제029호, 2017.7.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5) 「구강보건법」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12조(학교구강보건사업), 제18조의2(구강보건사업 진흥)

106) 「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제18조(구강건강사업)

107) 보건복지부 「2015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매3년 실시)」

108)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op/opc/olapHifrqSickInfo.do>) 2018.6. 추출

3. 개선방안

- 전체 인구 대상 불소 이용 사업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소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
 - 불소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저비용 방법이라는 것을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함
 -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구강 세정제 및 식이 보충제와 같은 다른 불소 함유 제품이 치아우식증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으로 확인되었으며, 어린이 및 성인의 치아우식증을 25% 감소시켰다고 밝힘¹⁰⁹⁾
- 또한, 수혜자 중심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불소 이용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불소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요구됨
 -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치아에 직접 도포하거나 트레이를 이용하여 도포 또는 이온도포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치주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여 치주질환의 진행을 억제하며, 불소도포를 하여 치근면 우식을 예방하고 시린 이를 방지함
- 나아가서, 적정 농도의 불소치약 생산 및 이용 독려도 필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에 치약제의 불소 함유 한도를 당초 ‘1,000 ppm 이하’에서 ‘1,500 ppm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¹¹⁰⁾, 치아우식증이 잘 발생하는 사람은 불소 성분이 1,000 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350~1,450 ppm의 적정불소를 배합한 치약이 생산·판매되고 있지 않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숙희	02) 788-4727
관련 부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	044) 202-2843

109) 조은별, 「청소년 등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 이용 권장」, 『Weekly Issue』제029호, 2017.7.20.,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10)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의약품 범위 지정」(식약처 고시)



저출산 정책 제시의 수요자 관점 반영



1. 현황

-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를 모색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생활 균형’,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고용·주거·교육의 구조개혁’,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등의 4대 추진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¹¹¹⁾
 - 향후 이러한 4대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방향에 따라 저출산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2. 문제점

- 이와 같은 4대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 방향은 그간 지적되어 왔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이와 같은 4대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방향은 제1차~제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체계 중심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답습하고 있음
 - 즉 4대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방향의 범주에 맞추어 제시되는 정책들을 결혼·출산 선택을 앞둔 당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관점에서 정책들을 제시하여 저출산 대책의 체감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상기 4대 추진방향과 세부 정책방향은 다양한 각각의 정책들에서 구현되어야 할 일종의 기준에 해당함.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러한 기준들을 갖고 정책을 이해하기 보다는 국가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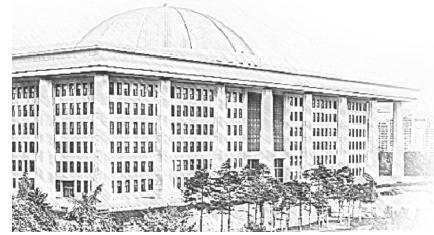
1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새정부 정책방향(<https://www.betterfuture.go.kr/pc/dire/dire1.php>)

고려해야 함

- 고용·주거·교육의 구조적 접근 외의 여타 정책들을 자녀양육가구를 위한 자원(resources)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범주화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의 3대 자원은 크게 현금(cash), 시간(time), 서비스(service) 등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¹¹²⁾,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들을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현금, 시간, 서비스의 범주에 따라 제시할 것을 제안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박선권	02) 788-4724
관련 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미래기획팀	-	02) 2100-1245

112) Engster, Daniel and Helena O. Stensota. "Do family policy regimes matter for children's well-being?", *Social Politics* 18(1), 2011.; Thevenon, Olivier. "Family policies in OECD countries: A compar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 2011.; Luci-Greulich, Angela and Olivier Thevenon.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 2013.; 김사현·홍경준, 「출산율 및 여성노동참여율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 정책균형관점에서 본 OECD 21개국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41(2), 2014.6. 재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도입



1. 현황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무분별한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임
 - PLS 제도는 농수축산물의 잔류농약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성분 외에는 불검출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일본('06), EU('08), 대만('08)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임
-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기준 설정, 새로이 재배하는 품종의 농약 기준 설정 등 잔류농약 기준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소면적 재배 농산물의 농약 직권 등록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결과를 반영한 잔류기준 설정을 하고 있음

2. 문제점

- 재배면적이 작은 소면적 농작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19년 1월 PLS 제도 전면 시행 이후 농민 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 및 관리감독기관의 제도 운용에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음
 - 2018년 직권등록시험은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 8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약 1,670개의 농약을 등록할 예정임

-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미흡함
- PLS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농약직권등록 결과 및 교육·홍보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농업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업인의 인지도는 낮고,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는 높은 상황임

3. 개선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품목별 등록농약 미비, 항공방제 등을 통한 비의도적 농약잔류, 저장성 품목에 대한 경과조치 등 PLS 제도 의무화 조치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PLS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새로이 직권등록하는 농약에 대한 정보를 농민이 인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파종 시기를 고려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품목을 지정하는 방안 등 병행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7월 중순부터 파종하는 당근, 무, 양배추 등 제주지역 월동채소 등 직권등록 농약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농약 판매상이 농약 판매 시 홍보하여 농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농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전면 실시 이후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부처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	김진숙	043)719-3854



해외 유전자변형 밀 발견 대응



1. 현황

- 지난 6월 14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캐나다 앨버타 주의 한 농장 주변에서 지난해 7월 발견한 밀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MON 71200)이었음을 발표함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날 캐나다 수입밀이 유전자변형 밀이 아님이 완전히 판별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8일 국내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 대해 수입 시마다 검사하여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이 검출되지 않은 것만 통관을 허용할 계획이며, 국내에 유통되는 캐나다산 수입 밀의 유통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2. 문제점

- 세계적으로 밀은 주식에 해당되는 곡물로 유전자변형 밀의 상업적 재배를 허용한 국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된 것에 대해 그 수출국에 통상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나 우리 정부의 조치는 국내 유통체계를 점검하는 수준에 그침
 - 2004년 이후 유전자변형 밀 실험을 중단한 캐나다에서 자생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전자변형 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 그동안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된 지역은 미국 오레곤 주, 몬타나 주, 워싱턴 주로,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임
- 캐나다산 밀·밀가루는 2017년 수입된 밀 중 9.2%, 수입밀가루 중 4.2%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이나 밀 수출국의 정보에 의존한 위해정보관리체계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울 수 있음
 - 일본은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발표 이후 신속하게 잠정 유통 금지 조치와 현지조사를 실시한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캐나다의 관련 발표 4일 후 민간단체의 성명서와 언론 보도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였음

표 11 캐나다산 밀·밀가루 수입 현황

연도	계		밀			밀가루류		
	건수	중량(톤)	건수	중량(톤)	점유율(%)	건수	중량(톤)	점유율(%)
2016	78	148,446	44	147,778	6.3	34	668	2.7
2017	107	227,214	65	226,355	9.2	42	859	4.2
'18.6.15.까지	46	90,072	26	89,683	8.3	20	389	4.7

* 전체 밀, 밀가루 수입현황 : ('16) 밀 2,329천 톤, 밀가루 25천 톤 ('17) 밀 2,454천 톤, 밀가루 20천 톤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13개국에서 밀 수입, 점유율은 전체 밀, 밀가루 중 캐나다산 비중

3. 개선방안

- 신속하지 못한 위해정보 관리는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위해예방 시스템 및 정보 관리 체계의 신속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조사나 정보 분석을 통해 식품위해정보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 주요 곡물수입국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농산물 자생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 그리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수입유통안전과	이수두 황정구	043)719-2210 043)719-6256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사후관리

1. 현황

-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며, 산란계 농장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제도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로, 계란은 생산 단계와 유통·소비 단계에서 각각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생산단계 인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유통단계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12월 ‘산란계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서’를 개정하여 살충제 검사항목 33개 항목을 추가함
 - 기존 평가항목은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닭고기와 계란 등 식용란의 살충제 검사항목(33종)

테트라코나졸, 클로르페나피르, 카타프, 티오싸이클람, 스피노사드, 디디티, 피프로닐(대사산물 1종 포함), 이미다클로프리드(대사산물 4종 포함), 비펜트린, 카바릴, 아미트라즈(대사산물 1종 포함), 프로폭서, 피리다벤, 디클로로보스, 이소펜포스, 메타미도포스, 메티다티온, 모노크로토포스, 포레이트(대사산물 5종 포함), 피리미포스메틸, 트리클로폰, 펜셀포티온, 다이아지논, 이버멕틴, 아비멕틴, 싸이퍼메트린, 페노뷰카브, 클로티아니딘, 에톡사졸, 페니트로치온, 플루페녹수론, 스피로메시펜, 설펡사를로르



2. 문제점

- 2017년 12월 ‘산란계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서’ 개정 이후 추가한 살충제 및 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농장의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2017년 12월 ‘산란계농장 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서’ 개정 이후 산란계 농장의 생산품(계란, 산란계) 대상 살충제 및 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추가한 살충제 및 농약 검사항목의 현장검증 및 사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식품안전정책국 인증심사본부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농장사료팀	오정완 김현식	043)719-2854 043)928-0121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1. 현황

-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함
 -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는 2년 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 지원 혜택이 있음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 좋음’ 등 3단계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함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1년간 총 1,078개 업체가 등급을 부여 받음
 - 2018년 6월 22일 기준 매우 우수 373개, 우수 395개, 좋음 410개소임

2. 문제점

- 정부 차원의 위생등급제 부여는 소비자에게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에 대한 신뢰를 기존보다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범음식점 지정 등 위생수준을 기본으로 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각종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평가체계나 지원제도, 사후관리면에서 차별성이 부족함
-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로 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는 영업으로 정부 주

도의 관리와 평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위생관리 등 영업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역량을 축소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

- 식품진흥기금 집행 등 각종 지원 혜택도 집행 및 관리 주체 측면이나 지원 내용 면에서 유사한 사업 내용으로 볼 수 있음

3. 개선방안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위생수준의 음식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한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지정제도 등을 통합하거나 단계적 지정·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업계의 유사사업의 중복 신청 및 지정 등의 불편을 해소하여 영업자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임
 - 실질적인 위생수준 향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각종 유사제도를 통합하여 단계별 지정 및 관리하고, 다른 유사제도들과 차별화한 지원 혜택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2016년 전국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수는 638,404개소로 위생등급 평가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 및 관리체계에서 영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위생등급제의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생등급제 신청 탈락률과 재지정 탈락률 공개, 소비자 단체 평가 참여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인증원	식품안전정책국 인증심사본부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유통인증팀	오정완 송경석	043)719-2854 043)928-0131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관리



1.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에 대한 신뢰성 있는 국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수준 확인, 확산 감시, 정책 수립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음
 - 2018년 주요 사업내용은 2017년과 유사한 국내산 및 수입축산물에 대한 항생제내성 실태조사 확대 수행(1,500건), 식품 유래 대장균, 살모넬라의 항생제내성 및 내성유전자 DB 구축, 2017년도 항생제내성 모니터링(실태조사) 공동 보고서(가축, 축산물) 발간(6월), 2017년도 비임상분야 항생제내성 안전관리 추진결과 보고서 발간(4월)임
- 축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은 축산물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휴약기간 준수를 유도하고 식품체인(생산-유통-소비)으로의 이행 차단을 위해 축산물 항생제 잔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됨

2. 문제점

-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가 생산단계(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통단계(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데이터에 기반한 축산물 항생제 내성 관리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발표되는 연구 결과가 항생제 내성 관리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축산물 중 식육(2000년)·식용란(2005년)은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을 운영하여 항생제 등의 잔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원유에 대해서는 NRP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 제3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임('16.7.1.)됨에 따라 '17~'20년까지 식품기인 항생제내성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개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 항생제 내성 국가자료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과 실험역량,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역량 향상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3. 개선방안

- 축산물의 생산단계(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통단계(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연계되는 항생제 내성 관리체계를 갖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항생제의 국내 생산, 수입 및 유통에 관한 관리체계와 소비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도 체계화하여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관리 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축산물의 항생제 내성 연구결과가 축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과 실험역량,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축산물 중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대상이 아닌 원유 등 유제품은 신속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식품기인 항생제내성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보급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평가원	식품소비안전국 식품위해평가부	농축수산물정책과 미생물과	안영순 관효선	043)719-3203 043)719-4301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WTO 상소 후 대책

1. 현황

- 2011년 일본 도쿄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잠정적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WTO에 제소하였음
 -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치 중 ① 8개현의 28종(전북, 알래스카 명태, 날개·눈·참·가·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참연어, 멧게, 방어, 살오징어, 전

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쾡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황새치, 밤나무·참·대문어) 수산물 수입 금지 ② 세슘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임을 주장함

- 일본 정부는 상기 조치들이 SPS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 ② 무역제한성(제5.6조) ③ 투명성(제7조 및 부속서) 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 조항 위반임을 이유로 WTO에 제소함

□ 올해 2월 22일 WTO 분쟁패널(DSP)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하였음

【 표 2 】 WTO 한-일 수산물 분쟁 패널 판결 요지

쟁점	관련 규정	판정내용	WTO협정 합치여부
차별성	SPS협정 제2.3조	• 일본산과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거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불합치
무역 제한성	SPS협정 제5.6조	• 세슘 기준 검사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적정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및 기타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불합치
투명성	SPS협정 제7조·부속서2	• 한국의 기타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 누락,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사례 등은 투명성 위반	불합치
검사 절차	SPS협정 제8조·부속서3	• 한국이 요구하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합치

□ WTO 한일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패널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하였음(2018.4.9. 제네바 시간)

〈 분쟁의 주요 경과 〉

- 20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정부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 실시 (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품목 수입금지)
- 20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 후 우리 정부는 임시특별조치* 시행
 - * ①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구
 -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 (370→100Bq/kg)
- 2015.5.21 일본 정부, 우리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 제소
 - *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 ②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2018.2.22. WTO 분쟁패널(DSP)보고서 공개
- 2018.4.9. 한국정부 상소 제기

2. 문제점

- WTO 분쟁 패널의 판결요지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은 SPS협정 제2.3조 차별성, 제5.6조 무역 제한성, 제7조·부속서 2 투명성 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정보의 기밀성 유지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상소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 소요되나,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얻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입장임
 - 정부는 WTO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상소 결과 도출 이후 이행 절차가 진행되며, 상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단하여 대책을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임

3. 개선방안

- WTO 분쟁 패널의 판결요지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은 SPS협정 제2.3조 차별성, 제5.6조 무역 제한성, 제7조·부속서2 투명성 위반에 대한 대응 대책을 민관 전문가 그룹과 통상전문가,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상소 후 대응과정에서 소비자단체, 전문가,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상소 후 대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일본의 사고 원전 상황의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상소 후 결과에 따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음
 - 상소 결과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관리대책 마련 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위해예방관리 차원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시 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소비안전국	수입식품정책과 통상분쟁대응과 어촌양식정책과	김현선 신정훈 최용석	043)719-2170 044)203-5770 044)200-5610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식중독 관리



1. 현황

-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10% 이하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주요 임상양상은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Microangiopathic hemolytic anemia, MAHA), 혈소판 감소증(Thrombocytopenia), 급성신부전(Acute renal failure)을 일으킴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병원성대장균의 일종인 장출혈성 대장균(*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EHEC)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관리체계에 속함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최초 사례가 1982년 미국 오리건주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사 먹은 어린이들의 식중독 사건으로 알려져 일명 햄버거 병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 식중독의 원인은 햄버거 패티에 사용된 분쇄육에 오염된 대장균(*E. coli* O-157:H7; 장출혈성 대장균)의 사가독소로 추정되고 있음
 - 주요 원인식품은 O-157, O-154 대장균으로 감염된 쇠고기나 우유, 오염된 퇴비로 기른 야채 등으로 알려져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으로 보고된 환자 443명(2011~2016년)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74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환자는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였고, 전체 환자의 51.7%가 10세 미만 유·소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으로 진행된 경우는 총 24명(5.4%)으로 확인되었음
 - 0~4세 14명(58.3%), 5~9세 3명(12.5%), 10세 이상 7명(29.2%)으로, 5세 미만 소아에서 주로 발생했음(확진환자 13명, 의사환자 11명)

2. 문제점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5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병했을 경우 건강상 피해가 큰 식중독인데,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들 중 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 식품들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발병했을 경우 일반적인 식중독 신고 체계로 운영되어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체계임
 - 또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환자들에게 발병하기 쉽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체계임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식중독임
 - 1996년 일본에서는 이들 대장균에 오염된 퇴비에서 자란 배추의 절임식품을 먹고 8,00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바 있고, 독일에서는 대장균에 오염된 오이를 샐러드로 섭취하여 발생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과학적 인과관계를 밝히지는 못하였음

3. 개선방안

- 용혈성 요독 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우려 식품(분쇄가공육 등 축산물) 관리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특히 분쇄육을 사용하는 식품기업이나 외식기업, 그리고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 체계(HACCP)상 위해관리점(CCP)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 의심되는 사건이 발병했을 경우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식중독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어린이 식품과 식육제품, 생식용 과일 및 채소를 생산하는 기업의 식품안전관리(HACCP) 인증 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위해요소 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원인 병원균은 분쇄육을 덜 익히거나 오염된 채소를 익히지 않고 섭취하였을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급식 제공 시나 식사지침 보급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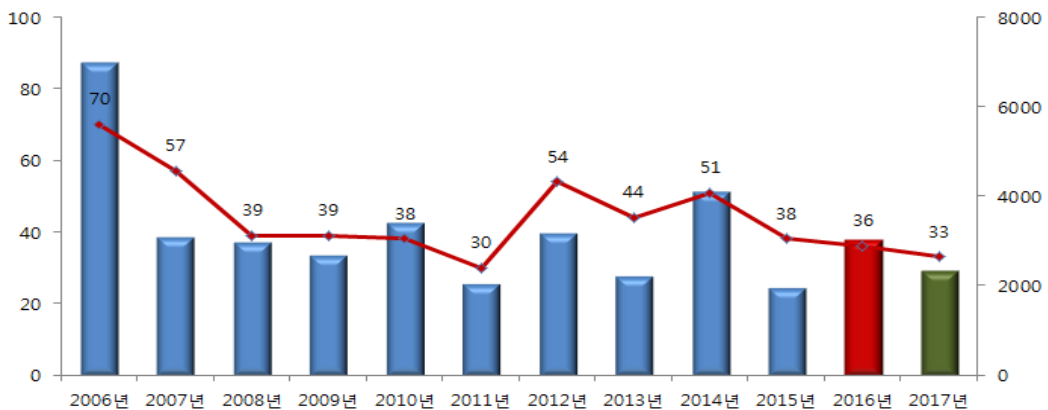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신영민	043)719-2101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

1. 현황

-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건수는 기온 상승, 폭염 등 급식 환경변화로 인해 2012년부터 매년 33~54건 정도 발생하고 있음
- 여름철 식중독 환자의 약 51%가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폭염기간 중(8.22~9.8) 식재료 관리 부주의로 19개 학교, 2,020명이 발병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33건이 발생함

그림 1 | 최근 5년('13 ~'17)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현황



- 학교별로 보면 주로 고등학교에서 발생(전체의 60%)하였으며, 발생 고등학교의 92.5%가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음



2. 문제점

- 1일 급식 제공 횟수가 많을수록 식중독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일 2회 이상 급식하는 학교에 대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상온에서의 식재료 관리 기준, 조리실 및 배식환경 변화 등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행되지 못하고 홍보 위주의 예방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학교급식 식중독은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시기별 원인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 홍보사업 위주로 식중독 예방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여름방학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34.5%), 노로바이러스(30%), 캄필로박터(9%), 퍼프린젠스(9%) 순으로 발생함
 - 병원성대장균은 최적 증식온도가 35~40℃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5월~10월에 증가하고,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15℃ 이하)에서 활성을 유지하므로 1~6월, 11월~12월에 증가하며, 캄필로박터는 닭고기 소비가 증가(초복, 중복, 말복)하는 5월~9월에 주로 발생하며, 퍼프린젠스균 식중독은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며, 급식 초기인 신학기 3월에 주로 발생함

3. 개선방안

-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계절별)에 따른 학교 식중독 예방 및 저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학교급식 식품안전관리(HACCP) 시스템에 식중독 발생 원인 분석(계절별) 결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 등으로 상온에서의 식재료 관리 기준, 조리실 및 배식환경 변화 등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1일 급식 횟수에 따른 학교급식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연중 발생하고 있는데, 지하수 사용률이 높거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의 학교급식의 식수 및 식품용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신영민	043)719-2101

 **기후변화 대응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체계** 

1. 현황

-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기존의 계절과는 다른 변화 현상과 주기가 나타나 식품 안전관리 기준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온도와 습도에 영향이 큰 생물학적 위해요소(곰팡이, 병원균 등), 해수와 담수 등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산물의 기생충 서식 변화 등에 대응한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문제점

-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업, 식품 및 외식산업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증장기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위해요소 확인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잠재적 위해 미생물의 탐색조사 및 시험법 확립 연구(2017~2019년)를 수행 중임
 - 실제 사업은 상승하는 기온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비하여 여름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마련(2018.6.14.)하여 관리하는 수준임

3. 개선방안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내 농수축산업, 식품 및 외식산업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의 범부처 식품안전분석협의체(IFSAAC)는 식품안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그 활용에 관한 교차적 우선순위를 다루고 연방의 식품안전 데이터 분석 통합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품청(US-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그리고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USDA-FSIS)이 참여하고 있음
- 국내 생산 식품과 수입식품류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미국의 범부처 식품안전분석협의체(IFSAAC)는 생물학적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를 ‘미국 내 다개년 감시 데이터를 활용한 살모넬라,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캄필로박터의 식인성 질환 원인 예측(2013)’ 보고서로 발표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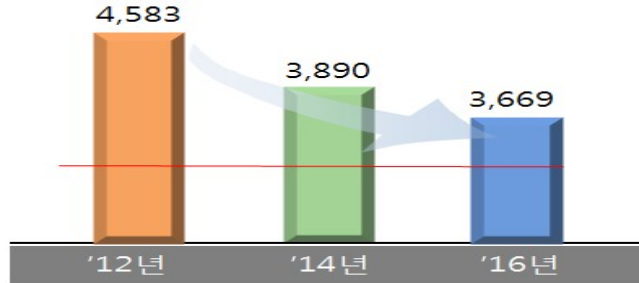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신영민	043)719-2101

✦ 나트륨·당류 저감화 사업 다각화

1. 현황

- 나트륨은 고혈압,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세계 각국은 나트륨 저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70조의7~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에 근거함
 - 사업 초기인 2012년 4,583mg이었던 국민 1인당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이 2016년에는 3,669mg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량 2,000mg을 초과한 수준임

그림 2 | 나트륨 1일 평균 나트륨 섭취량 변화



- 2020년까지 국민 1인당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 3,500mg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당류 저감화사업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2020년까지 1일 섭취 열량의 10% 미만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2. 문제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차 나트륨 저감 종합계획(’16년)’과 ‘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년)’을 수립하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과 식품산업계의 저감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이나 국민건강증진사업 등 타 정부부처의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계의 나트륨 및 당 저감화를 유인하는 정책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특히 당류의 경우 당 함량에 따라 당세를 부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나트륨과 당류는 장기간 과잉섭취 시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건강 위해가능영양성분이므로 타 부처의 관련 사업(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의 세대별 식생활 패턴 연구, 식품섭취 현황 연구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당·나트륨 저감화 정책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의 건강위해영양성분 저감화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인식 제고 및 나트륨 및 당류 섭취 적정량에 대한 교육 홍보 위주에서 실제 소비자의 입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장영주	02) 788-459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정용익	043)719-2252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시행 점검

1. 현황

- 정부는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관리하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17.5.18)하여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였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18. 2. 9)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사용 내역의 세부 보고 절차 및 시행일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마약류 취급의 보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정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함
-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 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전체 취급사항(수출입·제조·판매 등)을 보고·저장·모니터링하는 마약류 통합 보

고·관리 시스템을 말함

2. 문제점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 입력해야 하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됨
 - 환자의 개인정보 및 병명 등 의료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절차적 복잡성 및 업무 기중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처방을 위축시켜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임
- 일선 병원과 약국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적용 등 전산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행정 오류 및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단순 실수로 잘못 입력하였거나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 또는 착오 보고, 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은 일정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소 7일 이상의 업무정지가 될 수 있는 엄격한 처벌은 병·의원의 진료 위축을 초래할 수 있음
 - 시스템 사용자의 미숙한 활용으로 인한 불편과 이에 따른 보충인력 충원이 요구되어 인건비 증가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됨

3. 개선방안

- 마약류 취급 보고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급여 등 마약류의 사용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과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스템 사용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적정사용(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환자의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

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관리하는 환자식별 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마약류 취급 보고 과정에서 허위·조작 또는 반복 누락이 아닌 단순 착오보고나 실수로 인한 경우를 구분하여 진료권의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관리과	-	043) 719-2892

의약품 표시제도 문제점 검토

1. 현황

- 2016년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 등을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하도록 함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시행일(2017.12. 2.)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하고,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의약품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2018.12. 2)부터 적용함
- 「약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일반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표준서식 도안, 적용요령 등을 마련하였고, 의약품 전성분 표시방법을 신설하였음
 -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순서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첨가제 중 소비자 관심이 높은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을 표시한 다음 그 외 첨가제를 한글 오름차순으로 표시함

2. 문제점

- 소비자가 직접 성분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면 전성분 표시제도는 의미가 상실될 것이고, 성분 표시보다는 위해성분을 차단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즉, 의약품 전성분 표시는 관련 업계나 전문가가 아닌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다는 의견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는 성분의 종류와 함량표기만 의무화하므로 원료의 출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지적됨
 -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의약품의 필요 성분임에도 소비자 측에서 위해성이 있는 의약품으로 판단하여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이미지나 소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3. 개선방안

-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필요한 제도임
- 의약품에 기재된 성분명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아보기 힘들어 의약품 사용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정보 획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게 의약품 성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글자크기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과 지침에 있음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의약품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구체적인 복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	043) 719-2671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공급 문제

1. 현황

-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임(「약사법」 제2조제18호)
-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에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함
 - 2018년 5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항생제 26개, 항암제 14개 등 104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하였음

2. 문제점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필수적인 의약품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과 국가필수의약품을 선정하는 기준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구체적 관리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음
- 정부가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유통·소비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나 소극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적극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저가필수의약품의 미생산·미공급, 희귀필수의약품의 공급 거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의 수급 차질 등 의약품 생산·공급 단계에 기인한 접근성의 제약은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 왔으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보장하는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소비자인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정부와 제약회사, 유통업자, 환자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이 주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민관협력을 통해 의약품 생산 공급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급 부족 및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의약품들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민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민관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	043) 719-2640

✦ 의료기기 광고의 문제점 검토

1. 현황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
 -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심의기준·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헌재 2015.12.23. 2015헌바75)이 내려진 이후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완화하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면제하고 있음
 - 한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를 대해 법원의 위헌 제청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임

2. 문제점

- 인구고령화, 웰빙 라이프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소비자들이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거짓·과대광고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기 사업자가 사전 심의 받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심의결과를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
 - 현재 의료기기 사후관리 감시기관으로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고, 판매업·임대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 감시를 하고 있어 사후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임

3. 개선방안

-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행정기관에 의한 단속·정보제공 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전담요원 확대 등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법」상 금지광고 기준,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제·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판매업체 단속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소비자들의 안전한 의료기기 구입 및 사용을 위해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하고 효과적으로 배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기 또는 유사 공산품의 종류와 실제 피해사례를 예 시하여 소비자들이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	043) 719-3815

 **공급 중단 의약품 관리체계 개선** 

1. 현황

-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등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기 위해 도입됨
- 의약품 공급업자는 공고된 대상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 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 고하여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7년 기준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은 1,819품목임

2. 문제점

- 공급중단을 보고한 의약품 정보가 사전에 의료기관 및 환자 등에게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공급 중단되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부재함¹⁾
- 공급 중단되는 의약품의 대체약제 유무, 진료상 필수성 유무, 현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


인 대응방안이 미흡함

-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약품의 이용가능성과 구매가능성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급을 신속히 재개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 중단 또는 부족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급 중단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급 차질이나 개별 환자의 접근성 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약국, 환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공급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려면 정부, 생산자·공급자, 의료기관 및 약국 사이에 원활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정수정	02) 788-4726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	043) 719-2607

 **의료방사선²⁾ 피폭량 감소** 

1. 현황

- 방사선계 종사자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이 지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³⁾

1) 권혜영, 「국가 필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계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2017.
 2) 질병의 진단 혹은 치료과정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3) 질병관리본부, 『2015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2017.

-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015년 기준으로 0.39mSv(밀리시버트)로 2011년 0.56 mSv와 비교할 때 30.4% 감소하였음
- 일본(0.36 mSv, 2015년 기준), 독일(0.07 mSv, 2014년 기준), 영국(0.066 mSv, 2010년 기준)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임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⁴⁾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도록 하는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⁵⁾

2. 문제점

- 직업상 저선량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개인피폭선량 측정 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

3. 개선방안

- 의료방사선에 노출되는 종사자(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영상의학과 의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가 개인용 피폭선량계 착용, 보관, 파손시 신고 등 개인보호수칙을 엄수하도록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에게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할 책임을 보다 부과하여야 할 것임
- 미국식품의약청(FDA)은 방사선을 사용하는 기기, 환자 촬영과 동시에 사용된 방사선량을 제시하고 영상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등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음⁶⁾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02) 788-4725
관련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043) 719-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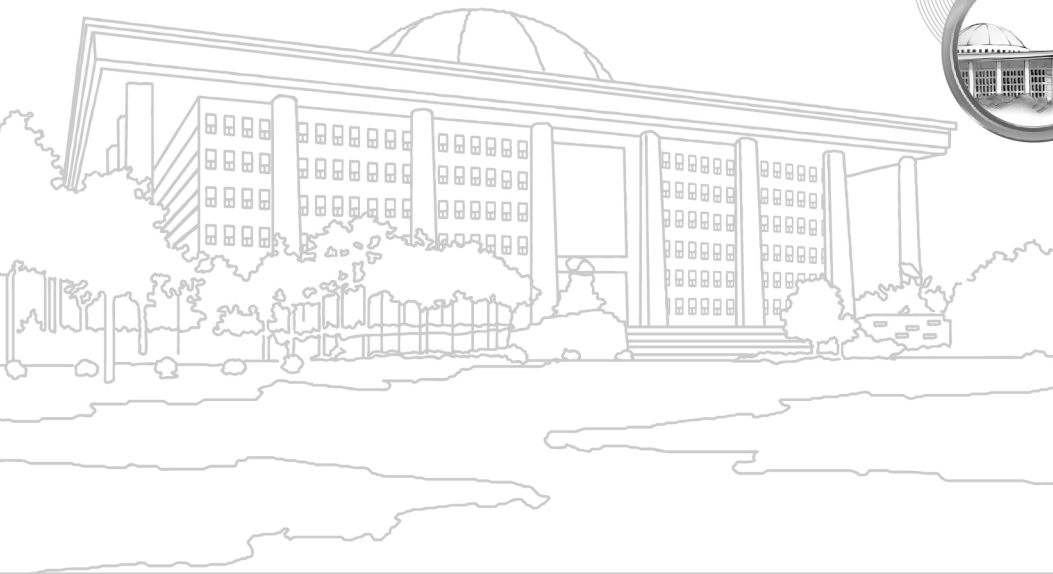
4)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치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포함한다), 유방촬영용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 등

5)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

6) <https://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nuregs/staff/sr0713/v38/> <검색일자. 2018.0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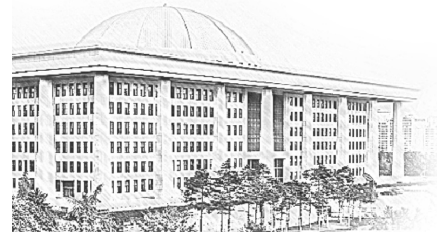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환경노동위원회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제



1. 현황

- 2018년 5월 2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3법’¹⁾이 의결되어 물관리 일원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의 조직에서 약 5천여 명의 인원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음

2. 문제점

- 국토교통부의 ‘수량’ 업무와 환경부의 ‘수질’ 업무 간의 일원화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인 ‘유역별 관리’를 시행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더불어 수량과 수질의 통합 이외에도 방재·안전, 농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에 대한 통합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3. 개선방안

- 「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통합물관리를 위한 효율적 업무추진 방안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²⁾

1) 「물관리기본법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조직을 포함한 중앙부처인 환경부와 산하 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해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환경부	수자원정책국	물환경정책과	-	044) 201-6192

4대강 보 운영 현황

1. 현황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지속되는 녹조 및 수생태계 영향 등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16개 4대강 보의 처리방안을 마련 중임
 - 2017년 6월부터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영향이 적은 6개보³⁾를 우선 개방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겨울철 수질악화 등을 보이는 7개 보⁴⁾를 개방하였으며, 2018년 3월에는 상주보를 추가 개방함
 - 2017년 5월부터 보 개방에 따른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 모니터링 추진 및 관계기관 합동상황실을 구성·운영함
 - 4대강 조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모니터링 자료, 기존 조사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4대강 보별 처리계획(안)을 2018년 말까지 수립할 계획임

2. 문제점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천 상·하류 지역, 정부와 지자체

2) 「물관리기본법」 제3장 및 제4장

3) (낙동강) 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4) (낙동강) 합천창녕·창녕함안보, (금강) 세종·공주·백제보, (영산강) 죽산·승촌보

체 간의 수자원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하천 생태계를 비롯한 경제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4대강 내에는 보 이외에도 다목적댐(조정지댐), 용수댐, 수력발전댐, 저수지 등 다수의 하천 시설물 간에 다양한 형태의 연계운영이 가능함
 - 하천유역 환경을 고려하고 보 건설로 확보된 수량을 활용함으로써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를 포함한 하천 시스템의 최적 연계운영 방안의 수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임
- 구조물 안정성, 수질·수생태계, 경제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보별 최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김진수	02) 788-4603
관련 부처	환경부	-	보개방상황팀	-	044) 201-7534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방안

1. 현황

-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하나이며 폐차 시나 배터리를 교환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보급된 전기차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 5,593대이며 이중 2017년도에만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추후 폐배터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때 주소지 시·도지사에게 배터리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납된 배터리의 재활용·분해·처리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규정이 없음

2. 문제점

- 중형전기차 폐배터리 및 대형에너지저장장치(ESS) 폐배터리의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이 지급된 전기차의 경우 폐차 혹은 수출 등 말소 시 해당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하나 전기차 폐배터리의 구체적인 회수 및 처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폭발성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지침이 부재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발화 및 폭발의 위험성, 낮은 내충격성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 지원방안이 필요함
 -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지원근거가 부재함
 - 전기차/ESS 배터리팩 해체가 어려움
 - 재활용업체에서 해체 시 인건비 및 해체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으며, 각 제조사 별로 크기 및 형태가 다양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운행중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한계 효용에 도달했다고 소비자가 판단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폐차로 차량이 말소되는 경우, 소유자가 중고차로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등 각각의 경우를 고려하여 관리체계를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전기차의 배터리는 현행법상 관리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되어야 함
 - 리튬이차전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함
 -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폐기물 코드를 지정하여 통계코드에 추가하여 관리해야 함
- 보조금 지급 ESS 폐배터리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ESS 크기에 비례하여 유가금속의 함량이 높아지는 만큼 최대한 유가금속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과	-	044) 201-6889

 **가축매몰지 종료선언을 위한 방안마련** 

1. 현황

- 2010~2011년 대규모 구제역 발생이후 현재까지 6,089개의 매몰지가 조성되어 약 4,700개 매몰지가 사체분해 확인없이 관리해제 되었으며, 2017년 11월 기준 1,169개 매몰지가 관리중임
- 매몰지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조류독감이 발생한 630개 농장중 500개소는 매몰처리, 130개소는 렌더링 등 비매몰처리 되었음

- 매몰한 후 3년간의 발굴금지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매몰지를 소멸시켜 재사용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높음
 - 그러나 매몰지의 소멸, 매몰부지 재사용과 관련된 행정적, 기술적인 기반은 취약함
 - 공기로 전파되는 가축질병 확산과 관련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발굴금지기간에도 병원체가 음성인 경우 발굴하여 열처리 및 소각이 가능함

2. 문제점



- 사체 및 잔존물 열처리의 규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축(死畜)을 이용한 퇴비의 품질기준 등이 없음
 - 가축매몰지는 미분해 사체 및 잔존물을 전부 발굴한 후 소각 또는 열처리(렌더링)하거나 농장 내 퇴비장에서 퇴비와 교반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가축사체와 열처리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함
- 매몰지 소멸 시 발생하는 잔존물 처리방법 및 그 과정의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동물의 사체가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되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하여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토양지하수 오염개연성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을 위하여 이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관련 지침에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
 - 또한 작업자 보건과 이설시 시행하여야 하는 차단방역 조치에 대한 언급도 불명확함

3. 개선방안

- 매몰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2차오염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어 국토의 매몰용량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매몰할 수 있는 가축사체의 매몰량과 매몰지의 개수, 이후 매몰지 환경에 대한 조사를 마련해야 함

- 가축질병으로 발생하는 사육과 매몰되어 있는 사육을 환경법규에 적법하도록 최종처분하기 위한 별도의 환경기초시설이 필요함
 - 구제역행동지침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지침은 가축매몰지가 존속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발굴금지가 해제되는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대량의 가축을 매몰하였고 매몰과정에서 규정준수가 어려웠으나 발굴과정에서 사체 잔존물 등 위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범위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가축생산단계에서 최종처분까지 일관된 기술규격을 제시하도록 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 따르는 보건상 위해성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후 매몰지 이용에 관한 평가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가축매몰지 관련 업무는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후에도 대부분의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되었고 매몰지 관리가 종료된 이후에 어떤 용도로 매몰지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제도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상하수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044) 201-7170

 **자연 유래 생활환경 라돈 관리방안** 

1. 현황

- 생활환경 중 노출 가능한 방사선 중 약 85%가 천연 방사선이며, 그 중 라돈이 총 노출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라돈은 토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천연방사성 물질(우라늄, 토륨, 리튬, 라돈 등) 중 하나이며 라돈은 우라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유해 방사선을 방출함
- 화강암은 우라늄과 라듐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강암 지대가 많은 우리나라는 천연 방사능 물질 함유 지질대가 넓게 분포되어 라돈 노출 가능성이 높아 라돈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 문제점

-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라돈에 대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주택 및 사업장의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없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실내환경에서 라돈에 대한 관리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됨
 - 밀폐된 실내 공기 중의 라돈이 인체노출 및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음
- 지하수 등 자연에서 유래하는 방사성 물질이 생활계로 노출될 수 있고 이를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부재함
 - 지하수 처리의 경우 방사능 농도가 10 Bq/g을 초과할 수 있어 수처리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은 규제 관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할 물질임

3. 개선방안

- 개인주택 등의 실내 라돈 기준 마련
 - 개인주택 등은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에어컨의 보급으로 밀폐된 환경이 많아 높은 라돈농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라돈 권고기준인 148Bq/m³을 개인주택 등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중이용시설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공간이 비교적 넓어 통풍, 환기 등이 잘 되고 있어 라돈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라돈기준이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지정된 것을 감안하면, 개인주택 등에 대한 기준은 ‘권고기준’이 아니라 ‘유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라돈 함유 건축자재 관리 기준 마련

- 라돈은 자연 방사선택종이 포함된 원석(인광석)을 사용한 건축자재에서도 발생하므로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라돈이 함유되지 않은 건축재료에 환경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 등 자연에서 유래하는 방사선 물질이 수처리 과정에서 농축될 수 있으므로 천연 방사성 산업물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U에서도 천연방사선택종이 함유된 산업분야에 지하수 여과시설(Ground water filtration facilities)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수처리 전후의 수질 내 방사능 농도, 필터 및 슬러지의 방사능 농도, 작업장 선량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오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044) 201-7170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현황

- 2015년 전국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135,653 톤/일에서 2015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173,304 톤/일로 약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축분뇨 관리의 자원화가 어려워지고 있음⁵⁾

5)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통계(2015년 기준)』, 2017.

-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은 돼지가 91천 톤/일(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소가 41천 톤/일(23.7%), 닭·오리 등 가금류는 17.3천 톤/일(10%) 등을 배출하였음
- 가축분뇨의 퇴비·액비 등 자원화 비율은 2010년 86.6%에서 2015년 90.2%로 3.6%p 증가하였으며, 퇴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은 80%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액비로 자원화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가축분뇨 발생량의 10.2%가 액비로 처리되고 있음
 - 가축분뇨의 정화방류 비중은 2010년 9.0%에서 2015년 8.7%로 소폭 감소하였고, 개별처리를 통해 정화방류하는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처리장을 이용하여 정화방류하는 비중은 6%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 문제점

- 일부 액비처리업체들은 처리단가를 낮추기 위해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퇴·액비를 살포하여 지역 주민들과 악취 관련 마찰을 일으키거나, 선충 피해와 농작물 질병이 발생하는 등 퇴·액비 품질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에서 퇴·액비는 계절에 관계없이 연중 생산되지만 퇴·액비 수요는 계절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저장하기 위한 액비저장시설이 필요함
 - 또한 지역별 가축 사육밀도와 퇴·액비 살포용 경지면적의 차이로 지역별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의 적정 시설규모 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가축분뇨 처리방법이 퇴·액비 제조에 치우친 결과 퇴·액비 제조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퇴·액비 수급 불균형 및 농경지 양분과잉,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악취·방역 등의 문제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지자체나 사업주체가 지역주민과의 협의 없이 법적 대응을 통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부지 선정 및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 일부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두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가축 분뇨로 인한 비료공급량은 질소의 경우 전체 비료공급량의 32%, 인산의 경우 52%를 차지함
 -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따라서 국내 환경 부하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축산환경 부하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분뇨로 인한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거나 지역 내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i) 가축 사육두수 감축, ii) 사양관리를 개선하거나 사료의 효율을 높여 마리당 분뇨 발생량을 감축하는 방안이 있음
 - 지역 내 오염부하량을 감축하는 방안으로는 i) 사료품질개선을 통해 분뇨 중 양분 함유량을 감축하거나, ii) 정화처리나 퇴·액비 처리 등의 분뇨처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방안 등이 있음
-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가 필요함
 - 가축분뇨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관하여는 여러부서에서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서 간 “부서협의회” 등의 상설 협의 기구의 마련이 필요함
- 가축분뇨실태조사가 필요함
 -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통해 가축분뇨 퇴·액비 및 화학비료 내의 양분의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축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35개 지역 중에 축산으로 인해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곳에 불과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	044) 201-7020



폐기물 고품연료(SRF) 적정관리 방안



1. 현황

- 폐기물 고품연료(SRF)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 폐기물 중 자원으로의 이용가치가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력발전시설, 시멘트소성로, 전용보일러 등에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품질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연료임
- 2016년 국내 고품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고품연료제품 제조시설은 246개이며 258개였던 전년 대비 공공 제조시설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16개 사업장이 폐업하여 감소세를 보였음
 - 고품연료제품 사용시설은 총 146개로 151개였던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함
 - 일반 SRF의 제조량은 약 106만 톤 (공공, 민간 포함), Bio-SRF의 제조량은 약 86만 톤으로 전년 대비 각 14%, 23% 증가함
- 정부는 증가하는 폐기물의 처리 방안으로 2008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고자 법령을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을 비롯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고품연료제품(SRF)에 대해 폐기물 재활용 또는 에너지회수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품연료제품(SRF)의 정의, 품질기준 및 사용시설의 종류, 검사기준을 규정하고 수입, 제조, 사용 등에 관한 신고 의무

를 부과하였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법적근거를 규정하면서, 태양광, 풍력에너지와 함께 SRF를 의무공급대상 에너지원에 포함함

2. 문제점

- 고형연료를 연소시키면, 미세먼지(PM_{2.5})를 비롯한 각종 유해대기오염물질(HAPs)가 다량 배출됨
 - 대기오염 첨단방지설비를 완벽하게 설치한 대형사업장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전체 배출업소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배출관리가 무방비인 나라에서는 대기질 악화로 이어짐
- 중소기업장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지키는지도 관리하기 어렵고 발생량 자료도 없어 국가통계에서도 항상 누락되어 있음
 - 현재 생활상 면(面)오염원 중 가장 우려되는 곳은 첨단방지설비 없이 고체 및 고형연료와 같은 저급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업소들이며, 또한 이들 저급연료를 난방 및 취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지들임


3. 개선방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 등)에서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해 신고제를 허가제로 명확히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현행 신고제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접수 후 신고내용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에 신고를 수리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
- SRF 발전시설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배출기준을 마련하고 대형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에 대해서 수도권에 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SRF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소각장에서의 온도를 일정범위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설립 후에도 배출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NOx, SOx, 다이옥신, 중금속 등 폐자원 에너지 시설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정확히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시설의 작업 및 환경안전 등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구축하고 이와 동시에 각 폐자원 에너지 시설의 환경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BAT(Best Available Technology)의 확대적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폐자원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폐자원 에너지의 재생가능 성분의 분석과 현재 생산 가능한 폐자원 열에너지의 활용확대, 그리고 바이오가스의 수요처 확대방안 구축 및 국가 폐자원 에너지 생산량의 명확한 통계방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	044) 201-6718

 수상태양광발전 확대방안 

1. 현황

-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2017년~2031년)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63.8GW까지 보급할 것을 계획이며 이중 태양광의 비율을 57%(36.5GW)로 공급하기로 함
- 태양광발전은 에너지밀도가 낮고 일사량·온도·지역에 영향을 받으며 면적집약적 산

- 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농지 또는 임야, 삼림을 훼손시켜야 하므로 에너지 생산효율이 낮음
- 이에 비해 수상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발전은 활용도가 낮은 댐, 호소, 저수지 및 강 등의 수면역(水面域)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임
-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은 3개이며 한국농어촌공사가 93개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 또는 건설 중임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총량은 2,500kW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전하는 총량은 약 2,938kW임

2. 문제점

-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근거가 법률에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공무원의 재량 행위를 과도하게 벗어나는 행태규제로 인해 수상태양광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 충주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합천이나 용담댐에 조성하려는 사업도 주민 민원해결이라는 이유로 진척이 미진함
 - 잠정적 내구연한인 20~25년이 지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전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영향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
-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부처간 통합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산업통상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그 80%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충당하기로 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타 부처의 미이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수면적 대비 발전시설 설치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수상태양광 환경협의체에서 임의로 시설물 설치면적을 ①연평균 기준 수면적, ②만수위 기준 수면적, 및 ③연간저수율 기준 대비 수면적 비율을 각각 비교·평가하고, 이중 가장 보수적인 환경상황에서 수면적 대비 5~10% 이내로 설치 면적을 최소화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임
- 신재생에너지 중 실질적으로 도입 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상태양광시설의 확대 방안 마련이 미흡함

3. 개선방안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설치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업자가 예측가능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수면적 대비 발전시설 설치면적의 적정성 확보 가이드라인으로서 각 시설물의 단위 유닛의 구조를 고려하여 각 유닛의 수면적 점유율을 조정하고 유닛 사이의 간격을 고려하는 등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변전소 및 송전선로는 국가 전력기간망으로 전력계통 전문기관인 한국전력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므로 전력시스템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이 급변하는 것에 따른 전력 수송로를 확보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수상태양광 시설에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설치, 운용 및 폐기 등 전(全)과정에 걸친 환경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증의 예측 및 관리방안의 수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기 운용에 따른 수상태양광 모듈, 부유체, 송배전선, 지지체 등 다양한 구조체의 파손 및 훼손 등에 의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행동요령 등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노력이 요구됨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큰 틀에서 사업타당성 및 입지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환경영향평가과	-	044) 201-7290



농촌 폐비닐 관리대책



1. 현황

- 농어촌에서는 미수거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 2015년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한 폐비닐량은 322,964톤이며 이중 하우스용과 멀칭용 비닐의 발생량이 각각 전년 대비 13.8%와 8.3% 증가하였음
 - 전체 폐비닐의 약 33%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음
 - 관행적인 폐비닐 소각으로 인해 건강피해가 가중됨
-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별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이장, 부녀회장 및 농민에게 수거보상비를 kg당 50~330원씩 지원하고 있음
 - 고품질 폐비닐은 고물상 등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이물질이 많은 저품질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여 민간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고 중간 처리 제품은 민간 위탁처리하고 있음

2. 문제점

- 현행 수거보상비 지급체계로는 수거에 한계를 나타냄
 - 수거효율이 높지 않은 산간·오지지역의 폐비닐과 수거가 어려운 폐기물은 미수거되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고령화, 인구 공동화 등으로 수거 참여인력이 부족하고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도 미약함
 - 국고지원금이 소액(10원/kg)이어서 수거 유인책으론 부족하며 지자체의 수거보상금은 평균 100원/kg이나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편차(50원~330원/kg)가 커서 주민 불만이 가중됨
 - 지자체는 예산 등 문제로 수거 인력·장비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수거보상비 지급, 연중 수거행사 실시 등 대책에만 의존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주체로서의

역할이 미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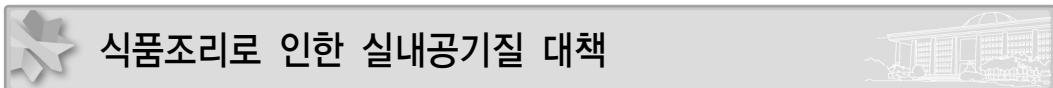
- 중간 민간수거업자의 부족으로 영리성 확보의 문제가 대두됨
 - 1~3개 시·군을 민간수거업자 1명이 담당하여 적기 수거가 곤란함
 - 민간수거업자 124명이 전국 16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음
 - 수거비용 보전이 낮아 생산성이 높은 지역 중심의 선택적 수거현상이 초래됨(오지 및 소량수거 기피 현상)
 - 민간수거업자 운반비 지급단가가 낮음
- 수거·처리 인프라 절대 부족
 -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11,943개소, 지자체 설치) 중 81%(9,737개소)가 공터 등 노천에 설치되어 환경훼손이 가중됨
 - 펜스, 컨테이너 등이 설치된 공동집하장은 19% 불과
 - 폐비닐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한 재고 적체가 나타남
 - 환경공단 수거량(약 18만톤/년, 재활용업체 수거 제외)에 비해 보유처리시설(13개)의 처리량은 61%(약 11만톤/년)에 불과함
 - 간이공정(건식 중간처리시설) 다수 운영으로 재활용 제품 품질이 저하됨
 - 폐비닐 재고 적체 해소를 위해 간이공정(건식)으로 대량 처리함에 따라 저품질 재생 원료가 생산됨
 - 습식 처리시설(약 3만톤/년) 재생원료는 고가로 유상공급하나 건식(약 8만톤/년)은 저가공급 및 재처리 위탁비가 수반되는 등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수거보상금의 지급단가를 정액화하여 수거보상금 제도의 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고 지원 수거보상장려금의 인상으로 농어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10원/kg을 과거 농림부가 지원했던 30원/kg으로 인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영농폐기물 책임인력제 도입으로 민간수거 활성화 관리·지원 기능을 제고하여야 함
 - 수거보상비 지급 위주에서 전담 책임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민간수거사업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민간수거사업자 운반비 지급단가 현실화로 소량수거 및 순회수거 기피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유류비, 인건비 상승 보전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인상도 필요함
 - 민간위탁 수거사업소 확충으로 관할구역 과대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재 164개 시·군에서 124명이 민간위탁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필요인력 확충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거 사각지대 등 모니터링 및 농어민과의 연락 체계 구축을 병행할 수 있음
- 농어촌 폐비닐은 사용자인 농어민이 책임을 가지고 수거체계에 동참하도록 교육하고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	044) 201-7360

 **식품조리로 인한 실내공기질 대책**

1. 현황

- 식품 조리 시 연소로 발생하는 공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폼알데하이드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임

-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직화구이(숯)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음식점의 가스조리 시에도 다량의 폐열 발생으로 인하여 실내 온·습도가 높아져 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최근 캠핑이 증가하면서 대형텐트 내에서의 조리로 인한 공기질도 문제가 되고 있음
- 또한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561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3.9%를 차지하는 것임
 - 여기에 폐 등 호흡기에 더 큰 자극을 주는 초미세먼지(PM_{2.5})도 연간 503 톤가량이 직화구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데 이 역시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4.2%에 해당함
 - 이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직화구이로 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경기 99톤, 서울 97톤임
 - 즉 구이음식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4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의 15.2%에 해당하는 것임

2. 문제점

- 고기구이 중 숯불구이가 철판구이에 비해 오염물질들의 생물성연소 배출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재료 종류별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초미세먼지(PM_{2.5})의 '주의보' 기준인 90 μ g/m³을 초과하는 것임
- 초미세먼지(PM_{2.5})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해서 폐세포에 축적되어 염증과 폐질환을 야기할 수 있고, 혈관에 흡착되어 심혈관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μ m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 발생률이 4.4%증가한다고 발표함
- 우리나라의 식문화 특성상 여름철 대형음식점에서 문을 열어놓고 조리를 하거나 호흡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오염물질 저감장치 없이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는 건강에 위해할 가능성이 있음
 - 탄화수소는 화석연료나 나무 등이 불완전연소해서 생기는 그을음을 말하는 것으로 호흡기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음식점이나 가정의 주방에서 조리되는 식자재의 종류 및 조리방법(튀김, 구이 등)에 따라 취기(냄새), 유증기 및 기타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실내로 다량으로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것임
 - 음식점이나 가정의 실내 평면형태, 조리방법, 환기패턴, 생활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내 오염물질 방출 특성 조사를 통하여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직화구이의 경우 음식점의 실외공간에서부터 조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들 영업이 밀집된 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레인지후드는 단순히 환풍기로만 분류되어 있으므로 KS 시험방법에 준하여 환풍에 대한 성능시험만이 수행되고 있음
 - 적어도 KS 시험방법에 미세먼지제거 성능검사가 포함된 레인지후드가 시판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	044) 201-679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방안

1. 현황

-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이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4단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빛공해방지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는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동

법 제5조에 따라 시·도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 환경부는 시·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도 체계적으로 인공조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사회·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야간 이용시설이 급증함

- 1998년 심야영업 규제시간 철폐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야간시설(문화관광, 스포츠·레저 및 공공) 이용이 활발함
- 서울시가 빛공해방지계획을 세우고 2014년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약 41%가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빛공해에 대한 국민 인식 증대로 눈이 부심에 대한 불쾌함 44.6%, 에너지 낭비 우려가 17.7%, 수면방해 및 신체리듬 변화에 따른 건강문제 염려가 12%로 규제 강화를 찬성함
 - 2009년에 비해 2014년에 서울시 빛공해 민원·분쟁이 2배 이상 증가함

2. 문제점

- ‘공해’라는 의미는 환경문제의 극히 일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현행 환경법이 규율하고 있는 환경오염·훼손의 개념을 포섭하지 못하는 개념임
 - 공해는 주로 보건위생상의 피해에 초점을 둔 개념으로서, “빛공해”라는 개념을 채용하는 경우 이는 인체 건강에 대한 피해를 포섭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태계에 대한 피해는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빛공해방지법 제2조에서 ‘조명기구’를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⁶⁾

6) 박종원, “빛공해방지법 제정의 법적 의의와 과제”, 『환경법연구』제34권 2호, 한국환경법학회, 2012

- ‘빛공해’의 오염원(source)은 다양한데 가옥에 의한 조명, 가로등, 보안등이나 옥외스포트시설의 조명, 광고조명이나 네온사인, 관광목적의 라이트업 등으로 정하고 있어 인공조명기구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지 예측하기 어려움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주체가 시·도지사로 되어 있으나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자체에 따라 일관성 없고 통일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될 우려가 있음⁷⁾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방법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만 따를 경우, 제3종과 제4종 사이의 경계지점 구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또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빛방사에 관한 측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법은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측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⁸⁾

3. 개선방안

- 과거 「공해방지법」에서 사용한 ‘빛공해’라는 용어 대신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음
- 광고·장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거나 외벽을 비추는 기구나 장치, 발광광고물, 네온사인 등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명기구의 유형을 몇 개의 영역으로 정하여 각 조명이 적용받는 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에만 따를 경우, 실제 빛방사허용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 있음
-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구역 지정에 앞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영향조사의 방법, 기준, 항목 등을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지정기준의 불명확성을 보완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특별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빛공해방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제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함

7) 환경부, 『빛공해 관리 선진화 포럼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 2015

8) 환경부 빛공해 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2015. 11. 23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빛공해와 관련한 측정기준, 측정기기, 측정기관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여야 함
 - 빗방사에 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측정대행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	044) 201-6793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

1. 현황

-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건설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국내 발생 전체 폐기물 중 약 50% 수준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2016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약 199,444 톤/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48%를 차지하며 전년도에 비해 0.6% 증가한 것임
 - 환경부 통계포털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97%라고 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간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함
 -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정

의하고 있음

- 여기서 ‘순환골재’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하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 정의되고 있음

2. 문제점

- 1인당 건설폐기물 배출량은 우리나라가 1.45톤/년인데 비해 일본은 0.56톤/년에 불과하여 우리나라의 주택 수명이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폐기물 발생단계에서 이물질이 혼합 비율을 적게 배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이외에 소규모 리모델링 현장에서 5톤 미만으로 배출되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폐기물의 무게가 5톤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그 재활용현황 등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 우리나라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현황은 통계자료 산출시 수집운반업이나 중간처리업으로 보내지는 폐기물의 양을 100% 재활용으로 산출되어 재활용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미비로 처리행위가 불법화되고 있음
 -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나 대부분의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제정된 시·군·구의 경우도 내용이 극히 형식적인 관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사법처리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신축되는 건축물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및 신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녹색인증제도를 구체화하여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가변성과 유지보수관리, 내구성 항목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 발생단계에서 이물질의 혼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 용도 그리고 분별해체가 용이한 시설물에 대하여 분별해체 단계별 의무화 대상공사를 정하도록 해야함
- 「건축법」, 「건폐법」에서 규정하는 관리규정에 건축법의 경우 멸실 단계에서 분별해체 공사 관련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건폐법에서는 발주자, 배출자등의 업무와 분별해체 공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가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에서 혼합건설폐기물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순환골재 제품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산업규격 및 GR 규격, 환경표시인증 등에 수록되어 있는 2차 제품 규격에 순환골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품질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건폐법 제2조제4호에 중간처리업이 규정되어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분리·파쇄·선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선별업”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간처리업을 ‘분리·선별업’과 ‘파쇄업’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임
-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이의 처리방법도 같으므로 시·군·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혼란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폐기물관리법」제2조(정의)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집·운반업자나 중간처리업자가 분리선별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
- 동일한 법규를 적용토록 하여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시·군·구의 혼란을 없애고 폐기물의 적법처리는 물론 시·군·구의 조례정비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법규미비로 인한 불법시비(사법처리나 행정처분)를 방지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김경민	02) 788-4732
관련 부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	044) 201-7350

 **미세먼지 용어 문제** 

1. 현황

- 정부가 2017년 3월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PM₁₀은 부유먼지, PM_{2.5}는 미세먼지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PM_{1.0} 이하를 초미세먼지,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흡입성 먼지’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란이 유발된 바 있음⁹⁾
- 정부는 2017년 11월 국민 혼선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다시 원래 명칭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미 환경부가 제시한 새 명칭을 사용하는 언론과 관련 업계가 있어 불필요한 혼란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¹⁰⁾

2. 문제점

- 용어상의 혼란으로 2017년 9월 제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있어서도 ‘미세먼지’ 대책이 PM_{2.5} 대책인지, PM₁₀ 대책인지, PM_{2.5}와 PM₁₀을 포괄하는 정책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움

3. 개선방안

- 「미세먼지 특별법」 등의 논의를 통하여 관련 용어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정책 설명 시 관련 용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푸른하늘기획과	-	044) 201-6871

9) 전준상, 「‘미세먼지’→‘부유먼지’로 명칭 변경…용어 세분화」, 『연합뉴스』, 2017년 3월 21일.

10) 이해완, 「환경부, ‘미세먼지→부유먼지’ 철회 “명칭변경 안한다”」, 『문화일보』, 2017년 11월 9일.

 **오존 관리 현황** 

1. 현황

- 오존(O₃)은 산소분자(O₂)에 산소원자(O)가 결합된 반응성과 산화력이 높은 기체로 햇빛이 강한 하절기 낮 시간에 질소산화물(자동차 등에서 배출)과 휘발성유기화합물(유제용제 사용 등에서 배출)의 광화학 반응으로 생성됨
 - (위해성) 인체에 기도·폐 직접 손상 및 감각기관(눈·코 등) 자극, 특히 건강 취약계층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문제점

- 오존의 특성상 1차 배출저감이 불가능하여, 예경보제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에 부가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려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한 질소산화물 규제, 미세먼지정책하의 경유차 배출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함
 - 오존 농도가 0.12 ppm이상일 때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역별로 발령하는 오존 주의보의 경우 최근 발령 횟수와 발령일수가 증가하고 있음

표 1 |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

(단위: 건)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횟수	64	164	139	134	247	276

- 연평균 오존 농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전국 261개 대기오염 유효 측정소에서 오존의 8시간 평균치 환경기준을 충족한 측정소가 없었음

【 표 2 】 오존 환경기준 달성현황 추이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오존의 8시간 평균치 0.06ppm 이하 기준 달성률(%)	2.5	2.0	0.8	0.0	0.4	0.0
오존의 1시간 평균치 0.1ppm 이하 기준 달성률(%)	59.8	61.9	35.2	37.5	50.8	26.8
오존의 유효측정소 현황 (개)	239	247	253	256	256	261

자료: 대기환경연보2016(2017년)

3. 개선방안

- 오존 발생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자동차, 공장, 화력발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와 오존이 함께 발생할 경우 건강에 더욱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푸른하늘기획과	-	044) 201-6875

✈ 경유차 정책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발암성에 대해 지적인 바 있음¹¹⁾

11) "IARC: DIESEL ENGINE EXHAUST CARCINOGENIC" (Press Release, 12 June 2012).

- 이에 선진국에서는 디젤 입자상 물질(Diesel PM)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

2. 문제점

- 디젤엔진에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더라도, 디젤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로 인한 PM_{2.5}와 오존 생성의 화학작용의 피해는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강력한 경유차 규제 정책이 필요함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경유차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의 2017년말 기준 ‘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경유차는 2011년말에 비해 약 290만대 늘어났고, 전체 등록차량에서 경유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1년말 36.4%에서 2017년말 42.5%로 증가함

표 3 연료 종류별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연료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16말	'17말
계	18,437,373 (100%)	18,870,533 (100%)	19,400,864 (100%)	20,117,955 (100%)	20,989,885 (100%)	21,803,351 (100%)	22,528,295 (100%)
휘발유	9,170,450 (49.74%)	9,276,235 (49.16%)	9,399,738 (48.45%)	9,587,351 (47.66%)	9,808,633 (46.73%)	10,092,399 (46.29%)	10,369,752 (46.03%)
경유	6,704,991 (36.37%)	7,001,950 (37.11%)	7,395,739 (38.12%)	7,938,627 (39.46%)	8,622,179 (41.08%)	9,170,456 (42.06%)	9,576,395 (42.52%)
LPG	2,429,298 (13.18%)	2,415,485 (12.80%)	2,391,988 (12.33%)	2,336,656 (11.61%)	2,257,447 (10.75%)	2,167,094 (9.94%)	2,104,675 (9.34%)
하이브리드	38,482 (0.21%)	75,003 (0.40%)	103,580 (0.53%)	137,522 (0.68%)	174,620 (0.83%)	233,216 (1.07%)	313,856 (1.39%)
CNG	32,441 (0.18%)	37,003 (0.20%)	39,708 (0.20%)	40,457 (0.20%)	39,777 (0.19%)	38,880 (0.18%)	38,918 (0.17%)
전기	344 (0.00%)	860 (0.00%)	1,464 (0.01%)	2,775 (0.01%)	5,712 (0.03%)	10,855 (0.05%)	25,108 (0.11%)
수소	-	-	-	-	29 (0.00%)	87 (0.00%)	170 (0.00%)
기타*	61,367 (0.33%)	63,997 (0.34%)	67,647 (0.35%)	74,567 (0.37%)	81,488 (0.39%)	90,364 (0.41%)	99,421 (0.44%)

* 기타: 기타연료(등유, 알코올, 태양열, LNG)와 피견인 차량(트레일러 등)의 대수를 포함

3. 개선방안

-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보건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젤 입자상 물질으로 인한 환경보건 피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교통환경과	-	044) 201-6933

유해대기오염물질 규제

1. 현황

- 1978년 「환경보전법」에서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지정하였고, 1991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정의하였으며 2006년부터 총 35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지정하여, 현재까지 특정유해대기물질은 35종으로 유지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을 규율하는 등 특정유해대기물질의 지정은 환경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2. 문제점

- 우리나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은 35종이며, 이는 선진국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지정 현황에 비추어 매우 적은 편임(미국 187종, 독일 230종, 일본 234종)¹²⁾

12) 김종호·이정주, 「우리나라 유해대기오염 물질 관리제도」, 『공업화학 전망』제19권 제1호, 2016년.

- 또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16종(테트라클로로 에틸렌, 클로로포름, 아세트 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벤조피렌, 아닐린, 사염화탄소, 프로필렌옥사이드,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히드라진, 벤지딘, 스티렌, 에틸벤젠, 이황화메틸)은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이 중 미국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은 10종(테트라클로로에틸렌, 클로로포름,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로니트릴, 벤조피렌, 사염화탄소, 프로필렌옥사이드,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히드라진)임
 - 독일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물질은 10종(테트라클로로 에틸렌, 클로로포름, 아세트 알데히드, 에틸렌 옥사이드, 아크릴로니트릴, 1,2-디클로로에탄, 벤조피렌, 아닐린, 사염화탄소, 프로필렌옥사이드)임¹³⁾
 - 참고로, 환경부는 2018년 8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테트라클로로에틸렌,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2-디클로로에탄, 클로로포름,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에틸벤젠, 사염화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나머지 8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2019년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개선방안

- 2006년 35종의 특정유해대기물질을 지정한 이후 인벤토리 구축의 미비 등을 이유로 2018년에 이르러서야 16종 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마련 계획과 인벤토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뒤늦은 대응으로 보이므로, 향후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관리과	-	044) 201-6912

13)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 설정 로드맵 수립』(환경부 외부용역보고서, 2016년).,



온실가스감축 로드맵 중 해외감축분 수정 논의



1. 현황

- 우리나라는 2015년 국무회의를 통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usiness As Usual) 대비 37% 감축 (이 중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를 포함함) 하기로 기존의 목표를 수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음
- 정부는 2018년 6월 2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공개하였으며,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4일 수정안을 확정함

2. 문제점

- 정부가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파리협정의 국내적 이행에 관련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하였지만, 기존 감축안 중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를 충족하기 위한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음
 -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필요한 5억 4천만톤의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데 8조 8000억~17조 6천억원이 든다는 분석 등이 제기된 바 있으며,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옴
 - 세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것이므로 목표 배출량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화력발전, 철강, 석유 화학 등의 업계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음
- 정부가 수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은 국내 감축량을 일부 늘리고 해외 감축량을 줄이기는 했지만, 산림흡수원 인정과 해외 탄소배출권 매수비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산림흡수원 관련 계획은 선진국 중에서 이 개념을 도입해 목표치를 제시한 경우도 없어, 국제사회가 받아들이는게 가능할지, 관련 국제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9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해외 배출권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¹⁴⁾

14) 「목표 감축량, 처음부터 무리였다...석탄발전소 증설도 '발목」, 『JTBC』 2018년 6월 29일

3. 개선방안

- 향후 국제협상의 결과 산림흡수원을 통한 상쇄 감쇄가 어렵게 되거나, 국제탄소시장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매우 상승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5



생활화학제품 관리 문제



1. 현황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도 생리대 발암물질, 살충제 계란, 라돈 침대 등 생활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음
 - 화학물질과 제품의 개발 속도가 빨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는 사전 대응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2. 문제점

- 2018년 3월 환경부는 2017년 9월~12월간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고, 세제·방향제등 11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회수·판매금지를 취함
 -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가 사용된 스프레이 탈취제의 적발에 대해, 적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애초에 사용이 제한된 PHMG가 탈취제에 포함된 것이 문제이며,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에도 PHMG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

이 제기된 바 있음

- PHMG가 포함된 경위에 대해 환경부는 PHMG가 부산물로 포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가 화학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비난을 받자, 제조사와 원료 공급사간의 PHMG 포함과정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중이라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짐¹⁵⁾

-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환경 안전정보 시스템 ‘초록누리’¹⁶⁾의 개선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어 2018년초 ‘초록누리’가 개편되었으나, 초록누리 사이트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¹⁷⁾

3. 개선방안

-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슴기 살균제 이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시 상품 출시 후 위해성 평가기능을 소비자원 등 제3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여 정부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견제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생활화학제품의 정보 공유 방식도 소비자들의 편익에 맞게 계속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소비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제품 전반의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화학제품관리과	-	044) 201-6825
			화학물질정책과	-	044) 201-6779

15) 「[취재설명서] 우리집 탈취제는 안전한가요?... “머느리도 몰라요”」, 『JTBC』, 2018년 3월 16일.

16) 초록누리 웹사이트 <<http://ecolife.me.go.kr/ecolife/>>

17) 이승균, 「개편 마친 환경부 ‘초록누리’, 문제 여전해」, 『미디어SR』, 2018년 3월 13일; 김효인, 「[기자수첩] 대총 만들고 자랑만 한 환경부 ‘초록누리」, 『조선일보』, 2018년 3월 13일.



동물 검역 강화 방안



1. 현황

- 현행법상 수출입과정에서 동물 검역은 지정검역물(조류, 포유동물, 수산생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음
 - 국내 수출입되는 동물에 대한 검역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음
 - 지정검역물은 조류, 포유동물, 수산생물이며, 구체적으로 우제류¹⁸⁾, 기제류¹⁹⁾, 개, 고양이, 토끼, 닭, 칠면조, 오리, 거위, 꿀벌, 원유, 수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 이식용 수산생물, 전복류, 굴 등이 지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한반도는 야생동물 유래 신종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 핫스팟’임
 - 네이처(Nature)지에 수록된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는 높은 인구밀도, 야생동물과의 접촉, 야생동물 신종질병의 고위험지역인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중국과의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 등의 요인에 의해 야생동물에서 유래하는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 핫스팟’으로 분류됨²⁰⁾
- 최근,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만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9월과 2018년 5월에는 부산항에서, 최근에는 평택항과 인천항에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가 발견된 바 있음
 - 피라니아, 황소개구리 등 위해우려종, 생태계교란 생물을 인터넷에서 양도 또는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함

18)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소, 돼지, 양, 기린, 낙타, 염소, 하마, 사슴노루 등)

19) 발굽이 홀수인 포유류(말, 얼룩말, 코뿔소 등)

20) 국립환경과학원, 『야생동물질병 연구체계 구축(II)』, 2014, p.2.; Kate E. Jones, Nikkita G. Patel, & Marc A. Levy, *Global trends i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Nature, Vol. 451, 21 February 2008. 재인용.

- 독성 및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서·파충류 등을 전시하고 있는 동물카페가 성행중임
- 현행 검역제도는 지정검역물(조류, 포유류, 수산생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정검역물을 제외한 동물(양서·파충류, 무척추동물, 곤충류)로 인해 발생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 및 야생동물 유래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 인수공통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양서·파충류는 지정검역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검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수입되어 애완·관상동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3. 개선방안

- 동물 검역 대상을 지정검역물(조류, 포유류, 수산생물) 이외의 동물(양서·파충류, 무척추동물, 곤충류)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검역은 가축의 전염병 및 수산생물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므로,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 질병과 관련없는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인수공통 전염병은 지정검역물 이외 동물(양서·파충류)에서도 발견되고 있고, 애완동물 등(무척추동물, 곤충류)으로부터 공중보건에 위해가 있을 수 있음
 -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검역 대상인 조류, 포유류, 수산생물 이외에 양서·파충류, 무척추동물, 곤충류에 대해서도 검역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지정검역물”을 규정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포함시키기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양서·파충류, 무척추동물, 곤충류 등을 다루는 법률에 검역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생물다양성과	-	044) 201-7243



등산로 산악오토바이(ATV) 규제



1. 현황

- 전국의 자연공원 등산로 및 도시공원, 둘레길 등에 산악오토바이 출입이 증가하여 등산로 훼손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전국 각지의 자연공원 등산로 및 도시공원, 둘레길 일대에 산악오토바이(All Terrain Vehicle, ATV)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등산로 훼손, 돌 튕, 소음·먼지 발생,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물질 배출, 등산객 부상 등 피해가 발생하고 등산객과의 마찰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문제점

-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는 이륜 이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출입 제한 규정이 있으나, 자연공원 등산로에서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출입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법 제49조제1항 및 시행령 제50조제5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법 제56조제2항)
 - 그러나 자연공원 등산로에 대해서는 산악오토바이 출입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관리 당국에서는 산악오토바이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 「자연공원법」에서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법 제27조제1항제1호), 이에 근거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인 산악오토바이의 입산을 규제하고 있으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자연공원에 산악오토바이 입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상위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무산된 바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 산악오토바이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거나 산악오토바이 이용객에게 등산로에서 내려서 지나가도록 행정 계도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개선방안

□ 자연공원 등산로에서 산악오토바이 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자연공원 등산로에서 산악오토바이를 이용하면 생태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숲길, 산림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등산객·탐방객의 이용을 방해하게 되므로 자연자원 보전 측면 및 등산객·탐방객 안전 보호 차원에서 자연공원 등산로에서 산악오토바이 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산악오토바이 전용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산악오토바이는 최근 증가하는 레저스포츠의 한 종류로서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스포츠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익을 무시할 수 없음
- 산악오토바이 이용객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산악오토바이를 전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코스 부족을 꼽고 있음²¹⁾
- 미국, 유럽, 스위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 세계 각지에서는 자연풍경이 좋은 교외지역이나 산악지역 등에 30분~3시간 코스 등 다양하게 산악오토바이 전용 코스를 조성하여 관람객을 모으고 있음
- 현재 산악자전거 전용 경기장이 국내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산악오토바이 전용 경기장·트랙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악자전거 이용객들이 경기도와 고창군에 조성된 산악자전거 전용 다운힐 코스를 이용하고 있고 이용객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벤치마킹해 산악오토바이 전용 코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1) 김홍민, 「산악오토바이 무법질주에 '트레킹 명소' 몸살」, 『경기신문』, 2017년 5월 31일자.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공원과	-	044) 201-7319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제도 개선



1. 현황

- 현행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제도는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자연공원법」 제77조에 따른 국립공원 토지매수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2001년부터 도입됨
 - 그러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하천법」 등 다른 법령의 토지매수청구 제도에 비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매수청구 당시,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어 토지매수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에 처함
 - 2002년부터 2008년 5월까지 3건의 매수를 완료하였고,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8건의 매수가 완료됨
 - 당초 판정기준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이었으나, 공원 내 토지에 대한 토지매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9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기준으로도 토지매수를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4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매수청구 제도 비교

구분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청구자격	-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법 제77조제1항)	-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 또는 - 해당 토지 등을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법 제10조의2제1항)
판정기준	- 토지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로서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자연공원 지정 이전의 지목 ²²⁾ 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함 (시행령 제43조)	- 판정기준 없음
매수절차	- 공원관리청은 매수청구 받은 토지가 판정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함(법 제77조제2항) - 공원관리청은 토지매수 청구일부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공원관리청은 매수대상임을 통보한 경우 5년 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함 - 토지매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법 제78조)	- 산림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토지 등을 매수하여야 함(법 제10조의2) - 토지매수 절차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함 - 토지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함(법 제10조)

2. 문제점

□ 토지매수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토지매수 청구를 받으면 완화된 판정기준으로 혹은 판정기준없이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받아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18개²³⁾가 있으며, 「자연공원법」의 개정 전 수준인 ‘개별

22) 매수청구인이 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 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 이전의 실제용도를 지목으로 본다(「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3조)

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공향시설법」, 「농지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공시지가 50%의 판정기준을 갖고 있는 법률은 5개²⁴⁾뿐이고 나머지 13개 법률은 판정기준에 개별공시지가 기준이 없거나 아예 판정기준조차 없이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국립공원 내에서 토지매수 판정기준에 못 미쳐 매수청구를 하지 못하고 재산권 침해 논란, 민원, 주민갈등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매수청구 규정을 폐지하거나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매수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초의 국립공원(지리산국립공원, 1967.12.29. 지정)이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지금,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실제 집행은 「자연공원법」 제76조에 따른 ‘협약에 의한 매수’에 포함되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매수청구 규정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매수적합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때에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전제로 매수청구시 매수가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²⁵⁾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연공원과	-	044) 201-7312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25) 환경부,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2008.12, p.251.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1. 현황

- 인수공통감염병을 포함하여 야생동물 유래 질병 방지를 위해 환경부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건립중임
 - 2014년 감염병 관리주체 개편으로 야생동물 유래 질병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주체가 됨
 - 환경부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광주광역시에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함)을 건립중이며, 2018년 9월 완공예정임

2. 문제점

- 연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확보 및 배치가 요구되고 있음
 - 연구원은 야생동물질병관리부, 야생동물질병진단실험부, 야생동물보건연구부로 구성되며, 야생동물질병관리부에 질병예찰과, 역학조사과, 방역대응과가 조직될 예정임
 - 질병예찰과 업무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가 필요함
 - 환경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질병예찰과의 야생동물 질병의심 사체 시료수집 및 방역 대응 업무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신고처리를 보조할 필요가 있음²⁶⁾
 - 현재 수의사관(수의장교, 공중방역수의사)에 선발되지 못하는 수의과대학 졸업예정자 잔여 인력이 있으므로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에 대하여 병무청과 협의할 여지가 있음²⁷⁾
- 그러나 현행법상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범위가 가축방역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원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26) 환경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질병예찰 및 세부 연구계획 수립』, 2017.10, p.72.

27) 환경부, 앞의 자료, p.73.

- 가축과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 감염병 관리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유업무로 수행되어 왔고, 업무범위가 가축방역업무에 한정되어 왔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공중방역수의사’란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의7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가축방역업무’란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가축방역·동물검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업무”로 정의하고 있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범위는 가축방역업무이며, 가축방역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
 - 「병역법」 제2조제15호에서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현행법상 연구원은 가축방역기관이 아니므로 연구원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가축방역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²⁸⁾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과 「병역법」을 개정하여 연구원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중방역수의사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가축방역업무로만 정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은 물론 공중방역수의사를 관리하고 있는 「병역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원에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8)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검사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연구원의 성격이 국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환경부	생물자원보전기관 건립추진단	-	-	044) 201-7260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 관리

1. 현황

- 현재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 멸종위기종 등이 정의 및 지정되어 관리중임
 - 현행법상 관리되고 있는 동물의 종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유해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시·도 보호 야생생물” 등이 있음
-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로서 누구든지 수입등을 하여서는 안됨
 -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거나 또는 수입되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가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하며, 2018년 6월 현재 21종이 지정되어 있음
 -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붉은불개미가 추가 지정됨
 -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함)하여서는 아니 되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물」 제2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35조제3호), 해당 생물종은 몰수함(법 제36조제2호)

- 다만, 학술연구 목적인 경우, 교육용·전시용·식용인 경우, 제한된 장소 또는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서 생태교육·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생태계에 방출될 우려가 없는 성체, 부화되거나 싹트지 않도록 처리된 알·종자 등을 식용, 식품가공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살아있는 생물로서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등을 허가할 수 있음(법 제24조제1항 단서)

□ 위해우려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동물로서 수입·반입시 생태계위해성 심사 및 환경부승인을 받아야 함

- 위해우려종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으로, 2018년 6월 현재 128종이 지정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피라니아, 사슴쥐, 작은입배스, 아프리카밭뜯개구리 등이 지정되어 있음
-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생태계 위해성심사 결과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승인을 받지 않고 위해우려종을 수입·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법 제35조제2호), 해당 생물종은 몰수됨(법 제36조제1호)

2. 문제점

□ 최근 들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고 있음

-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이 인터넷에서 거래중이고, 저수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피라니아가 발견되며, IUCN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인 붉은불개미가 항만에서 발견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과 위해우려종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 등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100 of the World’s Worst Invasive Alien Species)”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정되어 관리중인 종은 위해우려종 7종, 생태계교란 생물 4종뿐임
 - 뿐만 아니라 “IUCN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을 규제하는 법률이나 침입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위해우려종의 지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9월 부산항에서 IUCN 100대 최악 외래침입종의 하나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었을 당시, 붉은불개미는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18년 1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음
 - 정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의 지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하여, 이런 생물종의 유입·유통을 방지하고 위해를 저감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생물종 유기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 유입 단계에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위해우려종의 사육 실태, 분포 현황, 건강관리 실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체 번식으로 사육하다 시설기준 미비 등의 이유로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사육 중 유기되는 경우 등에는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보건, 환경오염, 심미적 저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생물다양성과	-	044) 201-7243



미세먼지 측정 가이드라인의 문제



1. 현황

- 정부 통계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장기적 추세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의 체감은 이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측정이 시민체감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된「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환경부, 2018)에 따르면,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설치 원칙적으로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10m 이하로 하되, 최대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음
 - 도시대기측정소로서 예외적으로 10m 초과 20m 미만 높이의 시료채취구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① 자치단체 소유 10m 이내 건물이 없는 경우, ② 10m 초과한 곳이 측정 위치의 대표성을 더 잘 나타낸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10m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대기오염측정망 평가위원회의 2/3 이상이 10m 초과 높이의 시료채취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2. 문제점

- 측정소의 높이가 논란의 대상이 되자 여러 지자체에서 기존 측정소 위치를 옮기고 있는데, 측정소를 이전할 경우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주의가 필요함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은 측정소의 이전을 기존 측정소와 동일한 측정망과 측정장비, 측정항목을 포함하며 측정자료에 연속성이 있을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나,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음
 - 도시대기측정망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신설, 이전 등 설치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그 지역의 NGO(2인), 대기 전문가(5인) 등 7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지만, 연속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하여 연속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높은 빌딩이 많은 큰 도시의 경우 낮은 높이의 측정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고 있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측정소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3. 개선방안

- 기존 측정소를 이전할 경우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유의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측정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도시의 경우 도심 공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과학과	-	(032)560-7261

대기오염 집중측정소의 운영 효율화

1. 현황

- 환경부는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파악하고 고농도 대기오염 현상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6개 권역(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권, 영남권)에 대기오염집중측정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경기권과 충청권에 집중측정소를 구축하고 있고 있으며, 향후 강원권에 추가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1 권역별 대기오염집중측정소 구축 현황

구 분	백령도 ('08.12)	수도권 ('09.7)	호남권 ('09.4)	중부권 ('10.10)	제주권 ('12.2)	영남권 ('13.2)	경기권 (구축 중)	충청권 (구축 중)
위 치	웅진군 백령도	서울시 불광동	광주시 오룡동	대전시 문화동	제주시 애월읍	울산시 중구 성안동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충남 서산시 수석동
설치목적	배경대기	도시대기	교외대기	도시대기	배경대기	공단대기	공단대기	교외대기
규모(m ²)	662	304	330	522	575	456	855	598

2. 문제점

- 정부는 집중측정소를 미세먼지 및 황사 등에 포함된 미량 유해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시설로 설명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집중측정소는 실시간 측정시설이 아님
 - 난이도가 높은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 장비의 가동률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료를 얻기 위해 장비의 관리시간을 충분히 배정하는 것이 중요함
 - 장비 가동률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다른 측정소와는 달리 종합적인 자료 제공 시설로서의 차별화된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3. 개선방안

- 단순히 집중측정소의 개수를 늘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집중측정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인력이 난이도가 높은 장비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대기환경과학과	-	02)3157-0370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오류

1. 현황

-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대기오염에 관한 국가 통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정부는 비산먼지 및 생물성 연소 등을 반영하는 등 꾸준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세먼지 배출량 산정 오류에 대한 지적은 계속 되고 있음

2. 문제점

- 우리나라의 관련 통계에서는 생활오염원 등 면(面)오염원에 대한 통계가 부실함
 - 수도권의 미세먼지 1차배출에 대한 국가통계에서는 ‘기타 먼오염원’ 항목이 전체 배출량 중에 1%에 불과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근거자료에서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2차생성 포함) 배출원 중 생물성연소항목이 4%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음²⁹⁾
- 참고로, 유럽 28개국에 대한 배출량 기반 미세먼지 배출량과 오염원 기여도 분석자료 (2015년 기준)를 살펴보면 먼오염원에 해당하는 상업기구 및 가계(commercial institution and households)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 | 유럽 28개국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비중

(2015년 기준)

주요 배출원	PM ₁₀	PM _{2.5}
비도로 교통 (non-road transport)	2%	2%
도로 교통 (road transport)	11%	11%
에너지 생산 및 분배 (energy production and distribution)	5%	5%

29) 상세한 내용은 이혜경, “대기오염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의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이슈』, 2018년 6월 18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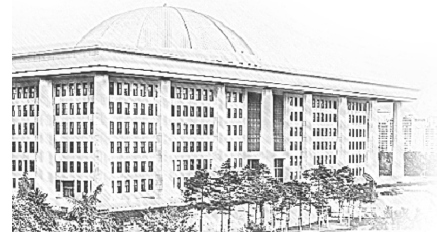
주요 배출원	PM ₁₀	PM _{2.5}
상업, 기구 및 가계 (commercial, institutional and households)	42%	57%
산업계의 에너지 이용 (energy use in industry)	5%	7%
산업공정 및 생산 사용 (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17%	10%
농업 (agriculture)	15%	4%
폐기물 (Waste)	3%	4%

자료: Air Quality in Europe -2017 Report (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7).

3. 개선방안

- 배출량 기반의 분산모델과 수용체 기반의 수용모델 값을 상호 검증하고, 외국 자료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배출량 통계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불법 소각 등 생활 오염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	지구환경연구과	-	032) 560-7326



고용노동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혁신



1. 현황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자리의 양적 변화¹⁾에 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병존하나, 일자리의 질적 변화²⁾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³⁾에 대해서는 커다란 변화가 촉발될 것이라는 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노동시장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시간과 장소측면에서의 업무상 경계가 무너지고, 비정형 근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기술변화로 정규교육과 시장수요와의 미스매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문제점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낮은 투자,⁴⁾ 직업훈련 서비스의 낙후된 질적 수준, 산업 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괴리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1) 일자리의 양적 변화: 신산업·유망산업의 일자리는 증가, 자동화·지능화가 가능한 일자리는 감소, 고숙련 업무에 대한 수요는 증가, 정형화된 업무에 대한 수요는 감소 등
 2) 일자리의 질적 변화: 숙련·기술·정보 격차에 따라 부와 소득의 재분배 가능성 등
 3) 일하는 방식 변화: 시간·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증가 등
 4)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68%로 OECD 국가 평균인 1.37%보다 부족한 수준이고, 이중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GDP 대비 0.36%로 OECD 국가평균인 0.55%보다 낮은 수준임(현대경제연구원, 「고용률 및 노동시장정책의 OECD 비교와 시사점」, 2017. 8.11)

3. 개선방안

- 이에 삶과 일터의 근본적 변화에 대비하여 유연하고 안전한 기회를 보장하며, 새로운 기술과 빠른 변화에 부합한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함
 - 이에, 평생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 미래사회의 직업에 대비하여 직업·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정규교육과 생산현장의 괴리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자리 변동성 증대에 따라 평생직장·평생직업의 개념이 약화되는 대신 구조적 실업을 극복하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	044) 202-7270

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제도 개선

1. 현황

-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구직)급여⁵⁾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5)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지만 언론, 노동시장 등에서는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실직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이며⁶⁾, 지급기간은 연령, 피보험기간, 장애유무에 따라 90~240일간임

2. 문제점

-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근로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모두 OECD 국가 중 최저수준⁷⁾⁸⁾으로,
 - (짧은 지급기간) 실업급여 평균 지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평균 미취업 기간보다 짧고, 단기 수급자(90·120일) 비율이 50%에 육박함⁹⁾
 - (낮은 소득보장성) 실업기간 중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급자 비율은 35.2%에 불과함¹⁰⁾

3. 개선방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유연화, 비정형 근로자 확대 등 일자리의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의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의 향상 및 지급기간의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소득보장기능 강화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인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그 강화수준은 실직자의 적절한 생활보장 수준, 소득보장기능 강화에 따른 구직의욕 저하 등 부정적 효과의 정도, 재원조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6) 1일 기준 상한액은 6만원이고,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90%(2018년 기준 54,216원)임



7) (지급수준) ▲오스트리아 50% ▲미국 53% ▲캐나다·핀란드 55% ▲일본 50~80% ▲프랑스 57~75% ▲독일·이탈리아 60% ▲포르투갈 65% ▲스페인 70% ▲네덜란드 75% ▲스웨덴·스위스·룩셈부르크 80% ▲덴마크 90%(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진화형 사회안전망 확대 연구」, 2016. 12)

8) (지급기간) ▲일본 90~360일 ▲미국 182~210일 ▲네덜란드 90~1,140일 ▲스페인 120~720일 ▲오스트리아 140~364일 ▲독일 180~720일 ▲스위스 260~520일 ▲덴마크 730일(한국개발연구원, 상계서)

9) '13년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지급기간(113일)이 평균 미취업기간(138일)보다 짧게 나타남(한국개발연구원, 상계서)

10) (실업기간 중 주된 가구소득) ▲동거 가족의 근로소득(46.0%) ▲**실업급여(35.2%)** ▲저축 등 기존 재산(11.2%) ▲퇴직금(4.1%) ▲비동거 가족의 도움(1.8%) ▲대출(1.0%) 순(한국개발연구원, 상계서)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044) 202-7349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급여 사각지대 축소** 

1. 현황

- 우리나라 실업보험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피보험자(사업주 및 근로자, 자영업자)가 기여금(보험료)을 일정기간 납부하여 기여요건¹¹⁾을 충족한 후, 해당 피보험자가 실업 상태에 직면할 경우 실업(구직)급여를 받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2. 문제점

-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는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미취업 청년을 들 수 있으며,
 -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는 피보험단위기간(기여기간)이 부족한 자, 자발적 이직자¹²⁾, 장기실업자(구직급여를 법정 기간 동안 수급한 자) 등이 대표적임
 - 특히, 초단시간·단기간 근로자가 주 2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유급근로일이 156일(18개월 545일×2일/7일=155.7일)에 불과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에도 기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11) 고용보험은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로 납입해야 함. 이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구직급여 기여요건(18개월간 180일)이라 함

12) 자발적 이직이라도 예외규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음

【 표 1 】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규모(2015년 8월 기준)¹³⁾

취업자 (2,614만명)			
비임금근로자 (683만명)	임금근로자 (1,931만명)		
	적용제외(306만명)	적용대상(1,626만명)	
		가입자(1,215만명)	미가입자(411만명)
제도적 사각지대		고용보험 수혜자	실질적 사각지대

3. 개선방안


- 이와 같이 광범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하여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바,¹⁴⁾ 이러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률 제고 노력과 함께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그 방안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자, 자발적 이직자 등에 대하여는 현행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고려할 수 있으며,
 -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미취업 청년, 장기실업자 등에 대하여는 실업부조제도¹⁵⁾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13) 한국개발연구원,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확대 연구」, 고용노동부, 2016.12.

14)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실업급여를 중심으로」(방하남외 1인, 사회복지정책 43권1호, 2016. 3),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한국노동연구원, 2011. 3) 등

15)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는 실업급여, 실업부조, 공공부조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실업부조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포함한 저소득 실업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로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그 재원을 조세(국가의 일반회계)로 한다는 점이 주된 특징임.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와 공공부조의 2층 형태로 고용안전망이 설계되어 있으며, 실업부조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의 형평성 제고 

1. 현황

□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이를 [별표 4의2]에서 등급별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음¹⁶⁾

2. 문제점

□ [별표 4의2]의 비고 2에 따른 등급별 응시자격 중 ‘졸업예정자’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임

○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따른 우리나라 대학의 수업연한¹⁷⁾은 4년 이상 6년 이하이므로, 기사등급의 경우 수업연한이 5년인 학과의 재학생은 대학 수업연한이 4년인 학과의 재학생보다 1년 이상을 더 재학하여야 기사자격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¹⁸⁾

1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제14조제7항 관련)	
등급	응시자격
기술사	(생략)
기능장	(생략)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3. (생략) 4. <u>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u> 등 또는 <u>그 졸업예정자</u> 5. ~ 10. (생략)

비고
1. (생략)
2.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3.~ 5. (생략)

17)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이수 교과목에 유사성이 있는 5년제 건축학과와 4년제 건축공학도가 예시될 수 있음

- 그러나 수업연한이 5년인 학과의 재학생의 경우에도 수업연한이 4년인 학과의 재학생에 버금가는 학업 성취를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¹⁹⁾에서 수업연한이 5년인 학과의 4학년 재학생 모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현행 응시기준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응시자격이 응시자 간에 동등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응시자격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평가과	-	044) 202-7292

19)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교과목 비교

학년	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년	건축의 이해, 미분적분학(1), 건축제도	건축구조의 이해, 건축과 환경, 건축표현기법, 건축기초설계	미분적분학(1), 건축의이해	미분적분학(2), 건축공학설계(1)
2학년	서양건축사, 건축설계(1), 구조역학개론, 공간계획과프로그래밍	근대건축, 건축설계(2), 건축재료와시공, 건축심리와행태, 디지털건축(1)	공학전산기초, 건축공학설계(2), 건축구조역학(1), 건축환경공학(1), 건설관리의이해	공학경제, 건축구조역학(2), 건축설비, 건축재료및구조시험, 건축재료및시공(1)
3학년	건축형태와표현, 건축설계(3), 친환경건축계획, 도시의이해, 디지털건축(2)	한국건축사, 건축설계(4), 건축구조계획, 도시공간론, 현대건축	수치해석, 건축공학설계(3), 강구조설계(1),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 건축재료및시공(2)	부정정구조해석, 강구조설계(2), 건축환경공학(2),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2), 건축공정관리, 건축공사비견적
4학년	도시디자인과행태, 건축설계(5), 건설관리, 건축공간론	단지계획, 건축설계(6), 건축설비, 설계이론, 건축구조시스템설계	확률및통계, 공학전산심화, 건축시스템설계, 구조계획	친환경건축설비계획, 건축연구
5학년	주거와행태, 건축설계(7), 건축법규와정책, 현장실습, 건축과문화	건축설계(8), 현장실습, 친환경통합시스템	-	-

※ 음영은 건축기사의 시험과목(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중 특정대학 건축학부(건축학 전공, 건축공학 전공)의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표시한 것임



해외취업지원사업 내실화 및 취약계층 지원책 강화



1. 현황

- 고용노동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해외 취업지원 사업²⁰⁾(K-Move스쿨 등)을 추진 중에 있음

2. 문제점

- 동 사업은 사업성과 저조,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로 인하여 국회로부터 지속적인 제도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²¹⁾²²⁾ 유사한 문제가 금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²³⁾되고 있음
- 또한, 소득계층의 이동성 확대 및 빈곤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훈련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동 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낮다²⁴⁾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동 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 관련) 동 사업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낮은 문제 관련) 정부는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이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일을 통하여 빈곤을 벗어날 있도록, 이들의 직업능

20) 2018년 기준 424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21) 2015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① K-Move스쿨 사업은 투입 예산액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K-Move 멘토단 사업은 멘토단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② K-Move스쿨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 ③ 해외취업연수지원사업의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할 것

22) 2017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K-Move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해외근로자들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JTBC, 「방 값조차 못내... 해외취업 부실지원에 우는 청년들」, 2018. 6.21

24) 2017년 해외취업지원사업 결산 기준 '저소득층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6.7%(5.4억원), 인원기준으로 4.6%(152명)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이들의 해외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에서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비중이 낮은 원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	044) 202-7494

고용보험 등 각종 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지속적 보완

1. 현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액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에 있음
 -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금액)²⁵⁾ : <’14년> 2.7만 건(234억 원) → <’15년> 2.3만 건 (217억 원) → <’16년> 3.1만 건(374억 원) → <’17년> 3.5만 건(388억 원)
 -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금액)²⁶⁾ : <’14년> 242건(384억 원) → <’15년> 222건(421억 원) → <’16년> 207건(429억 원) → <’17년> 203건(446억 원)
- 또한, 국비지원 훈련과정 및 사업주·근로자 지원금의 부정수급 건수 및 금액²⁷⁾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건수기준 1만1158건, 금액기준 200억 7,000만원에 달함

25)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보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2018. 4. 4
 26)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2018. 6. 1
 27) news1,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 등 부정수급 1만건...200억 '줄줄」, 2017.10.31

2. 문제점

-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금액의 증가는 양면적 해석이 가능한 사안으로, 정부의 방지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과 더불어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해석도 가능함
- 그러나, 실업급여 등 각종 급여의 부정수급이 야기하는 근본적 문제점은 이것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그리고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임

3. 개선방안

- 따라서 각종 급여의 성격을 고려하여 진입(선정) - 운영(집행) - 사후관리(제재) 각 단계별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 이러한 대책에는, 방지대책을 집행할 인적 인프라(컨트롤 타워 구축, 방지 업무 인력 확보 등), 방지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관리, 적발 및 신고 시스템 등) 및 방지대책의 작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포상제도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용노동부의 각종 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의 수법은 날로 지능화·내밀화하고 있어 수립된 방지대책의 수시점검과 적시성 있는 보완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	-	044) 202-7373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044) 202-7318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보험급여관리부	-	052) 704-7453



청년고용지원정책 인지도 제고



1. 현황

-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 등 청년(만 18세~34세) 1,6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청년고용정책 인지조사」를 실시함

2. 문제점

- 동 인지도 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조사대상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종합 인지도는 50.9% 수준이며, 개별 청년고용정책 사업별 인지도를 살펴보면,
 - 고용센터 81.9% > 워크넷 78.6% > 실업급여 76.3%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 일경험 프로그램 31.3%, K-Move 등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30.3%, 중소기업 추가 고용(2+1) 장려금 22.6%, 등은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최근 청년들의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종합 인지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²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청년고용정책을 모르고 있음
 - 2017년 인지도 조사대상 17개 항목 중 인지도가 50% 미만인 항목이 8개
-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의 대상자인 청년들에 대한 정책인지를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음

28) 2015년 27.9%, 2016년 48.3%

【표 2】 청년고용정책사업·프로그램별 인지도

구분	종합 인지도	인지도
취업지원	청년고용정책사업과 프로그램	50.9%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지원수당	59.8%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43.3%
	대학 취업지원서비스	53.8%
	워크넷	78.6%
	취업컨설팅 및 취업상담	66.8%
	실업급여	76.3%
직업능력개발 및 해외진출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강소기업탐방, 직무체험 등)	31.3%
	청년취업아카데미	32.8%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 및 훈련	36.8%
	HRD넷	32.8%
	내일배움카드	51.6%
	K-MOVE 등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30.3%
고용 및 근속지원	중소기업 추가고용(2+1) 장려금	22.6%
	청년내일채움공제	40.3%
	블라인드 채용	61.8%
정책전달체계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81.9%
	대학일자리센터	63.9%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우선과제는 일자리 질 개선」, 2017.12.27.

3. 개선방안

□ 2018년 기준 중앙정부가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6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짓수만 많은 고용프로그램이 오히려 청년들의 무관심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바, 청년고용정책을 통합 브랜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대안의 강구를 통해 청년들의 정책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²⁹⁾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환경노동팀	김진선	02) 788-4734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	044) 202-7466

29) 채창균외 3인, 「한국형 청년보장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10.28, p37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의 쟁점과 과제



1. 현황

- 우리나라가 장시간 근로의 국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2,052시간인 반면, OECD 국가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1,707시간에 불과함³⁰⁾
-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일·생활의 불균형, 일자리 창출 여력의 잠식 등의 주요 원인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임
- 노사정 간의 오랜 논의와 제19대, 제20대국회에 발의되었던 다수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어렵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됨³¹⁾
- 개정「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
 -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상한 확인 및 명확화(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산입)³²⁾
 -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의 축소(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의 도입)
 -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휴일근로 8시간 넘는 부분만 중복할증 인정)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의 유급휴일 법정화
- 정부는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³³⁾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 ‘노동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함
 -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①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조기단축 유도, ②노동시간 단축의

30) OECD, Stats.OECD.org(임금근로자 기준).

31) 2018. 2. 28. 국회 통과, 2018. 3. 20. 공포, 2018. 7. 1.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2) 여전히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이 원칙이며, 예외로서 12시간의 시간외근로가 허용됨.

33) 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관계부처합동, 2018. 5. 17.) 참조

일자리 창출로의 연계, ③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 특화 지원 등을 설정함

- 정책의 세부내용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확대·개편, △근로자 퇴직급여 손실 방지,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 양성 확대,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특례 제외 업종 등에 대한 지원·관리 등을 제시함



2. 문제점

- 개정법은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의 의의가 있으나, 개정법의 시행과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
 - 첫째, 근로시간의 개념과 산정 범위,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의 불명확한 경계, 근로시간의 측정과 관리 등의 혼선
 - 둘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 및 기업의 생산성 감소. 특히 중소기업에서 인건비 부담 및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됨
 - 셋째,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의 실효성 확보
 - 넷째,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제외 사업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 및 임금 감소, 근로시간·휴게시간의 배치 및 적용(예컨대, 노선버스업의 인력수급 및 임금 감소의 우려, 사회복지서비스업 및 보육사업에서 휴게시간 배치·운영을 둘러싼 혼란)
 - 다섯째, 단축된 근로시간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의 정책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모색
-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계도해 나가기로 밝힘. 즉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임
 -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추진의 의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시정기간의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함

3. 개선방안

- 개정법은,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잘못된 오랜 노동관행의 개선 등 사업장에서 큰 틀의 변화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함
- 먼저, 근로시간의 개념과 산정 범위, 근로시간·휴식시간의 경계, 근로시간의 측정 및 관리 등과 관련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제시와 지도가 필요함
 - 정부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특히,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일관된 해석과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근로시간법제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의 기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기준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다음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보전, 기업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제시된 대책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이에 대한 후속적인 보완이 필요함
 - 정부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근로자 퇴직급여 손실 방지 대책(평균 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인정), △조기 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모니터링 및 보완이 필요함
 -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통제 강화 등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근로감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관련 업종별 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은 현행 근로시간법제(예컨대, 휴게시간 규정)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활성화 등 보완대책이 필요함. 예컨대,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휴게시간 부여·배치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교대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및 근로시간·휴게시간의 배치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 202-7526 044) 202-7543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과제** 

1. 현황

- 휴일특근,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이외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소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법제의 적용 배제, △포괄임금제 등도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과 함께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근로시간법제의 적용 범위 확대, 포괄임금제 규율 등도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개정 「근로기준법」부칙 제3조, 제4조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및 관공서 공휴일 적용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적용실태 조사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2. 문제점

- 낮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률
 - 휴가는 기본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근로자에게 근로의 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시민으로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여가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나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률(사용일수-부여일수)은 낮은 수준임(2016년 기준 64.2%)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법제의 적용 배제

- 법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에 대한 제한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강행규정이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작용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률 제고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가 사업장 실정과 업무특성에 맞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연장근로 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2013년 기준으로 10인 이상 사업장(3,310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률은 4.8%에 불과함³⁴⁾
-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주(週)별 업무량 변동이 심한 업종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³⁵⁾ 등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률이 높아지고, 이로써 사업장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조정 및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개선 방안

□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개선되었으나(2017. 11. 9. 「근로기준법」 개정, 2018. 5. 29. 시행), 연차유급휴가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계획휴가제의 도입 등이 제안된 바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특히,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계획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



-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관련 실태 조사와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왔음

34)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 고용노동부

35) 예: 숙박시설 운영업(호텔·콘도 등), 오락관련 서비스업(놀이공원 등), 운송업(항공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 등), 계절관련 제조업(빙과류·전자제품 등) 등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근로감독 등 적용 상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범위 확대 논의는 이러한 실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률 제고 방안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관련 쟁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의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장근로 인정 여부임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가 도입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가 허용될 경우 특정기간에 장시간 근로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의 건강 악화 및 산업재해의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단위기간 확대와 특정 기간의 연장근로의 제한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 202-7526 044) 202-7543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대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1. 현황

- 임금산정방식의 원칙
 - 임금산정방식의 원칙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산정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려는 관행이 형성되어 왔음

□ 포괄임금제³⁶⁾의 개념

- ‘포괄임금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함
- 판례는, ‘근로시간·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시함으로써³⁷⁾ 포괄임금제를 인정하였음

□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 및 정부의 정책

-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제도가 아니며, 자의적인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음
- 현 정부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괄임금제의 규제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음

2. 문제점

□ 실제로 포괄임금제는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 2012년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중 표본사업장(1,001개소)을 대상으로 임금결정요인, 임금제도현황 등에 대해 「임금정보조사 시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17개소 조사대상 중 269개소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약 43.6%). 또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비율은 34.2%로 나타남
-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41.3% 정도

36) ‘판례들은 1970년대에 ‘기본임금을 기초로 가산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장의 관행을 인정하기 시작하여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학계나 법조계는 이러한 제도를 포괄산정임금제, 포괄역산임금제, 정액수당제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함. 널리 사용하여 온 ‘포괄임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37) 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⁸⁾

- 포괄임금제를 채택할 경우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산정 등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 고착화 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제한, 유연근로시간제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특히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를 과로사회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까지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3. 개선방안

-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판례법리는 오랜 기간 형성·고착화되어 왔음
 - 판례나 해석만으로는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한다거나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방지할 정도의 법리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음
 - 이미 포괄임금제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법률안³⁹⁾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함
- 한편, 제도 개선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 지침부터 우선 발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 202-7526 044) 202-7543

38) 정동관 외,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6, p.50. 자세한 실태 조사 방법은 보고서 참조.

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00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00600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현황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 개선 정책 추진 배경
 -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현황
 -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2017년 10월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2020년까지 20.5만 명 전환 목표 설정)
 - 2018년 5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⁴⁰⁾ 운영방안’ 발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
 - (전환대상 공공부문) 1단계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립교육기관(대상기관 852개소),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600개소), 3단계 민간위탁기관
 - (정규직 전환 기준의 원칙) 원칙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함. 이때 ‘상시·지속적 업무’라 함은,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정규직 전환 기준의 예외)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60세 이상 고령자 등), 업무 특성에 따른 사유(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고도의 전문성·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하거나 근로자가 전환을 거부하는 등)에 의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40) 사전심사제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하여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전환 절차) 전환 기구(기간제 근로 - 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 -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채용방식은 해당 업무를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 정규직 전환 또는 공개채용(제한경쟁/공개경쟁채용) 등을 채택함
- (전환 이후 조치) 기관 특성을 반영한 전환자 인사관리규정 마련,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급

□ 정규직 전환 실적

- 2018년 4월 말 기준 5만9천 명이 전환되었으며, 약 10만7천 명의 전환이 결정됨(잠정 전환인원 약 17만 명 대비 60.9%)
 - 전환이 결정된 인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가 60,826명, 파견·용역이 45,785명으로 나타남(전환된 기간제 근로는 46,063명, 파견·용역이 13,531명으로 조사됨)

2. 문제점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 정책의 대상 범위 확대(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포함) 및 전환 대상 기준 완화 등을 기준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⁴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⁴²⁾
 - 첫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존재함
 - 둘째,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의 경우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나타남
 - 셋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가피한 사유(인적 특성 및 업무 특성)가 동일하거나 유사 경우에도 기관에 따라 전환의 편차가 큼
 - 넷째,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하나로 제시된 자회사 설립·채용방식은, 여전히 간접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모회사의 직접고용, 자회사 소속 등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지속됨

41) 이장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현황과 과제」,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8. 5. 3.

42) 이주희, 「문재인 정부 1년 비정규직 및 사회적 대화 정책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p.23 이하; 황선웅,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문재인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와 과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산업노동학회, 2018.

- 다섯째, 전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임금체계 미비, 비정규직 기간의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3. 개선방안

-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에도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노력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생명·안전 업무의 범위) 및 전환 예외 사유에 대한 기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제한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 정규직 전환 절차(전환 방식, 채용 방식, 전환 기구에 대한 참여)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비정규직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경력 인정 등 근로조건 등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공무원노사관계과	-	044) 202-7647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현황

- 정부는 ‘차별없는 좋은 일터만들기’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과제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방식의 도입, △비정규직 사용 부담 강화 방안 마련,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 유도 등을 제시함
- 2017년 10월 ‘비정규직 로드맵’이 포함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함
- ‘비정규직 로드맵’의 주요내용
 - ①기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 방식에서 사용사유 제한 방식⁴³⁾으로의 변경, ②비교대상 근로자의 인정범위 확대, 합리적 차별사유 인정범위 축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 ③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입법화,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④원·하청 근로자간의 격차 완화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 방안 마련, ⑤비정규직 과다 사용 기업의 사회적 부담 확대를 위한 고용형태공시제, 기업공시제의 강화
- 그 밖에도 정부는 근로감독의 필수 점검항목에 비정규직 차별을 포함시키고, 불합리한 차별 사례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함

2. 문제점

- 정부의 정책 추진과 근로감독 강화에 따라 정규직 채용관행 확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효과가 있으나, 비용절감 목적의 외주화는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정부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확산 방지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 추진 경과, 이행 점검 등 세부 계획 및 이행 단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43) 즉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개편함.

- 비정규직 사용제한 방식의 변경(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은 입구 규제를 통해 비정규직 남용 자체를 억제하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제한 방식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특히, 비정규직 로드맵의 주요 쟁점들은 장래 비정규직 정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노사관계 당사자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충분한 협의가 중요함

3. 개선방안

- 비정규직 확산 방지 및 처우 개선이라는 정책 목적의 달성은 제도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음
 -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한 후 노·사 등 사회적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아직까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등의 기초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려져 있음
- 비정규직 남용·확산 방지 및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 관련 쟁점의 구체적인 방안, 추진 일정 및 단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종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방식과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고,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비교대상 근로자 인정범위 확대 등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입법화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적 보호의 문제도 그동안 사회적 논의와 입법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쟁점이라는 점에서 구체화된 방안과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	044) 202-7570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



1. 현황

-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현 정부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시간급 7,530원으로 결정하였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시간급 8,350원으로 의결함
 -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에 비추어 높은 수준임
-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클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호 및 소득분배 효과가 있으나, 소상공인·영세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효과분석, 특히 고용효과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문제점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이는 지금까지 국내 실증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인할 수 있음.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분석방법 및 기초자료에 따라 ‘고용감소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용률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 국외 실증분석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연구방법이나 기초 자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

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 예컨대, 1980년대 영미권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우세하였으나, 2000년대 메타분석의 결과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의 흐름이 있었음

- 결국 이론적·실증적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된 결과를 찾기는 어려움
- 2018년 시간급 최저임금 16.4%의 인상과 관련된 연구 분석 자료
 -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는 많지 않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정하는 연구들이 있었음
 - 예컨대, 실증 분석으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의 유의한 감소효과는 있으나, 2018년 3월까지 고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는 실증 분석 연구가 있었고,⁴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으나, 향후 대폭 인상이 반복되면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⁴⁵⁾
 -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상당한 고용감소가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음⁴⁶⁾

3. 개선방안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고, 현 시점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시기상, 자료의 제약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그럼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또 그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면밀한 실증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 사업체규모별, 계층별, 성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

44)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18. 5. 3.

45)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통권 제9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6. 4.

46) 송원근,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나타나고 있다」, 『KERI Column』, 한국경제연구원, 2018. 1. 12.

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	044) 202-721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후속대책**

1. 현황

- 정부는 2017. 7. 1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하 ‘지원 대책’)을 발표함⁴⁷⁾
 - 지원 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연장지원금 연장 및 확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각제 세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원 대책의 핵심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나(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13만 원 지원), 고용위축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규모와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인정함. 또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가입자도 지원함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실적
 - 2018. 6. 20. 기준 신청인원은 약 209만 명, 지급인원은 138만 명이었으며, 예산 집

47) 2018. 1. 18.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후속적으로 발표함.

행액은 7,110억 원임

- 사업장 규모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51.8%로 가장 높고, 그 밖에도 5인~10인 미만이 19.4%, 10인 이상이 28.8%로 나타남
- 업종별 신청 비율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19.3%), 제조업(18.2%), 숙박·음식점업(12.0%), 사업시설관리업(9.8%) 순으로 나타남

2. 문제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우려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 조치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은, 애초 국가 예산을 통해 최저임금 등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
-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속해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며,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없을 경우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고 결국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예산 확보 및 현행 지원 방식의 전환에 대한 검토

-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안과 관련하여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2조 9,707억)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2018년 7월 국회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잠정합의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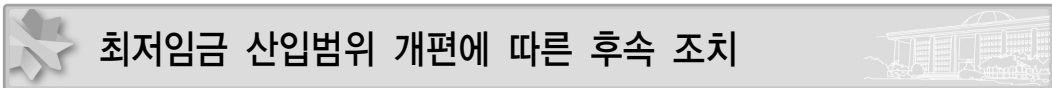
3. 개선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끼친 영향을 현 시점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효과가 미미하였고⁴⁸⁾, 이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⁴⁹⁾

48) 홍민기,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추정」,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 2018. 5. 3.

-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2019년 이후 지원 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더라도 규모별, 업종별 고용률의 변화 등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 △지속가능하다면, 보완 사항, △지원 방식의 전환 및 전환 시 지원 방식의 구체화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추진단	-	044) 202-7210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

1. 현황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의 경과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 9.~12. 제도 개선 전문가 T/F를 거쳐 산입범위 등 제도개선 TF안을 발표함(2017. 12. 22.)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TF안을 중심으로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부에 이송함(2018. 3. 7.)
 - 2018년 5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함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주요내용

49) 최경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통권 제9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8. 6. 4.

- 2019. 1. 1.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 (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함
 -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 원 = 157만 원 × 32%
- 다만, 연차별로 그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산입

【 표 3 】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정기상여금	25%	20%	15%	10%	5%	0%
현금성 복리후생비	7%	5%	3%	2%	1%	0%

- 또한,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 청취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와 기대효과
-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보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와의 균형을 추구함. 예컨대 2,500만 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가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배려함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함
 - 정부는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2. 문제점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한 개정 「최저임금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첫째,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취지에 비추어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음
 - 둘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 결정이 실증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⁵⁰⁾
 - 셋째, 상여금 등의 지급 주기를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⁵¹⁾에 대한 비판이 있음
 - 넷째, 법률은 명확성과 안정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은 복잡한 제도 설계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 및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함

3. 개선 방안

-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많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상여금 지급 요건 및 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 항목 및 범위도 매우 다양함
 -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결국,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다양한 명목의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 발생함
-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상여금 지급주기는 유노조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50) 2019년 기준 정기상여금은 25%, 복리후생비 7%는 산입하지 않되,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함.
 51) 개정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였음. 예컨대, 상여금의 경우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산입범위에 포함됨. 결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게 설정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주기를 1개월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무노조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반면, 유노조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사업장⁵²⁾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만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후속적으로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7526

근로자의 이해대변시스템 개편 방안

1. 현황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조직률(2016년 기준 10.3%)이 낮고 대기업·공공부문·정규직·기업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대변 기능이 취약한 실정임
- 물론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도 노동조합 이외에 일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대표’를 상정하고 있음
 - 고용, 산업안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대표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경영상해고에 있어서 사전협의의 주체,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서면합의의 주체)

52) 2016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을 살펴보면, 30~99명 사업장은 3.5%,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함.

- 한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 참여의 기본 틀로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임
-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미조직 취약 근로자들의 이해대변 기능 강화’를 제시하였음
 - 국정과제에서는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대변을 통한 권익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지역·업종 단위의 미조직 근로자 대변단체와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정례적인 논의 및 정책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2. 문제점

-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⁵³⁾ 및 단체협약 적용률⁵⁴⁾이 낮기 때문에 미조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및 권익 보호를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에 불과하며,⁵⁵⁾ 2015년 기준 단체협약 적용률 역시 11.8%로 낮은 수준임
 -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권익 보호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미조직 근로자는 단체협약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사업장 내 이해대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국정과제로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대변 기능 강화를 설정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사업장내 근로자 이해대표기구인 종업원대표제도 실질화 등 90%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의 구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53)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차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임.

54)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함.

55) 2016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55.1%, 30~99명 사업장은 3.5%,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함.

3. 개선방안

- 지금까지 근로자 이해대변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안이 있었음
 - 예컨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를 노사협의회로 일원화하는 종업원대표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근로자대표제 개편, 독자적인 근로자대표 또는 종업원대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근로자대표를 사업장 차원이 아닌 기업 또는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⁵⁶⁾
 - 한편, 근로자대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의 유사성이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변경제도 등을 통합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⁵⁷⁾
- 먼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 이해대변시스템을 개편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근로자대표의 구성(선출방식, 규모), 근로자대표의 운영 및 활동, 권한, 근로자대표가 체결한 합의의 효력 등
- 정부는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대변시스템 개편 관련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단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과제 이행 및 정책 추진 계획 및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	044) 202-7611

56) 자세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 및 입법과제』(김기선,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6) 참조.

57) 김기선,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규율현황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6, p.81.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1. 현황

- 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에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태롭게 함
- 역대 정부는 임금체불을 억제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체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왔음
 - 2005. 7. 1. 체불행정혁신의 일환으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및 반의사불벌죄 도입·시행,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의 도입, 임금채권 보장제도 개편 등
- 현 정부도 대선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주요 공약으로, 국정과제에서 ‘임금체불근절 및 체불근로자 보호’를 제시함
 - 정부는 세부공약으로 체당금 지급대상 및 범위 확대,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제 적용, 체불임금 외에 부가금제도 도입,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등을 내용을 제시한 바 있음

2. 문제점

- 임금체불을 억제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및 체불행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8년 4월 기준 체불액은 6,161억 원이며, 체불근로자수는 12만3천 명임. 1년 기준으로 2017년 체불액은 13,811억 원이었으며, 체불근로자수는 32만7천 명이었음⁵⁸⁾
 - 특히 2011년 이후 2016년까지 체불액 및 체불근로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임금체불 관련 제도 및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요구가 높아짐

58)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http://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49, 방문일자: 2018. 6. 29).

- 정부는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하도급 근로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추진하고 있음
 - 노동행정 근로감독 강화,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현재까지 정부의 임금체불 해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근로감독 강화를 위한 근로감독관 추가 증원 이외에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과 추진 현황이 나타나지 않음

3. 개선방안

- 정부는 2018년 업무 보고에서 체불 사전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경비업·음식점업 등 취약업종 중심 감독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힘
 -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임금체불 발생 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예컨대,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자율청산, 체당금, 민사소송 지원)
 - 즉 피해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기구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체당금 지급 및 민사구제 지원이 이루어지며, 형사적으로 근로자가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임금체불 억제 및 체불근로자 구제를 위한 많은 제도 개선 방안(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가금제도, 지연이자제의 확대 등)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쟁점으로부터 구체적인 논의의 진전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한인상	02) 788-4733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7526



플랫폼 노동자 보호



1. 현황

-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의미함
- 현행 전통적 근로자 개념에 근거한 노동법 체계 하에서 새로운 고용형태의 등장과 확산으로 인한 노동법 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성이 제기되고 있음
 - 즉, 플랫폼 노동의 경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식시간 등이 전통적인 노동과 구별되고 모호해짐으로써 현행의 근로조건 규제방식이 한계가 노출됨

2. 문제점

- 노동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 즉, 플랫폼 노동이 등장함으로써 현행 노동법 체계로 포섭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플랫폼 노동이라 할 수 있는 호출형 플랫폼과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의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임⁵⁹⁾

3.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플랫폼 노동자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플랫폼 노동자를 일정한 경우, 근로자(employees)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제3의 범주인 노무제공자(workers)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는 점은 시사할 만한 점임

59) 반면, 미국의 경우, 플랫폼을 기반한 우버나 음식 배달 서비스 종사자들 현황 및 실태가 연방차원의 노동통계를 통하여 파악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문제를 둘러싼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신동윤	02) 788-4558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	-	044) 202-7570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 등) 비준

1. 현황

- 2018년 기준, ILO 협약 190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협약은 총 29개임
 - 핵심 협약 8개 중 4개, 거버넌스 협약 4개 중 3개, 기술적 협약 177개 중 22개에 해당함
 - 미 비준 4개 핵심협약은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협약에 해당함
 -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 표 4 |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분야	협약명	비준여부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동등보수 협약(제100호) • 고용·직업상 차별금지 협약(제111호) 	비준
아동노동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제138호)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제182호) 	비준
결사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제98호) 	미비준
강제노동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미비준

-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ILO의 8개의 핵심협약 중 4개의 미 비준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2. 문제점

-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ILO 핵심협약 비준장애 요인과 관련 국내 법률

표 5 | ILO 핵심협약 비준장애 요인과 관련 국내 법률

협약명	비준 장애 요인	관련 국내 법률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조가입 제한 • 공무원 단체행동권 제한 •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제한 • 필수유지업무 범위 • 파업참가자 업무방해죄 적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제9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단체교섭사항 제한 •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노조법 • 교원노조법
강제노동 협약 (제2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복무 및 공익근무 등 병역제도 •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택하고, 병역법 상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을 인정하나, ILO는 공익 근무가 협약 상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 재소자 근로: 위탁작업, 민간교도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강제노동철폐협약 (제10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법」상 징역형 • 「형법」상 징역형에 노역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공무원법 • 국가보안법 • 형법 • 집회및사위에관한법률

3. 개선방안

-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병역법」 등

비준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계의 전문가들과 논의 필요성이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신동윤	02) 788-4558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과	-	044) 202-7129

감정 노동자 보호강화

1. 현황

-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노동형태임
 - 감정노동자는 고객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때때로 폭언, 협박, 희롱, 괴롭힘 등을 당하며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
 -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60만~740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 수준으로 추정됨⁶⁰⁾
- 제20대국회에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계류중에 있으며 (김부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03954), 2017년 5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정노동 종사 여성노동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회의장에게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함
- 2017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제작 발간하였으며, 감정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함

60)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 2017, p.6.

2. 문제점

- 감정노동의 개념정의와 적용범위 등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은 판례 등을 통해 근로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아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다고 함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6월 기준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례가 13개 지방자치단체⁶¹⁾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음

3. 개선방안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민사회, 노동단체,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실천적 해결 방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감정노동의 개념을 공식화하고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보호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등 입법적 조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신동윤	02) 788-4558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	044) 202-7682

61) 13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라북도, 김포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정부시, 전주시, 창원시로 확인됨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실태 및 운영 개선방안

1. 현황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 및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 지역 고용·노동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발굴하고 협의·심의하는 회의체를 말함
 - 법적근거로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음
- 2018년 기준,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50개소(광역시 17, 기초 133개소)에 설치됨

표 6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총 개소

(단위: 개소)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지자체수	71	75	80	87	90	101	106	116	121	130	146	147	150

자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2018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 80개 지자체 (광역시 17, 기초 63)에 대해 1,630백만원을 지원함(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 차등 부담: 광역 45~55%, 기초 15~25%)

표 7 |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지자체 수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사업수행 지자체수	4	7	9	15	42	39	39	42	55	66	77	79	80	80
지원예산	300	430	477	920	3,260	1,760	1,760	2,210	2,411	2,158	2,158	2,000	1,900	1,630

자료: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2018

2. 문제점

-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활동성과에는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

3. 개선방안

-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한 다양한 의제 발굴을 활성화하고, 우수 노사민정협의회의 성공요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등 국가차원의 지원확대가 요청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신동윤	02) 788-4558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	-	044) 202-7587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협력본부	지역협력팀	-	02) 6021-1064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남용(이른바 ‘갑질’) 규제방안

1. 현황

- 사회적 지위, 조직 내 직책, 계약관계, 재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이나 약자에게 권한을 넘어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른바 갑질행위로 지칭하기도 하며, 다양한 영역에 따라 국내 대표 항공사의 땅콩 회항 갑질 사건, 대학교수가 직위를 이용한 성추행 갑질 사건, 가맹점 갑질 사건, 특정기관의 쭈쭈바 갑질 사건, 경비원 폭행 갑질 사건 등의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킴
-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벗어나는 경우, 부당한 갑질행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권리 남용과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음
 - 다만, 사용자의 지시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내에 있고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

도로 현저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그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용자는 차별대우금지(「근로기준법」 제5조), 강제근로금지(「근로기준법」 제6조), 폭행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중간착취금지(「근로기준법」 제8조), 공민권 행사보장(「근로기준법」 제9조), 차별대우금지(「근로기준법」 제9조), 부당노동행위(「근로기준법」 제81조) 등을 위반하여 업무지시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최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제65조 제6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17.9.22., 법률 제14793호, 2017.3.21., 일부개정) 입법으로 명문 화합

2. 문제점

-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 또는 교육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움
 - 결국, 피해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이유로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상황임

3. 개선방안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권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나 사업장 내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지시권 남용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일본 후생노동성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남용 등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시행 중임 (<http://no-pawahara.mhlw.go.jp>)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감독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신동윤	02) 788-4558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	-	044) 202-7526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필요성



1. 현황

-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젊은 하청 근로자의 사상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2015년~2016년 휴대폰 생산 공정에서 일했던 20~30대 파견노동자 6명이 ‘메탄올 중독’으로 인해 실명함
 - 2018년 6월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23세 노동자가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함

2. 문제점

- 유해물질 하청 근로자의 사상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관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 2014년에도 메탄올 시력 상실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고용노동부의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⁶²⁾ 2016년 고용노동부의 유사 공정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환자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⁶³⁾ 사전에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후속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2012년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9조 등에는 유해화

62) 선대식, 「[단독] 삼성 하청업체 메탄올 실명 노동자 또 있다」, 『오마이뉴스』, 2017년 11월 29일.

63) 손가영, 「삼성전자하청업체 두 명 또 ‘메탄올 중독 실명」, 『미디어 오늘』, 2016년 10월 6일.

학물질 누출 등으로 급박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감독 대상이며,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불량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인원의 한계로 중대재해⁶⁴⁾이외의 재해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2018년 도금공장 청년 시안화수소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지만, 기준치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짐⁶⁵⁾
 - ‘작업 환경 측정’이란 작업 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며, 고용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아 발생했던 메탄올 실명사고 이후 2017년부터 사업장 지도·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발굴·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⁶⁶⁾
 - 다만, 본 사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작업환경측정이 관리하는 지속적인 노출에 의한 중독인지 단발성 사고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음

3. 개선방안



- 정부의 산업안전관리 현황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고용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는 유해화학물 사업장 목록을 비교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환경측정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필요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사전예방 관리와 산업재해 사후처리 권한을 분리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4)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발생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함

65) 「어이없는 위험유해물질 중독참사 왜 반복되나」, 『매일노동뉴스』, 2018년 6월 29일.

66) 백윤정, 「고용노동부, 20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 관리 강화」, 『미디어 SR』, 2016년 12월 30일.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혜경	02) 788-4737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화학사고예방과	-	044) 202-7741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화학안전과	-	044) 201-6837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 

1. 현황

□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특정 사유⁶⁷⁾가 발생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함(법 제25조제3항)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2회를 초과할 수 없음(법 제25조제4항 본문)
 - 다만 휴업, 폐업,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함(법 제25조제4항 단서)

67) ①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②휴업, 폐업,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③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당초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의 도입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불법이탈을 방지하고 적절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었음
 - 해당 조항은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도입되었으며, 제정 당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검토의견에 따르면, “사업장을 변경하도록 한 것은 사업장의 휴폐업,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불법이탈을 방지하고 적절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⁶⁸⁾

2. 문제점

- 2017년 10월,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를 권고함
 -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위원회’라고 함)’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하여 2017년 10월 6일,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발표하고, 고용허가제하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⁶⁹⁾
- 외국인근로자 단체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 단체에서는 현행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4년 10개월 체류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자발적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으며, ILO 총회,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 등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 제한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주장함⁷⁰⁾

68)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이재정의원 대표발의)』, 2003.2., p.13.

69) 이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는 2009년 정부가 제출한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가 나온 이래로 8년 만에 받은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외국인근로자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1년에 1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법제화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는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직장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최초 3년 근무 후 또는 재입국 후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현행 고용허가제 원칙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 제한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당초 설계된 고용허가제의 원칙은 정부가 외국 인력이 필요한 업종을 지정하고, 그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사업 및 사업장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최초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위한 사업장 변경 제한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는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흔들어 외국인의 ‘노동허가제’로 이행함을 의미함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환경 및 인권 차원에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함**
 - 사업장 변경 제한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사업장 내에서의 불이익한 처우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용허가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선의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로 환경, 인권 차원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미산입하는 현재의 규정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 실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
 - 뿐만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70) 우삼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 이자스민)·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세미나, 2015.9.2.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	044) 202-7149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개선** 

1. 현황

-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3년의 범위이나,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 (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이 가운데 소위 성실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여 최장 9년 8개월을 일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음(원칙적인 취업활동 기간, 3년)
 -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취업활동 기간 연장, 3년 + 1년 10개월)
 -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①3년의 취업활동 기간과 2년 미만으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 중에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책위원회가 도입 업종이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경우, ③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해당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소위 성실외국인근로자)로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3년 + 1년 10개월 + (3개월출국) + 3년 + 1년 10개월)

2. 문제점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의 도입 취지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재입국 취업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외국인근로자에게 편익을 제공하자는 취지임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2012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도입되었으며,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국내 취업활동 기간 중에 열악한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는 재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본국에 귀국한 후에 다시 재입국하여 종전의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입국 취업의 제한 기간을 단축하여 주며, 한국어능력시험, 취업교육 등의 절차도 면제하여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음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는 외국인근로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정주화방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내국인근로자 고용 및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에 대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실효적 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자진 귀국을 촉진할 수 있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숙련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해당 기업의 경제적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⁷¹⁾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사회적 비용의 유발과 함께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주장도 점증할 개연성이 높아 외국인근로자의 이주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단초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내인의 고용기회, 취업취약 계층의 고용기회, 근로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중소기업의 내국인숙련자 노동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현재의 고용허가제 단기순환 인력정책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음
 - 고용허가제의 인력순환 정책은 단기 순환 정책임에도, 도입 당시 ‘3년’이던 것이 ‘3년 + 1년 10개월’로 변경되고 2012년 2월에 ‘3년 + 1년 10개월 + 3년 + 1년 10개월’로

71)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강성천의원 대표발의)』, 2011.11.

변경되었다는 것은 단기순환 인력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게 되면, 일정 단계에 이르러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정착에 관하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되고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일자리 정착 → 3D 직종기피 → 노동력 부족문제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⁷²⁾
- 당초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4년 10개월로 연장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특례는 없다고 하였으나, 사업체와 외국인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실외국인근로자에게 최장 9년 8개월로 재입국취업 특례를 부여한 바 있고 이제 더 이상의 특례는 없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2017년 8월, 법무부는 9년 8개월 가량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들의 비자 심사를 2017년 한 해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고, 이들은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도록 하여⁷³⁾ 총 14년 6개월을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관성있는 단기순환 인력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3. 개선방안

□ 단기순환 인력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고용허가제라는 저숙련 단순 기능인력의 단기순환 인력정책을 도입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근로자들로부터 정주화 방지 원칙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어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임
-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노동이민제 등 다양한 방안 중에서 고용허가제라는 외국 인력 정책을 채택한 만큼 그 원칙 중 하나인 단기순환 인력정책의 기초가 유지되어야 함
-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문제, 노동권보장,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열악 등의 문제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의 해결을 동시에 모색해야 함
- 이를 위해 국내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펼치고, 향후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수용억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외

72) 설동훈,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국회입법조사처 지역현안간담회 패널토의, 2011.6.

73) 박경만, 「10년 체류' 이주노동자 재입국 길 열려」, 『한겨레』, 2017년 8월 2일자.

국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정비가 필요하며,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가칭 「외국인력 관리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음⁷⁴⁾

-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별, 인력수준별 단기·중장기 정책 추진 로드맵 작성, 인력수급 전망, 외국인력 증가로 인한 사회적·외교적 영향을 고려한 ‘중장기 외국인력 정책 기본계획’ 마련 등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이동영	02) 788-4736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	044) 202-7149

74) 설동훈,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 지역현안간담회 발표자료, 2011.6.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1. 현황

- 2018년 1월 31일, 양대 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회의의 의제 및 운영방식 등 논의함)
-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 82일 만인 2018년 4월 23일에 합의가 이루어짐
 - 이를 토대로 국회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5월 28일에 의결하였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이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2. 문제점

- 노동계의 양대 축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2000년대 초반 이래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상태이었음
 -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여 노사정대화 불참상태가 재연되고 있음
- 노동조합 조직률이 2016년 기준 10.3%를 하회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등이 그들의 입장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음
 - 개정법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하고 공익위원선출방식을 개선할 목적이었음

1)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사회적 대화는 2009년 11월 이후 8년 2월개월만에 이루어짐

- 노사정이 타협안을 도출하는 경우에도 이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2015년 9·15 합의 이행점검단에 따르면, 사회적 대타협 104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이행종결 8건, 정상추진 45건, 노동계의 불참으로 부분이행 33건, 국회입법지연으로 추가노력 필요 11건, 추후 논의 6건, 점검제외 1건에 해당함²⁾

3.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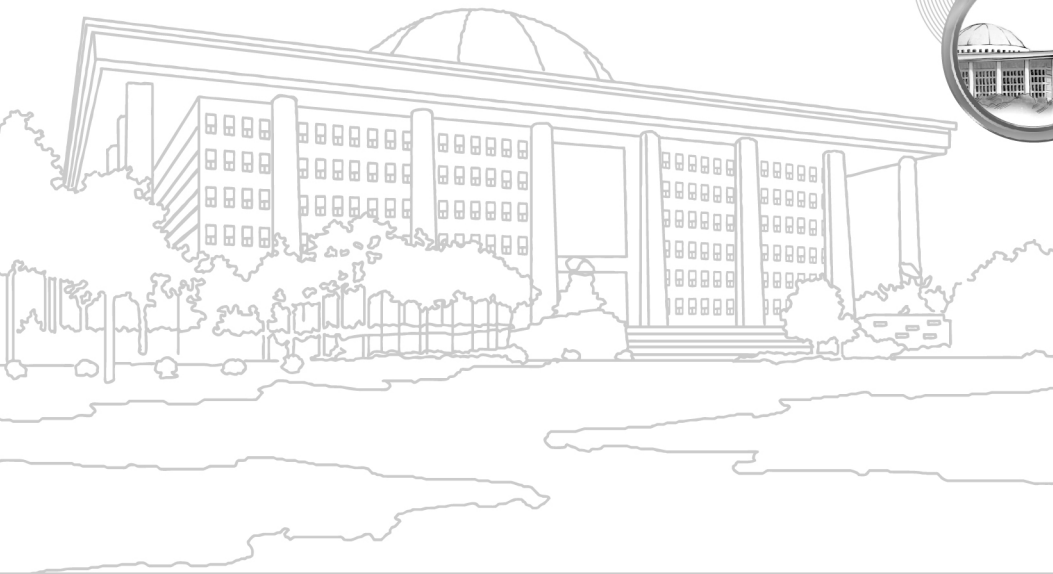
- 노사대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여 대화와 타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정법 취지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을 조속히 추가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노사정 합의의 이행확보 방안 도출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9조는 성실히 이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신동윤	02) 788-4558
관련 부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	02) 721-7140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활동보고서』, 2017, p.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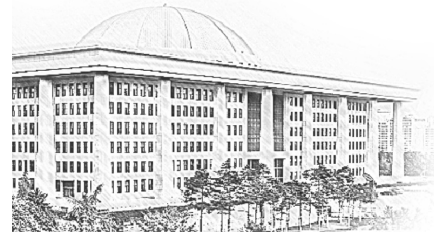


여성가족위원회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질적 제고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정부위원회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12월 말 기준 대상이 되는 국가기관은 43개이고 소관위원회는 436개임
 - 2017년 12월 말 기준 대상이 되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에서 1,814개의 위원회가 운영 중임

2. 문제점

-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많은 가운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을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성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음
 - 2017년 12월 말 기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정부위원회는 33.7%(437개 중 147개)이고, 광역(시·도) 자치단체위원회의 경우는 40.6%(1,814개 중 738개)인 것으로 조사됨
 - 위원회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중복 참여하는 여성위원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 모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의무참여비율에 미달되는 위원회는 55개('15년)에서 48개('16년), 21개('17년)로 줄어들었으나, 2017년 12월 말 기준 2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위원 수는 52명, 3개 이상은 142명, 4개 이상은 7명에 이르고 있음¹⁾

3. 개선방안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의 비율이 법적기준(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축하여 지원 및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법적기준 충족에 급급하여 위원회의 성격과 맞지 않는 여성위원들이 중복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질적 제고도 이루어져야 함
 - 여성들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의 정부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 발굴을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여성위원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인재DB²⁾ 등을 통한 추천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위원회 담당자는 여성인재DB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 혹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속에서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전체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는 한도를 제시해야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임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마련되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과	-	02) 2100-6199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처우개선

1.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분석평가 전문 인력(소위 ‘컨설턴트’) 육성방안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1) 모 광역 자치단체의 내부자료(2018)

2) 현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여성인재DB의 열람권은 광역지자체의 위원회 담당자에게 있음

- 2018년 기준 전국 17개소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352명의 전문 인력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 352명의 전문 인력은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2. 문제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들은 지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소속된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나 적은 사례비 책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표 1] 참조)
- 가령 1년 동안 개별적으로 법령, 사업, 계획 1개씩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컨설턴트는 빈번한 연락, 대면회의 등을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되는 법령, 사업, 계획 1건당 단가는 타 부처 컨설팅 예산과 비교하더라도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 것임([표 2] 참조)

【 표 1 】 성별영향평가 관련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단가

연번	단가		비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법령	4만원	• 대상과제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기타 컨설팅 포함
	사업	6만원	
	계획	6만원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4만원		• 동일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20,000원 지급 - 성별영향분석평가 6만원 +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2만원 = 8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24.

【 표 2 】 타 부처 컨설팅 예산 현황

부처명	사업명	사업개요	컨설팅 예산
노동부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5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차별개선 및 위법성 시정 컨설팅 제공(노사발전재단 위탁 운영)	- (기초 컨설팅) 300개 x 50만원 - (전문 컨설팅) 1,050개 x 8.5백만원
교육부	문해교육기관 컨설팅	평생교육시설 중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컨설팅	- 400개 기관 x 20만원

부처명	사업명	사업개요	컨설팅 예산
환경부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분야별 세부평가 항목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교수, 관련 전문가 등) 자문 요청	- 4,200건 x 1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7. 4.

3. 개선방안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대상과제 선정 및 컨설팅, 분석평가서 작성에 지원을 하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컨설팅의 내용과 수준이 타 부처 사업의 컨설팅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관련 단가를 현실화하여 이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	02) 2100-617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보육지원서비스 제공의 내실화

1. 현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제5호는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총 155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140개소('14년) → 147개소('15년) → 150개소('16) → 155개소('17)로 센터 개소수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혼인·임신·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경력단절여성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

2. 문제점

- 경력단절여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보육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내실있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음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교육훈련 중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보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보육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워킹맘 자녀 진로 설계 프로그램 등 자녀양육부담완화 사업(반찬지원) 등에 한정되고 있는 상황임

3. 개선방안

-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때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하는 보육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훈련 관련 항목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육지원 등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각종 상담 및 직업교육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육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	02) 2100-6209

공공부문의 성희롱 발생 및 처리결과 보고내용 확대 제출의무

1. 현황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0(성희롱 방지조치 등)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임

2. 문제점

-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보고내용에 성희롱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 실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현황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현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음

3. 개선방안

-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현실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지난 년도의 성희롱 사건 발생현황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도 추가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

- 개정대상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	02) 2100-6394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인력 균등 배치

1. 현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하여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일명 ‘해바라기 센터’)가 전국적으로 총 38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해바라기 센터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서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분류되고 있음([표 3] 참조)
 - 각각의 유형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모든 성별과 연령에 제한없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아동형에 한하여 19세미만 아동·청소년으로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음

【 표 3 】 해바라기 센터 유형별 주요 기능 비교

구 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년~	2004년~	2010년~
대 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19세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개소수	16개	8개	14개
근무형태	365일 24시간	월~금 09:00 ~ 18:00	365일 24시간
경찰근무	상근 여경 파견	출장 지원	상근 여경 파견

구 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주요업무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상담·심리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출장)수사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강점	피해자 긴급지원, 수사지원	전문적 심리치료	위기지원형+아동형 (통합서비스)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5.

2. 문제점

- 유사한 목적을 지녔으나 서비스 대상과 제공 서비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 지원센터가 분산되어 운영되면서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치유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형 해바라기센터³⁾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여경이 상주하고 있는 위 기지원형이나 통합형으로 이동하면 똑같은 진술을 반복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개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가 인력 배치도 불균등하게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위기지원형과 아동형의 장점을 통합한 해바라기센터에서조차 개별 전문가(임상심리 사,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등)가 모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소수에 불과함 ([표 4] 참조)

【표 4】 통합형 해바라기센터에 배치된 개별 전문가의 배치현황

(단위: 명)

전문가 \ 통합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서울	1	1	1
서울북부	-	1	2
서울중부	구분없이 1		1
부산	1	-	2
대전	구분없이 1		1
울산	-	1	2

3) 상담·심리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아동형(8개소)에서도 임상심리사가 상근하고 있는 곳은 4개소(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이고, 임상심리사가 없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임상심리사가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고 있는 상황임

전문가	통합형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경기남부		구분없이 2		1
경기북서부		구분없이 2		1
강원서부		1	-	1
강원동부		구분없이 2		1
전북서부		1	-	2
전남서부		1	-	2
경북동부		1	-	1
제주		2	-	1

자료: 여성가족부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3. 개선방안

- 통합형 해바라기센터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만큼, 장기적으로 위기지원형과 아동형 해바라기센터도 기능을 보완하여 통합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단기적으로는 다음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바라기센터(아동형)도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수사지원 중심의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를 방문한 성폭력피해자도 전문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 전국적으로 개별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전문가 인력배치를 균등하게 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지원이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개별 전문가(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진술조력인 등)를 배치하여 피해자가 센터를 재방문하지 않고 2차피해를 받지 않으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	02) 2100-639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강화



1. 현황

-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부처별로 각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팀’을 신설(2018. 4.)하여 신속 대응을 위한 긴급심의제도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 수사팀인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기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에 더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 더불어 중앙 부처, 관련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민간협의체를 주관하고 있음

2. 문제점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는 변화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보수교육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고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도 관련 시설 이용에 소극적인 상황임
 -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24시간 Hot-Line 체계로 운영되며 긴급상담 및 안내·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의 자격이 엄격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음
 - 여성긴급전화 1366의 법적 근거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그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여성가족부 산하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 실적은 다음과

같음⁴⁾

- 2017년도 기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상담실적은 전체상담 총 289,034건 중 488건으로 약 0.17%임⁵⁾
- 2017년 기준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성폭력피해 총 상담인원 29,695명 중 1,491명으로 약 5%임⁶⁾
- 2017년도 기준 해바라기센터 이용 성범죄피해자 총 이용자 19,423명 중 708명으로 약 3.6%수준임⁷⁾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개소(2018. 4. 30.)해서 6월 18일까지 50일 동안 총 493명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3,115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음

3. 개선방안

-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 지원의 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간 역할 정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중 디지털 성범죄피해자를 포괄하는 기관은 전문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24시간 상담을 통한 긴급지원을 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근거 법률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기관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화되어야 함
 -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는 오프라인 성폭력에 맞추어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온라인 상의 성범죄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수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4)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2018.6.4.)

5)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의 실적 관련, 기간은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2017. 9. 26.부터 12. 31.일까지의 통계임(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8)

6)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3.

7)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3.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지원과	-	02) 2100-6392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 

1. 현황

-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일명 ‘쉼터’)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음([표 5] 참조)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3개소(서울2, 충남1)를 운영하고 있음
 -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1개소(서울)을 운영하고 있음

【표 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현황('18. 1. 1. 기준)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개소수	28	4	1	2	1	1	1	1	4	1	1	1	2	3	3	1	1
종사자수	107	16	4	8	4	4	4	4	13	4	4	4	8	11	11	4	4
입소정원	319	45	16	24	11	11	15	13	38	11	11	11	24	32	34	12	11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18.

2. 문제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피해이주여성의 현실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 보호시설에 입소해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은 다양한 불안감, 언어적 소통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내국인 보호시설보다 추가적인 종사자 배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의 보호시설 종사자 인력배치는 동일한 수준임⁸⁾

- 보호시설에 입소해있는 피해여성이 병원이나 재판에 가게 되어 상담원이 동행하게 되면, 보호시설에서의 안전 등 보호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3. 개선방안

-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 여성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이 필요함
 - 이주여성 대상 젠더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추가적인 종사자 배치를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	02) 2100-6428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화된 운영

1. 현황

- 정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8조에 근거하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일명 ‘쉼터’)을 운영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전국에 총 66개의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8)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 시설에 배치돼 있는 종사자는 시설장 포함하여 4명임. 24시간 운영되는 보호시설의 성격상 나머지 종사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음

- 보호시설의 업무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에의 동행 등임

2. 문제점

- 정부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의 연령, 혼인상태, 피해의 유형 등을 고려한 보호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표 6] 참조)
 - 최근 5년동안 보호시설의 개소수도 70개소에서 66개소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연중 시설별 평균 입소인원이 63.4명(2013년)에서 49.6명(2017년)으로 감소하고 있음
 - 보호시설의 특성상 가정폭력행위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는 입소를 꺼릴 수 있음
 - 점차로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공동생활을 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 수 있음
 - 심각한 정신과적 진료, 심리치료를 요하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이 있는 보호시설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임

【표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현황('13~'17년)

(단위 : 개소, 명)

연도	쉼터 수	입소정원	연중 입소인원					연중 퇴소 인원		
			입소자				동반자녀	소계	입소자	동반자녀
			소계	전체	자녀 동반	자녀 미동반				
2013	70	1,133	4,440	2,748	798	1,950	1,692	4,266	2,627	1,639
2014	69	1,069	4,140	2,551	889	1,662	1,589	4,132	2,555	1,577
2015	70	1,164	3,984	2,404	1,033	1,371	1,580	4,011	2,401	1,610
2016	67	1,133	3,415	2,102	976	1,126	1,313	3,434	2,110	1,324
2017	66	1,108	3,275	2,055	948	1,107	1,220	2,994	1,870	1,124
합계 (5년)	-	-	19,254	11,860	4,644	7,216	7,394	18,837	11,563	7,274
평균 (5년)	-	-	3,850	2,372	929	1,443	1,479	3,767	2,313	1,455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15.

3. 개선방안

- 피해자들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사회적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과 시설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정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피해자의 연령, 혼인상태, 피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	02) 2100-6425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강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1. 현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경찰의 대상아동·청소년 발견통보는 사안이 경미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급적 형사 입건을 자제하고 치료·재활교육을 함으로써 비범죄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 경찰의 통보에 의거하여 권역별 10개의 위탁교육기관에서 분기별로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교육 수료 후 성매매근절의지는 8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교육 후 6개월 간 탈성매매율도 평균 95.4%에 이르고 있음⁹⁾

2. 문제점

- 사법경찰관이 대상아동·청소년 발견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인원이 점차로 많아지고는 있으나 업무절차, 통보 관련 시기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찰통보 인원 중 80% 가량의 청소년들이 불참하고 있음([표 7] 참조)
 - 사법경찰관이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하는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늦게 또는 한꺼번에 통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중앙에서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을 모아서 지역의 위탁교육기관에서 피해청소년에게 연락을 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따라서 10개의 위탁교육기관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치료·재활교육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¹⁰⁾

【표 7】 경찰 통보 인원 중 치료·재활교육 현황 및 교육 불참 이유('14~'17년)

(단위: 개소, 명)

구분/ 연도	경찰통보인원 교육 현황			교육 불참 사유						기타
	계	교육 수료	교육 불참	중복 통보	연령 초과 (20세 이상)	연락 두절	부모가 원치 않은 경우	청소년 스스로 원치 않은 경우	교육연기 (참여 예정)	
2014	136	25	111	10	9	29	10	11	10	32
2015	190	30	160	33	15	30	12	8	27	35
2016	241	57	184	13	5	116	9	15	-	26
2017	476	73	403	46	14	181	20	62	6	74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18.

3. 개선방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사법경찰관이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시기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9)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18.

10) 2017년도 1/4분기에는 10개 중 4개 위탁교육기관에서, 2018년도 1/4분기에는 5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수료생이 한명도 없었음

- 여성가족부는 경찰통보인원 중 교육수료생이 소수인 상황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경찰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반과	-	02) 2100-6446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강화

1. 현황

-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¹¹⁾의 장은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연 1회 이상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을 해야 함('16. 11. 30.부터)
 - 여성가족부는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에 1년에 한번 관련 소관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해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결과를 취합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¹²⁾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

11)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12) 취업제한 대상은 1. 유치원, 2. 학교, 위탁 교육기관, 3.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시설(수련 및 이용시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7. 어린이집, 8. 아동복지시설, 9. 청소년지원 시설, 10. 성매매 피해상담소, 1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12. 체육시설, 13. 의료기관, 14. 경비업 법인 15. 청소년활동기획업 소,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노래연습장업, 18. 기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임

【표 8】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점검 방식

담당 기관	세부 추진 사항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점검계획 수립요청 안내공문 발송 • 각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점검확인 결과를 「성범죄자알림e」에 3개월간 공개
중앙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에 점검계획 수립 안내 • 시·도별 점검 결과를 취합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계획 수립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하여 관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조회 및 점검 결과 제출 • 적발시 해임 요청, 운영자변경, 폐쇄요구, 인·허가 취소 등 조치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18.

2. 문제점

-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할 것임
 - 최근 5년간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창업하여 적발된 건수는 최근 감소되는 추세임¹³⁾
 - 이와 관련해서는 성범죄 취업제한제도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여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표 9】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창업하여 적발된 건수('13년~'17년)

(단위: 건)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적발 건수	62	80	59	17	24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2018. 6. 21.

3. 개선방안

-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방식을 현장점검 중심으로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

13) 혹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음

부터 예방 및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여성가족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연계하여 1년에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주은	02) 788-4723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 2100-6000

 **양육비 이행률 개선 방안 마련** 

1. 현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 이혼 한부모 가족의 이용률이 94.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래 2018년 2월까지의 누적 상담건수는 89,565건, 접수건수는 13,565건에 이르고 있음¹⁴⁾

2. 문제점

-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 대비 양육비 지급건수가 낮음
 - 양육비이행관리원 개원 이후 2018년 2월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이행 의무 확정 건수는 8,789건이고 그 중 2,678건의 양육비가 지급되어 이행률은 30.48%에 그치고 있음

14) 양육비 이행관리원, <https://blog.naver.com/pinacho1/221237912535>

- 양부모 가족에 비해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3배가량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은 한부모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임에도 양육비 이행 강제규정이 미흡함

3. 개선방안

- 양육비 이행을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강제조치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감치 결정은 일시적인 제재 방식이면서 기한 경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할 시 실질적 제재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전문직업 자격증 정지, 신규발급 및 연장거부, 신용평가기관 보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54

양육비 이행 면접교섭 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책 마련

1. 현황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의식 제고 및 자발적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유도한다는 목적 하에 자녀와의 정기적 면접교섭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음
- 면접교섭에 참여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이 88.1%로 2017년 전체 양육비 이행을 32.0% 대비 2.7배 증가하였음을 보고함

2. 문제점

- 가정폭력 피해로 이혼한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자녀의 경우, 자녀 양육비와 관련한 협의를 이유로 전 배우자와 교류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학대가 없었더라도 자녀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비 채권자가 면접교섭 등 정보 노출 우려로 인해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자와 직접 교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통장번호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 면접교섭 서비스 포함,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상황을 고려하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인 양육비 채권자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다루는 안전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자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54



자격정지 아이돌보미 관리 강화 방안 마련



1. 현황

- 최근 대구 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에 의한 영아 학대 및 방임 사건이 발생함
 - 생후 10개월의 유아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9개월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 불인정¹⁵⁾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아이돌보미 자격을 유지하게 됨

2. 문제점

- 자기방어능력이 전무한 영·유아 및 아동을 사적인 공간에서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 학대 및 체벌에 관한 관리 방안이 미흡함
 - 「아이돌봄 지원법」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아동학대 및 체벌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아이돌보미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 정지를 받은 아이돌보미의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시간이 경과한 이후, 별다른 교육이나 감시·감독 없이 아이돌보미로 복귀할 우려가 있음
- 「아이돌봄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도 1년이 경과하면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됨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아이돌봄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아이

15)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 얻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아동체벌금지’ 조항의 삽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업무수행 중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의 업무복귀 요건, 모니터링 강화 등의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49

민간 아이돌보미 관리 체계 도입

1. 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대기가정의 지속으로 인해 맞벌이 가정 등 아이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많은 가정이 민간 베이비시터에 의존하고 있음
 - 민간 베이비시터의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2017년 기준,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20만1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¹⁶⁾

2. 문제점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결격사유)와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의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결격사유는 법제화되어 있으나 민간 베이시터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아동을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음

16)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전국 직업/성별 취업자,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ES3B32&ww_cd=MT_ZTITLE&list_id=B19_EQ13_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검색일: 2018.6.28.>

3. 개선방안

-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와 7조의 아이돌봄미 자격 및 결격사유 규정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민간 베이비시터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등록제도 도입 및 민간 베이비시터 DB 구축과 같은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방안 마련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49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방안 마련

1. 현황

- 여성가족부는 서울·수도권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개소(중앙지원단)와 지역지원본부(광명, 광주, 부산)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
 -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의 부당처우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업주와의 중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문제점

-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대우가 지속되고 있음
 - 「2017전국청소년인권실태의식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가 31.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는 50.9%에 이르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최저임금 미

만을 받은 청소년이 25.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59.3%인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서비스는 ‘사전예방적 정보제공’ ‘부당처우 사례 상담’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자 부당대우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시행할 시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아르바이트 급여 등 소액 체불임금에 대해 구상권을 도입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근로권익 전문상담사들이 대상기관(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중·고교)을 방문하여 일회적인 사전예방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상습적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사업장/사업주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	02) 2100-6236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한국어 교육 확대

1. 현황

-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한국에서 재혼한 외국인이 재혼 이전에 외국에서 출산한 아이들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을 말함

-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기초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이해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 초기적응 지원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2. 문제점

- 최근조사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 중 공교육 과정에 다니지 않고 있는 청소년이 30%를 차지함¹⁷⁾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학교 진입과정이 지연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한국어 실력 부족(55.3%)’인 것으로 조사됨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교육(레인보우 스쿨)이 전국 15개 시·도 23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1,877명이 교육수혜자로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중 일부만이 한국어 교육 혜택을 받고 있음

3. 개선방안

- 정부부처 간에도 중도입국 청소년의 규모가 다르게 파악되고 있고, 그 수가 추정에 그치고 있는 만큼 교육 수요도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서도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한국어실력 부족이 공교육 진입과정 및 사회적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함
 -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예비학교 및 학급 개설의 전국적 확대 및 모국출신 한국어 교육 강사 양성, 교육시간 확대 및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함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	02) 2100-6232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6년「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조사결과임.



청소년 유해약물 구입 및 신분증 위조 계도 방안 마련



1. 현황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되고,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는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규정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시,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영업허가·등록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당하거나 취소당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신분증을 위·변조 내지는 도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경우 현행법 상 제재 규정(「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229조(위조등공문서의행사), 230조(공문서등의부정행사))이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업주만 처벌받는 현실이 문제가 되자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3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서는 청소년이 위·변조 혹은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함

2. 문제점

- 청소년의 유해약물 구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업자에게만 묻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주류 등 유해약물 구매 후 판매자를 협박·신고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 및 도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청소년의 주류구매는 단순히 음주섭취의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청소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판매업자 뿐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필요가 있음¹⁸⁾

18) 「중앙일보」 2017년 1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가해 교통사고가 2년 새 20% 늘었고, 3년간 10대 운전자

- 해외의 경우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주류를 구입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 신분증 위·변조로 차량을 렌트한 후, 무면허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는 전체 무면허 사고의 10%를 넘고 있음¹⁹⁾

3.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주류구입, 소비, 소지에 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에 관해서는 형법을 엄격히 적용하거나, 미성년자임을 감안한다면, 사회봉사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 등의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환경과	-	02) 2100-6292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서비스 중지 후 조치마련

1. 현황

- 정부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무상 방문교육으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자녀생활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음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가 그 대상이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년 교통사고로 486명이 숨졌으며, 음주사고는 95건에 해당함.

19) 「아시아경제」2018년 6월 27일자, “ ‘여기서 광 저기서 광’ 브레이크 없는 10대 무면허 사고”

- 이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신규 양성 교육의 횟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방문지도사의 안전 및 지원대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교육서비스를 중도에 중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가 포함되어 있음²⁰⁾

2. 문제점

- 방문교육서비스의 중지사유에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가 포함됨으로써 시댁식구나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방문교육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여 다문화지원센터의 이용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족이 외출 등을 허용하지 않아 한국어 습득이 지체되고 사회적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방문교육서비스는 농어촌 결혼이주여성,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학대 예방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
- 이에, ‘타 가족구성원의 반대’를 그대로 수용하여 방문교육서비스를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외부인의 방문을 꺼려하는 다문화가정을 오히려 위기가정으로 간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과정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02) 2100-6372

20) 여성가족부,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274, 2018.



학생미혼모 대안교육위탁원 연계 강화 조치 마련



1. 현황

- 정부는 재학 중 임신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기 어려운 학생의 학업중단위기를 예방하고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위탁원을 전국 1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 기존학교로부터 신청서 및 추천서를 받아 위탁교육원에 제출하면 수탁결정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고 기존학교에 수료여부가 통보되는 방식임
 - 기존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거나, 퇴학생의 경우 복교절차를 통해야만 위탁교육원 교육생 자격이 부여됨

2. 문제점

- 청소년 양육 미혼모의 80%가 학업 지속을 희망하나, 현실은 청소년 양육 미혼모의 70%가 고졸이하의 학력에 그치고 있음
 - 전국 12개 시·도에서 미혼모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평균 수용률(수용인원 대비 입소인원)이 17%에 그치는 등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된 이후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재학 중이어도 임신을 사유로 비자발적인 학업중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의 청소년 미혼모가 학적유지를 요건으로 하는 위탁교육원에 입소하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 문제가 있음

3. 개선방안

- 위탁교육원에 대한 교내 안내, 청소년미혼모 지원 업무 관련 기관에서의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청소년 미혼모들이 위탁교육원 이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위탁교육원 지원 시 학적유지 요건을 완화하여, 학업이 중단된 학교 밖 청소년 미혼모들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42

 **지적장애 및 다문화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1. 현황

-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는 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무료법률구조 및 가족관계 회복사업 등이 있음²¹⁾
 - 소득인정액, 연령(청소년한부모), 혼인(미혼한부모)여부가 지원사업 대상 선정기준임

2. 문제점

- 경계선 지적장애 및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소득과 연령 기준 외의 취약성을 지닌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이 미비함
 - 경계선 지적장애 한부모가족은 아동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 외에 자녀양육 및 지도, 생활지원, 안전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요구될 수 있음
 - 지적장애 한부모가족은 타인 및 지인에 의한 경제적·성적 착취에 취약하고, 그 자녀들까지 성착취 및 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다문화한부모가족 역시 경제적 취약성 외에,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정보습득의 어려움, 가까이에서 조력할 수 있는 친·인척이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취약·위기가족으로의 빠른 전락이 우려됨

21)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13쪽, 2018.

3. 개선방안

- 지적장애한부모 및 다문화한부모 등 사회적 취약성이 다중으로 결합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중첩된 취약성을 가진 한부모가족을 항시적 취약·위기가족으로 분류하여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부처·청	실·국	관·과	이름	연락처
작성자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02) 788-3538
관련 부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02) 2100-6343

집필자 명단

팀명	직위	성명	연락처	분야
정치의회팀	팀장	박규찬	4530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집총괄>
	입법조사관	김종갑	4534	
	입법조사관	이강혁	4535	
	입법조사관보	김유정	4537	
	행정실무원	김안나	4530	
	입법조사원	이정미	4530	
법제사법팀	팀장	심정희	4540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정무위원회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조사관	조규범	4541	
	입법조사관	조서연	4545	
	입법조사관	박준모	4547	
	입법조사관	황현영	4543	
	입법조사관	백상준	4544	
	입법조사관	도규엽	4542	
	입법조사관보	이재일	4546	
외교안보팀	팀장	유웅조	4550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외교부 통일부 <국방위원회 소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정무위원회 소관> 국가보훈처
	입법조사관	김예경	4551	
	입법조사관	정민정	4552	
	입법조사관	이승현	4555	
	입법조사관	형혁규	4553	
	입법조사관	이승열	4557	
	입법조사관	김도희	4556	
	입법조사관	박제웅	4529	
	입법조사관	박명희	4554	

팀명	직위	성명	연락처	분야
안전행정팀	팀장	이상팔	4560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입법조사관	박영원	4561	
	입법조사관	김현정	4566	
	입법조사관	하혜영	4562	
	입법조사관	노성준	4564	
	입법조사관	배재현	4563	
	입법조사관	류영아	4565	
	입법조사관	김태엽	3842	
	입법조사관보	정재환	4567	
재정경제팀	팀장	정지은	4570	<기획재정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한국은행 <정부위원회 소관> 조세심판원
	입법조사관	김민창	4571	
	입법조사관	김재환	4575	
	입법조사관	정도영	4574	
	입법조사관	문은희	4577	
	입법조사관	임언선	4572	
	입법조사관	송민경	4573	
	입법조사관보	박인환	4578	
금융공정거래팀	팀장	임동춘	4580	<정부위원회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입법조사관	최정배	4581	
	입법조사관	원종현	4583	
	입법조사관	기준하	4584	
	입법조사관	김창호	4582	
	입법조사관	강지원	4587	
	입법조사관	조대형	4585	
	입법조사관보	최은진	4586	
산업자원팀	팀장	김봉주	459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특허청
	입법조사관	전은경	4596	
	입법조사관	김종규	4592	
	입법조사관	유재국	4594	
	입법조사관	박총렬	4591	
	입법조사관	유제범	4588	
	입법조사관	장영주	4595	
	입법조사관	박재영	4598	
	입법조사관	박연수	4597	
입법조사관보	김태우	4593		

팀명	직위	성명	연락처	분야
국토해양팀	팀장	유인규	4600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부
	입법조사관	김예성	4605	
	입법조사관	장경석	4601	
	입법조사관	김진수	4603	
	입법조사관	박준환	4602	
	입법조사관	강재구	4604	
	입법조사관	김성미	4606	
	입법조사관	김영석	4606	
	입법조사관보	박인숙	4607	
교육문화팀	팀장	유의정	4700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덕난	4702	
	입법조사관	조인식	4705	
	입법조사관	황현희	4703	
	입법조사관	배관표	4704	
	입법조사관	임주현	4707	
	입법조사관보	유지연	4706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김유향	47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권성훈	4716	
	입법조사관	전지은	4713	
	입법조사관	김여라	4711	
	입법조사관	정준화	4715	
	입법조사관	신용우	4714	
	입법조사관	최진응	4717	
	입법조사관보	김나정	4718	
보건복지여성팀	팀장	이만우	4720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여성가족부
	입법조사관	정수정	4726	
	입법조사관	조숙희	4727	
	입법조사관	김주경	4725	
	입법조사관	최병근	4721	
	입법조사관	원시연	4722	
	입법조사관	조주은	4723	
	입법조사관	박선권	4724	
	입법조사관	허민숙	3538	
	입법조사관보	김대명	4728	

A U T H O R D I R E C T O R Y

팀명	직위	성명	연락처	분야
환경노동팀	팀장	조승래	4730	<환경노동위원회소관> 환경부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진선	4734	
	입법조사관	한인상	4733	
	입법조사관	김경민	4732	
	입법조사관	이혜경	4737	
	입법조사관	신동윤	4558	
	입법조사관	이동영	4736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 Ⅲ

발 간 일 | 2018년 8월 1일
발 행 | 이 내 영
편 집 |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발 행 처 |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TEL 02·788·4524
인 쇄 |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1. 본 책자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92-7118
발간등록번호 31-9735006-001333-10

© 국회입법조사처, 2018

